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

예산안분석시리즈 Ⅲ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

총 괄 | 임명현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임길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유주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김용오 정한슬 정성영 안승재 허아름
조명식 이동현 우형규 남명진 예산분석관

지 원 | 이지은 행정실무관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02) 6788-3769 | e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Ⅲ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

2026. 1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10.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26년 8.1%에서 '27년 1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158.5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과 신설 기금의 운용 방식 및 국회 통제 장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및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차 례

CONTENTS

Ⅲ. 정책별 분석

〈총괄 분석 Ⅱ〉

1. 미래대응기금 신설의 타당성 분석 ····· 3
1-1. 미래대응기금 개요 ····· 3
1-2. 대규모 일시적 세수의 활용방식에 대한 검토 ····· 12
1-3.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절차 준수 여부 검토 ····· 16
1-4.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요건 검토 ····· 22
1-5. 종합의견 ····· 29
2. 미래대응기금 재정운용계획 분석 ····· 33
2-1. 미래대응기금 재원 분석 ····· 33
2-2. 미래대응기금 계정운용 분석 ····· 42
2-3. 미래대응기금 지출사업 총괄 분석 ····· 47
3. 미래대응기금 운용시 보완 필요사항 분석 ····· 58
3-1. 재정수지·국가채무 간 괴리 요인 제시 필요 ····· 58
3-2. 세계잉여금 등의 채무상환 기능 보완 필요 ····· 61
3-3. 세입여건 변동에 따른 기금 적립·인출에 대한 국회 통제 확보 필요 ····· 65
3-4. 2026년 초과세수 적립 여부·규모 및 처리 방식 검토 필요 ····· 72
3-5.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과 국고채 발행의 연계 운용 필요 ····· 77
3-6. 기금운용계획 변경·이월 통제 보완 필요 ····· 82
3-7.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축소 및 교부금 산정방식 전환의 영향 제시 필요 ····· 86
3-8. 다부처 기금 편성에 따른 예·결산 심사체계 보완 필요 ····· 91
3-9. 미래대응기금으로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및 예수금 편성 문제 ····· 100



CONTENTS

4. 지방교부세 개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 108
4-1. 세수변동 위험분담의 불균형과 재정안정화 기능의 한계 ····· 111
4-2. 현행 산정방식 대비 일반재원의 축소와 지방의 재정자율성 약화 ····· 122
4-3. 지방계정의 사업구성과 지역주도 성장의 불일치 ····· 131
4-4. 지방교부세 개편 논의 시 고려사항 ····· 140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분석 ····· 144
5-1. 교부금 개편안에 따른 산정방식의 적정성 검토 ····· 147
5-2.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향후 수요 증대 요인 분석 ····· 152
5-3.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운용방식의 적정성 분석 ····· 170
5-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시 고려사항 ····· 177
6.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사업 예산안 분석 ····· 182
6-1. 반도체 지원사업 예산안 분석 ····· 188
6-2. 피지컬 AI 지원사업 예산안 분석 ····· 221
6-3. AI 데이터센터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분석 ····· 249
6-4. 메가프로젝트 기반시설(전력·용수·산단) 사업 분석 ····· 272
7. 창업 지원 사업 분석 ····· 304
8. 국민성장펀드 운용 현황 분석 ····· 335
9. 공공부문 AI 대전환 분석 ····· 358
10. 종자산업 육성사업 분석 ····· 395



CONTENTS

〈총괄 분석 Ⅲ〉

11.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사업 분석 ····· 3
11-1. 청년일자리사업 분석 ····· 24
11-2. 자산형성 사업 분석 ····· 39
11-3. 혼인 · 출산 · 양육 지원 사업 분석 ····· 45
11-4. 교육, 주거, 생활·문화 사업 분석 ····· 79
12.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대응체계 사업 분석 ····· 90
13. 지역필수공공의료 지원 사업 분석: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중심으로 ····· 119
14. 국방·군사시설의 활용 및 이전사업 분석 ····· 156
15.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구조 분석 ····· 209
16. 총액인건비제도 관련 분석: 업무 공백 최소화와 정당한 보상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 238
17. 재난안전사업 분석 ····· 266

Ⅲ. 정책별 분석

11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사업 분석

가. 현 황

청년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 청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나 법률·조례마다 다르게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청년기본법」[1]에 따라 19세부터 34세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2][3]. 우리나라의 청년은 2010년 약 1,152만명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약 1,030만명, 2025년 약 1,025만명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도별 만19세~만34세 인구수]

(단위: 만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구 수	1,152	1,147	1,139	1,138	1,135	1,135	1,122	1,118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구 수	1,113	1,104	1,096	1,072	1,044	1,036	1,030	1,025

자료: 국가데이터처

청년 인구의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2000년 전체 인구의 28.3%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23.1%, 2020년 21.1%, 2025년 19.8% 수준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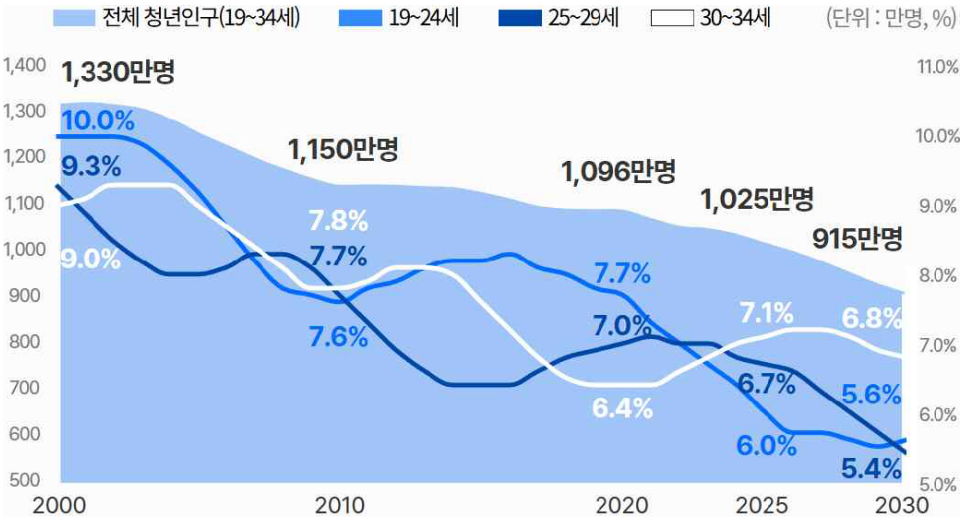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충북·경북·제주·대구·인천의 경우 청년의 범위를 만19세에서 만39세로 전북·대전의 경우 만18세에서 만39세로, 전남의 경우 18세에서 45세 이하로 정하고 있음

3)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년의 연령범위 상한을 낮게 규정함. OECD(「OECD Labour Force Statistics」, 15세~24세), 미국(「Pathways for Youth: Draft Strategic Plan for Federal Collaboration」, 0세~25세), 일본(「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18세~30세), 프랑스(「La politique en faveur de la jeunesse」, 3세~30세), 영국(「Positive for Youth」. 13세~19세)

[연도별 청년 인구규모 및 비중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청년은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이 되는 인구로 국가 발전의 근간이나 최근의 경제·사회적 변화[4)5)]로 인하여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연도별 청년 고용 상황을 확인하면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평균 대비 15%p 이상 적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년실업률의 경우 최근 5년간 매년 전체 실업률 평균 대비 2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추세적으로도 고용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4)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등 과거 고도성장기와 달리 저성장 기조에 직면
경제성장률(실질, %, 연평균): 90년대 7.4, 00년대 4.9, 10년대 3.5, 20년대(20~25년) 2.0

5) 제조업 중심에서 디지털·신산업 등으로 산업변화 가속화, AI 기술 발전이 일자리·생활 등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

[연도별 청년 고용 지표]

(단위: 천명, %, %p)

항목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8.
경제활동 참가율	전체(A)	62.8	63.9	64.3	64.5	64.7	64.6
	청년(B)	47.9	49.8	49.4	48.9	47.9	46.6
실업률	전체(A)	3.7	2.9	2.7	2.8	2.8	2.0
	청년(B)	7.8	6.4	5.9	5.9	6.1	5.4
고용률	15~64세 전체(A)	66.5	68.5	69.2	69.5	69.8	70.4
	청년(B)	44.2	46.6	46.5	46.1	45.0	44.1

주: 1. 경제활동참가율은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실업자, 취업자)의 비율임
2.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임
3. 고용률은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또한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확인하면 청년가구는 대부분이 전세나 월세 등 임차가구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거나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도 전체 평균 대비 1.5배~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연도별 청년가구 주거형태-거주형태별, 주거수준별 분류]

(단위: %)

거주형태		2021	2022	2023	2024	2025
자가	전체	57.9	57.3	57.5	57.4	58.4
	청년	16.1	13.8	13.2	14.6	12.2
임차 (전·월세)	전체	38.2	39.0	38.8	38.8	38.0
	청년	78.0	81.6	82.5	81.1	82.6
무상	전체	3.9	3.7	3.7	3.7	3.6
	청년	6.0	4.7	4.3	4.3	5.2
주거수준		2021	2022	2023	2024	2025
최저주거 기준 미달	전체	4.6	4.5	3.9	3.6	3.8
	청년	7.5	7.9	8.0	6.1	8.2
면적기준 미달	전체	3.3	3.3	2.8	2.7	2.9
	청년	6.0	6.6	6.2	5.6	7.3

자료: 국토교통부,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

최근 자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대 간 자산격차도 상당한 수준이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청년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1,498만원으로 전체 평균(5억 6,778만원)의 55.6% 수준에 그쳤고, 다른 연령층 가운데 가장 적었다. 특히 자산의 핵심인 부동산 보유액은 1억 6,418만원으로 50대(4억 6,131만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연령대별 자산 보유 및 부채 현황]

(단위: 만원, %)

구분	자산	금융자산	전월세 보증금	실물자산	부동산
전체	56,678	13,690	3,730	42,988	40,298
39세 이하	31,498	12,957	6,648	18,541	16,418
40~49세	62,714	16,401	5,615	46,313	43,063
50~59세	66,205	16,507	3,333	49,698	46,131
60세 이상	60,095	11,236	1,763	48,860	46,652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청년 실업, 주거불안정, 자산격차의 문제는 혼인율·출산율 감소, 복지지출 증가 등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청년층을 대상으로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수요 중 취업 지원,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의 합이 56.7%와 49.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남녀 모두 주거비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 저출생 정책제도 수요]

(단위: %)

구분	취업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돌봄지원	현금성지원	일가정양립	교육개선
남자	23.1	35.6	2.6	10.0	8.3	11.3	9.2
여자	18.6	31.3	3.6	13.1	7.8	16.5	9.0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도 사회조사-저출생 정책제도 수요」

[성별 결혼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주거비 부족	고용 불안정	일가정양립어려움	출산양육 부담	자아 성취	필요가 없다고 느낌	기타
남자	38.0	12.4	6.1	11.0	7.8	11.4	11.3
여자	25.0	8.1	10.8	14.4	10.1	19.1	12.5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도 사회조사-저출생 정책제도 수요」

청년세대의 불안은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소비·투자·창업 등 경제활동 위축으로 국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결혼·출산 지연으로 저출생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년 세대에 대한 정책의 관점을 '특정 세대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투자로 전환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보인다.

나.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1) 청년정책 관련 법령 및 제도

우리나라는 2020년에 제정·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 및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 경제적 환경 마련,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기본법」 제8조[6]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7]를 통해 「청년정책

6)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 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8]에 따라 매년 각 부처·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 총괄·조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8개 기관[9]에서 각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정부(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025년 12월 청년 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 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 확대 등 방향이 포함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6년 4월 동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과제별 사업을 포함한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동 시행계획에 따라 2026년 총 389개의 과제에 약 29.9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10].

7)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8)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9) 2026년도 기준(2026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관계부처 합동, 2026.4.29.)

10) 2027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음

[중앙행정기관별 청년정책 과제 및 예산 현황]

(단위: 개, 억원)

기관명	과제 수						예산	
	계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문화	참여 기반	2025년	2026년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	9	5	-	24	3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4	23	-	1	-	3,955	10,261
고용노동부	31	25	4	-	1	1	51,937	27,587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	-	1	6,570	6,819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	10,030	16,653
국무조정실	19	1	-	-	1	17	710	746
보건복지부	15	1	-	-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	2	5	-	3,777	7,907
외교부	8	7	-	-	-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	-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	-	-	60	181
국방부	6	4	-	-	2	-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	6	3	3	-	-	-	398	1,062
산림청	6	1	3	-	-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	-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	6	-	5	-	1	-	64	67
국세청	5	4	-	-	1	-	-	447
행정안전부	5	1	1	-	-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	-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	-	2	2	4
법무부	4	1	3	-	-	-	14	16
병무청	4	3	-	-	1	-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	1	2	-	-	8
해양경찰청	4	1	-	-	-	3	-	1
국가유산청 등 22개 기관	37	11	19	2	1	4	241	391
합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주: 국가유산청 등 22개 기관의 경우 개별부처당 과제 수가 3건 이하로 묶어서 표기하였음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6.4.29.

(2)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중점 추진사항

정부의 청년정책은 기본적으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동 계획은 ① 보편성, 청년 당사자성 확대로 청년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② 지역·민간으로 청년정책 기반을 확산하며, ③ 청년 눈높이의 소통·홍보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취약청년 대상 정책의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전환, 단순히 연령에 따른 접근이 아닌 사회진입, 노동시장 안착, 자립기반 마련 등 청년의 생애 과업과 정책연계 강화, 정책 과정에 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과 체계적 협업 확대 등 지역 청년정책을 강화하고, 기업, 민간단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며, 온라인 기반 소통 플랫폼·참여형 행사 등을 확대해 청년들이 정책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앞선 3가지 정책 수립 방향을 바탕으로 5개 분야에 대한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정부는 수립한 중점 추진방향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

분야	중점과제
일자리	(1)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2)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3)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교육 직업훈련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주거	(1)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 (2) 청년 전·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금융·복지 ·문화	(1)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2)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3) 청년 신체·마음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4) 청년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참여·기반	(1)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 (2)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 (3)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

자료: 국무조정실-「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3) 청년정책 예산규모 추이 및 2027년 예산 규모

최근 5년간 정부의 청년정책 예산 추이를 확인하면 2023년 약 25.4조원 수준에서 2026년 29.9조원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이 확인되며,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대비 13.4조원(44.8%) 규모 증액한 43.3조원의 청년정책 예산을 편성하였다. 전체 본예산 대비 비중은 4.0~4.2%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7년 예산안에서 그 비중이 5.3%로 약 1%p 이상 증가하였다.

[연도별 청년정책 예산규모]

(단위: 조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청년정책 예산(A)	25.4	27.0	28.2	29.9	43.3
전체 본예산(B)	638.7	656.6	673.3	727.9	820.9
비중(A/B)	4.0	4.1	4.2	4.1	5.3

주: 1. 2023~2025년은 결산, 2026년은 제1회 추경예산, 2027년은 예산안 기준
2. 2023~2026년은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예산 규모, 2027년의 경우 기획예산처의 보도자료 등에 따른 예산안 규모

자료: 국무조정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참고

청년정책 5대 분야별 예산 규모 및 비중을 확인해보면, 연도별로 주거 관련 예산의 비중이 40% 내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육·직업훈련, 일자리,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순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27년의 경우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어 5대 분야별 예산 규모 및 비중을 파악할 수 없다[11]. 다만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에서 청년정책 사업을 교육, 일자리·창업, 자산형성,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의 분류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 내 청년정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 사업으로 약 42.7%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18.4%), 혼인·출산·양육(14.1%), 일자리·창업(11.9%), 자산형성(9.7%), 생활·문화(3.2%) 순이다.

11)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7년 예산이 확정된 후에야 시행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2026년 10월 현재 청년정책 사업 5대 분야별 분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임.

[연도별·분야별 청년정책 예산 규모 및 비중]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일자리	57,731 (22.7)	58,854 (21.7)	65,261 (23.1)	61,827 (20.6)
주거	104,201 (41.0)	115,911 (42.9)	110,699 (39.2)	126,008 (42.0)
교육·직업훈련	69,402 (27.3)	75,378 (27.9)	82,253 (29.1)	75,788 (25.3)
금융·복지·문화	19,531 (7.7)	19,083 (7.0)	22,431 (7.9)	33,896 (11.3)
참여·기반	888 (0.3)	1,233 (0.5)	1,635 (0.6)	2,252 (0.7)
계	254,201 (100.0)	270,459 (100.0)	282,279 (100.0)	299,771 (100.0)

주: 2023~2025년은 결산, 2026년은 제1회 추경예산
자료: 국무조정실의 연도별「청년정책 시행계획」참고

[2027년도 예산안 청년정책 예산 규모 및 비중]

(단위: 억원, %)

	교육	일자리· 창업	자산형성	주거	혼인· 출산·양육	생활· 문화	계
예산 규모	79,569	51,286	42,129	184,995	60,926	13,842	432,746
비중	18.4	11.9	9.7	42.7	14.1	3.2	100.0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 예산안의 청년정책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반도체 호조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추가세수분을 적립함에 따라 청년정책 사업에 투입할 재정여력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증가한 수입액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계정(13.3조원)과 교육·인재계정(10.1조원)에 기존 청년정책 사업을 이관하여 확대하거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는데,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에 동 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정책 수요 급증 등 특이상황 발생시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12]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13]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2) 일반회계의 경우 재원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 편성 절차를 거쳐야 하나, 미래대응기금에 편성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내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신속한 대응 가능

13)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추세치 상회분인 추가세수와 당해연도 초과 세입인 초과세수 등으로 안정적인 적립금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

(4) 2027년 청년정책 주요 사업 예산

2027년 청년정책 주요 사업 예산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2026.8.28.)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27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시행계획은 예산이 확정된 후 수립될 예정이다.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청년을 위한 주요 사업에는 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K-뉴딜아카데미 등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② 모두의 창업,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창업 사다리 강화 사업, ③ 지역균형발전장학금, AI 재도약 대학 등 AI 역량 등 교육지원 강화 사업, ④ 청년월세지원, 청년보편형 임대주택, 청년미래적금, 청년기회자금 등 주거 안정 및 생애자산 형성 사업, ⑤ 청년문화예술패스, 모두의카드 등 청년 삶의 기반 강화 사업으로 구분된다.

아래의 목록은 2027년 예산안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사업 중 주요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주요 사업 목록]

(단위: 억원, %)

유형	소관	세부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6 예산	2027 예산안
일자리·창업	고용노동부	청년 첫 취업지원	미래대응기금	-	3,793
		내일배움카드(일반) -첨단산업·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일반회계	5,937	6,289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미래대응기금	2,848	8,25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미래대응기금	9,251	9,012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지원	일반회계	-	145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미래대응기금	5,797	9,542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2,000	4,000
		창업중심대학	미래대응기금	882	1,083

(단위: 억원, %)

유형	소관	세부사업명	회계 · 기금명	2026 예산	2027 예산안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중심대학	미래대응기금	1,180	1,850
	산업통상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미래대응기금	2,041	2,019
	교육부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	미래대응기금	-	200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	4,650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51,160	51,830
		지역균형발전장학금	미래대응기금	800	3,280
		AI 재도약 대학	미래대응기금	-	2,070
		대학생창업 교육기반고도화	미래대응기금	-	470
		산학연협력고도화 지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미래대응기금	1,342	3,293
주거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출자	주택도시기금	2,585	2,687
		통합공공임대융자	주택도시기금	1,482	2,046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주택도시기금	32,420	45,823
		전세임대(융자)	주택도시기금	20,389	25,107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주택도시기금	37,083	52,847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출융자	주택도시기금	-	23,860
		보편형 매입임대(융자)	미래대응기금	-	2,380
		보편형 매입임대출자	미래대응기금	-	3,060
		보편형전세임대(융자)	미래대응기금	-	9,000
		청년지원주택	미래대응기금	-	14,000
		청년월세지원	미래대응기금	1,300	2,319
		대중교통비환급	일반회계	2,984	4,314
	금융위원회	주택금융이차보전	미래대응기금	-	597
자산형성	금융위원회	우리아이자립펀드	미래대응기금	-	1,465
		청년미래적금	미래대응기금	7,446	17,011
		청년기회자금	미래대응기금	-	1,027
	국방부	병내일준비지원 -병내일준비적금	일반회계	16,587	18,143
혼인·출산·양육	보건복지부	아동기본수당	미래대응기금	24,822	29,272
		부모급여지원	일반회계	23,725	22,695
		출산지원금지원	미래대응기금	4,111	6,981
	성평등가족부	혼인지원금	미래대응기금	-	1,663
생활·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	미래대응기금	361	7,925
	농림축산식품부	쌀소비기반구축 -천원의아침밥	양곡관리특별회계	111	175
주요 사업 합계				**258,644**	**406,177**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분석의견

(1) 청년정책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 필요

첫째, 부처간 조정·조율 등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청년층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및 기능을 살펴보면,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 총괄·조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14]하고,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48개 기관에서 각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15]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16]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청년정책이 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있어 몇 개 부처만 관련되어있는 것이 아님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청년정책조정실장)
① 청년정책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 청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청년기본법」등에 따른 청년 관련 제도 관리 및 개선
4.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5.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15)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6)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의 총괄기관으로 부처 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부처의 청년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산 및 집행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이 부재하며 개별 부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나열하고 종합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개별 부처 차원에서 수립하는 청년정책 사업 예산 편성·집행 단계에서 부처 간 중복을 조정하거나, 예산 규모의 적절성 등에 대해 검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2027년 예산안 내 청년 사업의 경우 기획예산처는 기존의 국무조정실의 5가지 유형[17] 분류체계가 아닌 6가지 유형[18] 분류체계를 통해 사업을 편성·분류하고 있는 등 예산 당국과 국무조정실과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청년정책을 세부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예산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 국무조정실은 정책 과제 단위를 기준으로 비재정적인 부분까지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청년정책이 48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에 따라 유사·중복 사업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기 어려우며, 정부 전체 차원의 청년정책 평가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개별 부처가 각자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따라 정책 수혜자인 청년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제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가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청년정책의 수혜자인 청년이 필요한 지원 및 제도가 효과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19].

17) 일자리, 주거, 교육·직업훈련,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18) 교육, 일자리·창업, 자산형성,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19) 현재 청년 정책은 48개 정부 부처에 파편화되어 추진되고 있어 정책 연계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감안해 장관급 청년전담부처 신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처 신설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관련된 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138호, 엄태영의원 대표발의)가 있음

둘째,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부터 정확한 청년정책 예산 규모를 제시하도록 청년정책 예산 편성·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기를 보다 앞당겨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청년정책 관련 예산은 2023년 25.4조원, 2024년 27.0조원, 2025년 28.2조원, 2026년 29.9조원으로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함께 매년 발표하고 있는 청년정책 예산 규모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확정 예산을 기준으로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별 청년정책 대응 예산 규모를 취합한 것으로, 예산안 편성 및 심사 당시에는 청년정책 예산사업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의 청년정책 예산 규모가 43.3조원에 이른다고 밝혔으나, 이는 기획예산처가 임의적으로 집계한 수치에 불과하다.

2026년 예산의 경우 2025년 12월에 국회의 예산안 의결과 함께 확정되었으나 2026년 청년정책 예산 규모는 2026년 4월 29일 시행계획을 확정하면서 29.9조원으로 규모가 확정되었다. 2025년의 경우 2025년 5월 30일에, 심지어 2024년의 경우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전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청사진이 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회계연도의 절반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발표되는 현재의 방식은 효과적인 청년정책 집행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이고, 시행계획 수립 시기를 보다 조속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0].

2027년 예산안 내 청년정책 예산의 경우 기획예산처가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2026.8.28.)에서 대략적인 청년정책 예산안 규모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확한 전체 청년정책 사업 규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행계획 수립 일정은 미정인 상황이다.

20) 해당 시행계획의 총괄기관인 국무조정실도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시행계획 수립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시기]

구분	발표시기
1차(2021~2025)	2023년 3월 29일
2차(2026~2030)	2025년 12월 26일

자료: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 시기]

(단위: 조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시기	2023.5.16.	2025.1.10.	2025.5.30.	2026.4.29.	미정
예산	25.4	27.0	28.2	29.9	미정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예산안이 의결되어 사업 목록, 규모 등이 확정된 후에야 수립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재정당국이 임의적으로 집계한 청년정책 예산 규모만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면 분야별·부처별 청년정책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략적 재원배분이 어려워 진다. 이에 2027년도 예산안과 같이 재정당국이 임의로 예산 규모를 집계하는 것이 아닌, 개별 부처와 재정당국이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청년정책 예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부터 정확한 청년정책 예산 규모를 제시하도록 청년정책 예산 편성·관리체계를 개선해, 국회에서도 청년정책 예산 규모의 적정성, 향후 예산 투입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기를 보다 조속히 하여 청년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청년정책 사업 중 다수를 미래대응기금 사업에 편성하는 것의 타당성 검토 필요

정부는 청년정책 사업 43.3조원 중 24.4조원(56.4%)를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하였는데,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 변수에 수입 규모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구조로 내국세 수입 감소시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바, 안정적인 재원 마련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해 법인·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자, 대규모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였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할 예정으로, 청년정책 사업의 경우 청년계정 13.3조원, 교육·인재계정 10.1조원으로 총합 24.4조원의 예산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집행될 예정이다. 이는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에서 밝힌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사업 규모 43.3조원의 56.4%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계정별 수입·지출 구조]

(단위: 억원)

계 정	주요 용도(제정안)	수 입	사업비	여유자금 운용	그 밖의 지출
총괄	재정안정화, 사업계정 전출, 일반회계 전출	1,622,998	-	958,614	664,384
청년	청년 일자리·주거·자산형성, 혼인·출산 지원	133,296	133,296	-	-
성장동력	첨단산업·연구개발, 출자·정책금융	141,638	141,638	-	-
지방	지방주도성장, 지방자치단체 지원	152,662	102,662	50,000	-
교육·인재	인재양성, 대학 지원, 영유아 보육·교육	101,029	76,029	25,000	-
계(총계)	-	2,151,623	453,625	1,033,614	664,384

주: 1. 사업계정의 수입은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이며, 계는 계정 간 거래(52조 8,625억원)를 포함한 총계
2. 그 밖의 지출은 사업계정 전출 52조 8,625억원, 일반회계 전출 12조 5,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조원, 특별회계 예수이자상환 526억원, 기금운영비 233억원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미래대응기금으로 청년정책 사업을 편성·집행하는 경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정책 수요 급증 등 특이상황 발생 시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고[21], 개별 부처의 일반회계, 개별 특별회계, 기금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미래대응기금에 편입됨에 따라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정부의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게 되는바 개별 부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재원 확보에 용이할 수 있다 보인다.

21) 일반회계로 사업 편성·집행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나 예비비를 편성해 추가 재정 소요를 충당해야 하나,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집행시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 내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 절차만 거치면 됨

다만 미래대응기금은 정부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반도체 호황의 종료나 경기 침체 발생시 추가세수 등의 미발생으로 수입이 확보되지 않고 이는 자칫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 특히 청년정책 사업 중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사업, 지역균형발전장학금 등 교육 사업 등은 일회성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편성되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성·집행될 필요가 있는데 향후 미래대응기금의 수입 구조가 악화되는 경우 동 정책 유지에 어려움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보인다.

정부는 세수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청년, 인재양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인바 이러한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 기금 적립금 고갈 등을 예단하는 것은 곤란하고 반도체 산업은 3~5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 호황의 기간 동안 적립금 재충전이 가능해 기금의 지출 규모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입 규모가 줄어드는 시기가 도래할 때, 기존 지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수단이 필요하고 이는 추가적인 기회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보인다. 특히 현재와 같이 추가세수가 확보되는 시점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는 경우 정부의 설명처럼 적립금 재충전은 어렵다고 보인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구조를 고려할때 안정적인 청년정책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필요한 청년정책이 재원 확보 문제로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 재원 마련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보편적 청년정책의 타당성 검토 필요

일부 청년정책의 경우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취약청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청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의 역진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그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은 '모두의 청년정책'을 추진방향으로 삼고, 기존 저소득·취약청년 위주의 지원에서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상당 수의 청년정책들은 지원대상에서 연령 요건만을 고려하고 소득·자산 요건은 반

영하지 않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정부에 따르면 이는 청년정책의 수혜 대상을 소득·자산 등을 이유로 나누어 지원하게 되면 청년 이행기에 대한 보편적 투자가 되지 않고, 지원 요건이 획일적인 표준적 인생경로를 기준으로 수립되어 다양한 가치관·수요 등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감안하였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편적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일부 정책들의 경우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소득·자산 수준이 높은 계층에 집중되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지방 국립대학 전액 장학금' 사업은 지방 국립대학 30개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존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더한 추가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학생에게 집중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22].

구체적으로는 1~6구간 학생은 기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가 평균 국립대 등록금보다 높아 이미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동 사업을 통한 혜택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오히려 7~10구간[23] 학생은 동 사업을 통해 "추가 지원금"을 받는 수혜 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동 사업에 따른 추가 재정재원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학생에게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

22)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지방국립대학 전액 장학금 지급 사업 분석 참조

23) 동 사업의 추가 지원금 수혜 대상인 학자금 지원 7~10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130% 이상으로 월 844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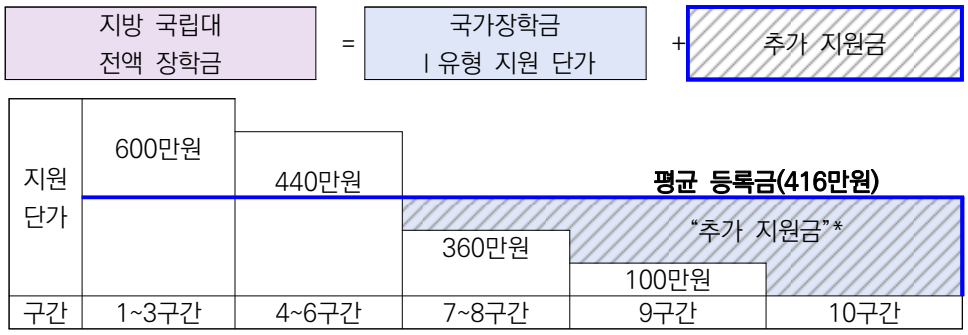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기초·차상위	1~3구간	4~6구간	7~8구간	9구간	10구간
수급 자격에 따름	70% 이하 (월 455만원 이하)	70~130% 이하 (455~844만원)	130~200% (844~1,299만원)	200~300% (1,299~1,948만원)	300% 초과 (1,948만원 초과)

주: 1.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함
2. 2027년 1학기부터 1~3구간은 "가"구간으로, 4~6구간은 "나", 7~8구간은 "다", 9구간은 "라", 10구간은 "마"구간으로 개편 예정

자료: 한국장학재단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추가지원금” 지원 구조]



자료: 교육부

또한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 사업의 경우 2027년부터 가입 및 정부기여금 지원 기준에서 소득요건을 완전히 폐지하여 지원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이 청년미래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납입을 통한 적립금의 6% 이상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

[2027년 청년미래적금 상품 개편 주요내용(안)]

구분	기존(2026)	변경안(2027)
가입요건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이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인 자	만 19~34세 청년 전체
기여금 미지급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은 허용하되 기여금 미지급	가입대상 청년 전체에 대한 기여금 지급
기여금 비율	급여·소득 수준에 따라 6~15%	급여·소득 수준에 따라 6~25%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청년층을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 없이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개편은 고소득 청년층에 대한 혜택 부여로 인해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 청년층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인다.

최근 10년간 39세 이하와 50~59세의 평균 자산 격차 배율을 확인해보면 2025년을 제외하고는 큰 등락을 보이고 있지 않은 반면, 39세 이하의 세대 내 자산 격차 비율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보편적 청년정책은 세대 간 자산 격차 배율을 줄이는 대신, 세대 내 자산 격차 배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연령대별 자산 보유 및 부채 현황]

(단위: 만원, 배)

연도	39세 이하 평균 자산(A)	39세 이하 상위 10% 평균 자산(B)	50~59세 평균 자산(C)	세대 내 자산 격차 배율 (B/A)	세대 간 자산 격차 배율 (C/A)
2015	23,365	62,000	43,371	2.65	1.86
2016	24,057	65,000	44,773	2.70	1.86
2017	25,888	71,000	46,701	2.74	1.80
2018	27,330	76.000	49,300	2.78	1.80
2019	27,925	79,000	51,349	2.83	1.84
2020	29,820	86,000	53,800	2.88	1.80
2021	31,849	95,000	56,741	2.98	1.78
2022	35,498	108,000	64,236	3.04	1.81
2023	33,613	101,000	61,507	3.00	1.83
2024	33,693	102,000	63,097	3.03	1.87
2025	31,498	98,000	66,205	3.11	2.10

주: 39세 이하 상위 10% 평균 자산 값은 전체 자산 10분위 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한 통계적 추정치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연도별 가계금융복지조사」

청년정책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정부 재정의 중·장기 가용규모, 고소득·고자산 청년 지원에 따른 기회비용, 사업 편성 당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이며, 정책의 설계가 역진적으로 될 경우 청년층의 동 제도에 대한 수용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보편적 지원의 타당성과 역진성 발생 우려의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책을 편성·집행해야 할 것이다.

11-1. 청년일자리사업 분석

가. 현 황

2027년 예산안에 편성된 청년 일자리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총 58개 사업 3조 4,657억원 규모이다[24)25)]. 이는 전년대비 8,069억 7,100만원(30.3%) 증가한 규모이다. 전체 청년 정책 예산 43.3조원 중 청년 일자리 사업의 비중은 약 8.0% 수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의 정규직 채용·근속과 소득보전을 동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9,011억 8,200만원), 취업경험이 없어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사업(3,793억 100만원), 대기업 주도 직무역량 훈련을 통해 청년들의 일경험을 돕는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8,249억 9,700만원), 첨단·선호 분야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6,669억 4,700만원) 등이 편성되었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사업 목록-청년 일자리사업]

(단위: 백만원, %)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필요한 경우)	회계· 기금명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	(B-A)/A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미래대응기금	907,959	901,182	△6,777	△0.7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	-	미래대응기금	338,129	379,301	41,172	12.2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	미래대응기금	284,193	824,947	540,754	190.2
	내일배움카드 (일반)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일반회계	576,696	666,947	90,251	15.7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폴리텍 청년 디딤돌 캠퍼스, 5극3특 거점학과 구축	미래대응기금	26,600	82,530	55,930	210.2

24) 기획예산처는 청년 일자리 사업과 창업지원 사업을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은 「2027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창업지원 사업 분석」에 포함되어 있는바 동 목차에서는 청년 일자리 사업만을 분석하였음

25) 기획예산처는 청년 일자리·창업 사업으로 세부사업 기준 총 113개 사업, 약 5조 1,28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필요한 경우)	회계·기금명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	(B-A)/A
	해외취업지원	K-Move 스쿨 해외취업정착 지원금	일반회계	35,583	26,500	△9,083	△25.5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	일반회계	12,492	14,400	1,908	15.3
	사회적기업지원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일반회계	-	7,153	7,153	순증
	청년 첫 일자리 경력지원	-	미래대응기금	-	14,505	14,505	순증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지원	하이테크형	고용보험기금	19,200	15,050	△4,150	△21.6
	청년고용지원 인프라운영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일반회계	106,524	90,530	△15,994	△15.0
	대지급금 지급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관리단	임금채권 보장기금	-	4,200	4,200	순증
	업종별재해예방	소규모 사업장 청년안전 패트롤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	4,012	4,012	순증
	사업주직업훈련 지원금	중소기업 청년 AI 코치	고용보험기금	-	2,199	2,199	순증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	하이테크과정	고용보험기금	12,997	11,153	△1,844	△14.2
	직업능력개발 인프라구축	직무능력은행제	일반회계	1,648	5,282	3,634	220.5
	청년미래플러스	-	일반회계	4,060	3,451	△609	△15.0
중소벤처 기업부	제조AI fellow 양성		미래대응기금	-	28,350	28,350	순증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청년 AXDX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	4,900	4,900	순증
문화체육 관광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	일반회계	18,010	39,500	21,490	119.3
	예술인력 육성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14,431	29,204	14,773	102.4
	콘텐츠산업 생태계조성	게임분야 현장형 청년인턴십	일반회계	1,000	6,586	5,586	558.6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청년 한국어교원 인턴	일반회계	-	4,742	4,742	순증
	예술의전당 지원	청년공연예술 제작 시범사업	일반회계	-	5,000	5,000	순증
	국제문화 정책지원	청년 K-컬처 프론티어	일반회계	5,000	14,200	9,200	184.0

(단위: 백만원, %)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필요한 경우)	회계·기금명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	(B-A)/A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지원	여행사 청년일자리 확대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	2,160	2,160	순증
	예술창작 활동지원	문학관 인턴십 지원	일반회계	-	2,662	2,662	순증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국립청년예술단 운영	일반회계	6,839	8,252	1,413	20.7
	예술의 산업화 추진	문화예술 청년인턴	일반회계	3,996	2,235	△1,761	△44.0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청년자활지원	일반회계	12,959	24,616	11,657	90.0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지원	-	일반회계	-	14,272	14,272	순증
교육부	해외 한국어 보급	해외 한국어반 보조교사 파견		-	2,802	2,802	순증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	일반회계	-	15,642	15,642	순증
외교부	해외봉사단 운영	시행기관 봉사단 KOICA 봉사단	일반회계	55,691	44,679	△11,012	△19.8
	개발협력 인재양성	영프로페셔널, 코디네이터	일반회계	48,643	41,359	△7,284	△15.0
	국제기구초급 전문가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	일반회계	17,218	17,298	80	0.4
	유엔자원봉사단	-	일반회계	5,165	5,566	401	7.8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기구 진출 지원	초급전문가 JPO파견	일반회계	8,936	9,155	219	2.5
나머지 20개 사업				134,771	89,189	△45,582	△33.8
			합 계	**2,658,740**	**3,465,711**	**806,971**	**30.4**

주: 2027년 예산안 기준 20억원 미만의 사업들은 나머지 22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정부는 청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AI의 도입으로 청년 고용 문제가 구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청년의 취업시장 진입 단계, 경력 형성 단계, 취업·근속 단계의 전 주기를 지원하여 청년이 안정적으로 고용 시장에 정착하는 것을 도모하였다.

[고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5.9월	'26.6월	7월	8월
고용률				
- 15~64세(OECD 비교 기준)	70.4	70.2	70.3	70.4
- 15~29세(청년층)	45.1	43.9	44.2	44.1

주: '26.9월 통계는 10월 이후 집계되어 현재 확인불가
자료: 고용노동부

[실업률 추이]

(단위: %)

구분	'25.9월	'26.6월	7월	8월
실업률				
- 15~64세(OECD 비교 기준)	2.1	2.8	2.6	2.0
- 15~29세(청년층) 실업률	4.8	7.0	6.8	5.4

주: '26.9월 통계는 10월 이후 집계되어 현재 확인불가
자료: 고용노동부

정부는 매년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26]에 따라 청년을 포함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직업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2027예산안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는 33.7조원 규모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른 2027예산안의 청년 일자리 사업 규모가 약 3.47조원임을 감안하면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 중 약 10.3%가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편성된 것이다[27]. 이는 2026년 8.2%(전체 일자리사업 규모 32.3조원 중 2.66조원) 대비 약 25.6% 증가한 수치이다. 다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는 창업지원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바, 창업지

26)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27) 다만 이를 청년에게 집행되는 일자리사업 예산이 10.3%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사업이 '청년 일자리사업'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년에게 집행되는 일자리사업이 다수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일자리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구직급여 사업의 경우(2027년 예산안 약 11조 6,800억 규모)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청년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 또한 일자리사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지급)의 경우(2027년 예산안 약 4조 2,800억 규모)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청년이 대부분 수급받고 있음.

원 유형을 제외하고 그 비중을 산출하면 2026년 9.1%, 2027년 11.5%로 그 비중이 2026년 대비 약 26.4% 증가하였다.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단위: 조원, %, %p)

구분	2026(A)	2027(B)	증감(B-A)	(B-A)/A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A)	32.3	33.7	1.4	4.4
창업지원 유형을 제외한 일자리사업 예산(B)	29.3	30.3	1.0	3.4
청년일자리사업 예산(C)	2.66	3.47	0.81	30.4
C/A	8.2	10.3	2.1	25.6
C/B	9.1	11.5	2.4	26.4

주: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은 창업지원 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산출되었으므로 전체 일자리사업 중 창업지원 유형을 제외한 통계를 별도로 작성하였음

자료: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총괄)

첫째,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수와 예산 규모에 차이가 있는데, 이와 같은 불일치를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에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세부사업 기준 총 58개, 약 3조 4,56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2027년 예산안 중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세부사업 기준 총 23개, 2조 6,68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보고 있는 사업 중 상당수는 기획예산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기획예산처만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거나[28], 고용노동부만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분류[29]하고 있는 등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부의 '청년

28) 고용노동부의 청년 첫 일자리 경력 지원, 내일배움카드 사업 등

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경우 기획예산처는 청년 대상 교육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같은 사업이어도 그 분류 방식이 상이하다.

[2027년도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단위: 억원, %)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내역사업명 (필요한경우)	회계 기금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기획예산처 분류 포함여부
						(B-A)	(B-A)/A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인력육성	현장예술 인력육성	문화예술 진흥기금	85	159	74	86.3	○
	예술의 산업화 추진	문화예술 청년인턴 지원	일반회계	-	22	22	순증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 기술원 (R&D)	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20	20	-	0.0	×
	지역디지털인재 양성	광주인공지능 사관학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90	90	순증	×
산업통상부	바이오산업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사업	바이오전문 인력양성	일반회계	30	28	△2	△8.3	×
고용노동부	청년미래플러스		일반회계	41	35	△6	△15.0	○
	청년 첫 취업지원		고용보험기금	3,381	3,793	412	12.2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고용보험기금	2,842	8,250	5,407	190.2	○
	해외취업지원		일반회계	441	348	△93	△21.1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고용보험기금	9,080	9,012	△68	△0.7	○
중소벤처 기업부	인력유입인프라 조성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일반회계	87	53	△34	△38.5	○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융자)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성장지원자금	2,000	4,000	2,000	100.0	○
농림축산 식품부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K-푸드 창업사관학교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7	22	15	214.3	○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92	78	△14	△15.0	○

29)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창업화사업자금, 산업통상부의 바이오산업개방형 생태계 조성촉진사업 등

(단위: 억원, %)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내역사업명 (필요한경우)	회계 기금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기존예산 분류 포함여부
						(B-A)	(B-A)/A	
교육부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청년고용 안정성 부트캠프	고등평생교육 계정 (일반회계)	-	706	706	순증	×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일반회계	-	156	156	순증	○
기타 7개 사업				77	77	-	-	
계				18,183	26,849	8,666	47.7	

주: 지원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된 사업으로 작성하였으며, 부처별 청년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30]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분류 및 현황조사, 부처 간 중복 조정 및 연계성 강화,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대상 일자리 사업의 경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고용총괄기관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31] 등을 통해 청년 고용정책 추진방향, 중점

30)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3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①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의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

추진과제 등을 수립하고 개별 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조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부처 간 업무의 중복 조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총괄기관으로 선정하여 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재정 당국인 기획예산처와 일자리 사업의 총괄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청년 일자리 사업의 범위 및 예산 규모 등에 대해서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 심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전체 일자리 사업 중 청년 일자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청년 대상 사업 중 청년 일자리 사업의 비중 등은 예산의 재원 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 분석 및 심사의 전제가 되는 예산 규모가 파악이 안 되는 실정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운용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정확한 범위 및 편성 규모를 확인하고, 향후 이러한 불일치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들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 청년 고용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참고해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수의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처의 분류에 따른 2027년 예산안 내 청년 일자리 사업 총 3조 4,657억원 중 고용노동부의 사업이 3조 533억원으로 약 8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는데, 고용창출 프로그램 내로 한정하여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조 8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26년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 프로그램 예산 중 62.4%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 편성되었음이 확인된다[32]. 2027년 예산안의 경우 미래대응기금의 신설로 기존 고용창출 프로그램 사업이 일부 미래대응기금 내 청년종합지원 프로그램으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따라 두 프로그램의 청년 일자리 사업 지출 규모를 합산하면 총 1조 8,892억원에 이른다.

3.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2)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고용창출 프로그램 이외에도 직업능력개발,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음

[연도별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 프로그램 내 청년 일자리 사업 지출 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청년고용촉진관련 사업 지출(A)	4,164,461	1,987,493	1,525,991	1,125,176	1,205,148	1,382,396	1,889,243
고용창출 프로그램(B)	7,873,096	5,019,963	3,106,157	2,014,520	1,905,482	2,213,946	-
비중(A/B)	58.9	49.8	60.5	62.6	65.4	62.4	-

주: 1. 2021년~2025년은 결산, 2026년은 예산, 2027년은 예산안 기준
2. 2027년 예산안의 경우 청년 고용촉진 관련 사업이 고용창출 프로그램이 고용창출 프로그램과 청년종합지원 프로그램으로 분리되었음. 청년종합지원 프로그램은 청년 고용촉진 사업 외에도 자산형성, 주거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런데 이러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 관련 지표 개선은 더디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5년 청년 고용 관련 주요 지표를 확인해보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더욱이 15~64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 지표가 악화되었다. 또한 구직행위 자체를 단념하는 청년 규모와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청년 고용 지표]

(단위: 천명, %, %p)

항목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8.
경제활동참가율	전체(A)	62.8	63.9	64.3	64.5	64.7	64.6
	청년(B)	47.9	49.8	49.4	48.9	47.9	46.6
실업률	전체(A)	3.7	2.9	2.7	2.8	2.8	2.0
	청년(B)	7.8	6.4	5.9	5.9	6.1	5.4
고용률	15~64세 전체(A)	66.5	68.5	69.2	69.5	69.8	70.4
	청년(B)	44.2	46.6	46.5	46.1	45.0	44.1

주: 1. 경제활동참가율은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실업자, 취업자)의 비율임
2.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임
3. 고용률은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도별 쉬었음 청년 규모]

(단위: 천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8.
쉬었음 청년 인구	418	390	401	421	428	395
증감	△30	△29	11	21	7	△51
청년인구대비 쉬었음 비중	4.8	4.6	4.8	5.2	5.4	5.1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 상황,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 청년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양하고, 특히 AI의 도입으로 고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용노동부의 사업이 없었다면 현재의 청년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수 있는 바 사업의 효과성을 작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33],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34](舊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유형)의 고용유지율 및 취업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35] 사업의 경우 참여자 수료율만을 성과지표로 삼는 등 고용노동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 사업들이 실제 청년 고용 시장 지표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는 있다 보인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급 인원의 고용유지율]

(단위: %)

고용유지기간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3년	78	74	71	69	67	65	64	47	40
	'24년	78	74	71	69	67	65	65	-	-

자료: 고용노동부

33)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1-30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급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도모

34)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1-320,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특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35)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1-310, 수시, 경력직 채용경향 심화에 대응하여 직무경험이 필요한 미취업 청년에게 민·관협업 기반으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 탐색을 지원

[2022~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사업종료자의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종료자	취업자	취업률	종료자	취업자	취업률	종료자	취업자	취업률	종료자	취업자	취업률
전체			336,557	184,935	54.5	269,575	159,614	59.2	295,959	177,249	59.9	318,948	190,819	59.8
1유형	요건심사형		110,854	61,961	55.9	80,263	48,215	60.1	83,526	51,056	61.1	90,669	55,387	61.1
	선별형	청년	114,163	68,740	60.2	97,031	62,276	64.2	118,227	76,494	64.7	130,973	81,458	62.2
		비경활	45,945	12,915	28.1	28,407	9,613	33.8	26,850	9,323	34.7	25,636	8,678	33.9
2유형	특정계층		23,576	9,494	40.3	13,756	5,363	39.0	14,233	5,409	38.0	13,216	5,207	39.4
	청년		34,108	25,169	73.8	36,269	25,893	71.4	39,319	26,977	68.6	44,717	31,262	69.9
	중장년		10,911	6,656	61.0	13,849	8,254	59.6	13,804	7,980	57.8	13,737	8,827	64.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단지 사업의 편성 및 집행에서 끝나지 않고, 동 사업들이 청년들의 고용 상황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다각적인 사업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의 구조 및 집행 방식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분석의견(개별사업)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별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36]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급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9,011억 8,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업(청년일자리창출지원[37])으로 편성되던 것을 미래대응기금에 이관한 것이며, 2026년도 편성 규모는 추경 기준 9,251억 2,600만원이다.

동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만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등 2025년 이후 매년 지원 대상을 변경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 등에 맞추어 신축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보이나,

36)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1-300

37) 코드: 일반회계 1043-301

제도의 연속성 측면과 기존 참여자들과의 지원금 차이로 인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집행과정에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38]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사업[39]은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특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3,793억 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청년 취업 특화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40][41] 사업 중 청년 유형을 분리하여 미래대응기금에 신규 편성한 것이다.

동 사업은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취업경험 요건 완화에 따라 지원대상 청년이 확대되어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유인이 높다 보이는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시에 참여자들의 취업률이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동 제도 운영 시에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42]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43]은 ① 수시, 경력직 채용경향 심화에 대응하여 직무경험이 필요한 미취업 청년에게 민·관협업 기반으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 탐색을 지원하고(K-청년 뉴딜 일경험), ②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쉬었음 전환을 방지하고(청년도전성장지원), ③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및 적응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청년에게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 등 자신감을 회복하고 노동시장 진입 등 재도원을 지원하는(K-청년뉴딜아카데미)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8,254억 7,700만원이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업(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내일배움카드(일반))에 편성되던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한 것이다.

38)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참고

39)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1-320

40) 코드: 일반회계 1234-300

41)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은 청년 유형 분리로 동 사업은 전년대비 3,150억 2,200만원(31.1%) 감액된 6,978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42)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참고

43)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1-310

동 사업은 K-청년 뉴딜 일경험 지원 사업의 맞춤지원형 프로그램,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 집행시 고립·은둔 성향이 있을 수 있는 구직단념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설계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청년미래센터와 연계해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K-청년뉴딜아카데미 사업과 내일배움카드의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의 프로그램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44]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45]의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일명 KDT사업)은 민간 혁신훈련기관, 민간 선도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6년도와 큰 차이점으로는 반도체·로봇 등 첨단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해 자부담 비용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별훈련수당을 AI·선도기업 등 과정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기관이 비수도권의 경우 2026.8월 기준 50개소(전체의 25.2%)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참여 인원도 2,597명(13.8%)으로 저조한바, 비수도권의 훈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46]

소규모 사업장 청년 안전 패트롤 사업[47]은 산재예방 사업 지원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 안전지킴이'를 채용하여 산재 취약 사업장에 필요한 기술·재정지원 사업 절차를 안내하고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에 기여하려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7년도 신규사업으로 40억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150명의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다.

44)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참고

45) 코드: 일반회계 1131-300

46)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참고

47)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0의 내내역사업

다만 동 사업은 산업안전 분야에 관심이 높은 청년에게 현장에 밀착되어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긍정적으로 보이나, 현장 경력이 부족한 청년 지킴이가 현실적으로 산업안전 분야 모니터링이나 사후기술지도를 수행하고 동 행위가 산업현장에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48]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49]은 사회복지시설에 청년인턴을 한시적으로 채용·배치하여 행정 및 돌봄 관련 업무를 보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42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①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구별되는 사업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② 청년인턴의 직무·자격 및 보수수준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③ 청년인턴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④ 성과지표를 사업목적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50]

제조AI fellow 양성사업[51]은 4대 과학기술원의 제조 AX 교육을 거친 청년 AI 인재를 중소 제조기업 등과 매칭하여 인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283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6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었으므로 검토 결과에 따른 규모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검토 지연으로 실습교육장 구축과 교육·인턴 과정이 연쇄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52]

48)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참고

49) 코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2133-300

50)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참고

51) 코드: 미래대응기금 4532-300

52)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고

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53]는 소상공인의 디지털·AI 전환을 위해 청년 컨설턴트를 현장에 파견하여 컨설팅·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49억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의 집행과 관련, 기존의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사업과 지원대상·지원방식·지원내용 등에서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두 사업을 통·폐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이며, 소상공인 AX·DX 컨설팅을 수행하는 청년 컨설턴트의 양성 교육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인바, 교육내용, 컨설팅방식 등에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표준 커리큘럼 개발 및 부처 간 면밀한 협업이 필요해 보이고, 부처 간 교육 운영 예산 단가를 비교하여 적정 수준의 교육 운영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사업을 통해 양성된 청년 AX·DX 컨설턴트의 향후 취업 연계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등 면밀한 성과관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54]

53)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22의 내내역사업

54)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고

11-2. 자산형성 사업 분석

가. 현 황

2027년 예산안에 편성된 청년 자산형성 사업은 총 9개 사업, 4조 2,128억 5,000만원 규모이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3,250억 7,500만원(45.9%) 증가한 규모이다. 전체 청년 정책 예산 43.3조원 중 자산형성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7%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전역 시 적금 납입액에 비례한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하는 병내일준비지원(1조 8,143억 1,400만원), 청년층 적금 상품 납입액에 비례하는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1조 7,010억 8,900만원), 미취업 청년 대상 대출 보증상품인 청년기회자금(1,026억 7,600만원),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한 펀드에 소득별로 구분된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1,465억 3,100만원) 등이 있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사업 목록-자산형성 사업]

(단위: 백만원, %)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	(B-A)/A
병무청	사회복무이행지원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 준비금	240,249	243,363	3,114	1.3
국방부	병내일준비지원	-	1,658,716	1,814,314	155,598	9.4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	-	-	18,902	18,902	순증
금융위원회	청년기회자금	-	-	102,676	102,676	순증
	청년미래적금	-	744,625	1,701,089	956,464	128.4
	서민금융 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	124,185	47,033	△77,152	△62.1
	국민성장펀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120,000	120,000	-	0.0
	우리아이 자립펀드	-	-	146,531	146,531	순증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단위: 백만원, %)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	(B-A)/A
보건복지부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	-	18,942	18,942	순증
합 계			2,887,775	4,212,850	1,325,075	45.9

주: 2027년 예산안 기준 20억원 미만의 사업들은 나머지 32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총괄)

정부는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인해 세대간/계층간 자산 역전 또는 자산 규모 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요건에 따른 지원 격차가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산형성 사업의 지원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소득수준 보다는 자산수준을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청년층 저축액에 비례한 정부 기여금을 매칭해주거나 취업 준비 또는 생계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취업 여건이나 급여 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가능성이 있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자산형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고자 하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자산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세대만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함에 따라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이 다른 세대에 비해 자산형성을 위한 여건이 불리한 측면은 있으나, 개인에 따라서는 증여·상속 등에 따라 자산 규모가 상이할 수 있으며, 중장년층의 평균 소득을 초월하는 고소득 청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이 이러한 고자산·고소득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경우 한정된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산·소득이 부족한 다른 세대 구성원과의 가용자산 규모 격차를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개별 지원사업별로는 청년층 중에서도 출생연도/월, 취업 여부, 사회적 신분(군인 등)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도록 요건이 설계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요

건 설계가 합리적 차별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세대간 또는 계층간 자산 역전 가능성,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배분 필요성, 지원 여부에 따른 차별 문제 등을 종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의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세대에 필요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청년층 자산형성 사업의 경우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규모를 면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산형성 사업의 지원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소득수준 보다는 자산수준을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일정 수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분석의견(개별사업)

청년 자산형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별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미래적금 사업[56]은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청년층 적금 상품 납입액에 비례하는 기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전년 추경 대비 9,564억 6,400만원이 증액(128.4%)된 1조 7,010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026년 6월 신규로 출시한 청년미래적금을 운용하면서 가입자의 연소득·연매출에 따라 기여금 매칭 여부 또는 매칭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27년부터는 매칭 여부와 비율이 적용되는 소득요건 자체를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56) 코드: 미래대응기금(청년계정) 4234-300

[2027년 청년미래적금 상품 개편 주요내용(안)]

구분	기존(2026)	변경안(2027)
가입요건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이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인 자	만 19~34세 청년 전체
기여금 미지급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은 허용하되 기여금 미지급	가입대상 청년 전체에 대한 기여금 지급
기여금 비율	급여·소득 수준에 따라 6~15%	급여·소득 수준에 따라 6~25%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그러나 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정부기여금 지원 기준에서 소득요건을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 고소득 청년층에 지원이 분산될 수 있고 우대금리 제공을 위한 민간 부담 증가가 수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가 수립한 계획 중 소득요건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57]

청년기회자금 사업[58]은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대출 공급 및 이차보전에 필요한 재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1,026억 7,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설계(안)에 따르면, 미취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기존 1,200만원(1회 300만원, 연간 600만원)에서 2,000만원(1회 500만원, 연간 750만원)으로 확대되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이차보전 외에 고졸 미취업자에 대한 이차보전이 추가된다. 또한, 미취업자가 취업 준비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정부가 금융회사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자면제 지원이 제공되며, 햇살론유스 이용 미취업자의 경우 최장 거치기간이 4년이나 청년기회자금 이용 미취업자의 거치기간은 8년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57)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참고

58) 코드: 미래대응기금(청년계정) 4234-320

[햇살론유스 대비 청년기회자금 추가 지원 내용(안)]

구분	내용
대출 한도	대출 한도 확대 (총 1,200만원 → 총 2,000만원)
이자 지원	취업 준비 증빙 시 거치기간내 이자면제, 고졸 미취업자 추가 이차보전
거치 기간	거치기간 연장 (최장 4년 → 최장 8년)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이처럼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취업 준비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 자체는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기존 햇살론유스 보증을 이용한 미취업 청년의 경우 대출 한도 확대 및 이자면제, 거치기간 연장 등으로 지원혜택이 대폭 확대된 신규 보증상품을 가입할 수 없도록 설계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원은 기존 햇살론유스 이용 미취업 청년들도 청년기회자금의 확대된 대출 한도분에 대해서는 개선된 조건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형평성 문제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59]

우리아이자립펀드 사업[60]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한 펀드에 대해 소득별로 구분된 기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1,465억 3,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가입대상을 2026년 9월 이전 출생 자녀 가구로 한정함에 따라 만기 시 과도한 혜택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의 상품이므로,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가입대상 요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용 주체 및 방식, 소득요건 변동 시 매칭비율 변경 적용 여부, 중도해지 시 기여금 환수 여부 및 절차, 만기 시 청산 방법 등의 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61]

59)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참고

60) 코드: 미래대응기금(청년계정) 4234-310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62]은 단기복무로 임관하는 부사관에게 적금과 연계하여 매월 납입액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189억 2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2027년도 신규사업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이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학군부사관후보생, 민간모집부사관후보생 등 단기복무 부사관들은 단기복무장려금과 동시에 적금 연계형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임관시 최소 6~10년 복무가 확정된 사관학교(육사·해사·공사, 간호사관, 3사관) 졸업자, 단기복무 중 장기복무로 선발된 장교 등은 장기복무지원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① 학군사관, ② 학사사관, ③ 특수사관 등 단기복무 장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금 연계형 사업이 없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단기복무지원금을 도입하였음에도 예산 한도를 이유로 특별한 사유 없이 부사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장교를 제외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완하하기 위하여 단기복무 장교에게도 적금연계형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61)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참고

62) 코드: 일반회계 2242-306

11-3. 혼인 · 출산 · 양육 지원 사업 분석

가. 현 황

(1) 우리나라 혼인 · 출산 · 양육 환경

① 혼인 현황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약 19만 1,700건까지 감소한 뒤 2023년부터 증가하여 2025년 24만 326건으로 전년보다 8.1% 늘었다. 조혼인율도 2022년 인구 1천 명당 3.7건에서 2025년 4.7건으로 상승하였다. 다만 2025년 혼인 건수는 2015년(약 30만 2,800건)보다 약 20.6% 적으며, 남녀 평균 초혼연령도 장기적으로 상승하였다.

[혼인 관련 주요 지표 추이]

(단위: 천 건, 건,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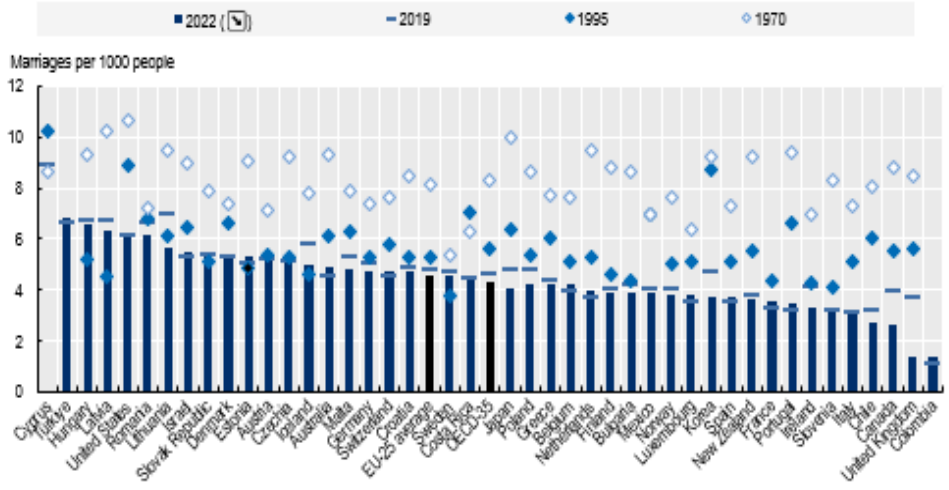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혼인 건수	213.5	192.5	191.7	193.7	222.4	240.3
조혼인율	4.2	3.8	3.7	3.8	4.4	4.7
남성 평균 초혼연령	33.2	33.4	33.7	34.0	33.9	33.9
여성 평균 초혼연령	30.8	31.1	31.3	31.5	31.5	31.6

주: 조혼인율은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혼인·이혼 통계」 및 각 연도 통계.

한국의 조혼인율은 1970년 인구 1천 명당 9.2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장기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2년 OECD 평균(4.3건)과 일본(4.1건)보다 낮은 수준이다.

안승재 예산분석관(seungjaean@assembly.go.kr, 6788-4635)

[OECD 국가별 조혼인율 현황(1970-2022)]



자료: OECD. Family database. Marriage, divorce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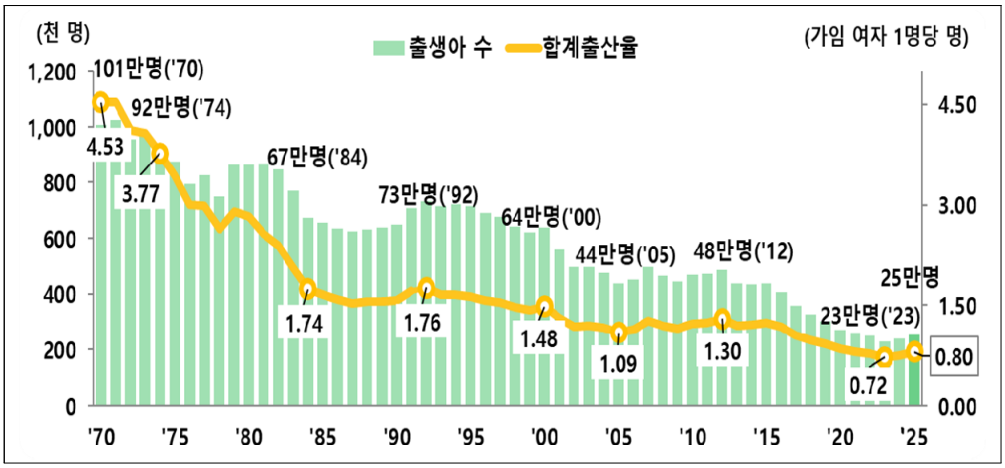
②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변화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1982년 기준 84.8만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감소 추세를 보여 2023년에는 23만명을 기록하였다. 반면, 2025년 출생아 수는 25만 4천 3백 명으로 전년대비 1만 6천(6.7%) 증가하였다.

합계출산율[64]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8년 0.98명으로 최초로 1명대 미만으로 진입하였으며, 2023년 0.72명으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2025년에는 0.80명으로 반등하였다.

64) 한 여성이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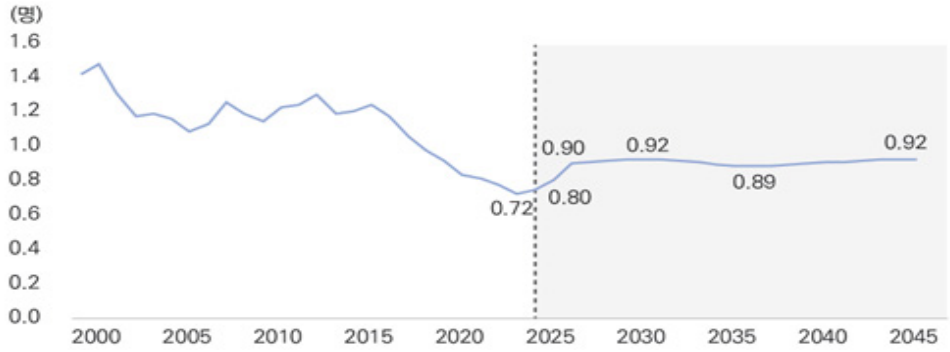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가임 여자 1명당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출생아 수		438.4	406.2	357.8	326.8	302.7	272.3	260.6	249.2	230.0	238.3	254.3
전년 대비	증 감	3.0	△32.2	△48.5	△30.9	△24.1	△30.3	△11.8	△11.4	△19.2	8.3	16.0
	증감률	0.7	△7.3	△11.9	△8.7	△7.4	△10.0	△4.3	△4.4	△7.7	3.6	6.7
합계출산율		1.24	1.17	1.05	0.98	0.92	0.84	0.81	0.78	0.72	0.75	0.80
전년 대비	증 감	0.03	△0.07	△0.12	△0.08	△0.06	△0.08	△0.03	△0.03	△0.06	0.03	0.05
	증감률	2.8	△5.4	△10.2	△7.1	△6.0	△8.9	△3.4	△3.7	△7.4	3.8	6.7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출생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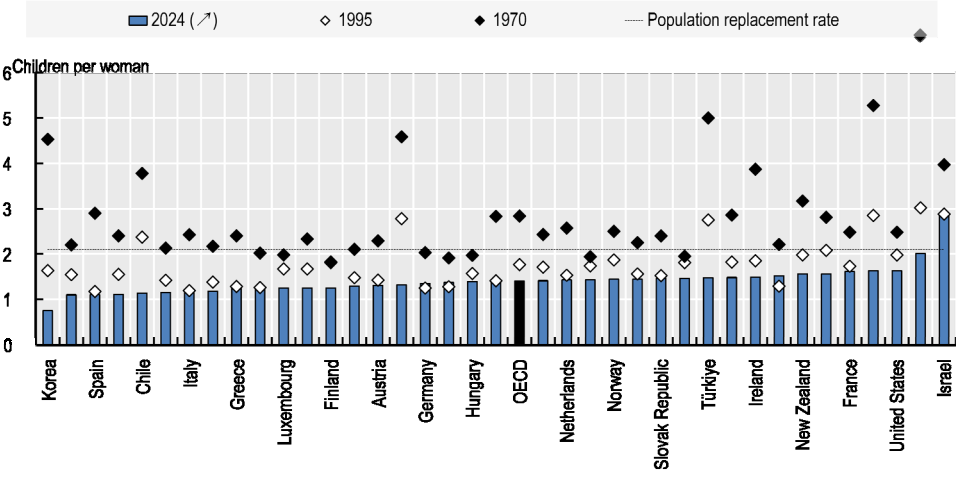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전망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6년 0.9명으로 단기 반등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2045년 0.9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전망]



주: 음영은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5). NABO 인구전망 2025~2045.

[OECD 국가별 합계출산율 현황(2023)]



자료: OECD, Family database, “Fertility rate”.

다만,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으로 2024년 기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0.75명)은 OECD 평균인 1.40명의 절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합계출산율의 감소 폭(1970년 4.53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감소) 또한 큰 편에 속한다.

③ 보육·돌봄서비스 이용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라 어린이집과 보육아동 수가 축소되고 있다. 2020~2025년 전국 어린이집은 3만 5,352개소에서 2만 6,064개소로 26.3% 감소하였으며, 어린이집 이용아동도 약 124만 4천 명에서 88만 8천 명으로 28.7% 감소하였다.

[어린이집 수와 보육아동 수의 추이]

(단위: 개소, 천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어린이집 수	35,352	33,246	30,923	28,954	27,387	26,064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	1,244.4	1,184.7	1,095.5	1,011.8	941.3	887.8

자료: 교육부, 「2025 보육통계」(2026.4.29.), 「2024 보육통계」; 국가지표체계 「어린이집 시설수 및 아동수 현황」,

가정방문형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는 보육시설 이용과 다른 시간대·장소의 돌봄을 보완하는 지원수단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21년 7만 1,789가구에서 2025년 15만 9,804가구로 이용 가구가 증가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추이]

(단위: 가구, 시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이용가구 계	71,789	78,212	86,100	118,126	159,804
시간제 이용가구	57,454	61,138	66,515	70,021	75,380
종일제 이용가구	2,617	2,760	1,890	1,155	794
기타 이용	11,718	14,314	17,695	46,950	83,630
시간제 기본형 가구당 월평균 이용시간	87.9	83.1	85.6	88.1	88.8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누리집 「연도별 이용자 현황」, https://www.idolbom.go.kr/front/biz/stts

한국의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0~2세의 경우 2010년 38.2%에서 2023년 68.9%로, 3~5세의 경우 2010년 84.6%에서 2023년 95.7%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0~2세	38.2	52.5	63.3	68.9
3~5세	84.6	91.9	94.0	95.7

자료: OECD Family Database, PF3.2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2023년 기준 한국의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은 0~2세 이용률은 68.9%로 OECD 평균(38.5%)보다 30.5%p 높고, 3~5세 이용률 역시 95.7%로 OECD 평균(89.0%)을 상회하였다.

[OECD 주요국의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

(단위: %)

구분	0~2세	3~5세
한국	68.9	95.7
OECD 평균	38.5	89.0
일본	46.1	95.9
프랑스	60.9	100.0
독일	41.9	95.3
스웨덴	48.9	95.3
네덜란드	79.5	93.2

주: 1) 0~2세는 2024년 또는 최근 가용 연도 기준이며 한국·일본·독일·스웨덴은 2023년, 프랑스·네덜란드는 2024년 자료이고 3~5세는 2023년 기준임.
2) 0~2세는 공식 교육·보육 및 등록된 돌봄서비스, 3~5세는 유아교육·보육과 초등교육 참여를 포함한다.

자료: OECD Family Database, PF3.2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2)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우리나라의 혼인·출산·양육 지원은 저출생 대책을 넘어 종합적인 인구전략 체계로 전환되는 한편, 2027년도 정부안에서는 현금급여의 통합·확대와 보육·돌봄·모자보건·일가정 양립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① 관련 법령 및 제도

2006년부터 시행된 제1~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혼인·출산 지원, 양육비 부담 경감, 보육·돌봄서비스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정부는 2024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 및 주거를 3대 핵심 분야로 설정하여 관련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후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다양한 가족형태와 인구이동까지 포괄하는 정책 조정체계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개정한 「인구전략기본법」이 2026년 6월 9일 공포되어 9월 10일 시행되었다. 동 법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정책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 소속 인구전략위원회에 중장기 계획 수립·부처 간 조정·정책평가 기능을 부여하였다. 인구전략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40명 이내의 본위원회와 인구전략조정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로 구성되며, 정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4국 14과 1팀의 사무처를 두고 있다. 사무처는 인구전략 수립, 재정투자 및 사업평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생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법률·계획·관리체계 전환]

구분	종전 체계	2026~2027년 변경 내용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구전략기본법 전부개정 (2026.6.9. 공포, 9.10. 시행)
중장기 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수립 추진 (2026년 연내 발표 목표)
정책 주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대통령 소속·40명 이내)
사업 예산	부처별 예산요구·정책관리	2027.1.1.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 시행 (법 제34조)
관련 시책	양육비·고용·보육 등	법 제11~15조에 출산·보육·모자보건·일가정양립·주거·부담경감 명시

자료: 「인구전략기본법」(법률 제21777호) 제11~15조, 제32~36조 및 부칙 제5조

법 제9조[65]·제10조[66]는 청년세대의 자립·사회진출과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한 포용적 가족정책을, 제11~15조[67]는 출산·보육, 모자보건, 일·가정 양립, 주거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부터 혼인·출산·양육까지 생애단계별 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법 제32조[68]에 따라 인구전략위원회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계

65) 「인구전략기본법」
제9조(청년세대의 생애과정 이행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세대가 생애 전과정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과 사회진출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66) 「인구전략기본법」
제10조(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7) 「인구전략기본법」
제11조(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부모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출산이 존중받으며 어떤 아동도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모자보건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정적인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정적인 결혼과 출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8)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인구전략 기본계획)
①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구전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인구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3. 인구구조 변화 예측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 분석
4. 제7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제
5. 제8조에 따른 경쟁압력·고용·주거불안 및 성별 불평등 완화 등 사회·경제 구조의 개혁 정책

획은 인구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기본계획에는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뿐 아니라 예산·재원조달 방안 및 중장기 투자방향을 포함해야 한다. 제33조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 제41조는 인구정책 조사·분석·평가, 제40조는 기본계획·시행계획과 그 평가 결과 및 예산 사전협의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규정한다

제34조[69]의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추진과제
6.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안정적인 결혼·임신·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제
7.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고령화된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8.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인구교육과 관련된 정책 추진과제
9.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10.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11. 인구정책에 대한 중장기 투자 방향
12.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 및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제3항제3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예측 및 사회적·경제적 영향의 분석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9)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인구 관련 사업(일·가정 양립 사업, 지역별·세대별 인력 활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인구관련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구관련사업 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구전략위원회와 매년 4월 30일까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방향
2.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와의 협의를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에 대한 소관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방향
2.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3. 그 밖에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구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시 제41조에 따른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인구전략위원회는 종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인구 관련 예산사업을 분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현황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관계부처의 사업 우선순위·예산요구·성과지표를 위원회가 사전 검토하고, 기획예산처의 편성과 연계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인구관련 예산 사전 협의 주요 절차]

관리 단계	시행령 관련 규정	주요 절차·기한
기본계획	제2조	작성지침(계획개시 2년 전 12.31.), 부처안(1년 전 4.30.), 확정(1년 전 10.31.)
연도별 계획	제6~7조	지침(전년 10.31.), 중앙부처안(전년 12.31.), 지방안(11.30.·12.31.)
추진실적 평가	제8조·제19조	실적 제출(익년 1.15.), 종합평가(4.15.), 별도 인구정책 평가보고(7.15.)
예산 사전협의	제9~10조	기본계획 포함·기준금액 이상 사업; 규모·산출근거·기대효과·성과지표 제출
정책 총괄·조정	제11·15·18조	관계부처 1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중앙·지방 인구정책책임관

자료: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② 정부의 중점 추진사항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의 5대 중점 투자 분야 중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을 설정하고, 청년 관련 투자 규모를 2026년 28조 2,000억원에서 2027년 43조 3,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은 일자리·주거·자산형성과 혼인·출산·양육을 연계하는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 10월 14일 발표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주요내용에서는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인구변화의 완화·적응·도약을 3대 전략으로 제시하고, 청년 생애과정 지원을 4대 정책분야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혼인·출산·양육 분야에서는 청년·신혼가구의 주거·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직접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형태별 육아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와 일·생활 균형을 병행한다.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와 영유아·초등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을 확

⑧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절차·방법,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절차·방법, 제3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의 작성·제출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함으로써 개인의 출산·양육비용뿐 아니라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까지 다루려는 방향이다.

[2027년도 주요 혼인 · 출산 · 양육지원제도 개편]

구분	주요 추진내용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 지급. 지방우대지역은 각각 500만원 추가
아동기본수당	기본 월 20만원, 지방우대 지역 월 10만원 추가, 0~1세 가정보육 시 월 30만원 추가
육아수당 신설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등에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2025년 18만명 → 2030년 25만명 목표
유연근무 선택제	기업이 업종·직무에 맞는 유연근무제도를 마련하고 근로자가 선택·활용하도록 지원
다자녀가구 금융지원	3자녀 이상 추가출산 시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0.3% → 0.4%, 적용기간 15년 → 20년
영유아·초등 돌봄	부모의 근로형태와 생활시간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및 기관 간 연계 확대
돌봄정보 통합	정부24·아이사랑 등 분산된 임신·출산·보육 관련 정보 연계
다양한 가족 지원	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 미혼부 출생신고 절차 개선 등 아동의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자료: 인구전략위원회,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4대 분야별 대표과제(2026.10.14.)

출산·양육 지원에서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통합하고, 기존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다.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금지원으로 전환하는 혼인지원금을 신규 도입하고, 출산 초기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등 기존 지원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연계·재편한다. 정부안은 2027년 1월 이후 혼인신고 부부에게 100만원을,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지역에 따라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2,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기존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하여 출생시기·지역 등에 따른 차등지원과 영아기 가정보육 가산을 도입하려는 계획이다. 동시에 기존 고용보험 중심의 육아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유연근무와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부모의 양육시간 확보와 경제활동 지속을 지원할 계획이다.

(3) 대응예산 현황 및 재정운용의 특징

① 지원예산의 편성 규모

2027년도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예산은 28.2조원에서 43.3조원으로 확대된다. 이 중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관련 규모는 2026년 약 5.3조원에서 2027년 약 6.1조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혼인 · 출산 · 양육 5개 사업의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2027년 청년성장단계별 지원 혼인 · 출산 · 양육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주요 사업	회계 · 기금	2026 예산(A)	2027 정부안(B)	증감(B－A)	증감률
혼인지원금	미래대응기금	-	166,282	166,282	순증
출산지원금 지원	미래대응기금	411,120	698,111	286,991	69.8
아동기본수당 지급	미래대응기금	2,482,169	2,927,243	445,074	17.9
부모급여 지원	일반회계	2,372,567	2,269,510	△103,057	△4.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5,780	31,430	15,650	99.2
합계		5,281,636	6,092,576	810,940	15.4

자료: 기획예산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상세내역.

② 그 밖의 주요 대응사업

청년지원 외에도 2027년도 정부안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혼인 · 출산 · 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 예정이며 모성보호육아지원 4조 2,710억원, 영유아보육료 3조 7,959억원, 아이돌봄 지원 5,015억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4,043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의 혼인·출산·양육 지원사업은 혼인·출산 및 아동양육에 따른 가계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다른 회계·기금에서 추진하는 관련 사업은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손실 보전, 임신·출산 건강관리, 보육·돌봄서비스 공급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7년 혼인 · 출산 · 양육 주요 사업(청년지원 외)]

(단위: 백만원, %)

소관 부처	사업명	회계·기금	2026(A)	2027(B)	증감(B-A)	증감률(%)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보험기금	4,072,832	4,271,020	198,188	4.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보험기금	359,488	404,318	44,830	12.5
	직장어린이집지원	고용보험기금	103,873	98,833	△5,040	△4.9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28,289	35,869	7,580	26.8
교육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영유아 특별회계	2,845,485	2,606,504	△238,981	△8.4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영유아 특별회계	470,335	642,876	172,541	36.7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 특별회계	3,663,514	3,795,904	132,390	3.6
	시간제보육 지원	영유아 특별회계	35,004	32,238	△2,766	△7.9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영유아 특별회계	2,182,864	2,273,574	90,710	4.2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영유아 특별회계	68,330	63,507	△4,823	△7.1
	교사대아동 비율개선	영유아 특별회계→ 미래대응기금	326,187	526,908	200,721	61.5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	일반회계	597,779	501,500	△96,279	16.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아이돌봄지원	농특회계 →지특회계	1,836	1,836	-	-
	농번기돌봄지원	농특회계 →지특회계	2,450	2,616	166	6.8

(단위: 백만원, %)

소관 부처	사업명	회계·기금	2026(A)	2027(B)	증감(B-A)	증감률(%)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국민건강증진기금	34,381	36,874	2,493	7.3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10,919	11,558	639	5.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일반회계	51,446	59,438	7,992	15.5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5,388	30,671	15,283	99.3
	방학 한시 틈새 돌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7,943	27,943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7,944	88,139	10,195	13.1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83,497	300,403	16,906	6.0

자료: 각부처 2027년도 사업설명자료 .

나. 분석의견

첫째, 2027년도 혼인·출산·양육 관련 예산안은 국가 인구정책의 법률·계획·추진체계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편성되어, 범정부 차원의 투자방향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절차가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중장기 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한 통합적 재정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고, 같은 해 9월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전환하고, 인구전략위원회가 부처별 인구정책의 중장기 투자방향과 우선순위를 총괄·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27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새로운 정책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이전에 편성되었다. 종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계획기간은 2025년에 종료되었으며, 새로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수립 중이었다. 「인구전략기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을 인정받지만, 기존 계획이 종료된 이후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반영한 중장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인구전략위원회가 부처별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방향과 우선순위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도 예산안은 새롭게 도입된 범정부 예산 사전협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었다.

[관련 주요 변화]

일자	주요 정책
2026.6.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및 「인구전략기본법」 공포
2026.9.3.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2026.9.10.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및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2026.10.14.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 개최, 국가인구비전 선포 및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발표[1)]
2027.1.1.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제 시행 예정

주: 1)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최종 확정은 아님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구전략기본법」(법률 제21777호),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6.9.1.), 인구전략위원회 보도자료(2026.9.9., 10.14.~15.).

이러한 계획 및 예산관리체계의 전환은 혼인·출산·양육 분야의 종합적인 재정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7년도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의 혼인지원금·출산지원금·아동기본수당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육아지원, 교육부의 영유아보육료 및 보육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과 아동돌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여러 회계·기금에 분산 편성되어 있다. 이들 사업은 혼인·출산·양육 부담 완화라는 공통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지원대상과 방식, 재원 및 소관 부처가 상이하다. 따라서 개별 부처의 예산편성만으

로는 현금급여와 보육·돌봄서비스, 일·가정 양립 및 임신·출산 의료지원 간 재원 배분의 적정성이나 사업 간 연계·보완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정부의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분류에는 주요 혼인·출산·양육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다른 회계·기금에서 추진되는 관련 사업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총재정투입 규모와 정책수단별 재원 배분을 일관된 기준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혼인·출산·양육 관련 재정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업별 지원대상·정책목표·재정소요 및 성과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예산 사전협의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사업의 편성·조정 경과와 범부처 정책 간 정합성을 별도로 점검하고, 2028년도 예산안부터는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른 예산 사전협의 결과가 실제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과 재원 배분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회가 인구정책에 대한 재정투입 규모와 정책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회계·기금별 편성현황, 신규·기존사업 간 관계 및 중기 재정소요를 포함한 통합적인 재정현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혼인·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수요가 생애단계와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현금급여 확대 외에 돌봄서비스 제공 등 지원수단별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예산안은 혼인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등 현금급여 확대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혼인·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수요는 생애단계와 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지원사업의 예산 확대가 실제 정책수요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2024~2026년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24년 3월 70.9%에서 2026년 3월 76.4%로 5.5%p 상승하였고, 미혼자의 결혼 의향도 61.0%에서 67.4%로 6.4%p 높아졌다. 같은 기간 무자녀자의 출산 의향은 32.6%에서 41.8%로 9.2%p 상승하였으나, 유자녀자의 추가 출산 의향은 9~11% 수준에 머물러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

[혼인·출산 관련 국민 인식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2024.3.	2024.9.	2025.3.	2025.8.	2026.3.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70.9	71.5	72.9	74.5	76.4
미혼자의 결혼 의향	61.0	65.4	65.2	64.5	67.4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	61.1	68.2	70.9	70.8	71.6
무자녀자의 출산 의향	32.6	37.7	39.7	40.2	41.8
유자녀자의 추가 출산 의향	10.0	9.3	9.8	11.4	10.0

주: 각 조사는 동일 개인을 추적한 패널조사가 아닌 반복 횡단면 조사로, 조사 시점별 응답자 및 문항별 응답집단이 다름.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리서치, 「2026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상반기 인식조사 보고서」

이러한 차이는 혼인 및 첫 출산을 결정하는 단계와 이미 자녀를 양육하면서 추가 출산을 고려하는 단계에서 정책적 제약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2026년 조사에서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자의 74.2%는 결혼자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출산을 유보하거나 결정하지 못한 무자녀자의 62.8%는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주요 사유로 응답하였다. 반면 추가 출산을 유보하거나 결정하지 못한 유자녀자는 연령 부담(48.8%), 자녀 양육비 부담(47.6%), 양육의 어려움(36.6%) 등을 주요 제약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출산 이후에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보육·돌봄서비스 이용과 직장에서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건이 중요한 정책수요로 나타났다. 영유아 교육·돌봄서비스 이용자의 34.3%는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를, 24.9%는 비용 지원·감면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응답하였다. 유자녀 취업자의 경우에도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51.7%)와 기관 돌봄서비스 이용 기회·시간 확보(44.6%)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혼인·출산·양육 관련 주요 제약요인 및 정책수요(2026)]

(단위: %)

구분	주요 조사 항목	응답률
혼인	결혼 의향이 있으나 결혼자금 추가 마련 필요	74.2
첫 출산	무자녀자의 출산 유보·미정 사유: 임신·출산·양육의 막연한 어려움	62.8
추가 출산	연령 부담	48.8
	자녀 양육비 부담	47.6
	양육의 어려움	36.6

(단위: %)

구분	주요 조사 항목	응답률
보육·돌봄	영유아 교육·돌봄서비스 이용률	73.6
	영유아 교육·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87.5
	서비스 개선 요구: 이용시간 확대	34.3
	서비스 개선 요구: 비용 지원·감면	24.9
일·가정 양립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51.7
	기관 돌봄서비스 이용 기회·시간 확보	44.6

주: 1. 혼인 관련 응답은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자, 첫 출산 및 추가 출산 제약요인은 각각 출산 유보·미정 무자녀자 820명, 유자녀자 888명을 대상으로 함.
2. 영유아서비스 이용률은 영유아 자녀가구 360명,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요구는 서비스 이용자 265명, 일·가정 양립 관련 응답은 유자녀 취업자 789명 기준임.
3. 서비스 개선 요구는 1순위, 추가 출산 제약요인 및 일·가정 양립은 1·2순위 합산 응답임.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리서치, 「2026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상반기 인식조사 보고서」(2026.6.), 관련 조사 결과를 재구성.

실제 보육·돌봄서비스 이용 및 육아휴직 통계에서도 관련 여건의 변화가 확인된다. 2020~2025년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 5,352개소에서 2만 6,064개소로, 이용아동 수는 약 124만 4,000명에서 88만 8,000명으로 감소한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중은 20.4%에서 33.7%로 확대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유형별 집계 합계도 2021년 7만 1,789가구에서 2025년 15만 9,804가구로 증가하였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영유아 인구 감소와 서비스 유형별 집계구조의 영향을 받으므로, 공급 부족이나 실질적인 수요 증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이용률과 대기기간, 서비스 제공시간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은 전체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성별 활용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출생아 부모의 당해 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아버지 10.2%, 어머니 72.2%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출산한 여성의 취업자 비율도 출산 360일 전 67.2%에서 출산일 기준 59.9%로 낮아졌다.

[보육·돌봄서비스 이용 및 육아휴직 관련 주요 지표]

구분	지표	비교 시점	주요 수치
보육시설	전체 어린이집 수	2020→2025년	35,352→26,064개소
보육서비스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	2020→2025년	약 124.4만→88.8만명
보육구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중	2020→2025년	20.4→33.7%
가정방문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집계	2021→2025년	71,789→159,804가구

구분	지표	비교 시점	주요 수치
육아휴직	전체 육아휴직 시작자 중 남성 비중	2024년	29.2%
	출생아 부모의 당해 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2024년	부 10.2%, 모 72.2%
고용유지	출산 전후 모의 취업자 비율	출산 360일 전→출산일	67.2→59.9%

주: 1.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는 유치원 이용아동을 제외.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는 서비스 유형별 집계
3. 육아휴직 사용률은 통계상 육아휴직 대상자를 분모로 산정한 수치임.
자료: 교육부, 「2025 보육통계」(2026.4.);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누리집, 「연도별 이용자 현황」; 국가데이터처,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2025.12.).

이상의 결과는 혼인·출산·양육 관련 정책수요가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뿐 아니라 양육기간의 소득보전, 돌봄서비스 접근성 및 실제 이용시간, 근로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금·상품권 등 직접급여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인 반면, 부모의 고용유지와 육아시간 확보, 안정적인 보육·돌봄서비스 이용 및 의료 접근성 개선에는 별도의 지원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혼인 및 첫 출산에 대한 초기 지원과 추가 출산·계속 양육에 대한 지원을 구분하고, 지원수단별 재정투입 규모와 정책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혼인·출산·양육 관련 재정사업을 현금·이용권 등 직접급여, 사회보험급여, 의료지원, 보육·돌봄서비스, 공급기관·인력 지원 및 정책금융 등으로 구분하고, 생애단계와 가구 특성별 수혜 규모 및 재정소요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세지원의 직접지출 전환은 지원대상과 실질 수혜액, 신청·이용률 및 행정비용의 변화를 함께 검토하고, 정책금융은 융자원금과 실제 재정지원 비용을 구분하여 일반 세출사업과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27년 출산·양육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기존·신규 수급자 간 형평성을 검토하고, 제도 병존에 따른 중장기 재정소요와 재원별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예산안은 기존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등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출생시점에 따라 기존 제도와 신규 제도

가 장기간 병존하고 지원수준이 출생순위·지역·아동 연령 및 보육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도 개편에 따른 수혜 형평성과 중장기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생 시기에 따른 0-12세 지원액 비교(첫째아 가정 양육시)]

(단위: 만원)

구분		0세	1세	2~12세	0~12세
기본 급여		아동수당(월10)			
		부모 급여 (월 100)	부모 급여 (월 50)		
		첫만남			
수도권·	月	110 (첫달 +200)	60	10	-
	年	1,520	720	120	3,560
인구감소지역 (특별)	月	112 (첫달 +200)	62	12	
	年	1,544	744	144	3,872

→

0세	1세	2~12세	0~12세
아동기본수당(20)			
가정보육 가산금 (30)			
아이맞이 지원금			
50 (분기별 +250)	50	20	
1,600	600	240	4,840
60 (분기별 +375)	60	30	
2,220	720	360	6,900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새로운 출산·양육 급여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므로, 동일한 출생순위와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라도 출생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급여의 종류와 지원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아동기본수당의 지역별 차등지원, 영아기 가정보육 가산금과 보육료 지원의 적용관계 등에 따라 가구별 실질 수혜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출생시점, 출생순위, 지역 및 보육방식을 동일하게 설정한 연령별·누적 지원액을 비교하고, 현금·상품권·바우처 등 지급방식의 차이와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원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인 수혜수준과 형평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신규 급여는 출생연도별 수급집단이 누적됨에 따라 2028년 이후 지출이 확대되는 반면, 기존 급여는 수급대상의 감소에 따라 지출이 축소되는

구조이므로 단년도 예산 증감만으로 제도 개편의 재정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와 개편하는 경우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각각 추계하고, 출생아 수 전망, 지원대상 누적, 기존 급여의 단계적 종료 및 급여단가 변동 등을 반영한 순재정소요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금급여 외에도 보육·돌봄시설 운영비, 모성보호육아지원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지출, 신혼·출산가구 정책금융 지원비용 등이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수반하므로 관련 사업의 중기 지출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기본수당 등 장기간 지급되는 급여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는 만큼 기금 재원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부담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6~2030년)」에 따르면 아동·보육 부문 사업 개편 이후의 국비 지출은 2026년 5조 6,406억원에서 2030년 8조 4,754억원으로 연평균 1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의 지출은 2030년 7조 2,208억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어, 2030년 제도개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1조 2,54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 · 보육 부문 사업 개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전망(국비): 2026-3030]

(단위: 억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합계]
개편 후(A)	56,406	60,589	68,840	77,893	84,754	10.7
아동(기본)수당	26,324	30,631	40,168	52,308	58,730	22.2
부모급여	25,323	22,695	5,873	444	0	소멸
첫만남이용권	4,760	0	0	0	0	순감
출산지원금	0	7,263	22,799	25,141	26,024	순증
출산지원금	0	4,510	22,799	25,141	26,024	순증
첫만남이용권	0	2,753	0	0	0	순증
현행 제도 유지(B)	56,406	59,797	63,737	67,981	72,208	6.4
아동수당	26,324	29,173	32,125	35,194	38,367	9.9
부모급여	25,323	25,850	26,676	27,672	28,569	3.1
첫만남이용권	4,760	4,774	4,935	5,115	5,271	2.6

(단위: 억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합계]
추가재정소요(A-B=C)	0	793	5,103	9,913	12,547	[28,355]
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종료에 따른 세수증가효과(D)	0	1,182	1,227	1,271	1,301	[4,981]
순재정효과(C-D)	0	△389	3,876	8,642	11,246	[23,374]

주: 순재정효과는 세수증가효과를 고려한 이후의 추가재정소요를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6~2030년): 보건 · 복지 · 고용 및 교육 분야(세수증가효과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10월 발간한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 참고

아울러 추가세수 등 특정 세입 여건에 의존하는 재원조달 방식이 지속적인 급여지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정례적인 기금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재원조달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고보조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과 신규 급여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별도로 추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를 함께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재원분담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 주요 사업별 분석의견

(1) 혼인지원금: 법적 근거 및 체계적 사업관리 기반 마련 필요

① 사업개요

혼인지원금 사업은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혼인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신규 사업이다. 2027년도 예산안은 1,662억 8,200만원으로, 혼인지원금 지급 1,654억 3,200만원과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8억 5,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2026년 일몰 예정인 혼인세액공제를 직접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혼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혼인한 부부에게 생애 1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나, 소득 및 납부세액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국내 거주 국민에게 연령·소득 제한 없이 개인별 50만원, 부부 기준 최대 100만원

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국고보조율은 서울 35%, 그 외 지역 65%를 기본으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② 분석의견

첫째, 혼인세액공제에서 직접 재정지원으로의 전환에 따른 수혜대상 확대 효과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검토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연계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혼인지원금은 기존 조세지출을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정책효과와 재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21만 5,326명에게 총 937억 7,400만원이 적용되었으며, 1인당 평균 공제액은 약 43만 5,498원이었다. 반면 신규 혼인지원금은 소득 및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므로 기존 세액공제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세액공제와 신규 지원금의 수혜대상·지원효과 및 재정소요를 비교하여 지원방식 전환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국가가 소득세 세수감소를 부담하는 방식이었으나, 혼인지원금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기본 국고보조율 적용 시 서울은 65%,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35%를 지방비로 부담하며, 차등보조율 적용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따라 실제 부담과 지원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원방식 전환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과 지역별 사업 집행 여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7년도 예산안에 1,662억 8,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혼인지원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10월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 경과와 연계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혼인지원금의 정책목적과 지급대상·지원규모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보액 관리, 시스템 구축·연계, 홍보·집행 및 성과관리 등 체계적인 사업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혼인지원금은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나, 연령·소득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지원 방식 간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전체 혼인건수 24만 326건을 기준으로 지원규모를 산정하였으며, 2027년 이전의 혼인이력은 지원대상 판단 시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거 혼인이력이 있더라도 2027년 이후 다시 혼인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전체 혼인 중 재혼이 약 2만 9,000건으로 약 12%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 혼인이력을 제외한 지급기준의 설정근거와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도 시행 이후 수급이력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만 국내 거주 국민인 경우,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급 여부, 신청 후 지급 전에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처리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 시행 전에 지급대상과 혼인관계 변동에 따른 처리기준을 구체화하여 지자체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국외 혼인신고자에 대한 지원규모와 유보액 관리기준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국외 혼인신고 4,217건에 해당하는 예산 전액을 유보액으로 편성하고 실제 지역별 수요에 따라 교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외 혼인신고자의 국내 전입률과 전입 소요기간 등에 관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혼인신고 후 1년이 경과하여 국내로 전입한 경우의 지급 여부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실제 신청 가능 규모를 고려하여 유보액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신청기간과 국내 전입시점 등을 반영한 교부·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27년 하반기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만큼 사업 시행 초기의 신청 집중에 대비한 집행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혼인지원금은 혼인신고 시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거나 정부24를 통해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와 지원금 신청 절차를 연계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지급이력 확인 및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지급 개시 전에 완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업무 매뉴얼 마련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규 사업임에도 별도 홍보예산과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안전부 혜택알리미 등 기존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신청대상과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집행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027년 성과지표인 혼인지원금 지급률 목표치는 75%로 설정되어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하반기 지급 개시와 1년의 신청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예산은 연간 전체 혼인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신청·지급 가능 규모와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성과목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예산 편성규모와 성과관리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혼인지원금은 기존 조세지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방식 전환의 정책효과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 개정과 지급기준 구체화, 수급이력 관리 및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반기 지급 개시에 따른 신청 집중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 안내와 지자체 집행체계를 정비하고, 실제 수혜규모에 기반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출산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 지원: 법적 근거 및 전환체계 정비 필요

① 사업개요

출산지원금 지원[70] 사업은 2027년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편성되며, 상반기 출생아에는 기존 첫만남이용권을 적용하고 7월 1일 이후 출생아에는 새 아이맞이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이다. 새 급여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일부를 통합·재편하여 출생순위와 거주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을 현금으로 1년간 네 차례 분할 지급하는 구조이다.

2027년 예산안은 6,981억 1,100만원으로, 2026년 첫만남이용권 4,111억 2,000만원보다 2,869억 9,100만원(69.8%) 증가하였다. 2027년 구성은 상반기 출생아 대상 첫만남이용권 2,685억 1,000만원, 하반기 출생아 대상 신규 아이맞이지원금 4,296억 100만원이다.

② 분석의견

첫째, 기존 법정급여 개편을 위한 입법조치와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기존 바우처 형태의 첫만남이용권 및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70)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5-300

월별 부모급여를 통합·재편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금액·주기·수단이 현행법상 급여와 다르다. 따라서 현행 법정급여의 폐지·조정 범위와 신규 지급방식, 기존 수급권의 유지 및 예외·환수사유 등을 법률·하위법령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시행시점의 신·구 급여 구분 자체를 부적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출생일 하루 차이에 따라 장기간 급여 차이가 생기는 만큼 시점 설정의 근거와 경과조치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출생시점과 거주지역에 따른 차등의 정책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같은 출생순위의 아동이라도 우대지역에는 기본지역보다 5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한다는 정책목적은 인정될 수 있지만, 우대지역 선정에 활용하는 지방우대지수가 실제 양육환경·출산 여건의 차이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추가 500만원의 단가가 어떤 비용 차이 또는 정책효과를 근거로 설정되었는지는 입증이 필요하다. 특히 2027년 상반기 출생아에는 기존 급여, 하반기 출생아에는 신규 급여가 적용되므로 출생순위·지역·출생월별 생애 누계액과 연령별 현금수급액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지방재정 영향과 분할지급의 집행관리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신규 아이맞이지원금은 서울 35%, 그 외 지역 65%를 기본으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2027년도 편성에서 사용한 평균 국고보조율 69.11%를 국비 약 4,296억원에 적용하면 지방비는 약 1,920억원으로 단순 추산된다. 그러나 기본·우대지역 구분과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은 서로 다르며, 동일 출생순위라도 우대지역에 500만원이 추가 지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별 부담은 대상아동과 실제 적용 보조율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지자체별 신규 대상아동 수, 우대지역 지정 및 차등보조율을 반영한 지방비 추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의 개편에 필요한 법률·하위법령 정비사항을 제시하고, 출생시점별 급여차이와 경과조치, 지방우대지수·우대금액 500만원의 정책적 근거, 지역별 대상아동 수 및 실제 보조율에 따른 국비·지방비 부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아동기본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 병존에 따른 형평성 검토 필요

① 사업개요

아동기본수당 지급[71] 사업은 기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아동수당 사업을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으로 이관하면서 신규 출생아의 지급수준을 확대·개편하려는 사업이다. 202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 아동수당, 7월 1일 이후 출생아는 기본지역 월 20만원·우대지역 월 30만원의 기본수당을 받도록 계획하였다. 신규 급여의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0~1세 가정보육 아동에는 월 30만원의 가산금을 더하는 방식이다.

2027년 정부안은 2조 9,272억 4,300만원으로 2026년 아동수당 예산 2조 4,821억 6,900만원보다 4,450억 7,400만원(17.9%) 증가하였다. 구성은 종전 아동수당 2조 7,421억 2,500만원, 하반기 신규 아동기본수당 1,834억 5,000만원, 제도운영 3억원, 전산시스템 개편 13억 6,800만원이다. 신규 급여 내 가정보육 가산금 편성액은 1,017억 3,600만원이며, 산출 시 월평균 수급예정 아동 8만 2,194명 전원의 가정보육을 가정하였다.

② 분석의견

첫째, 아동수당법 개정과 기금 이관에 따른 재정통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지급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넓히는 근거를 이미 갖추고 있어, 개편을 위해서는 지급연령보다 명칭·지급액·지급수단·신구 급여 적용관계에 관한 추가 정비가 핵심이다. 현금 지급 원칙과 신규 기본수당의 지역사랑상품권 50% 의무지급이 서로 다른 점도 입법상 검토가 필요하다. 원고 작성 당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였으며, 후자의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변경 특례(30% 이내)는 일반 기준 20%보다 정부 재량을 넓힐 수 있다. 사업 이관에 따른 상임위원회 심사, 집행·결산 책임, 성과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71)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5-310

둘째, 출생시점과 거주지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체계와 지원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급자 간 형평성과 차등지원 기준의 합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아에게는 기존 아동수당(월 10만~13만원)이 적용되는 반면, 7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는 신규 아동기본수당(기본지역 월 20만원, 우대지역 월 30만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출생일이 하루만 달라도 장기간 서로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받게 되며, 동일한 가구의 형제자매 간에도 출생시점에 따라 지원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첫째아·가정보육 가정의 0~12세 관련 급여 누계액을 비교하면, 기존 수도권 3,560만원에서 신규 기본지역 4,840만원으로 1,280만원 증가하고, 기존 인구감소 특별지역 3,872만원에서 신규 우대지역 6,900만원으로 3,028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동기본수당뿐 아니라 출산·양육 관련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제도 개편에 따른 수혜 격차가 장기간 누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거주지역에 따른 지급액 차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규 아동기본수당은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기본지역과 우대지역으로 구분하여 월 2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지급하므로, 동일한 연령의 아동이라도 거주지역에 따라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의 급여 차이가 발생한다. 기존 아동수당의 지역별 지급액 차이가 최대 월 3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신규 제도에서는 지역 간 급여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이다. 또한 기존 제도와 신규 제도의 지역 구분 및 우대기준이 달라 제도 전환에 따른 수혜 차이도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출생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급여체계를 장기간 적용하는 정책적 근거와 경과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별 양육여건과 인구감소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대지역 선정기준 및 월 10만원의 차등지급 수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지원체계 정비 필요

① 사업개요

영유아보육료 지원[72]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2세 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연장보육료,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2027년도 예산안은 3조 7,959억 400만원으로, 2026년도 예산 3조 6,635억 1,400만원 대비 1,323억 9,000만원(3.6%) 증가하였다. 이 중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예산은 444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9억 400만원(36.8%) 감소하였다. 한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관련 예산은 2027년부터 미래대응기금의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다.

② 분석의견

0세반과 달리 1세반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과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가 병행되어 지원대상이 중첩되므로, 두 제도의 정책목적과 참여 유인을 고려하여 병행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2026년 0세반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 도입과 함께 기존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체계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반면 2027년 1세반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이 도입되더라도 기존 인센티브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은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 반면,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는 정원 미충족에 따른 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영아반의 개설과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두 사업은 지원목적과 지원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2027년부터 1세반에 대한 영유아 개설(유지) 인센티브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지원제도가 병행 운영될 예정이므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사대아동비율 개선을 위한 반 재편에 대해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별 지원 현황을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각 사업의 정책목적과 지원대상·지원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두 제도를 병행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향후 지원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2) 코드: 영유아특별회계 1633-331

(5) 아이돌봄 지원: 국고보조율 인하에 따른 지방비 부담 검토 및 대기기간 완화 필요

① 사업개요

아이돌봄 지원[73]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아이돌봄사를 연계하여 맞벌이·긴급돌봄 등 가정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돌봄수당과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아이돌봄사 관리 및 교육, 국가자격·민간등록체계 운영을 지원한다. 2027년에는 비서울 지역 국고보조율을 인하하는 한편 서비스 단가 조정과 돌봄인력 처우·자격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 정부안은 5,014억 8,700만원(501,487백만원)으로 2026년 5,977억 7,900만원보다 962억 9,200만원(16.1%) 감액되었다. 주요 내역은 돌봄수당 4,668억 5,900만원, 아이돌봄사 관리 68억 7,100만원,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200억 5,000만원 등이다. 2027년 지원물량은 12만 6,000가구이며, 서울 보조율 30%는 유지하고 비서울은 70%에서 50%로 낮추도록 편성하였다.

② 분석의견

첫째, 국고보조율 인하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증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7년 정부안은 돌봄수당·아이돌봄사 관리·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의 국고보조율을 서울 30%로 유지하면서 비서울 지역은 70%에서 50%로 20%p 내렸다. 정부는 이용요금 5% 인상(시간당 12,790원→13,430원), 4대보험·퇴직적립금 산정 인원 2만 7,000명→3만 2,000명 조정, 보수교육 대상 확대(7만명) 등 공급·처우개선을 병행한다. 그러나 2027년 사업물량을 동일하게 놓고 비교하면 비서울 보조율을 종전 70%로 유지할 때보다 국비가 1,612억 3,400만원 감소하고 같은 금액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한다. 실제 2027년 정부안 기준 국비 5,014억 8,700만원, 지방비 5,200억 9,600만원으로 제시된다.

둘째,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와 대기기간 장기화에 대응하여 양성교육과 처우개선이 실제 활동인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력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활동하는

73) 코드: 일반회계 2334-341

아이돌봄사의 증가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신청가구는 7만 8,118가구에서 2025년 18만 3,794가구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평균 대기일수는 19.0일에서 39.4일로 늘어났다. 반면 실제 활동 아이돌봄사는 2023년 2만 8,071명에서 2025년 3만 1,718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양성교육 인원은 각각 8,901명과 1만 2,736명이었으나, 실제 활동인력의 전년 대비 증가인원은 1,564명과 2,08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성교육 확대가 활동인력의 증가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육 이수자의 실제 채용 및 활동 여부, 활동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027년 추진되는 돌봄수당 인상과 사회보험 지원 확대 등의 처우개선이 신규 인력 유입 및 기존 인력의 활동 유지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비스제공기관과 광역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돌봄수요 및 공급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대기가 장기화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실제 공급인력 확대 및 서비스 품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2026년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다. 정부는 2027년 국가자격증 관리시스템 구축, 민간등록제 지원 및 자격관리 운영 등에 총 2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다.

국가자격증 발급인원은 2026년 4월 3만 779명에서 8월 4만 2,346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26년 6월 기준 공공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에 재직 중인 아이돌봄사는 약 3만 1,000명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발급 확대가 반드시 실제 활동인력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취득자의 취업·활동 여부 및 활동기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7년에는 국가자격 관리시스템의 2차 개발과 온라인 보수교육 도입을 추진하고, 보수교육 대상을 공공 아이돌봄사 중심에서 민간 등을 포함한 7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격 취득 이후의 교육·활동 이력을 연계하여 관리하고, 국가자격제가 지속적인 전문성 관리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2026년 8월 기준 등록기관이 부산 소재 1개소에 불과하여 제도 확산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등록 저조의 원인을 파악

하고, 민간기관의 등록 유인과 등록요건·절차의 적정성, 등록 이후 지원 및 관리체계를 점검하여 실질적인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율 인하에 따른 지방비 부담 확대가 서비스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한편, 양성교육과 처우개선이 실제 활동인력 확충으로 연결되도록 관리하고 국가자격제·민간등록제의 운영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6)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전문인력 특별수당의 산출근거 및 집행 가능성 검토 필요

① 사업개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74] 사업은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의 운영과 시설·장비, 모자 의료인력 확보 및 산모·신생아 전원·이송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7년에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에서 전문의·전임의·전공의에게 지급하는 특별수당을 신규 도입해 필수의료인력 이탈을 억제하고 충원을 촉진하려는 계획이다. 이 특별수당은 국비와 병원 부담을 1:1로 매칭하는 구조다.

2027년 정부안은 306억 7,100만원으로 2026년 153억 8,800만원보다 152억 8,300만원(99.3%) 증가하였다. 이 중 신규 전문인력 특별수당 157억 5,000만원은 전체 예산의 51.4%를 차지한다. 특별수당은 전문의·전임의 월 최대 1,000만원, 전공의 월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국비 157억 5,000만원과 병원 자부담 같은 규모를 합한 315억원이 지급재원이다. 지원대상은 2026년 3월 현원 기준 321명으로 산정하였다.

② 분석의견

첫째, 전문인력 특별수당은 기존 인력의 잔류와 신규 인력 유입을 목적으로 하나, 2027년도 예산안은 기존 현원을 중심으로 지원 인원을 산정하여 신규 충원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원단가의 근거도 불충분하므로, 지원 물량과 단가를 재검토하여 재정소요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74) 코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2833-319

2027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전문인력 특별수당은 157억 5,000만원(국비)으로,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321명이 12개월간 근무하면서 전문의·전임의는 월 최대 1,000만원, 전공의는 월 최대 50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가정에 따라 산정되었다. 그러나 주로 2026년 3월 기준 현원을 적용함에 따라 인력기준 미달 기관의 신규 채용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

2026년 6월 기준 서울 외 권역모자의료센터 16개소 중 8개소는 산과 전문의 필수인력 기준에 미달하여 15명이 부족하였으며, 분만기능강화 지역모자의료센터 2개소에서도 3명의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8명이 모두 충원되어 특별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연간 국비 10억 8,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현원에 비례하여 지원액을 산정함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기관일수록 지원액이 적어지는 구조이다.

지원단가의 적정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원의와 봉직의 간 연간 보수격차 약 1억 889만~1억 4,000만원을 참고하였으나, 이는 전체 진료과목의 평균으로 실제 산과·신생아 전문인력의 보수격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지역근무수당(월 400만원) 등 유사사업과 비교할 때 특별수당의 단가 차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기관별 필수인력 부족 현황과 신규 채용계획을 반영하여 지원 인원을 산정하고, 전문인력의 실제 보수격차와 이탈 경로, 당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인력 특별수당은 의료기관이 지급액의 50%를 부담해야 하나 기관별 자부담 확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기존 운영비 지원단가도 인하되어 집행 가능성과 실질적인 추가 보상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 시행 전 기관별 재원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특별수당 국비 157억 5,000만원은 의료기관이 동일한 금액의 자부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기관별 자부담 확보계획과 실제 참여 가능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외 권역모자의료센터의 특별수당 자부담은 기관당 평균 5억 1,900만원으로, 2027년 기본 운영비 지원액 4억 8,000만원보다 많다. 분만기능강화 지역센터

역시 산과 분야 자부담이 기관당 평균 2억원으로, 운영비 지원액 3억 6,000만원의 절반을 초과한다.

또한 2027년도 예산안은 모자의료센터 운영비 지원단가를 20% 인하하여, 동일한 지원물량과 기간을 가정할 경우 국비 25억 7,200만원, 국비·지방비 합계 51억 4,4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특별수당 자부담과 운영비 감소분을 합하면 권역모자의료센터는 기관당 평균 약 6억 3,900만원, 분만기능강화 지역센터는 약 2억 9,000만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운영비 인하로 기존 당직비 등이 감소할 경우 특별수당이 이를 보전하는 데 사용되어 실제 추가 보상 효과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기관별 자부담 확보 가능성과 참여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고, 기존 기본급·당직비·수당을 유지하면서 특별수당이 추가 지급되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 제10조의2가 의료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특별수당의 법적 근거로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4. 교육, 주거, 생활·문화 사업 분석

가. 현 황

2027년 예산안에 편성된 청년 교육 사업은 총 58개 사업, 7조 9,568억 8,700만원 규모이다. 이는 전년대비 1조 5,767억 3,600만원(24.7%) 증가한 규모이다. 전체 청년 정책 예산 43.3조원 중 교육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1%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국립대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는 지역균형발전장학금 사업(3,280억 1,500만원), 졸업 전 대학생에게 첫 경력을 제공하는 대학생첫경력프로젝트 사업(4,650억원), 대학 및 지역의 AI 재교육 거점을 활성화하는 AI 재도약 사업(2,070억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235억원) 대학생, 미취업 청년에게 첨단분야에 대한 집중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5,518억 8,500만원) 등이 있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사업 목록-교육사업]

(단위: 백만원, %)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필요한 경우)	회계· 기금명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	(B-A)/A
교육부	지역균형발전장학금	-	미래대응기금	-	328,015	328,015	순증
	대학생첫경력프로젝트	-	미래대응기금	-	465,000	465,000	순증
	AI재도약대학	-	미래대응기금	-	207,000	207,000	순증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	미래대응기금	290,761	551,885	261,124	89.8
	대학창업교육기반고도화	-	미래대응기금	-	47,000	47,000	순증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	미래대응기금	-	23,500	23,500	순증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	-	미래대응기금	-	19,960	19,960	순증
	거점국립대 혁신사업	-	미래대응기금	30,000	30,000	-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첨단분야 공유대학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	115,000	115,000	순증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5,116,057	5,182,976	66,919	1.3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단위: 백만원, %)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필요한 경우)	회계·기금명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	증감 (B-A)/A
	한국장학재단 출연	-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227,267	132,819	△94,448	△41.5
	직업계교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7,540	7,540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AI중심대학	-	미래대응기금	117,960	184,960	67,000	56.8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 (R&D)	-	미래대응기금	67,501	91,801	24,300	36.0
	대통령 과학장학금	-	미래대응기금	-	21,317	21,317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지원	-	미래대응기금	69,786	68,578	△1,208	△1.7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R&D)	-	미래대응기금	83,043	83,043	-	-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너지인력 양성(R&D)	-	미래대응기금	71,457	71,457	-	-
산업통상부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R&D)	-	미래대응기금	201,395	201,898	503	0.2
국방부	자기개발교육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일반회계	5,624	5,624	-	-
문화체육 관광부	게임산업육성	게임 기획지원	일반회계	9,300	13,786	4,486	48.2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관광산업 현장연계형 인력양성 지원	관광진흥 개발기금	-	3,298	3,298	순증
	국립극장 운영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일반회계	2,470	2,591	121	4.9
	국립예술단체 운영	청년교육단원	일반회계	8,868	8,505	△363	△4.0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콘텐츠분야 인재양성	일반회계	32,231	31,831	△400	△1.2
국토교통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	일반회계	14,150	9,230	△4,920	△34.8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	일반회계	6,764	10,895	4,131	61.1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	-	일반회계	-	2,205	2,205	-
나머지 32개 사업				17,977	55,113	37,136	206.5
			합 계	**6,380,151**	**7,956,887**	1,576,736	24.7

주: 2027년 예산안 기준 20억원 미만의 사업들은 나머지 32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음으로, 2027년 예산안의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은 총 15개 사업 18조 4,999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조 8,964억 8,000만원(92.6%) 증가한 규모이다. 전체 청년 정책 예산 43.3조원 중 교육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7%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 공공임대 출자, 융자 사업(각각 2,687억 2,500만원, 2,046억 3,300만원), 보편형 매입임대출자, 융자 사업(각각 3,060억원, 2,380억원),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융자 사업(4조 5,822억 3,500만원, 5조 2,847억원), 청년 지원 주택(1조 4,000억원) 등이 있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사업 목록-주거 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필요한 경우)	회계·기금명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	(B-A)/A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출자	청년 배분 물량	주택도시기금	258,518	268,725	10,207	3.9
	통합공공임대융자	청년 배분 물량	주택도시기금	148,243	204,633	56,390	38.0
	보편형 매입임대출자		미래대응기금	-	306,000	306,000	순증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청년 관련 내역	주택도시기금	3,242,020	4,582,335	1,340,315	41.3
	보편형 전세임대 (융자)		미래대응기금	-	900,000	900,000	순증
	전세임대 (융자)	청년 관련 내역	주택도시기금	2,088,875	2,510,688	471,813	23.1
	보편형 매입임대 (융자)		미래대응기금	-	238,000	238,000	순증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청년 관련 내역	주택도시기금	3,708,270	5,284,700	1,576,430	42.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미래대응기금	7,980	16,777	8,797	110.2
	청년월세지원		미래대응기금	129,953	231,859	101,906	78.4
	청년 지원 주택		미래대응기금	-	1,400,000	1,400,000	순증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출융자	청년 배분 물량	주택도시기금	-	2,385,967	2,385,967	순증

(단위: 백만원, %)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필요한 경우)	회계· 기금명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	(B-A)/A
금융위원회	청년전월세결합보증		미래대응기금	-	28,616	28,616	순증
	주택금융 이차보전		미래대응기금	-	59,660	59,660	순증
교육부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사학진흥기금	69,191	81,570	12,379	17.9
합 계				**9,603,050**	**18,499,530**	8,896,480	92.6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지막으로, 2027년 예산안 청년 생활·문화 사업은 총 22개 사업 1조 3,841억 7,2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9,648억 700만원(130.1%) 증가한 규모이다. 전체 청년 정책 예산 43.3조원 중 교육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 복무 청년의 복무기간 중 입은 상해를 보상하는 병 단체 상해보험 사업(68억 9,700만원), 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모두의 카드 사업(4,314억 4,400만원),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174억 5,000만원), 청년의 공연, 전시, 영화, 도서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7,952억 2,700만원) 등이 있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사업 목록-생활·문화 사업]

(단위: 백만원, %)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필요한 경우)	회계· 기금명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	(B-A)/A
국방부	진료지원	병 단체 상해보험	일반회계	-	6,897	6,897	순증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모두의 카드	일반회계	298,382	431,444	133,062	44.6
농림축산식품부	쌀소비 기반구축	천원의 아침밥	양곡관리 특별회계	11,126	17,450	6,324	56.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향유 지원	청년문화 예술패스	미래대응기금	36,146	792,527	756,381	1,992.5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가족돌봄 청년 지원 등	일반회계	5,058	33,884	28,826	470.0
	심리상담 바우처	-	일반회계	27,173	27,173	-	-

(단위: 백만원, %)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필요한 경우)	회계·기금명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	(B-A)/A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일반회계	-	7,500	7,500	순증
산업통상부	산업단지 환경조성	문화선도 산단 조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9,700	52,100	22,400	75.4
나머지 14개 사업				11,780	15,197	3,417	29.0
합 계				**41,936**	**138,417**	96,481	130.1

주: 2027년 예산안 기준 20억원 미만의 사업들은 나머지 14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

청년 교육, 주거, 생활·문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별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 교육 사업〉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사업[76]은 대학·전문대학 학생의 현장실습에 실습지원비와 참여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4,6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6만명이 평균 5개월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2025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인원은 31,673명이고 이수학생의 65.9%가 12주 미만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지원인원과 기간을 조정하고 집행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기업·대학 부담을 국고로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지원율 차등화를 검토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국회 심사 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77]

76) 코드: 미래대응기금 4535-310

77)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참고

지역균형발전장학금 사업[78]은 지역대학 학생의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여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2,130억 1,500만원)을 신설하고 지역인재장학금(1,150억원)을 확대하여 2027년도 계획안에 전년 대비 2,480억 1,500만원(310.0%) 증액된 3,280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은 지원 학년이 단계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는 연간 약 7,516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등록과 중도 이탈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인재 유치 효과를 점검하고, 지방 사립대 진학 예정자의 이동만 유발하지 않도록 국립대와 사립대 간 지원의 균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79]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80]은 대학(원)생의 학업·연구에 필요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동구독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199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예산이 소수 해외 AI 서비스에 집중되어 특정 플랫폼 의존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국산 AI 서비스 지원 정책과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공계열 비율과 특정 대학 사례에 근거한 지원 규모를 학생별 필요 기능·사용량에 근거하여 재산정하고, 재정 여건이 취약한 대학의 참여가 제약되지 않도록 대학 매칭비율(5:5)의 차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81]

78) 코드: 미래대응기금 4545-330

79)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참고

80) 코드: 미래대응기금 4545-300

81)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참고

〈청년 주거 사업〉

보편형 매입임대[82], 보편형 전세임대[83], 청년 지원 주택[84], 청년월세 지원[85] 사업은 각각 공적 주택 공급 및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임차료 지원 사업으로, 2027년 계획안에서는 총 3조 759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보편형 매입·전세임대, 청년지원주택, 청년월세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보편형 매입임대(융자)	-	-	-	238,000	238,000	순증
보편형 매입임대출자	-	-	-	306,000	306,000	순증
보편형전세임대(융자)	-	-	-	900,000	900,000	순증
청년 지원 주택	-	-	-	1,400,000	1,400,000	순증
청년월세 지원	139,135	129,953	129,953	231,859	101,906	78.4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보편형 매입임대·전세임대 등은 그 사업 성격상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에서 지속·반복적으로 편성되어 온 전세임대(융자), 다가구매입임대(융자) 등의 사업과 대상·방식·집행체계 면에서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신규 투자성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 주거복지 사업의 청년 특화형 확장에 가깝다는 점에서 재원 편성 기금 및 계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의 성격 관점에서도, 미래대응기금에 신설된 사업들이 대부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보편형 매입임대의 경우 50%만이 청년에게 우선배정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부 청년 대상 사업은 아니며, 반대로 주택도시기금 내 주거지원 관련 사업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물량이 별도로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 수혜 대상이 청년인지에 따른 구분도 논리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82)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3-310(융자), 330(출자)

83)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3-320

84)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3-340

85)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3-300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방식별 사업 분류]

유형	사업명	성격	재원
매입임대	다가구매입임대	계속	주택도시기금
	보편형 매입임대	**신규**	**미래대응기금**
	청년 지원 주택	**신규**	**미래대응기금**
전세임대	전세임대	계속	주택도시기금
	보편형 전세임대	**신규**	**미래대응기금**
건설임대	통합공공임대	계속	주택도시기금
	보편형 건설임대	**신규**	**주택도시기금**

자료: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 제출 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특히 이러한 편성은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공주택 공급 재원에 관한 한 주택도시기금을 원칙적 재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보편형 매입임대·전세임대·청년지원주택은 그 실질이 공공주택의 매입·임차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이 상정하는 전형적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주택공급이라는 주된 목적을 가진 사업을, 공급물량의 일부를 청년에 우선 지원하는 등으로 청년 지원적 성격을 확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기금에 편성하는 것이 사업 집행의 효율성, 체계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86]

주택금융 이차보전 사업[87]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7년 1월 출시할 예정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대상, 4억원 이하 비아파트)의 우대금리 적용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596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공급대상을 비아파트로 제한하고 있으나,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2025년 일반보금자리론 청년층 공급액 12조원 중 11.6조원(96.7%)이 아파트 구입에 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위 주거로 옮겨 가는 징검다리

86)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참고

87)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3-300

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정책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요건(4억원 이하) 외에 주택유형까지 제한하는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88]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원 사업[89]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7년 1월 출시할 예정인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의 우대금리 적용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286억 1,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이차보전율을 수도권 1.0~2.0%, 비수도권 1.0~3.0%로 차등하고 비수도권은 소득상한 없이 지원할 계획이나, 수도권의 평균 월세(110만원)와 전세가격이 비수도권보다 크게 높고 전월세 지원은 자산증식 효과도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역별 차등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90]

88)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참고

89)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3-310

90)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참고

〈청년 생활·문화 사업〉

병 단체 상해보험[91]은 군 복무 중 건강·재해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사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68억 9,7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동 사업은 민간보험을 통해 병사들의 건강·재해 위험에 대한 추가적 보상을 도입할 계획인데, 격오지, 함정 등에서의 상해위험이 반영되고 경증 상해·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경우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부는 상해보험상품과 관련한 제도적 설계를 면밀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들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20대 청년 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카드 발급자에게 상해보험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국가에서 직접 병사 전체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국방부는 다른 형태의 혜택을 병사들에게 제공하는 방안과 군인공제회에서 상해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92]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93]은 중·장기복무 군인이 전역 후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무료법률구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224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가보훈부는 의무복무 병사(현역병, 상근예비역)가 전역과 동시에 5세대 실손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동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다. 정부 지원이 제공되는 실손보험 가입기간은 현역병 최저 복무기간[94]인 1년 6개월로 설계되었다.

다만 동 사업은 국가보훈부는 청년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2025년 전역자 수 전체를 그대로 적용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동 사업의 적정 재원 규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역병 복무

91) 코드: 국방부 일반회계 2231-301

92)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방위원회)」 참고

93) 코드: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4160-390

94) 육군·해병대(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

현황과 잔여 복무기간 등을 바탕으로 전역 예정자 수를 보다 면밀하게 추산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인원의 가입 수요를 사전적으로 조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 사업자 선정 및 보험 상품 개발 등 사전적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 때문에 2027년 7월 이후 전역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 한정된 생활공간에서 같은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함께 희생하고 있는 현역병들 사이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95]은 청년 대상 문화예술관람료를 지원하여 문화 분야 전반에 대한 이용 경험 축적으로 청년을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7,925억 2,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6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27년부터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었다.

동 사업은 지속적인 집행 부진과 낮은 1인당 실사용액에도 불구하고 2027년 계획안이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과거 집행 내역을 고려하여 면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비수도권 지원에 더하여, 문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청년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및 접근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 실적의 특정 장르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기초예술 분야의 관람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및 본인인증 시스템 강화 및 할인 보전 방식으로의 사업 구조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96]

95)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6-300

96)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참고

12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대응체계 사업 분석

가. 현 황

(1)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현황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관계나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복지 관련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건강적·사회적 위기징후를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관련 정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정책은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차이가 있으나, 위기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한다는 점에서 상호 관련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대응을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관련 현황

사회적 고립 위험군의 구체적인 규모와 특성에 관한 조사 결과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에 대한 국민인식 및 위험군 특성·욕구 분석 연구」를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18만 명의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를 활용하여 위험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2026년 10월 기준 발굴대상자 약 13만 명 중 12만 9,000명에 대한 상담·조사를 실시하고, 고독사 위험군 약 8만 3,00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연계하였다.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0년 3,279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645명(19.7%) 증가하였다. 연도별 증가율은 2021년 3.0%, 2022년 5.4%, 2023년 2.9%, 2024년

허아름 예산분석관(liebe89@assembly.go.kr, 6788-3728)

7.2%로 나타났다. 한편,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자 수는 2022년 495명에서 2024년 52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기준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13.4%를 차지하였다.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 및 증가율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A)	3,279	3,378	3,559	3,661	3,924
전년대비 증가율	11.2	3.0	5.4	2.9	7.2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자 수(B)	541	571	495	516	526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자 비중(B/A)	16.5	16.9	13.9	14.1	13.4

주: 1. 연도별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 국가데이터처 연도별 사망통계 기준
2. 비중은 고독사 사망자 수 대비 자살자 수로 산출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사회적 고립 및 자살률 관련 주요 지표

국가데이터처의 「국민 삶의 질 지표」 중 사회적 고립도는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된다. 이에 따른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에서 2023년과 2025년 각각 33.0%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남성은 35.7%, 여성은 30.5%이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9.4%, 50대가 37.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부는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에서 사회적 고립도를 2025년 33.0%에서 2030년 27.0%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편, 「국민 삶의 질 지표」에는 자살률도 포함되어 있으며, 자살률은 2021년 인구 10만 명당 26.0명에서 2024년 29.1명으로 상승한 이후 2025년 27.8명으로 감소하였다.

[2021~2025년 사회적 고립 및 자살 관련 주요 지표 현황]

(단위: %, 명, 인구 10만 명당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회적 고립도	34.1	-	33.0	-	33.0
자살사망자 수	13,352	12,906	13,978	14,872	14,144
자살률	26.0	25.2	27.3	29.1	27.8

주: 사회적 고립도는 홀수년도 사회조사 결과이며, 자살률은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기준임
자료: 2021~2025년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및 「사망원인통계」

경찰청 변사자통계에 따르면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자 수는 2020년 3,249명에서 2024년 4,398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자살자 중 비중도 같은 기간 25.4%에서 29.6%로 상승하였다.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경제생활 문제 자살자 수	3,249	3,190	2,868	3,656	4,398
전체 자살자 중 비중	25.4	24.2	22.5	25.9	29.6

자료: 경찰청, 2020~2024년 변사자통계

③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

보건복지부는 복지 관련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등 23개 기관의 49종 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대상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자료: 보건복지부

발굴은 연간 5~6회, 회차당 약 20만 명 규모로 이루어지며, 중앙정부의 발굴 모형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발굴 기능 등을 활용하고 있다. 발굴대상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방문·전화 등을 통해 생활실태와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공공서비스 또는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2022~202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는 2022년 120만 8,086명에서 2024년 142만 3,466명으로 증가한 후 2025년 137만 1,307명으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지원대상자는 60만 6,101명에서 87만 6,61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발굴대상자 대비 지원율은 50.2%에서 63.9%로 상승하였다. 2026년에는 발굴대상자 87만 2,798명 중 43만 6,991명에게 복지서비스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2026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지원실적]

(단위: 명)

구분	발굴대상자(A)	지원대상자(B)	지원율(B/A)
2022년	1,208,086	606,101	50.2
2023년	1,388,689	686,439	49.4
2024년	1,423,466	831,660	58.4
2025년	1,371,307	876,613	63.9
2026년	872,798	436,991	50.1

주: 1.지원율은 발굴대상자 대비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의 비율임
2. 2026년 실적은 9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관련 주요 정책 및 추진체계

정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 및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위기가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다.

① 관련 법령

정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대상은 고독사예방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고독사 위험자)이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 담당차관의 법적 근거와 정책 추진기반 마련 등을 위한 개정안이 2026년 9월 3일 국회에 발의되었다.

한편, 2026년 10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은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관련 주요 법령 현황]

관련법령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고독사 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관리 정책의 법적 근거 - 전부개정안 국회 발의(2026.9.3.) :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범위 확대 및 사회적 고립 담당차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6.10.1)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6.10.1) : 위기상황에 놓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직권신청 관련 규정 정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국정과제 및 법정계획

정부는 국정과제 91번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의 세부과제로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외로움) 대응 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3년 5월 수립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

에서는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 조성'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13개 핵심과제를 마련하였다.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관련 주요 정책계획]

구분	주요 내용
국정과제	국정 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 3)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외로움) 대응 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	위험군 발굴·판단, 사회적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예방·관리 기반 구축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2026.8.11)	위기신호 포착, 경제적 지원, 고립 예방 서비스, 대응 기반 구축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26.10.12)	적극적 발굴·예방, 구조적 원인 대응, 대상별 맞춤형 지원, 관계기관 협력 강화

주: 국정과제는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및 관계부처 정책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동 기본계획에 따라 2026년 5월 수립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에는 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총 1,031개 세부과제(중앙부처 41개, 지방자치단체 990개)가 포함되어 있다.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 주요 과제]

4대 추진전략	13개 핵심과제
1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① 인적 안전망 활용 발굴, ②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발굴, ③ 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
2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① 지역주민 연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② 사회관계망 형성, ③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연결 및 안부확인
3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① 청년 위험군 정서·취업 지원, ② 중·장년 위험군 일상생활 문제 관리·지원, ③ 노인 위험군 지역사회 돌봄 지원, ④ 사망자·유가족 사후지원
4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① 고독사 예방·관리 수행체계 구축, ② 지역 주도형 서비스 지원, ③ 법·제도 개선 및 인식 강화

자료: 보건복지부

다음으로 관계부처 합동대책인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2026.8.11.)은 고립, 위기가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등 자살 위기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상 9대 분야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다.

한편, 정부는 2026년 10월 12일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적극적 발굴·예방, 채무·빈곤·고립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응, 대상별 맞춤형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민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 계획은 9대 분야별 대책을 통합·조정·점검하여 수립되었으며, 대상별·상황별 주관부처를 지정하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여부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③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체계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고,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과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사회적 고립 대응 관련 국정과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관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고독사예방협의회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동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관련 중앙·지방 추진체계]

구분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정책 및 사업 총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총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사회적 고립 대응 국정과제 총괄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책대상 및 사업에 따른 고독사 예방·사회적 고립 대응 과제 추진
지방자치단체	고독사 위험군 발굴·관리,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고독사 예방협의회	중앙부처- 지자체 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등 주요 정책사항 협의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④「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주요 내용

정부는 2026년 8월 11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은 2030년까지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70%, 사회적 고립도 27% 달성을 목표로 ① 자살·고립 위기신호 포착, ②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③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한 고립 예방 연결 및 서비스, ④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 구축의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의 주요 추진내용]

분야	주요 추진내용
자살·고립 위기신호 포착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한 자살위험자 기획 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고도화, 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간 서비스 의뢰 체계 구축, 민간 인적안전망 협력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자살고위험군 긴급생계비 신속 지원,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한 고립 예방 연결 및 서비스	고립·은둔청년 지원, 중장년 맞춤형 서비스, 기초연금 개편, 노인 일자리 확대, 고립노인 대상 통합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 구축	AI 기반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 구축 ISP, 민간기업 고립예방·심리케어 서비스 확산 지원, 지역별 자살예방관 지정·운영, 국가자살대응실 설치·운영,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 마련

자료: 보건복지부

세부적으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금융위기가구 1만 6,000명에 대한 집중 발굴을 시작하였으며, 2026년 10월에는 금융위기정보 3종을 활용한 발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7년에는 AI 기반 위기가구 통합발굴체계 구축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6년 3월 243개 지방자치단체별 자살예방관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2027년 국가자살대응실 개소를 위한 예산 및 직제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

본 분석에서는 분석에서는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포괄하는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2026.8.11.)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동 대책의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총 31개 정책·사업 항목을 검토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사업은 동 대책의 4개 분야에 따라 ① 자살·고립 위기신호 포착, ②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③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한 고립 예방 연결 및 서비스, ④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 구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위기가구의 발굴부터 지원 연계 및 대응체계 구축에 이르는 사업의 추진현황과 2027년도 예산안을 분석하였다.

소관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23개로 가장 많고, 성평등가족부 3개, 국토교통부 2개, 통일부·국가보훈부·금융위원회가 각각 1개이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가 16개로 가장 많고, 양성평등기금 3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개, 국민건강증진기금·보훈기금이 각각 1개이며, 비예산 과제는 9개이다.

관련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고도화 등 위기가구 발굴사업, 긴급복지·기초생활보장 등 경제적 지원사업,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돌봄서비스, AI 기반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 구축 등 대응 기반 사업으로 구성된다. 2027년도 예산안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기능 고도화 5억 3,700만원, AI 기반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6억 5,700만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지급 52억 5,100만원 등이 반영되었다.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관련 주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자살, 고립 위기신호 포착	보건복지부	일반 회계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기반 구축)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운영)	7,508 (203)	8,195 (636)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	627	537

(단위: 백만원)

분야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희망드림 꾸러미 지원)	-	750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위기가구 발굴활동 보상)	-	840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긴급복지	-	5,251
			생계급여	9,172,676	10,800,392
			의료급여	9,839,997	12,297,325
	국토교통부		취약계층 주거지원	10,000	11,000
			주거급여지원	3,230,896	3,832,761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한 고립 예방 연결 및 서비스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구축	1,986	7,610
		일반회계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7,508 (6,900)	8,195 (6,900)
		일반회계	기초연금 지급	23,137,815	25,652,968
		지특회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자율, 지원, 제주, 세종)	2,359,907	2,486,083
		일반회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91,416	155,793
		지특회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2,937	36,275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한 고립 예방 연결 및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모두의 가족사업)	-	28,747
		양성평등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683	825
		양성평등기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이주배경가족 지원)	151,379 (2,746)	67,968 (3,437)
	통일부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3,868 (810)	3,868 (600)
	국가보훈부	보훈기금	고령독거유공자안부확인 서비스운영	552	552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AI 기반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 ISP)	-	657

(단위: 백만원)

분야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일반회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	6,500	2,000
		국민건강증진기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국가자살대응실 설치·운영)	-	951

주: 1. 위 표는 검토대상인 총 31개 정책·사업 항목 중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비예산 과제 9개는 제외함
2. 대책 내 세부사업 전체 예산과 내역사업 예산이 혼재되어 있어 합계는 산출하지 않았음
자료: 관계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관련 사업에는 기존 복지급여·돌봄사업과 신규·확대 사업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세부사업 전체 예산을 동 대책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동일 세부사업이 복수의 추진과제에 포함되고, 세부사업 전체 예산과 대책 관련 내역사업 예산이 혼재되어 있어 예산 합계는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관련 사업 현황표에서는 비예산 과제 9개를 제외하였다.

나. 분석의견

(1) 자살·고립 위기신호 포착

① 위기가구 발굴체계 및 지원 연계

첫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1]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규모뿐 아니라 실제 조사 및 지원 연계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굴체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보건복지부가 추진 예정인 위기정보 확대와 발굴모형 개선이 지원성과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기능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운영 및 기능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 내역사업은 복지제도 신설·변경에 따른 시스템 기능개편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개선을 위한 5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다.

1) 일반회계 2640-300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발굴대상자는 2022년 120만 8,086명에서 2025년 137만 1,30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는 60만 6,101명에서 87만 6,613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발굴대상자 대비 지원율도 50.2%에서 63.9%로 상승하였다.

다만 발굴대상자 중 복지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은 인원은 2025년 49만 4,694명으로, 현장방문 후 종결 20만 6,966명, 조사종결 21만 6,621명, 조사 중 7만 153명, 미처리 954명으로 구분된다. 현장방문 후 종결은 지원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이며, 조사종결에는 사망·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가 포함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소재 미확인 및 장기출타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연계하고 있으며, 2025년 사실조사 의뢰 실적은 1만 4,776명이다.

이처럼 미지원 내역에는 종결 사유와 조사·처리 단계가 서로 다른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지원 규모만으로 발굴체계의 효과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장방문 후 종결 및 조사종결 대상자는 종결 사유별 현황과 후속 확인 조치의 실적 및 결과를 점검하고, 조사 중 및 미처리 대상자는 조사 진행상황과 처리 결과를 관리하여 지원 필요성이 확인된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미조사·미지원 가구 현황]

(단위: 명)

연도	발굴 대상자	복지 서비스 지원	복지서비스 미지원 내역				
			미지원 소계	현장 방문 후 종결[1)]	조사 종결[2)]	조사중	미처리
2022	1,208,086	606,101	601,985	326,242	180,296	93,265	2,182
2023	1,388,689	686,439	702,250	398,808	183,479	118,913	1,050
2024	1,423,466	831,660	591,806	283,341	227,605	80,044	816
2025	1,371,307	876,613	494,694	206,966	216,621	70,153	954
2026	872,798	436,991	435,807	118,636	118,068	50,961	148,142

주: 1) 방문 후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2) 사망, 거주지 불명등으로 조사 종결
1. 2026년 9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6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기능 고도화의 일환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 연계 확대와 위기정보 변동사항 제공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에는 위기정보 확대 및 발굴모형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기존 발굴모형의 운영실적과 개선 전후 성과를 비교하여 이러한 개선이 실제 지원성과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2] 사업의 고독사 위기 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군의 발굴부터 위험도 판단,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의 역할분담 및 연계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고독사 위기 대응시스템을 개통하여 정신건강, 금융연체, 전력 사용량 변화 등 2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2026년 8월 기준 발굴대상자 약 13만명 중 약 10만명에 대한 상담·조사를 실시하고, 약 4만 3,00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연계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에는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사업의 고독사 위기 대응시스템 관련 예산으로 6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다.

한편, 고독사 위기 대응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활용하는 위기정보와 주요 발굴대상에 차이가 있으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및 지원으로 연계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26년 1~3차 발굴에서 두 시스템의 발굴대상자는 총 58만 7,784명이며, 이 중 중복 발굴된 대상자는 1,768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중복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 복지사각지대 업무 담당자가 초기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독사 위기 대응시스템에서도 확인·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정보 공유체계가 초기 상담결과의 공유를 넘어 실제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전체의 서비스 지원실적은 고독사 위험자 10만 9,654명 중 8만 6,250명이며, 타 사업 연계는 1만 8,960명, 사후관리는 1,316명으로 나타났다.[3] 다만 이는 고독사 위기 대응시스템을 통한 발굴·지원실적과 구분

2) 일반회계 2639-302

되는 수치이므로, 동 시스템의 상담·조사, 위험도 판단,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실적을 단계별로 파악하고 지원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독사 위험자 발굴 현황]

(단위: 명)

고독사 위험자 수	서비스 지원자 수 (A=B+C)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유형별 지원자 수							타 사업 연계(C)
		지원자 수 (실인원)(B)	소계	안부 확인	생활 환경개선	관계형성 프로 그램 등	사후 관리	기타	
109,654	105,210	86,250	104,339	61,590	18,896	12,659	1,316	9,878	18,960

자료: 보건복지부

종합하면, 고독사 위기 대응시스템의 운영 초기 단계인 만큼, 발굴대상자의 상담·조사, 위험도 판단, 서비스 지원 및 사후관리 실적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각 단계별 처리현황과 서비스 미연계 사유 등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의 발굴 규모뿐 아니라 실제 지원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② 위기가구 방문상담 지원 및 성과관리

희망드림 꾸러미 지원[4]은 방문상담이 필요한 가구의 실제 규모와 지역별 수요에 근거하여 지원지역과 물량을 산정하고, 생활물품 제공 자체보다 실제 상담과 후속 복지서비스 연계 여부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5]

동 사업은 위기상황 파악을 위해 방문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의 가정을 최초 방문할 때 2만 5,000원 상당의 식료품 등 생활물품을 제공하여 초기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후 가정방문을 통해 가족구성, 경제상황, 건강상태 및 주거실태 등을 확인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나 민간자원을 연계한 뒤 사후관리까지 실시하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7년도 예산 7억 5,000만원은 1,000개 읍·면·동에서 각 100가구씩 총 10만 가구에 2만 5,000원 상당의 꾸러미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되어 있다. 최

3)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2026. 10.

4) 일반회계 2631-303

5)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2026. 10.

근 5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 대상자 규모 및 평균 방문상담실적을 고려하여 1,000개 읍·면·동을 선정하고 각 지역의 지원량을 100가구로 설정했으나 사업대상이 모든 발굴대상자가 아니라 '위기상황 파악을 위해 방문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인 만큼, 전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규모보다는 실제 방문상담이 필요하거나 접근이 어려웠던 가구의 지역별 규모를 파악하여 지원지역과 물량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동 사업은 최초 방문상담 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가 지급 사유와 횟수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의 경우에도 단순한 꾸러미 지급건수만을 관리하기보다는 제공 이후 실제 상담이 이루어진 비율, 가정방문 완료율, 상담 결과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민간자원 연계 여부 등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후관리 단계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와 위기상황 재발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생활물품 제공이 실제 초기접근 개선과 후속지원으로 이어졌는지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규모와 지역별 배분을 조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방문상담 수요와 사업 운영실적을 토대로 지원물량 및 지원기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담 이후 복지서비스 연계성과를 사업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동 사업이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초기접근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① 경제적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체계

정부는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긴급복지[6] 신속지원과 2027년 신규 생계지원 우선지급 제도의 시행에 앞서 지원대상 및 적용기준을 구체화하고, 금융위기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가 필요한 복지급여와 서비스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에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기로 인한

6) 일반회계 1133-300

자살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채무조정 및 주거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자살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생략하고 긴급복지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며, 2027년부터 읍·면·동 현장 재량으로 소액의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긴급복지 예산안에는 「생계지원 우선지급」이 신설되었으며, 관련 예산으로 52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다.[7)]

[2027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지급 예산안 및 신속지원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사업 내용	읍·면·동 현장에서 긴급생계비 30만원 우선지급
지원계획	2만 2,880건
지원단가	건당 30만원
국고보조율	76.5%
2027년 예산안	52억 5,100만원
기존 긴급복지 신속지원 실적	2025년 신속처리율 98.5%

주: 2027년도 예산안은 지원계획 2만 2,880건, 건당 지원단가 30만원 및 국고보조율 76.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임. 기존 신속처리율은 신규 우선지급 제도의 실적이 아님
자료: 보건복지부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도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의 통보 후 시·군·구가 3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신속처리율은 98.5%로 나타났다.[8)]

따라서 신규 생계지원 우선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절차에 비해 실제 지원 시점이 어느 정도 단축되는지, 어떠한 위기상황에서 차별화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대책에 제시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현장 확인 생략과 30만원 우선지급의 적용대상 및 절차가 동일한지, 자살고위험군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것인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규 우선지급 30만원을 기존 생계지원의 일부로 처리하는지 또는 별

7)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2026. 10.

8)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2026. 10.

도 지원으로 처리하는지, 이후 정식 생계지원이 결정될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는지, 우선지급 대상자가 기존 생계지원 예산 산출건수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조사·적정성 심사 및 환수 절차의 적용방식도 사업 시행 전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9)]

한편, 경제적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긴급한 생계비 지급뿐 아니라 채무조정, 기초생활보장 및 주거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로의 연계도 중요하다. 따라서 긴급복지지원 이후에도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연계되고 정부는 금융위기정보 등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과 금융복지 지원이 연계[10)] 될 수 있도록, 금융위기가구의 발굴·조사·지원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금융복지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의뢰 및 지원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긴급복지 신속지원의 적용기준과 신규 생계지원 우선지급의 운영방식을 구체화하는 한편, 금융위기가구의 발굴 이후 긴급복지지원 및 금융·복지서비스 연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한 고립 예방 연결 및 서비스

①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지원체계

첫째, 홀로서기 스쿨은 연령·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1인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생애주기별 생활상의 어려움과 정책수요에 차이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생애주기·생활영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 규모와 프로그램 구성 등을 적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11)]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12)]의 내역사업인 **모두의 가족** 사업 중 홀로서기 스쿨은 연령 및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1인가구를 대상으로 관계·돌봄·소비·안전·주거 등 5대 생활역량을 중심으로 교육 및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지원이

9)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2026. 10.

10)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금융위기가구 1만 6,000명을 집중 발굴하고, 금융위기정보 3종을 활용한 발굴 확대 및 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간 서비스 의뢰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2026. 10.

12) 양성평등기금 2356-432

필요한 청년 1인가구 등에 대해서는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7년도 모두의 가족사업 예산안에는 287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홀로서기 스쿨을 통해 1인가구의 생활역량 강화 및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인가구는 2015년 520만 3천 가구에서 2024년 804만 5천 가구, 2025년 824만 4천 가구로 증가하였다.[13] 또한 「제5차 가족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1인가구가 된 이유와 생활상 어려움, 필요한 정책지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1인가구의 생활역량 강화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1인가구 생활역량강화 모델(안)」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를 청년·중장년·노년으로, 생활영역을 관계·돌봄·소비·안전·주거의 5대 생활영역별로 지원모델을 구분하여 설계하고 있다.

[1인가구 생애주기·생활영역별 생활역량강화 지원모델(안)]

영역	청년	중장년	노년
관계	관계 확장	관계 유지	관계 안정화
돌봄	자기관리 습관 형성	지속가능한 관리	건강 및 정서적 보호
소비	형성	관리	보호
안전	능동적 대응	균형 유지	보호 중심
주거	적응 및 공간 효율화	공간 유지 및 관리	공간 안전 강화
핵심요인	• 관계형성 • 정체성 및 경제적 자립 기초	• 고립 위험 관리 • 사회참여 기회 • 돌봄 연결 지원	• 고독사 예방 • 긴급 대응 • 관계재연결 및 새 관계망 형성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홀로서기 스쿨은 연령 및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1인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가구가 된 원인과 생활상 어려움 및 필요한 정책지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생애주기별 1인가구의 규모와 생활상의 어려움 및 정책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별·생애주기별 수요를 고려하여 프로그램별 지원대상과 사업량을 적정하게 설

13)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한 생애주기에 속하더라도 생활여건과 필요한 지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6년 시범사업의 운영결과는 참여인원과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생활역량 강화 등 사업효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2027년 사업 확대 규모와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청년 1인가구 상담 지원은 기존 심리상담 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 홀로서기 스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2026년 6~8월 가족센터 2개소에서 1인가구 생활역량강화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총 142가구를 지원하였다. 시범사업의 참여자 만족도는 각각 4.59점과 4.85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2027년에는 가족센터 237개소를 통해 일반 프로그램 약 1만 2,000가구와 청년 특화 프로그램 약 2,8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1인가구 생활역량강화 프로그램 시범사업 현황 및 2027년 추진 계획]

구분	2026년 시범사업	2027년
사업기간	2026.6.~8.	2027
사업목적	생활역량강화 서비스 모델의 실효성·적합성 현장 검증 및 표준화 기초자료 마련	표준화 기초자료 마련 1인가구의 생활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지원규모	142가구	일반 약 12,000가구, 청년 특화 약 2,800가구
수행센터	가족센터 2개소 (대전광역시, 울산 남구)	가족센터 237개소
주요내용	기본·심화 역량강화 모듈	일반 프로그램 및 청년 특화 프로그램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시범사업의 운영결과는 참여인원과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 사업목적인 1인가구의 생활역량 강화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원규모와 수행센터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확대 규모와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26년 추진 중인 1인가구 역량강화 사업 개발 연구에 시범사업의 효과에 대한 성과분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2027년 사업 추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홀로서기 스쿨의 청년 특화 프로그램은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8회기의 상담을 지원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두 사업은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청년 특화 프로그램은 청년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상담내용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기존 심리상담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가족센터에서 별도로 지원할 필요성과 사업의 차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② 대상별 복지·돌봄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첫째,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14]는 안전확인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원 필요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원활히 협력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ICT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33억 3,800만원 증가한 362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장비 2만 대를 추가 공급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의 연계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 사업의 실제 이용가구는 2022년 16만 7,855가구에서 2025년 27만 6,954가구로 증가하였으며, 화재감지·응급호출·활동미감지 등에 따른 조치실적은 같은 기간 13만 1,187건에서 38만 5,066건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이러한 조치실적은 응급상황 대응 및 안전확인 현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현황까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831-300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및 대응실적]

(단위: 가구,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8월
이용가구	167,855	238,806	268,505	276,954	275,565
화재감지·응급호출·활동미감지 조치실적	131,187	182,071	341,608	385,066	315,028

주: 조치실적에는 활동미감지에 따른 안전확인이 포함되며, 실제 응급환자 발생건수와는 구분됨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은 ICT 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는 비대면 돌봄서비스로서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응급상황 대응 및 안전확인 실적을 사회적 고립 예방 효과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기대상자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자살시도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시·군·구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복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련 수행인력과 안전확인 결과 등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에게도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연계·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응급상황 대응 및 안전확인 과정에서 추가적인 복지·돌봄 지원 필요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원활히 협력할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관련 사업과의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절차를 점검하고, 2027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의 연계 협력방안 마련 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계부처는 부처별 안부확인서비스의 지원대상과 기능 차이를 고려하여 역할분담 및 연계체계를 점검하고, 안부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위기대상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통일부·국가보훈부·행정안전부는 각각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안부확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15]는 ICT 장비를

활용한 응급상황 감지 및 대응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16]의 내역사업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은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기적인 안부확인과 AI 돌봄전화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의 **고령독거유공자 안부확인서비스운영**[17]은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IoT 기기 등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공동체 구축(자율)**[18]의 내역사업인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와 우체국 간 협력을 통해 집배원이 위기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확인된 위기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성을 검토하며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각 사업은 지원대상과 서비스 제공방식에 차이가 있어 유사한 기능만으로 중복사업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지원대상의 중첩 가능성과 실제 중복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여 부처별 역할분담 및 연계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처별 안부확인 및 후속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상황 대응 및 안전확인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통보 및 관련 서비스 수행인력과의 정보 공유 절차를 두고 있다. 통일부의 취약계층 안부확인 사업은 실제 이용가구가 2024년 530가구에서 2025년 1,250가구로 증가하였으며, 위기징후 발견 시 하나센터 등을 통해 관계기관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9월 말 기준 유선확인 2만 9,336건, 현장출동 212건의 실적과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서비스 연계 사례가 확인된다. 행정안전부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지원인원이 2024년 2,656명에서 2025년 5,77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7월 말 기준 7,145명에 대해 안부확인을 실시하였다. 또한 안부확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여 긴급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는 각 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안부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위기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1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831-300

16) 일반회계 2331-302

17) 보훈기금 2160-476

1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39-308

서비스 연계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2027년 성과지표로 안부확인서비스 만족도 75점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기징후 발견 및 후속 지원 연계 실적 등을 성과관리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처별 안부확인사업 현황]

구분	보건복지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사업명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고령독거유공자 안부확인서비스운영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공동체 구축(자율)(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주요 목적	응급상황 신속 대응 및 예방적 돌봄	위기상황 조기 발견, 정서적 지지 및 생활안정 지원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망 약화 등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을 통한 신속 대응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지원대상	독거노인·장애인 등	고령·독거·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고독사 위험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	중장년층 1인가구, 고립청년, 조손가구 등 주기적 안부확인이 필요한 위기가구
안부확인 방식	ICT감지기·응급호출기를 활용한 24시간 비대면 안전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안전확인	유제품 배달을 통한 정기 안부확인. AI 돌봄전화	IoT 기기 활용,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출동	우체국의 집배원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면방식으로 확인
추진 체계	보건복지부(총괄), 지방자치단체(대상자·수행기관 선정), 지역센터(모니터링·안전확인), 소방서(응급상황 대응)	통일부·남북하나재단(사업관리), 하나센터·hy (안부확인 및 위기상황 공유), 테스트웍스 (AI 돌봄전화 수행)	국가보훈부(총괄), 민간사업자(상시 모니터링·현장 출동), 27개지방보훈관서(관리·감독)	행안부 (지자체 모집공고, 지자체 선정 보조금 교부) 지자체 (공모사업 신청(시.도), 우체국협약체결 및 사업실시)

구분	보건복지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위기대응 및 서비스 연계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 신고·응급관리요원 조치, 자살시도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시·군·구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 통보	위기징후 발견 시 hy·하나센터 간 상황 공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연계	이상징후 발생 시 유선확인·현장출동,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서비스 연계 사례 확인	우체국에서 안부확인 결과(체크리스트)를 지자체에 송부 → 지자체에서 결과 내용 확인 및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여부 파악 (단,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연계)
2027년 예산안	362억 7,500만원	8억 1,000만원	5억 5,200만원	5억 2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4)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 구축

① AI·ICT 기반 위기가구 대응체계 구축 및 활용

첫째, AI 기반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19]은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등과의 기능분담과 통합·연계 범위를 명확화하고,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해 단계별 구축계획과 소요예산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의 내역사업인 AI기반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 ISP는 기존의 경제적 위기 중심 발굴체계를 사회적 고립·돌봄·학대·자살 등 복합적 위기까지 확대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의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6억 5,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경제적 위기정보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으며,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은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 위험군의 발굴·관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규 플랫폼은 이러한 위기정보의 입수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상자별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AI 기반 복합위기 발굴과 관계기관 간 서비스 의뢰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19) 일반회계 2640-300의 내역사업

[AI·ICT 기반 위기가구 발굴 관련 주요 시스템의 기능 및 연계계획]

구분	주요 기능	신규 플랫폼과의 관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경제적 위기정보 등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조사 지원	위기정보 통합 및 발굴모형 연계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 위험군 발굴·관리	고립 관련 위기정보 및 발굴체계 통합 검토
생성형 AI 복지 상담추천시스템	AI 상담을 통한 복지욕구 파악 및 맞춤형 서비스 추천	발굴 이후 상담·지원 기능 연계
복지멤버십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 안내	급여 안내·추천 기능 연계
신규 AI 통합발굴 플랫폼	위기정보 일원화, 대상자 통합 DB, 복합위기 발굴 및 상호의뢰 지원	통합 대상·방식은 ISP에서 구체화 예정

주: 신규 플랫폼과의 관계는 제출자료에 제시된 추진방향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세부 통합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님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만, 기존 시스템별 기능과 데이터의 통합·연계 범위, 기존 시스템의 유지·개편방안 등은 향후 ISP 수립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생성형 AI 복지 상담추천시스템 구축 등이 병행되고 있어, 기존 정보화사업과의 기능분담 및 데이터 연계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ISP 수립, 2028년 플랫폼 구축, 2029년 개통·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8년 구축 소요예산을 약 11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금액은 ISP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통합 대상과 구축범위를 구체화한 후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I 기반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 구축계획 및 연차별 재정소요]

연도	주요 추진내용	소요예산
2027년	통합 플랫폼 ISP 수립	6억 5,700만원
2028년	AI 기반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 구축	약 110억원
2029년	플랫폼 개통 및 운영	미제시

주: 2028년 소요예산은 ISP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추정액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서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ISP 수립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과의 기능분담, 데이터 통합·연계 범위 및 시스템별 유지·개편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구축일정과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발굴된 위기가구가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 업무체계와의 연계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은[20] 복지·돌봄 분야별 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 간 기술·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상용화·확산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사회적 고립, 돌봄부담 증가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복지·돌봄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며,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20억원 감소한 80억원이 편성되었다.

사업내용은 고독사 예방 등 심리케어 AI, 지역특화 복지안내 AI, 에이지테크 기반 고령친화사업, 스마트홈·재가돌봄 융합기술, 돌봄시설 종사자 업무지원 기술 등 5개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된다. 이 중 2026년에 종료되는 단기과제는 8개이며, 2027년에는 장기과제 8개에 대한 계속지원이 계획되어 있다.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 사업의 분야별 추진현황]

분야	주요개발 지원내용	2026년 과제 수 (단기/장기)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고독사 예방 등 심리케어 AI	AI·IoT를 활용한 고립·은둔 위험 감지,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	5 (3/2)	65억원	20억원
RAG 기반 지역특화 복지안내 AI	지역별 복지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	2 (0/2)	20억원	20억원
에이지테크 기반 고령친화사업	AI 맞춤형 보행보조차 등 고령친화제품 개발	1 (0/1)	10억원	10억원
스마트홈·재가돌봄 융합기술	AI·IoT 기반 안전·건강·정서지원 및 재가돌봄서비스 연계	5 (3/2)	65억원	20억원
돌봄시설 종사자 AX 활용기술	AI·IoT·로보틱스를 활용한 시설 이용자 모니터링 및 종사자 업무지원	3 (2/1)	40억원	10억원
합계	-	16 (8/8)	200억원	80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 일반회계 2631-340

동 사업은 복지·돌봄 분야별 특성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 전담기관이 사업관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과제별 수행기업이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에는 장기과제 8개에 대한 연차평가를 거쳐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돌봄 분야의 개발과제가 서로 다른 제품·서비스와 수행체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만큼, 과제별 성과가 개별 기술개발에 머무르지 않도록 상호 연계와 공동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독사 예방 AI, 스마트홈·재가돌봄 기술 등은 위기징후 파악과 안전확인, 상담·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연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기술의 상호운용성과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은 2027년 종료 예정이므로, 개발제품의 실증성과가 실제 복지·돌봄 현장에서의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고독사 예방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분야별 과제의 개발·실증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과제 간 기술·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기존 복지·돌봄서비스와 연계한 상용화·확산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② 범정부 대응체계

국가자살대응실[21]은 조직·정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전용 정보시스템도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단계에 있어 2027년 1월 운영 개시 시점의 수행업무와 인력 규모가 불확실하므로,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의 직제 협의를 조속히 확정하고, 국가자살대응실 업무 수행 범위 및 운영 방식, 정보시스템 개통 전까지의 정보 관리 방안, 참여기관 간의 업무 배정 조정 절차 등을 담은 업무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22]

보건복지부는 경찰·소방·응급실·자살예방센터 등 관계기관의 자살위기 대응을 연계·조정하기 위해 2027년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2027년도 예산안에는 국가자살대응실 설치·운영비 9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수도권 1개

21) 국가자살대응실 설치·운영 국민건강증진기금 3346-302의 내역사업

22)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2026. 10.

소를 우선 운영한 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2026년 9월 말 기준 국가자살대응실의 조직·정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며, 총원과 부처별·직무별 인력 배치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1월까지 정원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자살예방정책과 주관으로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나, 당초 계획한 24시간 관계기관 합동 대응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수행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자살대응실 준비 현황]

구분	당초 계획·요구	현재 상태
개소 수	수도권·중부권 2개소	수도권 1개소 집중 운영 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충
조직·정원	관계기관 합동 근무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 중(총원·직급·직종 미제시)
설치비·구축비	당초 예산소요에 포함	직제 협의 과정의 변동성을 이유로 제외
정보시스템	ISP 7억원 요구	ISP 2억 4,200만원 반영, 본 시스템의 총사업비·기간은 ISP 과정에서 구체화 예정
운영 개시	2027년 1월	정원 미확정 시 자살예방정책과 주관으로 업무 개시
업무지침	-	「(가칭)자살긴급대응 업무지침」 마련 준비 중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전용 정보시스템은 2027년도 예산안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비 2억 4,200만원이 반영된 단계로, 시스템 구축 전까지 위기대상자 정보의 입수·기록·공유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살위기 사건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후속조치 담당기관의 배정과 기관 간 이견 또는 미조치 발생 시 조정 절차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의 직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초기 운영인력과 업무범위, 정보시스템 구축 전 정보관리 방식 및 관계기관 간 업무 배정·조정 절차 등을 업무지침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5) 자살예방대책의 성과목표와 사업별 성과관리 간 연계

정부는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의 성과목표와 관련 사업의 성과지표를 연계하여 관리하고, 실제 지원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에서 자살고위험군 복지지원 확대,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향상(2025년 64% → 2030년 70%), 사회적 고립도 감소(2025년 33% → 2030년 27%)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다만, 복지사각지대 지원율과 사회적 고립도에 대해서는 정량목표를 설정한 반면, 자살고위험군 복지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량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사업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의 복지서비스 지원율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목표치 60% 대비 63.93%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발굴시스템 개선에 따른 성과지표로 복지서비스 수혜자 비율을 설정하고, 2025년 63.9%에서 개선 후 65%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및 관련 사업의 주요 성과지표]

구분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
범정부 자살예방대책	자살고위험군 복지지원 확대	정량목표 미제시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2025년 64% → 2030년 70%
	사회적 고립도	2025년 33% → 2030년 27%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복지서비스 지원율	2025년 목표 60%, 실적 63.93%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선	복지서비스 수혜자 비율	2025년 63.9%, 개선 후 65%

주: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의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지원대상자를 발굴대상자로 나누어 산출함.'개선 후 65%'는 제출자료상 제시된 목표로, 달성연도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음
자료: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개별 사업의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으나, 범정부 대책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사업의 추진성과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발굴대상자 중 지원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실제 지원 이후의 위기상황 개선 여부와는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자살고위험군 복지지원 확대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대책의 주요 목표와 개별 사업의 성과지표 간 연계성을 점검하는 한편, 발굴 이후 실제 지원 연계 및 사후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책 추진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13 지역필수공공의료 지원 사업 분석: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중심으로

가. 현 황

(1) 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 배경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어 시급성과 중대성이 큰 의료분야이나, 그간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와 인력·시설 등 보건의료자원 및 의료이용의 수도권 편중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건강결과(치료가능사망률), 의료이용(자체충족률), 의료자원(의사 수, 거점병원 인력) 등의 지표를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사망률[1]은 2015년 52.0명에서 2024년 43.4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지역 간 격차비[2]는 1.30배에서 1.44배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 시·도 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를 2015년 1.31배에서 2025년 1.15배로 줄이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입원 재원일수 기준 자체충족률[3]의 지역 간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2024년에도 최대·최소 지역 간 차이가 58.3%p(격차비 2.8배)에 이른다.[4] 즉, 전국 평균 지표의 개선과 별개로 지역 간 의료격차는 여전히 크다.

의료자원 측면에서도 2025년 12월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69명, 경북 1.43명으로 약 2.6배 차이가 난다. 지역의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 국립대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2.3~3.3명)는 수도권 대형병원 5개소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치료가능사망률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조기 사망의 비율로, 연령별 사망률에 표준인구의 연령 구조를 적용한 연령표준화사망률(인구 10만명당)로 산출한다.

2) 격차비(전국 지역격차비)는 17개 시·도 중 지표값이 가장 큰 지역의 값을 가장 작은 지역의 값으로 나눈 것으로, 값이 클수록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자체충족률은 해당 지역 거주자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보건의료원에 입원한 재원일수 중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같은 종류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재원일수의 비율로, 시·도 단위로 산출한다.

4)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026.7.

(4.1~4.8명)보다 적고, 2026년 지역 국립대병원의 내과 전공의 1년차(전기) 충원율은 23.2%에 그쳐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양성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

[지역 간 의료격차 관련 주요 지표]

구분	지표	현황	기준시점
건강결과	치료가능사망률 (인구 10만명당)	전국 52.0명→43.4명, 지역 간 격차비 1.30배→1.44배	2015년 → 2024년
의료이용	자체충족률 (입원 재원일수 기준)	최대·최소 지역 간 차이 58.3%p (격차비 2.8배)	2024년
의료자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1)]	서울 3.70명, 전남 1.71명, 충남 1.57명, 경북 1.43명	2025년 12월
	10병상당 전문의 수	수도권 대형병원[2)] 5개소 4.1~4.8명, 지역 국립대병원 2.3~3.3명	2026년 6월 발표
인력 양성	지역 국립대병원 내과[3)] 전공의 충원율	23.2% (수도권 대형병원[2)] 5개소 충원율 100%, 강원대·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은 지원자 없음)	2026년 1년차 전기 모집

주: 1) 의사 수는 전문의, 레지던트, 인턴, 일반의 수의 합계임
2) 수도권 대형병원 5개소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소위 '빅5' 병원을 말함
3) 보건복지부·교육부는 필수의료 과목 중 대표 진료과목으로 '내과'를 예시로 제시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026.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2026.9.3.; 보건복지부·교육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안)", 2026.6.15.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 및 제도 추진 현황

① 주요 정책 추진 경과

정부는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중진료권별 종합병원급 공공·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체계를 도입한 이후,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과 지역 간 격차에 대응하는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특히 2024년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충을 목표로 국립대병원 및 지역 공공·민간병원 집중 육성,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세

부 과제로 제시하였다.[5)]

또한, 2025년 9월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국정과제 84)가 포함되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과 권역 거점병원 육성,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확충,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정책수가·지역수가 도입, 지역·필수의료 재원 마련 등이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다.[6)]

이후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5.1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른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2026.8.20. 시행),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필수의료특별법”) 제정(2026.3.10. 공포)으로 인력·기관·재정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26년에 발표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6.15.)과 “AI 기본의료 전략”(7.22.)의 과제 중 국립대병원 특화지원과 취약지 일차의료기관 AI 바우처 등은 2027년도 예산안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지역필수의료 관련 주요 정책 및 입법 추진경과]

시기	정책·법령	주요 내용
2018.10.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 권역책임의료기관(국립대병원 등)·지역책임의료기관(중진료권 약 70개) 지정 체계 도입 - 시·도 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축소 목표(2015년 1.31배 → 2025년 1.15배)
2023. 1.	필수의료 지원대책	- 응급수술 등 공공정책수가 가산, 분만취약지 지역수가 적용, 지역 전공의 배정 연계
2023.10.~ 2024. 2.	필수의료 혁신 전략(2023.10.19.),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024.2.1.)	- 4대 과제(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보상체계 공정성), 국립대병원 육성,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5)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2024.2.

6) 국정과제 84의 세부과제인 84-3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9.3.).

시기	정책·법령	주요 내용
2024. 8.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 안전정책·전문진료·응급진료 대기·지역의 4대 공공 정책수가 도입 추진
2025. 9.	국정과제 84(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 국립대병원 소관 이관 및 권역 거점병원 육성, 공공병원 확충, 지역의사제, 공공정책수가·지역수가, 지역·필수의료 재원 마련
2025.12.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지원, 10년 의무복무(2027학년도 32개 대학 490명 첫 선발)
2026.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	-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2026.8.20. 시행) -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교육부 소관 유지
2026. 3.	「필수의료특별법」 제정	- 필수의료종합계획,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 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필수의료취약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2027.1.1. 시행)
2026. 6.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	-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개 분야 역할 강화, 동 특별회계를 통한 인력·인프라·AX·네트워크 지원
2026. 7.	AI 기본의료 전략	- 보건소 등 취약지 일차의료 AI 패키지, 공공병원 AI 전환 등 AI를 활용한 지역 의료격차 완화
2026. 9.	2027년도 예산안	-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세출 1조 2,655억원), 21개 세부사업 편성

주: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국정과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의 공포·시행일은 발표 당시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②「필수의료특별법」 제정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지역의료발전기금으로 제시되었고, 2024년 발의된 법안들의 경우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함께 운용하는 방식(의안번호 제694호),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의안번호 제1617호)하는 방식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7)]

7) 의안번호 2200694(김미애의원 대표발의, 2024.6.20.)는 필수의료특별회계(안 제16조~제24조)와 지역

이에 필수의료를 집중적·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필수의료특별법」(법률 제21439호, 2026.3.10. 공포)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규정(제25조~제32조)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처음으로 편성하였다.

[「필수의료특별법」상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관련 주요 규정]

구분	조문	주요 내용
설치·관리	제25조, 제26조	필수의료를 집중적·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관리
세입	제27조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5, 담배 등에 부과되는 관세액(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분 제외),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차입금 등
세출	제28조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양성·확충, 진료협력체계 운영, 책임·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기반 확충,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특별회계 운용 경비 등
차입·이월·잉여금	제29조~제31조	국회 의결 범위의 장기차입과 일시차입, 미지출 세출예산의 이월 사용, 결산상 잉여금의 다음 연도 세입 이입
계획·평가	제5조, 제9조	5년 단위 필수의료종합계획(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포함) 수립, 진료권별 공급의 적정성·필수의료 자체충족률·진료협력체계 운영 등에 대한 매년 성과평가

자료: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만, 동 특별회계의 재원 조달 및 활용계획을 포함한 필수의료종합계획(제5조) 및 성과평가(제9조)는 법 시행 이후 마련될 예정인 바, 2027년도 예산안은 중장기 계획과 성과평가 체계보다 특별회계와 예산이 먼저 마련된 상태에서 편성되었다.

의료발전기금(안 제25조~제29조)을, 의안번호 2201617(김윤의원 대표발의, 2024.7.11.)은 지역·필수의료기금(안 제30조~제33조)을 설치하도록 제안하였다.

(3)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2,655억 5,300만원으로, 담배 개별소비세 1조 591억 8,300만원(83.7%), 담배 등에 부과되는 관세 31억 1,700만원(0.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032억 5,300만원(16.1%)으로 구성된다.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7년 예산안	비중	편성근거
개별소비세 (22-221)	1,059,183	83.7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5, 재정경제부 세제실 중기 세입전망
관세 (31-311)	3,117	0.2	최근 3년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8.52%) 적용
기금예수금 (94-943)	203,253	16.1	2027년 사업비 부족분 예수
합계	1,265,553	100.0	-

자료: 보건복지부

(4)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① 세부사업별 현황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2,655억 5,300만원으로, 21개 세부사업의 총지출 1조 2,613억 8,600만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41억 6,700만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동 특별회계의 투자방향으로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21개 세부사업 중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AI 기본의료 역량 확보 지원 등 3개는 신규사업(3,688억 4,200만원, 29.2%)이며, 나머지 18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일반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응급의료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에서 이관된 사업(8,925억 4,400만원, 70.8%)이다.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종전 회계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B-A	(B-A)/A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신규	-	360,455	360,455	순증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 패키지(AXIS)	균특회계 등	119,406	255,075	135,669	113.6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균특회계	228,012	235,019	7,007	3.1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일반회계	169,034	151,207	△17,827	△10.5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응급기금	82,600	73,815	△8,785	△10.6
국립대병원 지원	고특회계	70,131	48,761	△21,370	△30.5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응급기금	15,388	30,671	15,283	99.3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일반회계	16,280	23,054	6,774	41.6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응급기금	16,371	14,381	△1,990	△12.2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건증기금	10,144	11,059	915	9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지원	건증기금	6,554	10,147	3,593	54.8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일반회계	8,239	9,252	1,013	12.3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일반회계	5,717	6,385	668	11.7
ICT 활용 필수의료 협력네트워크 구축	일반회계 등	5,159	5,655	496	9.6
지역암센터 역량강화	건증기금	4,985	5,312	327	6.6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신규	-	4,387	4,387	순증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일반회계	4,900	4,375	△525	△10.7
AI 기본의료 역량 확보 지원	신규	-	4,000	4,000	순증
재활병원 지원	건증기금	13,968	3,928	△10,040	△71.9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일반회계	1,014	2,240	1,226	120.9
지역필수의료 정책개발 지원	일반회계	300	2,208	1,908	636
합계	-	777,967	1,261,386	483,419	62.1

주: 1. 2026년 예산은 종전 회계·기금의 본예산 기준이며,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는 AXIS로 분리된 내역을 제외한 금액임

2. AXIS의 2026년 예산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54억 600만원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이체된 공공임상교수 지원분 40억원의 합계임

3. 국립대병원 지원의 2026년 예산은 본예산 1,283억 5,700만원에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로 이관되지 않은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포함)·서울대학교치과병원 대상 사업(582억 2,600만원)를 제외한 금액임

4.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는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등 기존 4개 사업의 의무편성액(434억 7,350만원)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만, 세부사업 단위의 신규·이관 구분은 사업 내부의 구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신규사업인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는 기존 4개 사업[8]의 의무편성액(434억 7,350만원)이, 이관사업인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 패키지(AXIS) 사업에는 지역국립대병원 주요분야 특화지원(1,188억원), 필수진료과 신규채용(82억 9,100만원) 등 새로 편성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관사업의 2026년 예산을 비교기준으로 보면, 동 특별회계 전체 증가액 4,834억 1,900만원은 신규 3개 사업(3,688억 4,200만원)과 AXIS 사업 확대(1,356억 6,900만원)에서 발생하였고, AXIS를 제외한 이관사업 17개는 210억 9,200만원(3.2%) 감소하였다.

② 지원 유형별 현황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에 편성된 사업들은 지원 목적과 내용에 따라 시·도가 지역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직접 기획하는 '지역 주도 포괄 지원',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인력·시설·장비를 종합 지원하는 '거점·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외상·모자·심뇌혈관·암 등 '필수의료 분야별 전문진료체계 지원', 의대생부터 전공의·전문의까지 '필수의료 인력 양성·확보 및 진료환경 지원', '진료협력·접근성 기반 지원'의 5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9]

[지원 유형별 주요 지원 대상·내용과 관련 세출 항목]

지원 유형	주요 지원 대상	주요 지원 내용	관련 세출 항목
지역 주도 포괄 지원	시·도(지방자치단체)	시·도별 배분액 범위에서 지역 의료현황을 고려하여 소아 야간·휴일 진료, 분만취약지 지원, 도서·벽지 진료·이송 등 사업을 기획·시행	제5호
거점·책임 의료기관 역량 강화	지역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특화분야 지원, 필수진료과 전문의 채용, 시설·장비 확충, 진료협력체계 운영, 지방의료원 신축·기능보강	제3호, 제2호

8)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의무편성 사업으로 흡수된 사업들은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소아 야간 진료체계 구축 사업,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사업이다.

9) 이러한 유형 구분은 「필수의료특별법」 제28조의 세출 항목과 대체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원 유형	주요 지원 대상	주요 지원 내용	관련 세출 항목
필수의료 분야별 진료체계 지원	권역외상센터, 모자의료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소아암 거점병원, 지역암센터, 공공전문진료센터,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등	분야별 전문센터의 설치·운영비, 전문인력 수당, 이송체계, 중환자 진료정보시스템	제3호
필수의료 인력 양성·확보 및 진료환경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전공의·전임의, 간호대학 등,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시니어의사,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학비 지원, 수련수당·수련환경 개선, 간호인력 교육 지원, 지역근무수당·채용지원금,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제1호
진료협력·접근성 기반 지원	진료협력 네트워크,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필수의료지원센터, 취약지 일차의료기관, 공공야간·심야약국	원격협진 등 ICT 협력체계, 일차의료 AI 바우처, 지원센터 운영·실태조사, 야간·심야 의약품 접근성	제2호, 제4호, 제5호 등

주: 관련 세출 항목은 「필수의료특별법」 제28조 및 각 사업별 주요 내용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대응시킨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공식 분류가 아님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원 유형별로 보면, 거점·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가 5,388억 5,500만원(42.7%)으로 가장 크고, 지역 주도 포괄 지원 3,604억 5,500만원(28.6%), 필수의료 인력 양성·확보 및 진료환경 1,879억원(14.9%), 필수의료 분야별 진료체계 지원 1,457억 8,100만원(11.6%), 진료협력·접근성 기반 지원 283억 9,500만원(2.3%) 순이다. 2026년 대비 증가분(4,834억 1,900만원)은 신규 지역 주도 사업(3,604억 5,500만원)과 AXIS를 중심으로 한 거점·책임의료기관 지원(1,215억 4,100만원 증가)에 집중된 반면, 필수의료 분야별 진료체계 지원과 인력 양성·확보 유형은 각각 35억 8,900만원(2.4%), 56억 5,300만원(2.9%) 감소하였다.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지원 유형별 예산안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지원 유형	사업 수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비중	B-A	(B-A)/A
지역 주도 포괄 지원 (지역 주도)	1	-	360,455	28.6	360,455	순증
거점·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거점·책임기관)	3	417,314	538,855	42.7	121,541	29.1
필수의료 분야별 진료체계 지원 (분야별 진료체계)	8	149,370	145,781	11.6	△3,589	△2.4
필수의료 인력 양성·확보 및 진료환경 (인력·진료환경)	4	193,553	187,900	14.9	△5,653	△2.9
진료협력·접근성 기반 지원 (협력·접근성)	5	17,730	28,395	2.3	10,665	60.2
합계	**21**	**777,967**	**1,261,386**	**100.0**	**483,419**	**62.1**

주: 1. 지원 유형은 각 세부사업별 지원 목적과 내용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류한 것으로, 하나의 사업이 여러 유형의 내역을 포함하는 경우 주된 내용에 따라 분류함
2. 지역 주도 포괄 지원에는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등 기존 4개 사업의 의무편성액(434억 7,350만원)이 포함됨
3. 비중은 반올림한 수치로 합계가 100.0과 다를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분석의 구성

이하에서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하나의 재정 단위로 보아, 재원(재원 안정성 확보), 지출 구성(편입 기준과 사업 간 조정), 배분(의료공백과 재정여건을 반영한 배분원칙), 성과(회계 차원의 성과목표와 지표) 순으로 분석한다. 개별 사업에 대한 논의는 위원회별 분석에서 다루고, 여기에서는 여러 사업에 공통되는 특별회계 단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10)]

10) 각 사업별 세부 분석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2026.10. 참조

[지역필수공공의료 지원 사업 분석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분	분석의견	주요 내용
재원	⑴ 특별회계 재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세입·세출 전망 제시 및 예수금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세입 정체로 공자기금 예수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별회계 단위 중기 세입·지출 전망 제시 필요 - 경상지출은 항구적 재원으로, 투자 소요는 예수금 등으로 충당하는 조달원칙과 예수금 상환계획 마련 필요 - 첫해 집행가능액을 고려하여 예수 규모와 시기를 집행 일정과 연동 필요
지출 구성	⑵ 특별회계 편입 기준 및 사업 간 조정 기준 마련	-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대한 기여 경로, 외부 평가 결과, 재원 여건을 반영한 편입 기준 마련 및 전국 단위 사업의 지역별 실적 제시 필요 - 같은 기관·인력 공백을 지원하는 사업 간 조정 기준 마련 및 인력 지원수단별 역할 정립 필요
배분	⑶ 의료공백과 재정여건을 반영한 재원 배분원칙 마련	- 수도권 지원 원칙을 정하고 실제 부족 정도를 반영하는 배분원칙 마련 필요 - 수행기관이 없는 공백지역에 대한 공모 외 지원 방안과 국고보조율 차등화 검토 필요
성과	⑷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재구성 필요	- 필수의료 수준과 지역 간 격차를 함께 측정하는 회계 차원 성과목표와 기준값 설정 필요 - 성과 발현 시차를 고려한 결과 지표로 세부사업 지표를 정비하고 자료 간 일치와 평가 지적사항 반영 관리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분석의견

(1)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재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기 세입·지출 전망 제시 및 예수금 관리 방안 마련 필요

① 세입 정체와 예수금 반복 가능성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정체가 예상되는 담배 개별소비세에 자체세입의 대부분을 의존하면서 세출 규모를 먼저 정하고 부족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충당하였고, 연차별 증가 소요를 고려하면 예수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특별회계 단위의 중기 세입·지출 전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자체세입(예수금 제외) 1조 623억원 중 99.7%는 담배 개별소비세이다. 재정경제부의 중기 세입전망에 따르면, 담배 개별소비세 세입은 2027년 1조 592억원에서 2029년 1조 780억원까지 증가한 뒤 2030년 1조 615억원으로 감소하여, 2030년 세입은 2027년보다 0.2% 많은 수준에 그친다.

[담배 개별소비세(100분의 55) 중기 세입전망]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세입 전망	1,059,183	1,072,876	1,077,994	1,061,498

주: 재정경제부 세제실 중기 세입전망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가 추가됨에 따라 담배 개별소비세가 중기적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2031년 이후의 장기 세입전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내 담배 판매량도 2024년 35.3억갑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하여 2년 연속 감소하였다.[11)]

반면,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세출 규모는 세입 전망과 별도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은 특별회계 운영취지를 고려하여 세출 규모를

11) 기획재정부의 "2024년 담배시장 동향"(2025.4.18.)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등의 판매량은 6.6억갑으로 8.3% 증가하여 전체 판매량의 18.4%를 차지하였고, 2024년 담배 제세부담금은 11.7조원으로 전년 수준이었다.

정하고, 세입 추계에 따른 부족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예수금으로 충당하였다. 특별회계 규모의 목표치나 재정운용준칙에 대해서는 1.2조원 수준의 세입 재원 한도 내에서 정부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혔을 뿐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한다는 특별회계의 설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법령 위반의 문제라기보다 세입 여건에 맞추어 세출 규모를 관리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2028년 이후에는 동 특별회계의 지출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사업설명자료의 사업별 중기재정계획은 이관사업 18개 모두 2027년 예산안 금액을 2030년까지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고, 신규사업인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과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반면 개별 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지원 대상이 누적되거나 첫해에 일부 기간만 편성되어 2028년 이후에는 재정소요가 늘어나는 사업이 다수 확인된다.[12)]

[주요 사업의 연차별 증가 소요]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내역)	2027 예산안	2028년 소요	증가 사유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4,387	8,273	지원 학생의 학년별 누적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23,054	26,779	시니어의사·지역필수의사 신규 인원 6개월분 편성
AXIS 필수진료과 신규채용 (인건비)	6,395	12,789	126명 인건비 6개월분→12개월분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360,455	미제시	배분액의 최대 40%까지 인건비 편성 가능

주: 1.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의 2028년 소요는 보건복지부 추계 기준임
2.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의 2028년 소요는 2027년 지원 규모를 유지한다고 가정한 추계이며, AXIS 필수진료과 신규채용은 14개소 × 9명 × 연 203백만원 × 국비 50% 기준임
3.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1,080억원)로 설치하는 시설·장비의 운영비가 2028년 이후 소요되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서상 국비는 2027~2030년 매년 3,605억원으로 동일함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2)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AXIS,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의 연차별 소요에 관한 세부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2026.10. 참조

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전제하더라도 동 특별회계의 부족액은 매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세입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의 전망을, 지출은 사업별 중기재정계획에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의 국비와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사업의 보건복지부 추계를 합한 금액을 적용하고, 예수금 이자는 전년 말 잔액에 현재 공자기금 금리(3.85%)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매년 2,000억원 내외의 공자기금 예수가 필요하고 2030년 말 예수금 잔액은 약 8,356억원, 같은 해 이자는 약 2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세입·지출 및 예수금 추계 예시(2027~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자체세입(예수금 제외)(A)	10,623	10,760	10,811	10,646
총지출(정부 계획 전제)(B)	12,614	12,653	12,692	12,731
예수금 이자(C)	42	78	154	233
예수 필요액(B+C-A)	2,033	1,971	2,035	2,317
연말 예수금 잔액	2,033	4,004	6,039	8,356

주: 1. 지출은 이관사업의 중기재정계획 금액,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국비 연 3,605억원(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기준),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사업의 보건복지부 추계를 합한 금액이며, 관세는 2027년 수준으로 고정함
2. 2028년 이후 이자는 전년 말 잔액에 3.85%를 적용하였으며, 당해연도 신규 예수분의 이자는 반영하지 않음
3.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과 AXIS 신규채용의 2028년 연차 증가분(약 101억원)은 정부 계획에 없어 반영하지 않았고, 시설사업 종료에 따른 지출 감소도 반영하지 않음
4. 정부 계획상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한 추계 예시로, 장래 예산 규모나 적정 차입 규모를 제시한 것이 아님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동 특별회계의 중기재정전망은 2027년 1월에 수립할 예정이고, 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을 포함하는 필수의료종합계획(「필수의료특별법」 제5조)[13]도 법 시행 이후 수립될 예정이다.[14] 즉, 국회는 특별회계 단위의 중기 세입·지출 전망과 중장기 재원계획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 특별회계의 첫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13)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필수의료종합계획이 연계해야 할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 근거 법률 제정 이후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026.7.)

14) 지역필수의료 정책개발 지원 사업에는 필수의료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위탁비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동 특별회계는 세입이 정체하는 가운데 세출 규모를 먼저 정하여 편성 첫해부터 공자기금 예수금에 의존하고 있고, 연차별 증가 소요를 반영하지 않은 정부 계획을 전제하더라도 2030년 말 예수금 잔액이 약 8,3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나, 특별회계 단위의 세입·지출 전망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이후에 마련될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대상 누적과 연차별 증가 소요, 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을 반영한 2027~2031년 특별회계 단위의 세입·지출 전망을 제시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특별회계 규모의 목표 범위와 예수금 의존 수준의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공자기금 예수금 의존 구조의 고착 가능성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의무적·경직적 지출 비중이 높고 인건비 등 경상소요가 누적되는 구조로, 세입이 정체하는 가운데 공자기금 예수가 반복되면 예수금 잔액과 이자 부담이 커지고 2037년 이후에는 원금 상환 부담까지 추가되어 재원 안정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공자기금 예수금의 상환 재원과 일정을 제시하고 세입 부족이 지속될 경우의 재원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동 특별회계 총지출 1조 2,614억원 중 약 7,259억원(57.5%)을 의무적·경직적 지출로 보고 있어, 세입이 부족하더라도 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다. 다만, 이 중 시설확충비 4,090억원(신축공사 확정금액, 필수장비 구입비 등)은 일시적인 투자 성격이어서 사업이 종료되면 지출이 줄어들 수 있고, 2027년에는 그 규모가 공자기금 예수금(2,032억 5,300만원)보다 크므로 현재의 예수금 의존은 일시적일 가능성도 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지출 유형별 비중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금액	총지출 대비 비중	지출 성격
총지출(A+B)	12,614	100.0	-
의무적·경직적 지출(A)	7,259	57.5	-
인건비성 경비	3,169	25.1	매년 반복되는 경상지출
시설확충비	4,090	32.4	신축공사 확정금액, 필수장비 구입비 등 일시적 투자
그 밖의 지출(B)	5,355	42.5	-

주: 2027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2,033억원(세입의 16.1%)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러나 시설 투자는 사업별로 종료되는 반면 인건비 등 경상적 소요는 누적된다. 2027년도 예산안에서도 국립대병원 지원의 시설·장비·정책사업 11개와 재활병원 지원의 권역재활병원 건립비 지원(합계 303억 5,000만원)이 종료되었으나, 인건비성 경비 3,169억원은 매년 반복되고 앞서 본 연차 증가분과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의 인건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 투자가 줄어든 이후에도 공자기금 예수가 이어지면 반복적인 경상지출까지 상환 의무가 있는 차입 재원으로 충당하게 되고, 예수금 잔액이 늘어날수록 이자 부담도 커진다. 앞서 살펴본 추계 예시에 따르면, 예수금 이자는 2027년 42억원에서 2030년 233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세입이 정체하는 상황에서는 이자 지출만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거나 추가 예수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공자기금 예수기간 10년이 모두 거치기간[15]이므로 2037년부터는 예수 원금의 만기가 차례로 도래하는데, 그때까지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새로운 예수금으로 기존 예수금을 상환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같은 담배 관련 재원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 등 자체수입보다 사업비가 큰 구조에서 2011년 처음 공자기금 예수금(700억원)을 조달한 이후 예수 규모가

15) 보건복지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2조에 따라 예수기간을 10년(거치기간 10년)으로 하며, 현재 금리는 3.85%이고 2027년 1월의 금리는 그 시점에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2027년 이자상환액 41억 6,700만원은 예수원금의 2.05%로 연간 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금액(78억 2,500만원)보다 적은데, 이는 예수 시점을 연중으로 가정한 결과로 보인다.

늘어, 2026년 계획 기준 당해연도 예수금이 1조 4,176억원으로 자체수입의 45.8%에 이르고 연말 예수금 잔액은 9,794억원, 누적 이자총액은 2조 2,182억원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 추가 예수금으로 기존 예수금의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16)]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현황(2019~2026년)]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획)
자체수입(A)	28,896	30,459	30,715	29,539	30,998	32,908	29,760	30,944
당해연도 예수금(B)	6,752	7,483	8,459	7,000	7,000	10,777	9,121	14,176
B/A	23.4	24.6	27.5	23.7	22.6	32.7	30.6	45.8
연말 예수금 잔액	4,718	4,574	5,688	5,409	8,077	8,779	5,864	9,794

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기간은 7년이며, 2011년 차입분부터 2018년 이후 원금을 상환하고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2026.7. 을 바탕으로 재작성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2036년까지 원금 상환 없이 예수금 잔액이 누적되는 구조여서, 앞서 본 추계 예시에 따르면 2030년 말 잔액(약 8,356억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2026년 예수금 잔액에 근접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세입 부족이 지속될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세입원 다변화 등이 필요하고, 예수금 의존 문제가 지속된다면 관련 기준과 원칙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17)]

16)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2026.7., p.271~276.

17)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7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5
2. 「관세법」에 따라 담배 등(「관세법」 별표 제4부제24류를 말한다)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액 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제29조에 따른 차입금

그러나 이는 세입 부족이 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대응 방향으로, 공자기금 예수금의 상환 재원과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예수금 의존이 지속되는지를 판단하려면 특별회계 단위의 세입·지출 전망과 판단 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례와 같이 공자기금 예수금에 의존하는 구조는 한번 형성되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동 특별회계는 의무적·경직적 지출 비중이 높고 경상소요가 누적되는 구조여서 시설 투자가 줄어들더라도 공자기금 예수가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예수금 잔액과 이자 부담이 함께 늘어나다가 2037년 이후 원금 상환이 도래하면 새로운 예수금으로 기존 예수금을 상환하는 구조가 고착되어 재원 안정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시 공자기금 예수금의 상환 재원과 일정을 제시하고, 세입 부족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지출구조조정 등의 재원 보완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동 특별회계의 재원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③ 첫해 집행가능액과 예수 규모의 정합성

신규사업의 첫해 집행가능액이 예산 편성액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 시설사업은 집행 여건이 불확실하여 공자기금 예수금이 실제 집행보다 앞서 조달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예수 규모와 시기를 사업별 집행 일정과 연동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차입 재원을 활용하는 회계에서는 예산이 실제로 쓰이기 전에도 이자가 발생하므로, 공자기금 예수 시기와 규모를 실제 예산의 집행 일정과 연동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에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신규사업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3,604억 5,500만원)은 연간(12개월) 소요액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2026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이후 9월말 기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준비 단계에 있다.

6. 그 밖의 수입금

제29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월부터 집행이 필요한 기존 사업의 의무편성액을 제외하고 월할로 단순 계산하면, 4월에 착수하는 경우 첫해 집행가능액은 약 2,812억원으로 편성액보다 약 792억원 적고, 이는 2027년 편성된 공자기금 예수금 규모의 약 39%에 해당한다.[18)]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의 착수 시기별 첫해 집행가능액 추계]

(단위: 억원, %)

구분	1월 착수 (편성액, 12개월)	4월 착수 (9개월)	7월 착수 (6개월)
첫해 집행가능액	3,605	2,812	2,020
편성액 대비 차이	-	△792	△1,585
2027년 예수금(2,033억원) 대비 차이 비중	-	39.0	78.0

주: 1월부터 집행이 필요한 기존 사업 의무편성액(435억원)은 12개월분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편성액은 착수 이후 개월 수로 월할 계산함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시설사업의 집행 여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처의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26.9.)에 따르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사업은 주요 시설·장비·협력체계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이 20~70% 수준이고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었는데,[19)] 2025년 실집행률이 2.4%에 그친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지원은 15억원에서 92억 1,100만원으로, 43.2%인 대전의료원 설립 지원은 10억원에서 70억원으로 2027년에 증액되었다.

또한 AXIS의 지역국립대병원 주요분야 특화지원(국비 1,188억원)은 지방비와 병원 자부담이 각각 396억원씩 필요하나, 국립대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전 당기순손실이 2025년 4,281억원에 이르러 병원 부담분 확보 여부에 따라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18)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2026.7.) 수립 후 최초의 투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8개월 내에 편성된 예산액(3,605억원)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시·도에 배분 및 안내할 계획이며, 특히 1~4개월분 예산은 시설·장비·기반구축 등 연내에 집행 및 성과 확인이 가능한 비경직적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즉각적인 의료공백 해소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19) 기획예산처,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6.9.
- 연장평가는 실집행률 70% 미만 내역을 전년 본예산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93억 9,800만원)과 AXIS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81억 4,200만원) 내역을 감액 편성하는 등 권고사항을 일부 반영하였다.

[AXIS 지역국립대병원(9개소) 주요분야 특화지원의 재원 분담(2027년)]

(단위: 억원, %)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병원 자부담
금액	1,980	1,188	396	396
분담 비율	100.0	60.0	20.0	20.0

주: 기관당 총사업비 220억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립대병원 손익 추이(2021~2025년)]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3	2025
의료이익	△3,619	△4,507	△7,5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전 당기순이익	4,250	△2,734	△4,281
당기순이익	2,982	△2,808	△3,892

주: 서울대병원과 지역 국립대병원의 본원·분원을 포함한 16개 병원 기준이며, 2024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의정갈등 기간을 포함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026.7.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단계에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도 부처가 교부한 시점에 집행으로 처리되므로, 보조사업자 단계의 집행 지연은 특별회계의 이월액이나 결산상 잉여금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즉, 「필수의료특별법」에 따른 이월(제30조)과 잉여금의 다음연도 세입 이입(제31조)만으로는 집행 지연에 따른 예수금 부담을 줄이기 어려우므로, 예수 규모는 교부 단계에서부터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의 첫해 집행가능액은 4월 착수를 가정하더라도 편성액보다 약 792억원 적고, 일부 시설사업과 병원 자부담을 전제로 한 사업도 집행 여건이 불확실하여 공자기금 예수금이 실제 집행보다 앞서 조달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등의 첫해 집행가능액에 비추어 2027년 공자기금 예수금 규모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사업별 준비 수준에 따라 교부 시기와 분할 교부를 조정하여 예수 시기와 연동할 필요가 있다.[20]

20) 다만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흡수 편성된 기존 4개 사업(434억 7,350만원)은 이미 운영 중인 기관을 지원하므로, 신규사업의 준비 상황과 관계없이 교부될 수 있도록 교부 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2)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편입 기준 및 사업 간 조정 기준 마련 필요

① 특별회계 편입 기준

이관사업은 특별회계의 재원 범위 내에서 「필수의료특별법」 상 세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편입되어, 사업별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인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 중 어느 목적에 기여하는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므로, 보건복지부는 특별회계 편입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관사업은 세출 재정규모 내에서 「필수의료특별법」 제28조의 세출 범위에 부합하는 사업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편성 결과 한정된 세출 재정규모에 도달하였다. 즉, 세출 범위에 해당하는지 외에 특별회계에서 관리할 필요성을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이나 절차는 없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 지역필수의료에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사업을 특별회계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고,[21] 이관사업도 특별회계로 옮겨 오면서 다른 사업과의 연계·조정 여부나 지역 단위 배분이 기존 회계·기금에서 수행할 때보다 어떻게 개선되는지 등의 사항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수의료특별법」 제25조는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으로 '필수의료 지원'과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함께 두고 있고, 제28조의 세출 범위도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등의 지원은 지역을 한정하지 않는 반면, 필수의료인력 양성·확충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은 '지역의' 필수의료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 단위로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편입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업별로 두 목적 중 어디에 어떤 경로로 기여하는지는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만 편입 판단의 전제가 되는 필수의료의 범위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이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되어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 편입된 사업 중에는 지역 구분 없이 전국 단위로 운영되어 상당 부분이 수도권이나 일반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

21) 「국가재정법」 제14조는 특별회계·기금 신설의 타당성 심사기준으로 별도로 운용하는 것이 하나의 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인지, 일반회계나 기존 특별회계·기금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규정이나, 여기에서는 이미 설치된 동 특별회계에 사업을 편입할 때 별도 회계 운영의 효과를 판단하는 참고 기준으로 활용한다.

[동 특별회계에 편입된 전국 단위 사업의 지역별 편성 구조(2027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내역)	2027 예산안	지원 기준	수도권·일반지역 편성	
			지원 규모	예산안 (비중)
전공의 등 수련수당	47,311	전공의·전임의 3,716명, 월 100만원(비수도권 120만원)	수도권 2,583명	30,996 (65.5)
수련환경 혁신지원금	70,128	성과기반 선정, 1인당 편성액: 수도권 300만원, 비수도권 2,400만원	수도권	12,360 (17.6)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9,252	전문의 5,099명 × 160만원, 전공의 3,646명 × 30만원	지역 구분 없음	
공공야간·심야 약국 운영비	6,187	시간당 일반지역 4만원, 인구감소지역 6만원(국비 50%)	일반지역 230개소	5,037 (81.4)

주: 1. 수련수당의 수도권 비중은 사업운영비(100백만원)를 제외한 수당 편성액 대비 비중이고, 수련환경 혁신지원금은 혁신지원금 편성액 대비 비중임
2. 수련수당과 수련환경 혁신지원금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의 내역(내내역)사업이며,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는 관리운영비(198백만원)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및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2026.10.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구체적으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의 전공의 등 수련수당 내역사업은 2027년 지원 인원 3,716명 중 2,583명(69.5%)이 수도권 수련병원 소속으로 수당 편성액 473억 1,100만원 중 309억 9,600만원(65.5%)이 수도권에 편성되었고, 수련환경 혁신지원금의 수도권 몫(123억 6,000만원)을 합하면 수도권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등에 대한 지원 규모는 433억 5,600만원 수준이다.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은 분만·소아외과·응급의료 분야 전문의 5,099명과 8개 필수과목 전공의 3,646명에게 지역 구분 없이 같은 단가를 적용하였고,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중 81.4%(50억 3,700만원)가 일반지역 230개소에 편성되었다.

물론 전공의 수련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 부담의 완화는 필수의료 인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동 특별회계의 필수의료 지원 목적에 부합하고, 정부도 수련 지원과 약국 운영비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장치를 두고 있다.

다만, 「필수의료특별법」은 현재 '지역'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 수도권 수련병원 소속 인력에 대한 지원이 제28조제1호의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양성·확충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외부 평가의 지적사항도 편입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의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2026.9.)는 공공야간·심야약국 사업에 대하여 사업 미지정 시·군·구가 97곳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간 균형 있는 분포를 권고하였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의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39억원)과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지원(5억원)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부개입을 통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두 내역은 2026년과 같은 금액으로 동 특별회계에 편성되었다.

반대로, 이미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로 이관된 사업과 지원 대상·기능이 같은데도 기존 회계·기금에 남은 사업도 있다.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9억원) 사업은 동 특별회계로 이관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와 같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305억 5,800만원) 사업은 동 특별회계로 흡수된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과 함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편성되던 취약지 보건기관 지원 사업이며, 지역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응급실 등의 필수의료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 5개(280억 5,000만원)도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다.

[동 특별회계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필수의료 관련 주요 사업(2027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	회계(계정)	2027 예산안	지원 대상·내용	동 특별회계 내 관련 사업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	균특 (지역지원)	900	지방의료원 35개소 노후 전산장비 교체 (국고보조율 50%)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균특 (지역자율·제주·세종)	30,558	군·도농복합시 보건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신·증축, 장비·차량, 병원선(국고보조율 66.7%)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R&D)	일반회계	11,250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본원 9개소 중 5개소의 연구장비·연구비·연구지원센터(2025~2027년)	국립대병원 지원, AXIS 특화지원
지역의료혁신 연구개발사업(R&D)	일반회계	6,000	지방자치단체 참여 컨소시엄의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 기술 개발·실증 (2025~2031년)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지역필수의료 문제해결형 의료특화 AI 모델 개발(R&D)	일반회계	3,000	국립대병원과 연계하여 지방의료원 등의 진료를 지원하는 의료 AI 플랫폼(2027~2030년, 총사업비 420억원)	AI 기본의료 역량 확보 지원
AI 기반 지역의료 수요 예측 및 재난 대응 시스템 개발(R&D)	일반회계	3,000	중진료권·대권역 단위 필수의료 수요 예측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병목 분석 모형(2027~2030년, 총사업비 345억원)	지역필수의료 정책개발 지원 (실태조사, 성과평가 체계)
응급실 특화 AI 기반 임상지원 시스템 개발(R&D)	일반회계	4,800	응급실 환자 분류·급성악화 예측·임상의사결정 지원 AI 개발, 지역 구분 없음(2024~2028년, 총사업비 228억원)	중증응급 심뇌혈관 질환 대응체계 지원 등 응급의료 분야 사업
합계		59,508	-	-

주: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지역자율계정(299억 4,6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5억 6,3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계정(4,900만원)의 합계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만 담배 개별소비세가 정체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가로 편입하면 그만큼 공자기금 예수금이나 일반회계 전입금이 필요하므로,[22] 편입 기준은 특별회계 규모의 목표 범위 및 재원 여건과 함께 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이관사업은 특별회계의 재원 범위 내에서 「필수의료특별법」 상 세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편입되어,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지원되는 전국 단위 사업과 외부 평가에서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된 내역은 편입된 반면 지원 대상·기능이 같은 사업 일부는 기존 회계에 남았고, 특별회계로 이관되면서 무엇이 개선되는지도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의 범위와 함께 사업별로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 중 어느 목적에 어떤 경로로 기여하는지, 특별회계에서 수행할 때의 연계·조정 효과, 외부의 평가결과, 특별회계 규모의 목표 범위와 재원 여건을 반영한 특별회계 편입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편입 사업은 지역별 지원 실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23]

또한 기존 회계·기금에 남는 관련 사업은 이 기준에 따라 편입 여부를 검토하되, 연구개발사업 등 편입이 어려운 사업은 필수의료종합계획의 재원 조달 및 활용 계획(제5조제2항제5호)에 함께 포함하여 동 특별회계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② 같은 기관·인력 공백을 지원하는 사업 간 조정

같은 기관과 진료기능, 같은 인력 공백을 지원하는 사업과 수단이 동 특별회계 안에 다수 편성되어 있어 이를 두터운 지원 수단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재원이 한정된 특별회계 안에서 사업 간 투자와 역할을 조정하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보건복지부는 기관·기능 단위의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 지원수단별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규사업 3개를 제외하면 모두 다른 회계에서 이관된 사업이므로

22)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 사업과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의 예산 규모(314억 5,800만원)는 2027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공자기금 예수금 규모의 15.5% 수준이다.

23)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향후 실태조사, 성과평가 체계 등을 기반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2026.7.)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특별회계 편입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회계의 사업과 중복될 여지는 없고,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은 기존 국고 지원 사업을 제외하는 등 중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설명은 회계 간 중복과 개별 사업계획 단계의 편성 제한에 관한 것으로, 예산안 총액 단계에서 같은 기관과 진료기능에 대한 사업 간 투자를 조정하는 절차는 제시되지 않았다.

먼저, 지역 의료기관의 중증진료와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경로가 여러 사업으로 나뉘어 있다.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의 시·도 수요조사에서 가장 큰 "중증 치료 권역 완결" 분야(2,295억원, 국비·지방비 포함)는 AXIS의 권역 최종치료 역량 강화(732억 7,800만원) 및 협력체계 구축(224억 2,100만원)과 목적이 겹칠 가능성이 있다.[24]

지역 의료기관의 시설·장비도 AXIS, 국립대병원 지원(348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지방의료원 시설·장비 660억원), 지역 주도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1,080억원) 등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사업의 책임의료기관 지원 등이 부처 내 다른 사업과 정책 영역이 겹칠 소지가 큼에도 역할분담이나 통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인력 지원수단도 같은 공백을 대상으로 각각 확대되고 있다. 동 특별회계에는 의대생 장학 지원부터 전공의 수련수당, 전문의 채용·유지 지원, 퇴직 의사 활용까지 10개 인력 지원수단에 국비 약 1,12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시니어의사 지원과 지역필수의사제는 2026년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945명에서 593명으로 줄어들자 함께 확대되었다.[25]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역필수의사제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 16개소가 추가되면서 보건의료원은 두 수단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2026년 8월말 시니어의사 근무 인원 132명 중 14명이 보건의료원 근무), 두 수단 모두 보건

24) 수요조사 금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총사업비 기준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2026.10.).

25)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필수의사제 지원 대상에 5개 시·도와 보건의료원 16개소를 추가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니어의사 지원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지역필수의사제는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심화된 의료취약지 진료공백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원 등의 안정적 의료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의료원에 대해서는 일반의 채용을 허용하여 같은 기관에서 지원 대상이 넓게 겹치게 되었다.[26][27] 그러나 수단에 따라 국비 지원액이 의사 1인당 월 550만원 또는 200만원으로 다르고 계약상 의무도 다르다.[28]

다만, 지원 대상이 겹친다는 사실만으로 중복 지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기관에 대한 지원이 서로 보완하는 관계인지, 같은 비용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인지를 기관 단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시·도의 권역 중증 치료 수요와 AXIS의 권역 최종치료 지원, 여러 사업의 시설·장비 지원, 보건의료원에 대한 인력 지원수단은 같은 기관과 기능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기관 단위로 조정하거나 수단별 역할을 구분하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기관별로 동 특별회계 사업의 시설·장비·인력 지원 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같은 기관·진료기능을 지원하는 사업 간 선정·투자 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인력 지원수단은 장기 양성, 신규 유입, 근속, 단기 공백 보완 등 제도별 역할을 정립하여 지원 대상과 단가, 의무기간 등 지원조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의료공백과 재정여건을 반영한 재원 배분원칙 마련 필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사업의 재원 배분은 실제 의료공백의 크기보다 의료수요 지표, 현원, 공모 신청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의료공백과 재정여건을 반영하는 배분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므로, 재원 배분은 의료공백이 큰 지역·진료과목·기관에 우선

26) 2025년 집행지침상 시니어의사는 전문의로 한정되었으나, 2026년에는 보건(지)소·보건의료원에 한하여 임상 경력 20년 이상의 일반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2026.10.). 또한 2026년부터 보건소·보건의료원은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서울 소재 기관만 제외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026.7., 98쪽).

27) 지역필수의사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보건의료원 16개소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 이후, 보건의료원 대상 간담회(2026.6.)를 거쳐 일반의 채용을 허용하고 계약기간을 2년 계약 후 3년 추가 계약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2026.10.).

28)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고용장려금 성격이고 지역필수의사제의 지역근무수당은 기본급 외 추가수당으로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단가의 일률적 통일보다는 담당 진료, 근무시간, 의무기간, 기관의 고용책임에 비추어 차이가 합리적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배분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다만, 배분 기준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은 진료과목·분야별 부족 정도를, 지역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은 지역별 의료공백을 기준으로 삼되, 어느 경우에도 실제 부족 정도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도권 지원에 관한 원칙이 사업마다 다르고 배분 기준도 실제 부족 정도보다 의료수요 지표나 현원에 따라 정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성과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의료역량 부족 정도를 반영하는 배분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 단위 배분을 살펴보면,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은 의료공백·의료수요 등 영역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시·도별 기본배분액을 산정하는데, 의료자원과 재정여건이 가장 양호한 서울에도 기본배분액 69억 6,800만원과 기존 사업 의무편성액 28억 1,000만원 등 97억 7,800만원의 국비가 사전통보되었다.[29)]

[서울·수도권의 배분산식 주요 지표 및 사전통보 국비 현황]

(단위: %, 명/인구 10만명, 백만원)

구분	의료공백			재정 자립도	사전통보 국비	기본 배분액	수도권 기본배분액 대비 비중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치료가능 사망률	활동의사 수				
서울 (순위)	84.42 (5위)	39.72 (2위)	324.25 (1위)	74.0 (1위)	9,778 -	6,968 -	26.7 -
인천	82.96	46.18	180.87	47.3	9,956	8,248	31.6
경기	77.53	40.35	174.09	54.4	15,986	10,883	41.7
비수도권 평균	72.59	45.17	182.4	34.5	-	-	-

주: 1. 순위는 17개 시·도 중 의료공백이 작거나 재정 여건이 좋은 순위임
2.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은 응급(30분)·소아(60분)·분만(60분) 이용률의 평균임
3. 사전통보 국비는 기본배분액과 이관사업 의무편성액의 합계임
4. 수도권 기본배분액 대비 비중은 수도권 기본배분액 총액 대비 각 지역(서울·인천·경기)의 기본배분액 비중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회예산정책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관련 지표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서울의 기본배분액은 대부분 의료공백 지표보다는 노인인구비율, 총진료비 등

29) 2026년 9월 기준이다.

의료수요 지표의 영향을 받아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30]

또한 수도권 3개 시·도에는 10% 배분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서울보다 의료공백이 크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인천·경기의 배분액이 함께 제약되는 구조이다. 한편, 같은 특별회계 안에서 AXIS 필수진료과 신규채용은 수도권 병원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 전공의 등 수련수당은 편성액의 65.5%가 수도권에 편성되는 등 수도권 지원에 관한 원칙이 사업마다 다르다.

다음으로, 진료과목·기관 단위에서는 현원이나 균등 배분이 기준이 되고 있다. 전공의 등 수련수당은 비수도권 8개 필수과목에 일률적으로 20%(월 20만원)를 가산하므로, 2026년 상반기 비수도권 레지던트 1년차 확보율이 6.5%인 소아청소년과와 38.3%인 산부인과의 가산액은 합계 3억 700만원에 그친 반면 확보율이 100%인 신경외과에는 3억 7,700만원이 배분된다.[31]

[8개 필수과목의 지역별 레지던트 1년차 확보율과 비수도권 가산액]

(단위: %, 명, 백만원)

과목	수도권 확보율	비수도권 확보율	비수도권 지원 인원	가산액	가산액 비중
내과	95.6	50.6	496	1,190	43.8
신경외과	**100.0**	**100.0**	**157**	**377**	**13.9**
응급의학과	79.5	49.4	157	377	13.9
신경과	78.6	51.2	109	262	9.6
산부인과	**86.0**	**38.3**	**82**	**197**	**7.2**
외과	87.4	41.3	73	175	6.4
소아청소년과	**34.8**	**6.5**	**46**	**110**	**4.1**
심장혈관흉부외과	50.0	15.0	13	31	1.1
합계	83.1	45.2	1,133	2,719	100.0

주: 1. 확보율은 2026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인원 대비 확보인원 비율임
2. 비수도권 지원 인원은 2027년도 예산안 산정 인원이며,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는 전임의(각 2명, 7명)를 포함함
3. 가산액은 비수도권 지원 인원×20만원×12개월로 계산함

자료: 보건복지부

30)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2026.10. - 서울은 인구 10만명당 활동의사 수(324.25명)와 재정자립도(74.0%)가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서울에 사전통보된 기존 사업 의무편성액은 소아 야간 진료체계 구축 등 기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31) 확보율은 비수도권 신규 레지던트 모집 기준이고 가산액은 2027년 지원대상 인원(일부 전임의 포함) 기준이므로, 두 수치를 같은 모집단의 효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 인원에 비례하는 가산 방식이 부족 과목의 충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역필수의사제는 2027년 시·도당 지원 인원을 2026년 24명의 약 10%를 늘린 26명으로 일률 산정하였는데, 2026년에 추가된 7개 시·도는 20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채용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30%가 늘어나게 된다.

AXIS 필수진료과 신규채용도 14개 국립대병원에 9명씩 균등하게 편성되어 병원별 결원과 충원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의 전문인력 특별수당(157억 5,000만원)은 2026년 3월 현원이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산정되어 인력기준에 못 미치는 기관이 앞으로 충원할 인력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의 국비 중 성과배분 재원 360억원(10%)은 아직 배분되지 않았고, 기본배분액 중 약 195억원도 통지가 유보된 상태이다.[32] 「필수의료특별법」 제9조는 성과평가에 진료권별 공급의 적정성과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등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 선정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직 배분되지 않은 재원부터 의료공백 지표를 반영하여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 특별회계 사업은 수도권 지원 원칙이 사업마다 다르고 배분 기준도 의료수요 지표, 현원, 균등 배분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의료공백이 큰 지역과 충원이 어려운 진료과목·기관에 재원이 우선 배분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교육비 지원, 신규 유입 유도, 이탈 방지 등 사업 목적에 따라 배분기준을 달리하되, 수도권 지원 여부와 우대 수준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필수의료특별법」상 성과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지역·진료과목·기관별 실제 부족 정도를 공통적으로 반영하는 배분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지역 주도 사업의 미배분 성과배분 재원과 유보액부터 의료공백 지표를 반영하여 배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모 방식의 기존 사업은 수행기관이 없는 공백지역을 지원하지 못하고 국고보조율은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서울 외에는 일률 적용되므로, 보건복지부는 공모 방식 외의 지원 방안과 국고보조율 차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2026.7.)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의료취약지 33개 중 29개, 분만취약지 108개 중 49개 지역이

32) 2026년 9월 시·도별 예산 사전통보 기준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2026. 10.).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33]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들 지역의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적정 의료기관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2027년부터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의 의무편성 항목으로 흡수되어 종전 지원 규모가 유지되므로, 별도의 보완이 없으면 미지원 지역의 구조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70개 중진료권 중 15개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종합병원급 국·공립 의료기관이 없거나 불충분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34] 지원이 수행기관이 있는 곳과 신청한 곳을 기준으로 배분되면, 공급 기반이 가장 약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소관 사업들은 대부분 정률 보조 방식[35]이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같은 비율의 지방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은 시·도별 배분액 산정 지표에 재정자립도를 반영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율은 서울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데, 배분 지표상 재정자립도[36]는 서울 74.0%, 경기 54.4%, 인천 47.3%인 반면 비수도권 평균은 34.5%에 그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37]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역 재정여건을 고려한 국고보조 규모의 차등화를 요구한 바 있으나, 동 특별회계 사업은 비수도권 안에서 재정여건에 따른 보조율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공모·신청 방식의 한계로 공백지역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2027년에도 이어질 수 있고, 국고보조율이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일률 적용되어 재

33)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026.7., p.81.

34)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026.7., p.68~71.

35)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국고보조율 70%(서울 50%),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과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사업 국고보조율 50% 등

36) 국가통계포털(KOSIS), 2026년 세입과목개편 후 재정자립도 기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I2)

3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사업 참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행기관이 없는 공백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방식 외의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국고보조율 차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재구성 필요

첫째, 동 특별회계 사업이 속한 프로그램의 목표와 성과지표는 기존 지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필수의료 수준과 지역 간 의료격차의 변화를 측정하지 못하므로, 보건복지부는 특별회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과지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조 2,614억원은 성과계획서상 5개 프로그램목표에 나뉘어 편성되었다. 이 중 Ⅱ-1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은 2026년 2,600억원에서 2027년 6,140억원으로 2.4배 증가하였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목표 예산 중 86.9%가 동 특별회계 사업이며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예산만 보더라도 58.7%를 차지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목표 문언[38]과 성과지표("전공의 수련환경 전반적 만족도")[39]는 변경되지 않았다.

Ⅱ-2 공공보건의료확충 프로그램도 예산의 59.1%가 동 특별회계 사업이나 성과지표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평균점수[40]로, 이 지표는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 등 다른 사업에도 함께 사용된다.

38) 2027년 성과계획서상 Ⅱ-1 프로그램 목표: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의료기관 안전·질 관리,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조정, 보건의료연구 결과의 정책 확산 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및 국민건강 향상 기여

39) "전공의 수련환경 전반적 만족도" 성과지표 개요
- 측정방법: 전공의 수련환경 만족도 조사 실시
- 수행기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 대상자: 5월 만족도 조사 당시 수련 중인 전공의
- 집계시점: 매년 11월

40)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평균점수" 성과지표 개요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7.1.1 ~ '27.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현지점검위원 등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지역거점공공병원 41개소 대상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사업이 포함된 프로그램목표와 성과지표]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목표	동 특별회계 사업 예산	프로그램 내 비중	프로그램 성과지표 (2027년 목표)
Ⅱ-1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533,894	86.9	전공의 수련환경 전반적 만족도(63.9%)
Ⅱ-2 공공보건의료확충	595,042	59.1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평균점수(74.0점)
Ⅱ-3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118,867	36.1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92.5%)
Ⅱ-4 보건산업육성	9,655	-	-
Ⅰ-3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3,928	-	-

자료: 보건복지부, 「2027년도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런데 필수의료 수준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직접 보여주는 지표는 이미 측정되고 있다. 앞의 현황에서 제시한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비, 자체충족률 외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의 권역 간 격차(2015년 1.6배→2023년 2.2배), 10대 암 수술 자체충족률(2024년 서울 91.8%, 경북 11.7%),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2024년 50.6%) 등을 지역별로 분석한 바 있다.[41]

또한, 치료가능사망률이 전국 수준은 개선되는 동안 지역 간 격차비는 확대된 것처럼 두 지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전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함께 목적으로 하는 동 특별회계의 효과를 판단하려면 두 종류의 지표가 함께 필요하다.

41)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026.7.

[필수의료 수준과 지역 간 의료격차 관련 주요 지표]

지표	최근 수준	추이
치료가능사망률 (인구 10만명당)	43.4명(2024년, 전국)	전국은 52.0명(2015년)에서 감소, 지역 간 격차비는 1.30배 → 1.44배
자체충족률(입원 재원일수 기준)	최대·최소 지역 차이 58.3%p, 격차비 2.8배	격차는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큼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전국 감소	권역 간 최소 대비 최대 배율 1.6배(2015년) → 2.2배(2023년)
10대 암 수술 자체충족률	서울 91.8%, 경북 11.7%(2024년)	평균보다 높은 곳은 17개 시·도 중 7개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50.6%(2024년)	응급의료기본계획 목표(60%)에 계획기간마다 미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026.7.

「필수의료특별법」 제9조는 성과평가에 수요 대비 공급의 적정성,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진료협력체계 운영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1개 세부사업 중 자체충족률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사업은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뿐이고, 이 중에서도 3개 지표 중 2개는 목표치가 “진료권별 설정”으로 제시되어 수치가 없다.

또한, 법정 성과평가를 위한 지역필수의료 통합 정보시스템은 2027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예산(2억 700만원)만 편성되어,[42] 법정 성과평가 체계가 갖추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회계 신설 전의 기준값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특별회계 신설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목표(60%)와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목표 등이 계획마다 달성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어,[43] 목표 설정과 함께 목표 미달 시의 대응방안도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동 특별회계는 새로운 재정 단위로 신설되었으나 회계 신설의 목적

42) 지역필수의료 정책개발 지원 사업의 “필수의료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내역으로, 법정 성과평가 수행과 지역필수의료 실태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의 ISP 수립비이다.

43)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026.7.

인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 강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의 해소를 측정할 성과목표와 지표가 마련되지 않아, 국회가 특별회계 신설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종합계획과 법정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치료가능사망률,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등 필수의료 수준 지표와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비, 자체충족률 등 지역 간 격차 지표를 함께 측정하는 특별회계 차원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회계 신설 전의 기준값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 미달 시 사업 조정으로 이어지는 환류 장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44]

둘째, 세부사업 성과지표는 지원 인원 등 투입 지표에 머물러 인력 지원의 순증 효과를 측정하지 못하고 국회 제출 자료 간에도 일치하지 않으며 이관사업의 평가 지적사항도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성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고려하여 단계별 결과 지표로 성과지표를 정비하고 평가 지적사항의 반영 내역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동 특별회계 세출의 첫 번째 항목인 인력 지원은 지원 인원을 추가로 확보된 인력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성과지표가 투입 지표에 머물러 있다.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경우, 참여 의사 92명(2026년 7월 기준) 중 59명(64.1%)은 이미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던 전문의가 전환한 경우이고, 신규 채용 33명도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었는지는 구분되지 않는다.[45] 시니어의사는 2026년 8월말 기준 근무 인원이 132명으로 지원 목표(180명)의 73.3%이고, 의료취약지 배치 비중은 2025년 65.5%에서 53.8%로 낮아졌다.[46]

그런데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의 2027년 성과지표는 의무

44)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내에 성과평가 기준선 구축 및 성과평가 틀 제시 등 성과평가 체계 보완의 방향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고, 성과평가 기준 제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10월말 현재 성과평가 관련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45)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2026.10. 기존 근무자의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도 의미가 있으나, 그 효과는 신규 유입과 구분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46) 2026년 8월말 기준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2026.10.).

복무 이행률(92%), 시니어의사 취약지 배치율(57%), 지역필수의사제 모집률(90%)로 지역 내 신규 유입이나 근속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있다.[47]

물론 인력 지원의 결과는 계약기간이나 의무복무기간이 지난 뒤에 확인되므로, 사업 초기부터 근속이나 지역 정착을 성과지표로 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신규 유입 여부는 채용 시점에, 근속 여부는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단기(신규 유입률), 중기(계약 연장률·근속률), 장기(의무복무 후 지역 정착률) 지표 등 단계별로 지표를 구분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자료 간에 세부사업 성과지표가 일치하지 않는다.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동 특별회계의 22개 세부사업 중 예수이자 상환을 제외한 21개가 모두 성과관리 대상인데, 이 중 성과계획서와 사업설명자료의 성과지표·목표치가 일치하는 사업은 6개이고, 9개 사업은 지표나 목표치가 서로 다르거나 같은 자료 안에서도 다르게 기재되었으며, 6개 사업은 성과계획서에서 지표가 확인되지 않는다. 목표치가 실적보다 낮게 설정된 사례도 있는데, 중증외상환자의 손상부터 최종치료까지의 소요시간(하향지표) 목표(312.6분)는 2025년 실적(292.4분)보다 길고,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평균점수 목표(74.0점)도 2025년 실적(77.9점)보다 낮다.

[성과계획서와 사업설명자료의 성과지표 불일치 사례]

세부사업	성과계획서 (2027년 목표)	사업설명자료 (2027년 목표)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대진료권 중증 자체충족률(56%), 중진료권·소진료권 지표 (진료권별 설정)	급성기 의료기관 자체충족률(76.0%)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인원, 지역필수의사제 모집률 (목표 미제시)	의무복무 이행률(92%), 시니어의사 취약지 배치율(57%), 모집률(90%)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선발전형 선발 충원율(95%)	지원 의과대학 수(32개)

자료: 보건복지부, 「2027년도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7) 참고로,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의 핵심 지표를 취약지 의료기관의 전문의 충원율, 장학생의 의무복무 후 지역 정착률 등 결과 지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관사업에 대한 외부 평가의 지적사항이 2027년도 예산안의 성과지표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는 평가 대상이 된 동 특별회계 이관사업 7개 모두에 “사업개선” 판정을 내리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의 운영평가 점수만족도 지표가 주관적·상대평가 지표로서 치료가능사망률, 상경진료율, 필수의료 충족률과의 인과관계가 약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2027년에도 동 사업과 Ⅱ-2 공공보건의료확충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평균점수로 유지되었고, 결과 지표로의 전환을 권고받은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도 사업설명자료에만 새 지표를 제시하고 성과계획서에는 기존 지표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세부사업 성과지표는 인력 지원의 신규 유입·근속 등 결과를 측정하지 못하고 국회 제출 자료 간에도 일치하지 않으며, 이관사업에 대한 평가 지적사항도 성과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인력 지원 참여자의 이전 근무지와 신규 여부를 관리하여 신규 유입률, 근속률, 지역 정착률 등의 지표를 시점에 따라 단계별로 관리하고, 세부사업 성과지표를 결과 중심으로 정비하여 성과계획서와 사업설명자료 간에 일치시키며, 이관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와 연장평가의 지적사항이 동 특별회계 사업에 반영되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14 국방·군사시설의 활용 및 이전사업 분석

가. 현 황

(1) 국방·군사시설 및 관련 사업 개요

① 개요

국방·군사시설(이하 '군사시설')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실험 시설 등 부대 내 위치한 시설로서 군인들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1)]

[군사시설 유형]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실험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	

자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에서도 군사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과는 포괄범위가 서로 다르다. 이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은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반면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군인의 주거, 복지, 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은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에서는 군사시설로 규정하지 않지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사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군사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소관 회계·기금별로 관리 중인 군사시설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병영시설, 관사 및 간부숙소, 주한미군시설, 의무시설, 교육시설, 예비전력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2개의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회계 근거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시설에 대해서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군인연금기금의 경우 국유재산대장 상으로 기금 소관으로 분류된 시설만 관리하고 있으며, 군인복지기금의 경우 수익성이 있는 체육·복지시설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로 군사시설이 건설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는 무기체계와 함께 도입이 필요한 패키지시설이기 때문이다.

[회계·기금별 군사시설 유형]

부처	회계·기금	프로그램 (단위사업)	시설 유형
국방부	일반회계	군사시설 건설 (병영기본시설, 간부주거시설, 일반시설개선)	- 병영시설, 관사·간부숙소, 환경시설, 군수지원시설, 행정·종교·법정·면회·경계·작전·토목·전기·급유시설 - 수익성이 없는 체육·복지시설 - 방위력개선비로 진행했던 단위시설사업 - 그 외 타 회계·기금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사업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 주한미군시설(한·미 합의)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군의무)	- 병원, 의무대 등 의무시설
		군인사및교육훈련 (교육시설)	- 강의실, 훈련장, 사격장 등 교육시설
		예비전력관리 (예비군훈련장확보)	- 동원예비군훈련장 등 예비전력시설
	국방·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군시설이전사업)	- 유형은 일반회계 내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과 동일하지만,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에 따른 대상사업만 포함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	미군기지이전사업 (미군기지이전사업)	- 주한미군시설(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시설)
	군인연금기금		- 국유재산대장 상 군인연금기금 소관으로 분류된 시설
	군인복지기금		- 수익성이 있는 체육·복지시설

부처	회계·기금	프로그램 (단위사업)	시설 유형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지휘정찰사업, 기동화력사업, 함정사업, 항공기사업, 유도무기사업	- 무기체계 전력화에 따라 패키지로 도입되는 시설

자료: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국방부훈령) [별표 3]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한편 군사시설은 시설물이 위치한 부지와 결합하여 군사작전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토지)인 '군용지(軍用地)'에 건설되어야 한다. 다만 과거에는 토지행정이 현대처럼 정확하지 않았고, 군부대를 최초로 창설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면밀하게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군사적 요충지나 작전수행이 필요한 지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현대에는 사유지 또는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군사시설들이 있다.[2)]

결과적으로 전체 군사시설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에 해당하지만, 시설이 위치한 시설부지는 국유재산(군용지), 공유지, 사유지로 구분되며, 국방부 소관의 국유재산 관리 훈령은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사·공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

[군사시설 및 시설부지 분류체계]

구분	내용	
국유재산	군사시설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과 같이 부대 내 위치한 시설로서 군인들이 이용하는 것
	군용지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사용승인된 토지
사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군사용 사·공유지	군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

자료: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라 2년을 주기로 사유지 무단점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사작전 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일시적으로 임차하고 있다. 토지소유주가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 유무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공유지의 무단점유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임차, 매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군용지 전체 면적은 13억 3,270만㎡이고 그 가액은 87조 2,633억 4,300만원이다. 면적 기준으로 훈련장부지, 건물부지, 축성부지 순으로 넓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건물부지, 비행장부지, 훈련장부지 순으로 가액이 크다.

[용도별 군용지 현황('25.12.31.)]

(단위: 만㎡, 백만원)

구분	합계	훈련장부지	건물부지	저장시설부지
면적	133,270	54,439	31,315	11,523
금액	87,263,343	10,738,253	48,195,466	3,005,976
구분	비행장부지	축성부지	기타부지	
면적	10,467	13,543	11,983	
금액	15,138,271	2,332,956	7,852,421	

자료: 국방부

2026년 6월 기준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 면적은 총 5,047만㎡이며, 이 중에서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1,836만㎡로, 나머지 3,211만㎡는 민간소유의 사유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 점유 사·공유지 현황('26.6.)]

(단위: 만㎡, 백만원)

구분	합계		사유지		공유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합계	5,047	1,280,937	3,473	869,198	1,574	411,739
무단점유	3,211	692,001	2,619	534,641	592	157,360
적법점유	1,836	588,936	854	334,557	982	254,379

자료: 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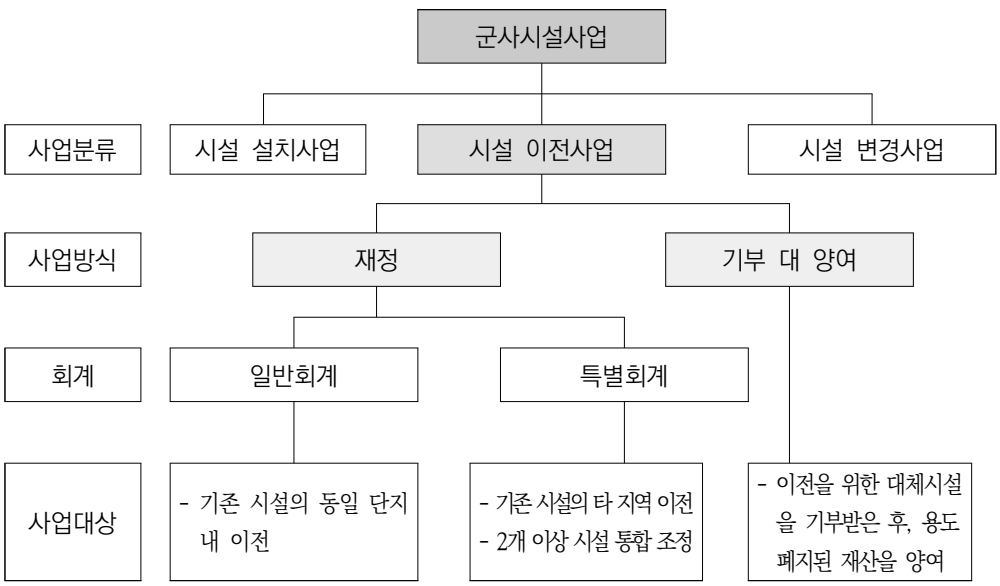
② 군사시설사업 개요 및 절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군사시설사업을 ⓐ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것과 ⓑ 그로 인한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정의한다. 이때 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국방부 소속 기관장, 육·해·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군사시설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출을 통해서 진행되며, 시설의 신규 설치, 기존 시설의 변경, 동일 단지 내 이전 등은 국방부 일반회계에서 관리되며, 기존 시설의 타 지역 이전, 2개 이상 시설의 통합·조정 등은 국방부 특별회계에서 관리된다.

이전사업 중 일부는 국가의 세출예산편성 없이 시설 및 그 부지의 기부·양여를 통해서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를 기부 대 양여방식이라 부른다. 해당 방식에서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대체시설 건설 및 기부,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군사시설사업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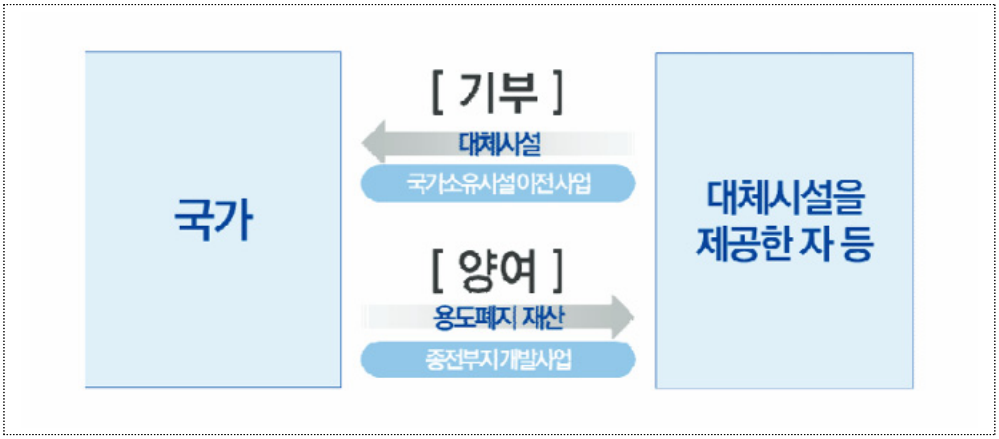


③ 기부 대 양여사업

㉠ 기부 대 양여방식의 개념

기부 대 양여방식은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양여하는 것으로, 대체시설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선후행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

[기부 대 양여방식 개념도]



자료: 김고은·이승욱·이수암,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24.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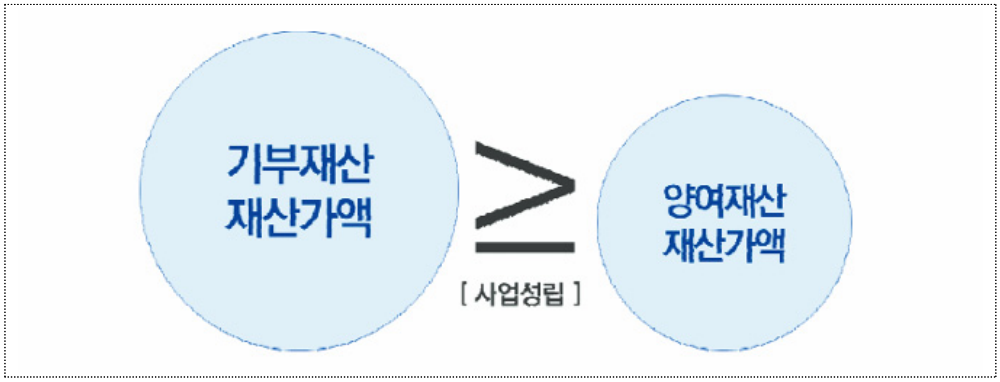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97.1.13.)을 통해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기부 대 양여방식의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는 당시 「국유재산법」 제43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에서는 대등가격인 경우에만 교환을 허용하고 있어서, 대등가격이 아닌 경우에도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 대체시설을 설치·제공한 때에는 이를 국가에 기부할 수 있고 국가는 기부자에게 기존 군사시설을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3] 이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 및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군에서도 노후화된 기존 군사시설 대신에 현대화된 시설을 얻을 수 있다.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에 기부할 대체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3) 자료: 국방위원회,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1996.12.)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4] 이를 고려하여 최초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때에는 기부재산가액보다 같거나 적은 금액의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

[기부 대 양여방식 성립요건]



자료: 김고은·이승욱·이수암,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24.9.20.

4)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 제1항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다만 대체시설 완공 이후 실시하는 감정평가에서 기부재산가액보다 양여재산가액이 큰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차액(양여재산가액 - 기부재산가액)을 사업주관기관으로 납부해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금액을 즉시 국고로 수납해야 한다.[5]

㉡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개요 및 현황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 제9조[6]에 따라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며,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 및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전사업[7]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전건의로부터 시작된다.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다. 그 이후 이전부지 선정계획(이전주변지역 지원 계획 포함)의 수립·공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8]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전부지를 결정하게 된다.

5)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4조(사업대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양여재산은 최초 합의각서 체결 시점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대체시설 완공후 최종 합의각서 체결시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주관기관에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즉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이와 동일한 조항이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3조제3항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34조제3항에도 규정되어 있다. 다만 해당 규정들은 국방부 소관의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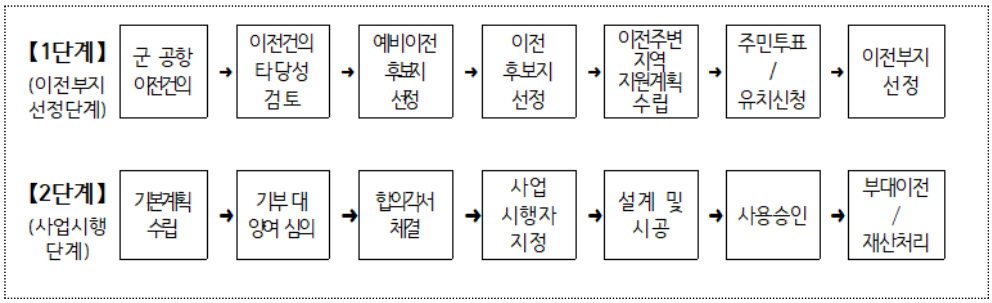
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7)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에 관하여 각각의 특별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기본적인 이전방식 및 절차는 동일하다.

8)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민투표법」 제27조에 따라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그 비목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330-04목)이다.

그 이후 이전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채택, 이전사업에 대한 최초 합의각서(안) 체결, 이전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체시설 건설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대체시설 시공이 완료된 후, 그 시점에서의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되며, 기존 부대의 이전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종전부지의 양여가 실시되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절차: 기부 대 양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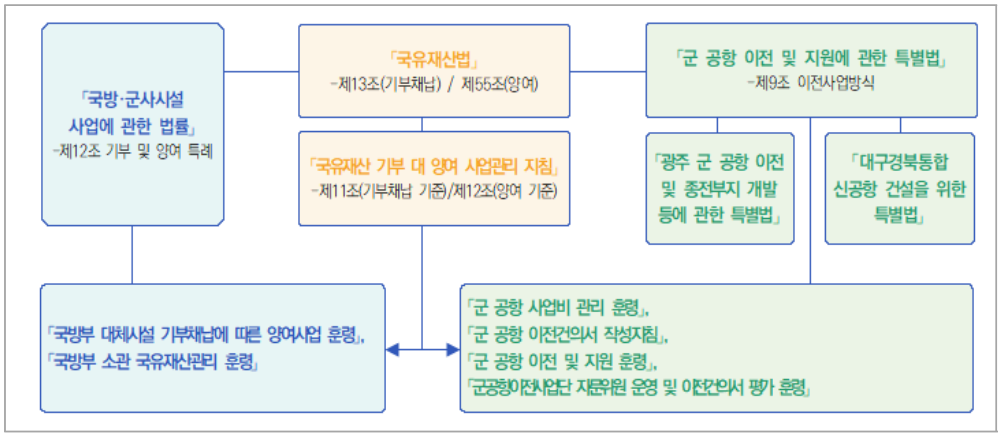


자료: 국방부

군 공항 이전사업을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 「국유재산법」 및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군공항이전법이 특별법으로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동시에 대구 및 광주 군 공항에 대한 특별법도 별도로 제정되었는데, 두 특별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특별법에서 규정한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다른 법률에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율하고 있다.

하위 규정들을 살펴보면, 기부 대 양여방식의 적용을 받는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과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이 적용되지만,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된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은 적용되지 않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이 적용된다.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법령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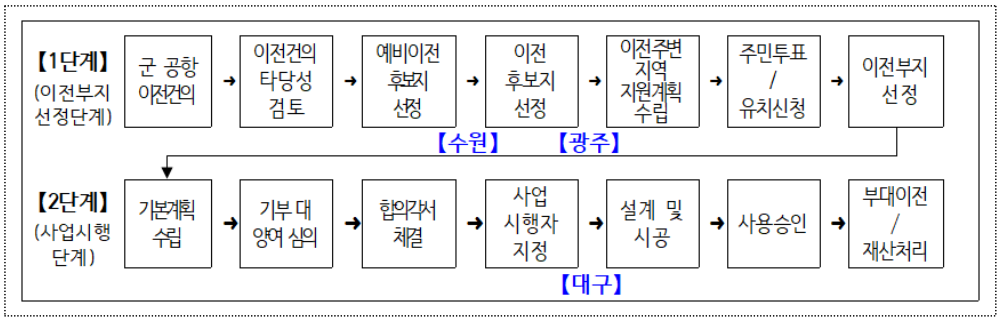


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 계류 중

자료: 국토연구원,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합리화 방안」(2026.5.26.)

16개의 군 공항[9] 중에서 현재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은 대구, 광주, 수원 3곳이다. 대구 군 공항에 대해서는 대구 군위 및 경북 의성이 이전부지로 결정되어 현재 최초 합의각서(안)이 체결되었고, 광주는 이전후보지까지만 선정되었으며, 수원은 예비이전후보지만 선정된 상태이다.

[대구·광주·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현황]



자료: 국방부

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전술항공작전기지를 16개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대구·광주·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의 현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최초 합의각서(안)이 체결된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지역의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할 때 계산한 사업비이므로, 실제 추진과정에서 사업비의 규모 및 세부항목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대구·광주·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현황]

구분		대구 군 공항	광주 군 공항	수원 군 공항
단계	예비이전 후보지	-	-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이전후보지	-	무안군 망운면	-
	이전부지	대구 군위 및 경북 의성	-	-
사업비	이전	11조 2,192억원	4조 791억원	5조 463억원
	지원	3,000억원	4,508억원	5,111억원
	종전 개발	-	8,356억원	7,824억원
	금융	-	3,825억원	6,598억원
※ 기준시점		합의각서 기준 (2023년)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이전건의서 기준 (2016년)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이전건의서 기준 (2015년)
대체부지면적		군공항 390만평, 소음완충구역 121만평	군공항 353만평, 소음완충구역 110만평	군공항 353만평, 소음완충구역 87만평
양여부지 면적		군공항 203만평, 기타부지 20만평	군공항 189만평, 탄약고 이전부지 59만평	군공항 159만평, 탄약고 이전부지 33만평

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이전사업비 내 물가변동비가 반영되는 등 3개의 이전사업별로 사업비 세부항목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군사시설 활용 및 이전사업에 대한 분석

이하에서는 군사시설 활용 및 이전사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군사시설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시설들이 무단으로 점유 중인 사·공유지를 정리하는 사업과 군사작전에 미활용 중인 군사장애물을 철거하는 사업을 검토하였다. 한편 이전과 관련해서는 부대개편 8차사업과 기부 대 양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광주 군 공항 임시배치사업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 종합표]

구분	내 용
활용사업	군 무단점유 사·공유지
	군사작전에 미활용 중인 군사장애물
이전사업	부대개편 8차사업
	기부 대 양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광주 군 공항 임시배치사업

(1) (군사시설 활용) 군 무단점유 사·공유지에 대한 정리노력 필요

① 군 무단점유 사·공유지에 대한 임차·매입 등 사업현황

부지매입 사업은 국방·군사시설 부족 부지 및 기타 필요 부지를 확보하여 군 사용 토지를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다. 한편 사유재산정리 사업은 군이 적법한 보상 없이 불가피하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를 매입, 임차, 반환 등의 방법으로 적법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다.

[2027년도 부지매입 및 사유재산정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부지매입	13,943	10,360	10,360	8,776	△1,584	△15.3
사유재산정리	70,154	70,401	70,401	77,709	7,308	10.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두 사업은 모두 군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를 매입, 임차, 반환함으로써 적법하게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서로 다른 회계로 나뉘어 별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는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5조[10]에서 특별회계 세출 범위를 199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이 점유하여 사용 중인 사·공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군이 점유한 사·공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 세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다.

② 분석의견

군이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 등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무단점유 해소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통지함으로써 군의 사유지 등의 점유권을 적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26년 6월 기준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 현황을 살펴보면, 총 5,047만㎡ 중 무단점유 토지는 3,211만㎡(63.6%)이고, 그 중 사유지는 2,619만㎡로 무단점유 토지의 81.6%에 해당한다.

10)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국방·군사시설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군관사의 매입비용
3. 199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유·공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에 필요한 경비
4. 국방·군사시설 이전지역의 주변지역에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
5. 제4조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이 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군 점유 사·공유지 현황('26.6.)]

(단위: 만㎡, 백만원)

구분	합계		사유지		공유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합계	5,047	1,280,937	3,473	869,198	1,574	411,739
무단점유	3,211	692,001	2,619	534,641	592	157,360
적법점유	1,836	588,936	854	334,557	982	254,379

자료: 국방부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매입·교환·반환·임차·지상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무단점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33년까지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 및 공유지를 모두 해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2026~2033년 군 무단점유 사·공유지 정리계획]

(단위: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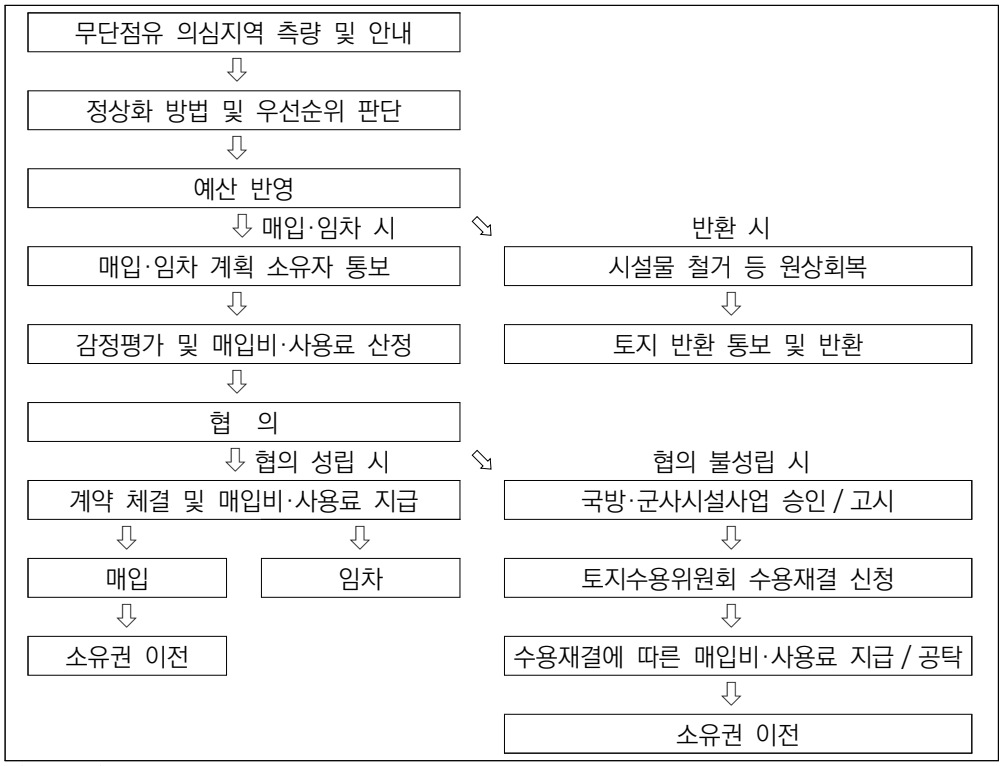
구분	합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합계	3,211	358	403	415	425	426	422	415	347
매입	655	86	88	87	86	84	82	77	65
교환	-	-	-	-	-	-	-	-	-
반환	262	12	35	36	38	39	37	35	30
임차	2,294	260	280	292	301	303	303	303	252

주: 교환의 경우 계획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 제한됨

자료: 국방부

부지매입사업과 사유재산정리사업(이하 '재산정리 사업')의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국방부는 무단점유 의심지역이 발생하면, 측량을 통해 확인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점유사실, 배상 및 정리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이후 매년 무단점유 현황 중 각 군 본부와 시설본부에서 요구한 사업을 검토하여 무단점유 해소방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재산정리 사업의 추진절차]



자료: 국방부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무단점유 사·공유지를 정리한 결과, 2021~2025년 동안 총 1,513만㎡의 토지 소유관계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2024~2025년 동안에는 목표 대비 초과 실적을 달성하는 등 국방부 차원의 개선노력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2021~2025년 군 무단점유 사·공유지 정리목표 대비 실적]

(단위: 만㎡)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합계	-	215	-	331	320	245	216	368	312	354
매입	-	48	-	49	61	41	63	52	86	44
교환	-	-	-	-	-	-	-	72	-	-
반환	-	10	-	8	-	166	2	9	5	15
임차	-	157	-	274	259	38	151	235	221	295

주: 2021~2022년 사·공유지 정리 목표 자료 부재
자료: 국방부

다만 군이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가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군사시설이 활용 중인 토지 소유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무단점유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치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2023~2025년 동안 임대, 매입 등을 통해서 점유관계를 적법하게 처리(=해소)한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군이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 면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는 측량 및 실태조사 과정을 통해서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가 추가로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1~2025년 군에서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 및 무단점유 해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면적	19,736,061	22,345,481	24,143,932	27,581,904	38,440,230
	토지대장가격	465,524	564,655	503,740	806,499	709,478
해소	면적	6,416,768	5,766,354	4,907,961	14,730,056	23,010,540
	토지대장가격	43,384	55,778	42,096	65,648	65,753

자료: 국방부

실제로 2021년 및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군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171.4만㎡를 추가로 확인하기도 하였다.

[실태조사에서 추가 확인된 군 무단점유 사유지 현황]

(단위: 만㎡, 억원)

구분		합계	수도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서울	인천	경기				
2021 조사	면적	141.4	1.4	5.2	26.5	12.2	81.6	4.9	9.6
	대장 가격	1,133	10	80	193	54	789	2	5
2025 조사	면적	30	-	0.26	21	9	-	-	0.01
	대장 가격	94	-	0.004	90	2.4	-	-	1.6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이에 따라, 기존에는 2029년까지 무단점유 중인 사·공유지를 모두 해소할 계획이었으나, 그 기한이 2033년까지 연장되기도 하였다. 군사작전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관련된 토지의 점유관계는 적법해야 하므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국방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실태조사를 보다 강화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사용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사작전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상회복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군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임차·매입·지상권설정 등의 방법을 통해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할 필요가 있다.

(2) (군사시설 활용) 군사작전에 활용하지 않는 군사장애물에 대한 철거노력 필요

① 군사장애물 개선사업 예산안 현황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 완화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한 군사장애물 개선을 추진 중이며, 2027년도 예산안은 27억 8,4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2027년도 군사장애물 개선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경계 및 작전시설	163,563	221,022	221,022	367,097	146,075	66.1
군사장애물 개선	-	-	-	2,784	2,784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② **분석의견**

군사작전에 활용되지 않는 군사장애물들이 방치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작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리가능한 군사장애물들은 조속하게 철거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국가안보 및 군사작전 수행을 위하여 방호벽, 대전차 장애물·방벽, 낙석[11] 등과 같은 군사장애물을 설치하였으나, 도시개발과정에서 시가지면적이 확장됨에 따라 그와 같은 군사장애물들이 교통안전을 방해하고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등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민원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장애물들이 다수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군사장애물들이 현재 주변의 교통 및 경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방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지금까지 겪었던 생활상의 불편에 대하여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측면에서 군사장애물 중에서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사업을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요청한 90개소에 대하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의 작전성 검토 등을 거쳤으며, 이 중에서 철거하더라도 군사작전 운용에 문제가 없는 23개소를 2027년 연내에 정리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안은 기본조사설계비 6,319만원, 실시설계비 9,471만원, 공사비 23억 851만원, 감리비 3억 241만원, 시설부대비 1,568만원으로 구성되며, 총 27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다.

11) 낙석은 적의 전차나 차량이동을 막기 위하여 도로 상부나 변두리에 미리 설치한 구조물이다.

[군사장애물 개선 예산안 세부현황]

(단위: 천원)

구분	합계	기본조사설계비 (420-01)	실시설계비 (420-02)	공사비[1] (420-03)	감리비 (420-04)	시설부대비 (420-05)
1군단	1,208,345	25,752	38,528	1,005,949	131,779	6,337
5군단	661,623	15,539	23,364	547,157	71,678	3,885
2군단	77,866	2,827	4,247	62,000	8,122	670
3군단	836,656	19,069	28,568	693,400	90,835	4,784
합계	2,784,490	63,187	94,707	2,308,506	302,414	15,676

주: 1) 소요 물량에 철거 단가(413천원/㎡) 및 폐기물처리단가(32천원㎡/톤) 적용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기된 철거소요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군사작전에 활용되지 않는 군사장애물들을 철거할 계획이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6년말까지 군사장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관할 부대, 지상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의 작전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8~2029년도 예산안에 정리비용 반영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군사장애물들이 주민들의 생활권 밖에 위치하였으므로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도시개발에 따라 주민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교통흐름을 저해하거나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군사장애물 중 일부는 여전히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최초 설치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사작전에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민군상생의 차원에서 국방분야의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방부는 군사적 효용이 없는 군사장애물에 대한 정리작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군사시설 이전)부대개편 8차 사업에 대한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① 부대개편 8차 사업 예산안 현황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대상 부대들을 미래 부대구조로 개편하기위한 사업들을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에서 추진하고 있다. 2027년도 예산안 기준 부대개편 사업들은 4~8차 사업으로 총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7년도 예산안 합계는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10억 1,100만원 감액된 2,000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부대개편 4~8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부대개편 4차	31,790	5,149	5,149	4,372	△777	△15.1
부대개편 5차	50,706	2,041	2,041	153	△1,888	△92.5
부대개편 6차	64,172	45,535	45,535	8	△45,527	△100.0
부대개편 7차	180,260	155,180	155,180	117,658	△37,522	△24.2
부대개편 8차	21,079	93,154	93,154	77,857	△15,297	△16.4
합 계	348,007	301,059	301,059	200,048	△101,011	△33.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② 분석의견

부대개편 8차사업의 경우 시설사업의 특성상 행정절차 및 설계·공사 지연 등으로 인하여 매년 상당 규모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2027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도 재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2027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에서는 4~8차 부대개편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 가장 최근인 2023년부터 시작한 8차 사업의 예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2023년 72.7%, 2024년 48.0%, 2025년 40.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다.

[부대개편 8차사업의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	7,918	7,918	-	△100	7,818	5,756	1,640	422
2024	14,539	14,539	1,640	△1,071	15,108	6,980	4,378	3,750
2025	52,593	52,593	4,378	838	57,809	21,079	16	36,714

주: 2026년 집행액은 9월말 기준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부대개편 8차사업을 추진하면서 23개 부대에 대하여 개편작업을 실시 중인데, 2026년 9월 말 기준 11개 부대에서의 집행률이 1% 미만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는 시설사업의 특성상 대관협의, 설계적정성 검토 등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2026년 연내에 공사를 체결할 계획으로 공사비 비목을 반영하였으나, 11개 부대 중 9개 부대에서는 2027년에 공사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6년도 공사비 예산은 불용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사단 본부 등 5개 부대에서는 2027년 4분기에 공사계약이 체결될 예정임에 따라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공사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하게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부대개편 8차사업 중 계속사업의 공사예산(안) 및 공사계약예상시기]

(단위: 백만원)

구분	공사비(420-03목)		공사계약 예상시기
	2026	2027(안)	
6사단 본부	4,020	2,010	2027년 10월
6사단 2여단 1대대, 군수지원대대,포병대	5,765	2,883	2027년 10월
6사단 공병·수색·헌병·정보(-1) ·화생방대대	3,893	1,112	2026년 12월
6사단 7여단 군수지원대대, 포병대	4,317	2,158	2027년 10월
6사단 7여단 본부, 1·2·3대대	3,711	1,856	2027년 10월
6사단 19여단 1·2대대, 군수지원대대, 포병대	4,433	2,216	2027년 12월
6사단 포병여단, 27·98·77·88포병대대	3,793	1,083	2026년 12월
1사단 작전지휘시설	4,188	2,094	2027년 8월
특수기동지원여단	4,608	4,162	2027년 7월
육군검찰단	8,575	4,288	2027년 8월
고양병원	11,785	6,655	2027년 2월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대개편 8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집행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4) (군사시설 이전)기부 대 양여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①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 현황

기부 대 양여사업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전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대체시설물을 조성하여 먼저 국가로 기부한 후, ⓑ 국가가 대체시설물을 기부한 자에게 이전대상 시설물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군사시설이 도시 외곽지역에 위치하였으나, 도시개발과정에서 도시경계가 확장됨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 내 군사시설이 위치하게 되면서 주민들로부터 시설이전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때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시설을 이전하면,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존의 노후화된 군사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대체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기존 군 부대는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이 중단되지 않는 점도 장점 중 하나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대체시설을 국가로 기부한 후에 기존 시설 및 부지의 용도폐지 및 양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 건설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기존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회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도 있다. 이로 인하여 기부 대 양여사업은 건설경기의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한다.

참고로 2022년 이후 진행 중이거나 진행완료된 기부 대 양여사업의 현황에 따르면, 총 12개의 기부 대 양여사업이 진행 중이며, 1개 사업은 완료되었다. 광주 및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현재 이전부지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표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다.

[2022년 이후 진행된 기부 대 양여사업 현황]

(단위: 천㎡, 억원)

개별사업명	진행상황	기부재산		양여재산	
		면적	금액	면적	금액
OO리비행장 이전	대체시설 설계	16.2	166.6	69.6	166.6
0보급단 및 000여단 등 이전	합의각서 승인	-	5,868.9	990.3	5,864.0
53사단 000여단 본부 이전	대체시설 설계	174.1	1,220.2	80.6	1,220.1
50사단 군인아파트 이전	완료	-	99.5	3.8	91.0
0공병여단 000공병대대 일부시설 이전	합의각서 승인	-	3.7	2.1	3.0
00경비여단 0대대 이전	합의각서 승인	113.6	496.4	176.2	269.8
50사단 000여단 사격장 이전	대체시설 설계	-	52.1	26.7	52.1
37사단 신병교육대 사격장 이전	대체시설 설계	92.1	223.5	192.0	198.9
35사단 000여단 OOTOD 이전	재산정리	-	16.8	2.8	5.0
0포병여단 000표적획득 대대 레이더진지 이전	대체시설 공사	-	82.0	47.7	81.9
000통신대대 일부시설 이전	대체시설 설계	-	20.0	1.0	19.9
00탄약대대 이전	대체시설 설계	-	12,177.9	1,756.4	12,100.6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승인	16,340	115,192	7,354	115,192

주: 1. 이전부지 선정이 완료된 기부 대 양여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2. 2026년 9월말 기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이전부지 선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표에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음

자료: 국방부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전 요청이 접수된 군사시설은 현재 14개가 있으며, 이 중에서 6개 시설은 기부 대 양여방식 추진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다만 나머지 8개 시설의 경우, 대체부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사업성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협의 진행 중인 사업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면적	추정이전비용
3사단 ○○사격장 등 일부시설 이전	85,248	37.6
○○○군수지원단 등 일부시설 이전	8,083	7.1
000항공대대 이전	82,817	3,526.0
○○중대 이전	4,066	635.0
○○ 군부대 통합 이전	4,123,430	30,465.0
73사단 일부시설 이전	23,868	135.0

자료: 국방부

기부 대 양여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는 대체부지의 확보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군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대체부지 면적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시한 대체부지에서는 작전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시한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익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

[이전요구가 있으나 협의가 부진한 사업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면적	추정이전비용	비고
○○항공대 이전	292,831	미정	대체부지 논의중
0000공병단 및 55사단 000연대 이전	460,200	미정	
17사단 0경비단 ○○중대 이전	6,338	200.0	
21사단 ○○과학화전투훈련장 이전	4,262,167	491.0	
73사단 사령부 이전	288,652	2,575.0	
0군단 ○○휴양소 이전	19,916	88.0	
31사단 000여단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이전	326,657	1,068.0	사업성 부족
○○예비군훈련장 이전	92,820	1,146.8	

자료: 국방부

② 분석의견

첫째, 종전부지 개발에 활용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은 양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반면에, 종전부지 가치를 상승시키는 연약지반 보강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으로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부 대 양여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부재산에 대해서는 원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 원가를 고려한 감정평가액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양여재산에 대해서는 시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기부 및 양여재산가액 평가방법]

구분	기부재산가액	양여재산가액
평가 기준[1]	- 기부재산가액은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 양여재산가액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반영한 시가방식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재산 범위	- 기존 시설의 대체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기존 부지의 공작물, 수목 등도 양여재산에 포함 - 토양오염정화비용 외에는 명시적 차감 불가
관련 근거	-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등	
평가 방법	- 토지매입비, 공사비, 부대비, 물가변동비 등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사업별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예상사업비를 검토 - 건축·토목 및 국방·군사 전문가를 활용하여 특수시설에 대한 사업비 검토	- 재정경제부, 국방부, 사업시행자 간 협의된 도시·군관리계획(안) 검토 및 전문감정평가사를 통한 감정평가 시행 - 도시·군관리계획 검토를 통한 양여부지 이용계획의 적절성 검토 -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된 토지이용 용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 자문을 통하여 양여재산 가액 재산정

주: 1) 최종 합의각서 작성 시 기부 및 양여재산가액 평가방법으로서, 최초 합의각서 작성 시에는 기부재산가액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 및 대체시설 원가를 고려한 투입 예상액으로 산정하며, 양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시점의 제반사정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산정함

자료: 배유진·이승욱·김고은·이수암,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사업 합리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25.12.31.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이전완료 후 잔존 건축물, 수목 등에 대해서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활용되지 않더라도 양여재산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반면에, 종전부지 토지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연약지반 보강공사비용은 양여재산가액 산정 시 적정규모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현재 관련 규정상 명시적으로 양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용은 중앙행정기관 책임으로 발생한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비용이다. 그 외 기존 건축물, 수목 등은 국유재산의 하나로서 종전부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양여되는 것으로 보기에, 종전부지 개발사업에서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양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에 따라, 광주 군 공항이전사업에서도 공항시설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양여될 예정이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자(예비 사업시행자: LH)는 철거비용을 사실상 부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사업 합리화 방안 연구」[12]에서는 토양오염정화비용에 대해서만 양여재산 가치 평가 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철거비, 토지조성비도 양여재산에서 차감을 요구하고 있어서 실제 해당 비용이 양여재산 감정평가에 어느 정도 고려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의견을 제시하였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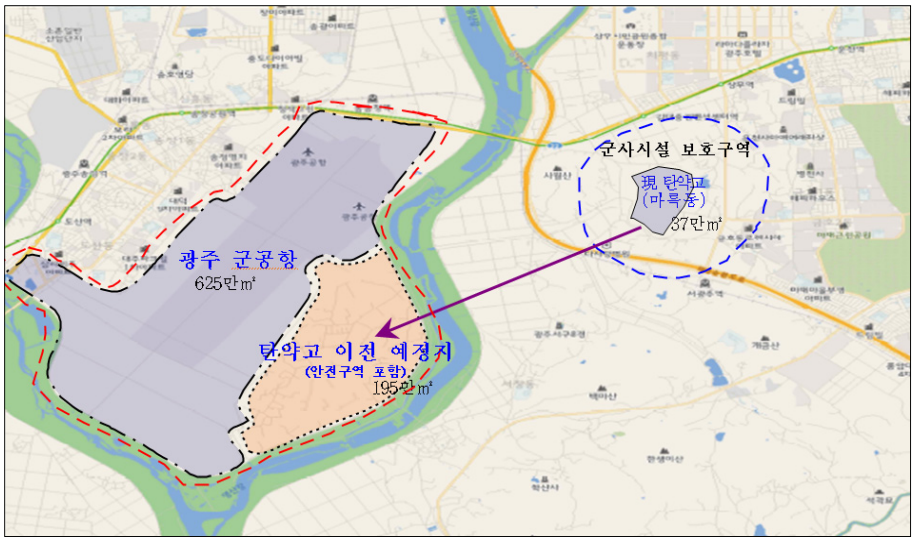
한편 연약지반 보강공사는 연약지반상태였던 기존 토지의 지반강도를 높이고 침하를 줄이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토지의 가치상승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공사비용 등이 적정 수준으로 양여재산가액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실시한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현재 광주 마륵동에 위치한 광주기지 영외탄약고를 군 공항의 인접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전예정지의 토지는 영산·황룡강이 위치한 연약지반이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에 따라, 2021~2023년 동안 총 207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토지가치를 제고할 수 있었다.[14]

12) 자료: 배유진·이승욱·김고은·이수암,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사업 합리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25.12.31.

13) 해당 연구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철거비용을 투입해야 할 건축물, 수목, 물품 등을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양여재산 가치로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메가프로젝트 추진 이전)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계획]



주: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영역(광주군공항 625만㎡와 탄약고 이전 예정지 195만㎡)이 현재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예정부지로 지정되었음
자료: 국방부

연약지반 보강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전예정지 주민들과 이주대책의 시행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탄약고 이전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으나,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부지로 '광주 군 공항 부지'와 '탄약고 이전예정지'가 지정되면서 영외탄약고 이전사업은 중단된 상태이고, 광주 군 공항 및 탄약고 이전예정지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될 예정이다. 양여과정에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감정평가가 실시되게 된다.

국방부는 이전사업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양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사업에서 지출한 연약지반 보강공사비용이 양여재산가액에 반영되는지 현 시점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약지반 개량으로 인한 토지가치증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종전상태에 대한 정보와 비교할 인근 부지가 충분해야 하지만, 영외탄약고 이전예정부지의 경

14) 해당 영외탄약고 이전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된 것으로서, 2009~2015년 2월까지는 이전예정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진행되었다. 그 이후 광주 군 공항 이전논의가 구체화됨에 따라 영외탄약고를 현재의 군 공항 인접부지로 이전하는 것은 중복투자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국방부는 매입토지에 대한 공사착공을 중단하였다. 그 이후 공사가 재개된 것은 2020년으로, 국방부는 군 공항이 이전하더라도 이미 매입한 토지에 대한 부지개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에 대한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개시하였다.

우 가장 최근에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가 2010년 5월~2015년 7월 동안 실시한 것이며, 강(江)과 군 공항으로 둘러싸인 부지의 특성상 비교평가할 부지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따라 연약지반 보강공사비용이 적정수준으로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국가가 영외탄약고 이전을 위하여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자는 지반보강공사비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연약지반 보강공사비용에 대해서도 적정수준만큼은 최대한 양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종전부지 개발에는 활용되지 않는 잔여건축물의 가치는 양여재산에 포함되는 반면에, 종전부지의 가치증대에 기여한 연약지반 보강공사비용은 양여재산가액 산정 시 적정수준으로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부 대 양여사업은 재원조달 시점과 수익실현 시점 간의 시차로 인하여 금융비용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산업단지조성과 같은 국가정책 추진으로 개발수익이 제한되는 경우나 사업시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사시설이 과거에는 도시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도심확장 과정으로 인하여 도시생활권 안에 자리잡게 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군사시설의 이전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때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이전을 진행할 경우에는 주민의 생활권 보장,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노후화된 군사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 모두에게 일정 부분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런데 기부 대 양여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체시설을 먼저 건설하여 국가로 기부한 후에 종전부지의 양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투입이 시작되는 시점과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 간의 시차가 큰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재원조달 과정에서 부담하는 이자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기부재산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는 원가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이때 재원조달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등은 차입원가로 반영될 수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고려된다고 설명한다. 용도폐지된 종전부지의 양여를 통해서 이자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정책 추진을 위하여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업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부지 양여를 통해서 보전받을 수 있는 이자비용이 제한적인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자비용 중 일부에 대해서 종전부지의 양여로 보전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에서의 개발사업(예: 주택개발사업) 수익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다. 그런데 종전 부지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될 경우에는 주택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종전 부지의 감정평가액도 낮게 산정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없는 사유로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기부재산가액이 증가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양여재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최초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양여부지의 면적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있는 사유로 사업이 장기화된 경우에 그로 인한 비용증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부지의 입지 등 시행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다면 이자비용에 대한 지원도 일정부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전사업비용과 지원사업비용을 합친 총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 경우(=초과사업비 발생)에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대구 및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서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비용의 일정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2개의 특별법에서 초과사업비 지원 규정을 설정한 이유는 소음발생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과 군 공항 사업의 특성상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려운 사유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 군 공항 사업의

경우에는 종전부지에서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개발수익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국비지원의 필요성이 더 인정되는 측면도 있다.

[대구 및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초과사업비 지원조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규모·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 및 토지를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 규모, 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부 대 양여방식 하에서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국가의 입장에서도 노후화된 군사시설을 용도폐지하고 현대화된 군사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국가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개발수익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현재는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에만 국비지원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법을 신설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들도 많으므로, 향후에는 일반법에 재량규정으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예산안 분석

①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현황

㉠ 추진경과

광주시는 2014년 10월 기존 광주 군 공항을 다른 위치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국방부는 2016년 8월 이전 타당성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통보하였다. 그 이후 예비이전후보지 4개소의 식별, 광주·전남 공동합의문 발표 등을 거쳐서 2026년 4월 2일 국방부는 무안군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 및 통보하였다. 다만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에 따라 주민투표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26.6.29.)와 '서남권 반도체 800조원 투자협약식'('26.6.30.)을 계기로 광주 군 공항 부지 및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예정부지 등을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지로 지정 및 확정('26.7.6.)하였다. 그 이후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로 무안군을 선정('26.8.28.)하였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경위]

일정	내 용
2014년 10월	- (광주시) 군공항 이전 건의
2016년 8월	- (국방부) 이전 타당성 '적정' 통보
2018년 2월~2022년 6월	- 예비이전후보지 적합지역 4개소(무안·해남·고흥·함평) 식별
2023년 12월	- 무안공항으로 통합이전을 위한 광주·전남 공동합의문 발표
2025년 6월 26일 ~	- 청와대 전담 TF 구성·운영 (*이전사업비 및 종전부지 가액 검증, 무안지역 예상 소음영향 분석 용역실시 등)
2025년 12월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6자 협의회 개최
2026년 4월 1일	- (국방부) 무안군 주민설명회 개최
2026년 4월 2일	- (국방부)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통보(무안군 일대)
2026년 6월 17일	- (국방부) 제1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운영규정(안) 심의, 이전후보지 선정절차 및 기준(안) 심의)
2026년 6월 29일	-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발표회 계기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
2026년 6월 30일	- 서남권 반도체 800조원 투자협약식 진행
2026년 7월 6일	- (정부) 현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 확정
2026년 8월 28일	- (국방부)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 선정

자료: 국방부 및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광주 군 공항 임시배치 예산안 현황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 기존 광주 군 공항 부대의 임시배치(예천·서산·중원기지) 사업, ⓑ 이전부지에서의 대체시설 건설사업, ⓒ 이전부지에 건설될 대체시설로의 이전사업, ⓓ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 종전부지에 대한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확정된 비용은 ⓐ 기존 광주 군 공항 부대의 임시배치 사업이며, 이전사업 및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이전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15]에 따라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총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양여부지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국가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별 재원부담구조]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재원부담구조</th></tr>
<tr><td colspan="2">ⓐ 기존 광주 군 공항 부대의 임시배치</td><td>국방부 전액 부담
(일반회계 및 군인복지기금)</td></tr>
<tr><td rowspan="2">이전사업</td><td>ⓑ 이전부지에서의
대체시설 건설사업</td><td rowspan="3">- 이전사업 시행자인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 부담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이전사업 및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 지원 가능</td></tr>
<tr><td>ⓒ 대체시설로의 이전사업</td></tr>
<tr><td colspan="2">ⓓ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사업</td></tr>
<tr><td colspan="2">ⓔ 종전부지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td><td>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예비 사업시행자: LH)</td></tr>
</table>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관련 법률 등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5)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②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 규모, 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주 군 공항 내 기존 군 부대를 임시배치하기 위한 사업이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14개 세부사업과 군인복지기금 1개 세부사업에 편성되었으며, 총사업비는 6,692억 5,800만원이고 이 중에서 2027년도에 반영된 금액은 3,169억 1,500만원이다. 일반회계 내 사업들은 2030년까지만 진행될 예정이지만, 군인복지기금 내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사업은 지원기간이 2033년으로 설정되었다.

이와 같은 임시배치사업은 다시 ⓐ 장비획득 및 이전, ⓑ 노후화된 통신기반보강 및 통신체계이전 ⓒ 생활관, 식당, 간부숙소 등 시설건설, ⓓ 임시배치될 인원들의 부양가족 지원[16] 등으로 구성된다.

[광주 군 공항 임시배치 관련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개별사업[1]	총사업비	2027(안)	향후 계획		
				2028	2029	2030
합계		669,258	316,915	203,673	108,230	38,390
일반회계	모의비행훈련장비 이전 및 설치 등	31,458	4,328	16,291	10,839	-
	수용부대 관사, 간부숙소 리모델링, 조종교육생 모듈러형 숙소 등	108,666	78,158	30,508	-	-
	기동장비(스쿠터, 트럭 등) 획득	47	47	-	-	-
	유류중대, 작차중대 생활관 증축	2,859	2,585	274	-	-
	정비지원 장비 이전	8,198	1,200	6,998	-	-
	기관정비고, 정비격납고 등 정비및보급시설	202,022	74,954	83,207	43,858	-
	다목적 체육센터, 직장어린이집 등 일반지원시설	95,973	15,673	8,482	34,111	37,707
	시험대, 항공기엔진용 등 항공장비	18,378	5,002	5,364	8,014	-
	간부 및 병사식당	20,081	523	11,825	7,734	-
	노후 정보통신기반	18,738	4,313	14,425	-	-

16) 국방부는 예천·서산·중원 3개 기지로 임시배치될 인원 중 일부는 그 가족들이 광주에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기 때문에, 부양가족들이 광주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자금 이자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개별사업[1]	총사업비	2027(안)	향후 계획		
				2028	2029	2030
	보강, 정보통신체계 이사, 항행안전시설 이전 등					
	터미널컴퓨터 등 통신전자장비획득	353	106	106	141	-
	지게차, 산소보급기 등 일반장비획득	137	132	3	2	-
	망원경 등 정밀측정장비획득	5,554	1,440	1,266	2,848	-
	비행대대, 시뮬레이터실, 유개형 리베트먼트 등 작전및경계시설	152,192	127,950	24,241	-	-
군인복지기금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2]	4,602	504	683	683	683

주: 1) 각 세부사업 내 내역 또는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된 것들을 기능·목적별로 재분류하였음
2) 2033년까지 지원할 예정
1. 2030년까지 재원투입이 계속될 사업은 일반회계 내의 다목적체육센터, 직장어린이집 건립 사업과 군인복지기금 내 군간부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임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는 별도로,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국비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반도체지원계정)에 출연하기 위한 1.5조원의 예산을 반도체 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에 편성하였고, 2028~2030년 동안 매년 1.5조원씩을 출연할 계획임에 따라 총 6조원의 예산이 교부될 예정이다.[17]

17)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설치 및 계정별 사용용도, 기금 운용체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0888)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26.8.31.)되었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재정 지원 계획]

(단위: 조원)

소관	사업명	회계	2027	2028	2029	2030	합계
산업통상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1.5	1.5	1.5	1.5	6.0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7년에는 ① 반도체산업 조사·분석 및 지원시책에 300억원, ② 클러스터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1조원, ③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2,000억원, ④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2,000억원, ⑤ 전문인력 양성·확보 7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예산(안)
① 반도체산업 조사·분석 및 지원시책	30,000
② 클러스터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1,000,000
③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200,000
④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200,000
⑤ 전문인력 양성·확보	70,000
합 계	1,500,000

주: 현재 분야별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잠정적 배분기준으로, 향후 산업통상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기업수요와의 직접 연계성 등을 검토 및 협의한 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배분 예정

자료: 산업통상부

② 분석의견

㉠ (총괄) 광주 군 공항 임시배치와 관련한 선결사항들에 대한 검토

첫째,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광주 군 공항 부지를 먼저 양여하기 위하여 군 공항의 기존 부대를 다른 부대들로 임시배치할 계획이지만, 선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해당 법률안의 논의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기부 대 양여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건립하여 국가로 기부한 이후에 종전 부지를 용도폐지하여 양여함에 따라, 대체시설 건

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선후행관계를 이룬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관계 법령들은 그와 같은 선(先)기부 후(後)양여를 전제로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절차, 감정평가일정 등을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선(先)양여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신규 군 공항이 건설되기 전에 광주 군 공항 부지를 양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광주 군 공항 내 기존 부대를 예천·서산·중원 등 다른 부대로 임시배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선양여 방식에서는 대체시설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선후행 관계를 이루지 않으므로, 대체시설 기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제도에 대한 특례사항에 해당하는 선양여를 실시할 수 있는 전제조건도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부 대 양여방식 하에서는 추진일정이 감정평가 → 최초 합의각서(안) 체결 → 대체시설 설계 및 공사 → 준공 전 확인검사 → 감정평가 → 최종 합의각서 체결 → 기부 및 양여 → 종전부지 개발사업 착수의 순서를 가지게 된다. 반면에, 선양여 방식 하에서는 감정평가 → 최초 합의각서(안) 체결 → 종전부지 내 부대 임시배치 → 종전부지 선양여 → 종전부지 개발사업 진행 → 감정평가 → 최종 합의각서 체결의 순서를 갖게될 것으로 보인다. 선양여 방식에서 대체시설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체시설 건설사업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은 개별 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선양여 방식에서는 임시배치 일정이 추가되고, 대체시설 기부 이전에 종전부지가 먼저 양여될 수 있다. 또한 대체시설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종전부지 개발사업 완공 이후에 최종 합의각서가 체결될 수도 있다.

[기부 대 양여방식과 선양여 방식의 주요 차이점]

구분	현행 기부 대 양여방식	선양여 방식
종전부지 양여시기	대체시설 기부 이후	대체시설 기부 이전 ※ 박선원의원안[1]: 선양여 조건 설정
기부의무 이행담보	불필요	선양여가 이루어지므로, 대체시설 건설 및 기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필요 ※ 박선원의원안[1]: 이행강제금 신설
최종 합의각서 체결시점	대체시설 완공 이후[2] (종전부지 개발 착수 이전)	관련 규정이 없음

주: 1)「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501)
2)「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등 관련 훈령에서 규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현재 선양여의 법적근거, 감정평가 관련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반영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501)이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선양여 및 이행강제금 신설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선양여 및 양여재산 감정평가 규정 신설	제23조(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등에 관한 특례) ① 국방부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다. 1. 종전부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목적으로 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양여받은 종전부지를 「국유재산법」 제2조 제6호의 정부출자기업체에 매각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⑤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 양여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합의각서(안) 작성을 위한 재산평가: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감정평가 2. 최종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재산평가: 제1항제2호의 정부출자기업체에 매각한 금액

구분	주요 내용
	⑥ 국방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상의 기한 내에 광주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광주 군 공항 대체시설의 기부 및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규정 신설	제24조(이행강제금) ① 국방부장관은 제23조제6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전사업 합의 당시 군 공항 대체시설 가액 100분의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국방부장관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23조제6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자료: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501), 2026.9.21.를 재구성

따라서 현행 법령체계는 선기부 후양여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선양여방식을 적용하여 기존 부대의 임시배치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선양여의 조건 및 대체시설 기부의무 이행확보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경과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구, 수원 등 다른 군 공항 이전사업에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 관계기관 간 재원분담 규모를 적절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장비 등의 과잉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재산의 적정규모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종전 부지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요구가 제기되어 관련 논의가 진행중인 군 공항은 대구, 광주, 수원 군 공항이 있다. 이 중에서 광주 군 공항의 경우,

그 부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의 진행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비용의 분담구조가 향후 다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간 재원부담 구조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존 기부 대 양여사업은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만 구성된 반면에, 군 공항 이전사업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도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도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전사업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종전부지를 개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등 대규모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사업 등을 추진하고도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

그런데 광주 군 공항의 경우에는 종전부지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임에 따라 대규모 개발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할 경우에는 그 분양원가를 조성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원가 이하로도 분양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을 통해서 이윤을 발생시키는 것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선양여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로 인하여 대체시설이 건설되기 전까지 광주 군 공항 내 기존 부대는 예천·서산·중원기지 등 다른 부대로 임시배치되게 된다. 임시배치 비용은 전액 국방부 소관 세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임시배치 사업이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도심확장에 따라 기존에는 외곽에 위치하였던 군 공항이 도심지역에 포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소음피해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시설이전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다른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의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데, 종전부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른 사업과 달리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진행한다는 특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군 공항 이전사업에서도 종전부지를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게 된다면, 광주 군 공항의 사례를 참고하여 비슷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이번 사

례의 특수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다른 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장비 등의 과잉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재산 규모를 적절하게 산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일례로 국방부는 임시배치사업을 통해서 T-50 비행절차훈련장비(CPT)(총 구매비용 210억원) 등 다수의 장비를 신규로 취득하고 있는데, 신규 군 공항 건설과정에서 동일한 장비들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다면 중복투자의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작전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사용 장비들의 실제 소요를 점검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향후 다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선례로 적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종전부지개발사업 시행자 간 재원분담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다른 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종전부지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되는 광주사업의 특징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장비의 과잉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재산의 적정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광주 군 공항 내 부대의 임시배치 일정과 연계하여 부지 내 한미 공동운영기지(COB)도 이전함으로써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만, COB 이전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국회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광주 군 공항부지에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llocated Operating Base, COB)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평시에 상설로 운영되는 미 공군 작전부대가 없는 한국의 공군기지에 해당한다. COB 부지는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의하여 미국 측에 공여된 것으로서, 미 공군이 해당 부지 및 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유사 시 미국의 증원전력을 전개하게 된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군 부대 뿐만 아니라 COB도 함께 이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전장소, 이전비용부담 등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COB에는 미국 측 근무자와 한국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COB의 이전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보상계획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정책에 따라 광주 군 공항 내 미군 시설·구역을 조기에 반환받기 위하여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근무자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메가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공군 부대의 임시배치일정과 연계하여 COB가 이전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방부는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의진행경과에 대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예정지(광주 군 공항 인접부지)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예정지로 지정된 상황에서, 현재 영외탄약고 이전예정지 내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주민들과의 협의 진행경과, 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주대책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18)]

국방부 소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내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사업'(2006~2030년, 총사업비 3,264억 8,300만원)은 광주광역시 상무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광주기지 영외탄약고를 광주 군 공항 인접부지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이전예정지의 토지를 2009~2015년 2월까지 매입하였다.

그런데 광주 군 공항 이전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공항 인접부지로의 영외탄약고 이전이 중복투자[19)]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국방부는 이전예정부지에 대한 공사착공을 중단하였다. 그 이후 잠정보류되었던 공사가 재개된 것은 2020년으로, 국방부는 군 공항이 이전되더라도 이미 매입한 토지에 대한 부지개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개시하여 2023년 6월에 완료하였다.

이전사업의 재개와 함께, 이전예정부지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도 편성되기 시작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20)]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18)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26.10.

19) 해당 영외탄약고는 군 공항 지원을 위한 탄약저장시설로서, 광주 군 공항과 인접한 위치에 신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 실시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을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국방부는 광주 영외탄약고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전예정부지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외탄약고 이전예정부지에 거주하던 주민 146세대와 이주대책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그 중 82세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64세대와는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영외탄약고 이전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최근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을 발표하면서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부지로 현재 광주 군 공항 부지 및 그 인접부지(영외탄약고 이전예정부지)를 지정하였다. 그에 따라 영외탄약고 이전예정부지 내 주민 64세대와 이주대책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어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를 고려하여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에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15억 3,600만원(건설보상비)을 편성하였다.

다만 건설보상비의 집행을 위해서는 이주대책에 대하여 주민들과 합의를 완료해야 하지만, 현재 주민들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인근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서 국방부와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전예정부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기존에는 현재 영외탄약고가 위치한 마륵동에 이주단지를 조성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최근에는 반도체클러스터 인근에 이주단지를 마련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방부는 영외탄약고 이전예정부지가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주대책과 관련한 합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의 이주대책 문제를 승계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주대책 협의주체가 국방부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변경될 경우, 법적 권리의무관계는 승계될 수 있으나 국방부 소관의 보상 예산안 15억 3,600만원은 승계되지 못한 채로 불용처리될 것이며, 협상 주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우려도 있다.

한편 잔여주민들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제시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는데, 영외탄약고 이전이라는 국가정책 추진필요성에 공감하여 이미 이주한 82세대와의 형평

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국방부가 건설보상비를 통해서 이주단지 조성 또는 이주정착금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해당 주민들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예정부지 인근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선정된 이후에는 법적 권리의무관계는 승계될 수 있어도 국방부 소관의 예산은 승계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될 것이며, 협상주체의 변경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임시배치 예산안 중 시설사업 분석

첫째, 기존 전투비행단의 임시배치를 위하여 선행연구, 사전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10개 시설사업(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그와 같은 선행절차를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전에 완료하지 않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적정성 및 시설운영계획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21]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은 대규모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이며,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22]

운용지침 제9조에 따르면, 사전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세부사업 단위로 하되,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 내역사업 중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2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26.10.

22)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
제7조(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 ① 사전타당성 검토는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사전타당성 검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다만,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포함)
2.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사업

해당 하위 내역사업도 사전타당성 검토의 대상으로 한다.[23]

임시배치사업 중 예천·중원·서산기지 내에서 추진할 시설사업[24]의 현황에 따르면, 예천기지 내 시설사업의 총사업비는 1,595억 7,100만원이고, 중원기지의 경우는 2,229억 8,000만원, 서산기지의 경우는 1,992억 4,200만원이다. 대부분의 시설은 2029년이면 완공되지만, 예천 및 서산기지의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예천 및 중원기지의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은 203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다음 표는 예천·중원·서산기지에서 추진할 개별 시설사업 중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들을 묶어서 정리한 것으로서, 개별 시설사업들은 세부사업 내의 독립적인 하위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예천·중원·서산기지 내 건설될 시설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기지	개별 사업[1]	총사업비	예산안	계획액		
				2027	2028	2029	2030
일반회계	예천	관사 및 간부숙소 리모델링, 조종교육생 모듈러형 숙소 신축	59,909	52,857	7,051	-	-
		정비 및 보급시설	248	224	23	-	-
		다목적 체육센터, 직장어린이집 등 일반지원시설	43,483	3,746	3,448	17,347	18,942
		시뮬레이터실 등 작전 및 경계시설	55,931	42,957	12,974	-	-
		소 계	159,571	99,784	23,496	17,347	18,942
	중원	관사 및 간부숙소 리모델링	22,857	11,848	11,009	-	-
		병영생활관 증축	953	862	91	-	-
		정비격납고, 기관정비고 등 정비 및 보급시설	103,996	41,067	41,772	21,155	-
		직장어린이집 등 일반지원시설	26,349	10,995	5,034	4,423	5,897

23)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
제9조(대상사업의 단위) ①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국방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으로 한다.

24) 항행안전시설 이전사업, 정보통신체계 이전공사 등 정보통신체계운영지원 단위사업도 시설사업의 성격을 가지지만, 예천·중원·서산기지 외 다른 기지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제외하였다.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기지	개별 사업[1)]	총사업비	예산안	계획액		
				2027	2028	2029	2030
		간부식당	3,354	90	1,974	1,290	-
		시뮬레이터실 등 작전 및 경계시설	65,471	58,134	7,337	-	-
		소 계	222,980	122,996	67,217	26,868	5,897
	서산	관사 및 간부숙소 리모델링	25,900	13,453	12,448	-	-
		병영생활관 증축	1,906	1,723	183	-	-
		정비격납고, 기관정비고 등 정비 및 보급시설	97,778	33,663	41,412	22,703	-
		다목적 체육센터	26,141	932	-	12,341	12,868
		간부식당, 병사식당	16,727	433	9,851	6,444	-
		시뮬레이터실 등 작전 및 경계시설	30,790	26,859	3,930	-	-
		소 계	199,242	77,063	67,824	41,488	12,868
합 계			581,793	299,843	158,537	85,703	37,707

주: 1) 각 세부사업 내 내역 또는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된 것들을 기능·목적별로 재분류하였음
1. 일반회계 내 장비획득, 수송활동, 과학화훈련, 정보통신체계운영지원 단위사업과 군인복지기금 내 전세자금융자 단위사업을 제외하였음
2. 단수조정으로 합계가 다를 수 있음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 중에서 운용지침에서 규정한 사전타당성 검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시설사업 10개이다.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시설사업]

(단위: 억원)

순번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1	주거	(서산) 다목적 체육센터	261	2027~2030
2	주거	(예천) 다목적 체육센터	299	2027~2030
3	주거	(예천) 모듈러 간부숙소 (2개동)	453	2027~2028
4	시설	(서산) 관사 리모델링 (114세대)	224	2027~2028
5	시설	(예천) 유개형 리베트먼트 (23동)	289	2027~2028
6	시설	(서산) 정비격납고 (막구조)	233	2027~2028
7	시설	(서산) 탄약고 (5동)	341	2027~2029
8	시설	(중원) 유개형 리베트먼트 (17동)	216	2027~2028
9	시설	(중원) 탄약고 (5동)	341	2027~2029
10	시설	(중원) 정비격납고(막구조)	233	2027~2028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위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선행연구 및 사전타당성 검토를 진행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사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시설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3대 메가프로젝트('26.6.29. 발표)의 하나인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부지로 광주 군 공항부지 등이 선정되었기에, 선행연구, 사전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거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별 시설사업 중 총사업비가 200억원을 초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2026년 10월까지 진행할 것이라 설명한다.

그런데 「2027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예산 요구시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및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군/기관에 대해서는 2027년도 시설예산의 편성을 유보하거나 감액 편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시설사업의 특성상 선행연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과 같은 사전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는 무엇인지, 시설단가는 적절하게 적용하였는지, 방호기준 등 군사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은 완비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식별하지 못한 상태로 시설사업에 착수할 경우, 사업지연요소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설단가 등을 규정하였으나, 이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시설을 건축함에 따라 과도한 시설투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예천 조종교육생 모듈러형 숙소의 경우, 「2027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규정한 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기 단축을 이유로 기존 군사시설에 적용되지 않았던 구조를 적용한 사례(막구조의 정비격납고, 유개형 리베트먼트 등)도 확인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들의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하기 이전에 선행연구, 사전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들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둘째, 공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하여 기존 광주 군 공항 근무자들의 이동 일정과 연계하여 시설물 완공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임시배치가 종료된 이후 시설물 사용계획을 구체화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서 내구연한 동안 유휴화되는 시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시설사업 중에서 관사 및 간부숙소, 조종교육생 숙소 등 군인들의 부대 내 생활과 직접 연관된 시설들만 별도로 살펴보면, 수용부대 관사 및 간부숙소 리모델링, 생활관 등은 2028년 4분기에 실제 사용이 가능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형 숙소의 경우에도 2028년 8월은 되어야 실제 입주가 가능하다. 그 외 간부식당 등은 2029년 12월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획기준으로 2028년 6월까지 광주 군 공항을 완전히 비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임시배치될 인원들이 사용할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관의 경우 2028년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므로 약 4개월 정도 사용하지 못할 것이고, 관사 및 간부숙소의 경우 6개월 동안 다른 숙소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간부 및 병사식당의 경우 1년 6개월 동안 기존 부대원들과 같이 식당을 써야 하기에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시설별 설계, 공사, 입주예상시점]

구분	계획				
	설계착수	설계종료	공사착수	공사종료	입주시작
수용부대 관사 리모델링 (중원, 충주)(99세대)	'27. 2	'27. 7	'27. 10	'28. 12	'28. 12
수용부대 관사 리모델링 (서산, 서산)(114세대)	'27. 2	'27. 7	'27. 10	'28. 12	'28. 12
수용부대 관사 리모델링 (예천, 예천)(62세대)	'27. 2	'27. 7	'27. 10	'28. 12	'28. 12
수용부대 간부숙소 리모델링 (예천, 예천)(37실)	'27. 2	'27. 7	'27. 10	'28. 12	'28. 12
수용부대 간부숙소 리모델링 (중원, 충주)(50실)	'27. 2	'27. 7	'27. 10	'28. 12	'28. 12
수용부대 간부숙소 리모델링 (서산, 서산)(40실)	'27. 2	'27. 7	'27. 10	'28. 12	'28. 12
조종교육생 숙소(예천, 모듈러, 2개동, 140세대) 신축	'27. 2	'27. 7	'27. 10	'28. 7	'28. 8
유류중대 생활관 증축(서산)	'27. 2	'27. 7	'27. 10	'28. 4	'28. 10
작차중대 생활관 증축(중원)	'27. 2	'27. 7	'27. 10	'28. 4	'28. 10

구분	계획				
	설계착수	설계종료	공사착수	공사종료	입주시작
작차중대 생활관 증축(서산)	'27. 2	'27. 7	'27. 10	'28. 4	'28. 10
간부식당(중원)	'27. 3	'28. 2	'28. 5	'29. 12	'29. 12
간부식당(서산)	'27. 3	'28. 2	'28. 5	'29. 12	'29. 12
병사식당(서산)	'27. 3	'28. 2	'28. 5	'29. 12	'29. 12

자료: 국방부

시설사업의 특성상, 부대 내 군용지에 건설되더라도 설계작업 및 그에 대한 적정성 검토기간, 실제 진행가능한 건설공사,[25] 전기·수도·가스 등 설비공사기간, 설계·공사 등 각 단계별 상호연계성 검토 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하여 행정기관 내부의 협의과정을 최소화하더라도 공기를 단축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위 시설들의 대부분은 3~4년 정도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획기준으로는 2032년 12월에 대체시설이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대체시설 완공 이후에는 임시배치가 종료되고 재배치작업이 진행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임시배치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들이 유휴화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

국방부는 기존 기지 내 시설이 노후화된 경우가 많아서 임시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일례로 서산기지에 신축될 병사식당의 경우, 당초 사용하던 병사식당이 노후화(준공연도 '96.11.30.)되어 중기계획상으로 병사식당을 신축할 계획이 반영되어 있었으며, 임시배치 과정에서 신축일정을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임시배치가 종료되더라도 신축한 병사식당을 서산기지에서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중원 및 서산 간부식당의 경우 수도·가스시설 등은 기존 식당의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해당 시설들에 대해서는 임시배치 종료 이후의 활용계획을 구체화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셋째, 조종교육생 모듈러형 숙소 신축사업의 경우, 「2027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시설예산안 편성기준 대비 추가반영된 금액이 있고, 공사일정을 고려할 때 2027년 연내에 완공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총사업비 전

25)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될 수 있도록 하는 양생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천시에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제한된다.

액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므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모듈러형 숙소 신축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6]

국방부는 예천기지의 보유공실 및 인근지역 민간주택 임대물량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모듈러형 숙소를 신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숙소를 조종교육생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452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2027~2028년 동안 예천기지 내 조종교육생을 위한 모듈러형 숙소 140실을 건설할 계획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총사업비 전액이 반영되었다.

[예천 조종교육생 모듈러형 숙소 신축사업 개요]

<table>
<tr><td>구분</td><td colspan="3">내용</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3">2027~2028년</td></tr>
<tr><td>총사업비</td><td colspan="3">452억 6,200만원</td></tr>
<tr><td rowspan="2">재원배분계획</td><td>연도</td><td>2027년</td><td>2028년</td></tr>
<tr><td>금액</td><td>452억 6,200만원</td><td>-</td></tr>
<tr><td>물량</td><td colspan="3">140실(2개동 70실)</td></tr>
<tr><td colspan="2">내부 조감도</td><td colspan="2">외부 조감도</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able>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만 「2027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시설물 단가를 고려할 때 부대공사 할증지수가 높게 반영되었으며, 실제 공사종료기간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였다.

「2027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부대공사비 할증지수의 경우, 신축할 병영생활관에 대해서는 13%, 관사 및 간부숙소에 대해서는 15%, 취사식당에 대해서는 13%,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10%로 설정하고 있다.

26)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26.10.

[부대공사비 할증]

구분	세부내용	적용구분	할증지수
부대공사비 할증	병영생활관	신축시설	13%
	관사 및 간부숙소		15%
	취사식당		13%
	그 외		10%

자료:「2027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내 국방시설규모 기준

그런데 관사 및 간부숙소에 해당하는 예천기지 조종교육생 모듈러형 숙소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대공사비 할증지수를 43%로 산정하여 시설기준이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추가적인 공사비용이 산정되었다. 현재 시설면적 하에서 지침상의 부대공사 할증지수를 적용하면, 약 71억원(= 25,362,610,000 × 0.28)이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천기지 조종교육생 모듈러형 숙소 공사비 산정근거]

(단위: ㎡, 천원, %)

구분	면적	단가(할증지수)	금액
간부숙소 신축(모듈러)	6,110	4,151	25,362,610
지역 및 지세할증		-	-
부대공사비율		43	10,985,561
제로에너지		5.89	1,493,858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용			602,189
지반보강비, 전기/통신인입비, 품질관리활동비,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및 시설패키지 설치비용			1,005,648
합 계			39,449,866

주: 단수조정 등으로 인하여 각 항목별 금액 및 그 합계액이 다를 수 있음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또한 실제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2028년이지만, 총사업비 전액을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실제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방부는 최초로 사업비를 산정할 당시에는 모듈러형 숙소를 신축할 위치를 정하지 못하였기에 사업비 산정이 어려웠으며, 선행연구 결과('26.10.)[27] 총사업비가

27) 당초 예산안 산정에 적용한 기준보다 부대공사비 할증이 감액되고 지역 할증이 추가로 반영되는 등 세부적인 산정기준이 변경되었다.

436억 7,600만원으로 산정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기존 총사업비 452억 6,200만원을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는데, 인력의 추가투입을 통해서 가능한 한 2027년 연내에 신축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모듈러형 방식[28]을 채택하여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도, 해당 공법은 설계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단축시킬 수 있는 일정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실시설계와 모듈러형 숙소제작을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두 작업 간 연계가 필요하며, 총사업비가 200억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설계적정성 검토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사전절차로 인하여 단축시킬 수 있는 공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설계 및 모듈러 설치과정에서 전기·수도·가스 등 각종 기반설비와의 연결성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예상보다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선금으로 계약대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2027년 연내에 총사업비 전액을 선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어렵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천기지 조종교육생들이 거주하게 될 모듈러형 숙소의 신축 예산안이 적정한 규모로 산정되었는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기단축을 이유로 엄체호의 구조를 유개형 리베트먼트로 적용하거나 정비격납고를 막구조로 건설하는 등 기존 군사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시설구조가 도입되었으므로, 실제 작전수행 과정에서 문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29]

국방부는 임시배치 일정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물들의 공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시설구조를 활용하여 예천·서산·중원기지에 군사시설물을 건설할 계획이다.

일례로 막구조는 원래 내구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군사시설물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방식이기 때문에, 국방예산안 작성지침 등에도 막구조에 대한 시설물단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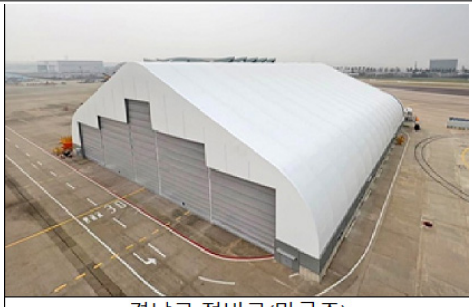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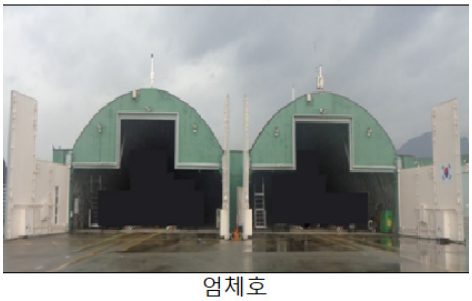
28) 국방부에 따르면, 기본설계 이후 곧바로 모듈러형 숙소 제작의뢰를 실시할 수 있기에 일반적인 건물 신축보다는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듈러 제작과 실시설계 작업이 서로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 간 논의를 진행하는 시간도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며, 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설비공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기를 추가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26.10.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투기 등을 보관할 엄체호는 전투기 보호를 위하여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상부, 측면부, 후면부가 폐쇄형인 구조로 건설되어 왔다.

그런데 중원 및 서산에 건설될 정비격납고·기관정비고 등은 상부를 막으로 덮는 형태의 막구조를 적용할 예정이며, 예천·중원·서산에 건설될 엄체호는 상부만 덮개로 덮인 유개형 리베트먼트로 지어질 예정이다.

[격납고·정비고, 엄체호의 기존 및 신규 구조 대비표]

기존	신규
 격납고·정비고(철골조)	 격납고·정비고(막구조)
 엄체호	 유개형 리베트먼트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막구조의 격납고·정비고에 대해서 민간항공사에서도 그와 같은 구조로 지어진 격납고·정비고를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으며, 유개형 리베트먼트에 대해서는 임시배치 종료 이후에는 다른 기지 소속의 전투기가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군사시설에 요구되는 내구도의 수준은 일반시설보다 높을 수밖에 없으며, 과거에 적용하지 않던 구조를 활용함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식별될 수도 있으므로, 임시배치 기간 중에는 국방부 차원의 면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구조 분석

가. 현 황

(1) 개념 및 관련 법제

형사사법(刑事司法)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제도 등을 말한다.[1)]

대한민국 헌법은 형사사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죄형법정주의·일사부재리·소급입법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7조는 재판청구권과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형사사법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하는 법률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형벌을 부과하는지를 정하는 실체법으로 1953년 「형법」이 제정되었고, 절차법으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형사사법기관의 모든 문서 작성을 전자화하고 형사사법 정보를 공동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형사사법 진행 상황 조회 서비스, 각종 증명서 발급, 형사절차 및 법령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2010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제정되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업무처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밖에 수사기관·재판기관·집행기관의 조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에 비추어 보면, 형법·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의 기본 사항은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총괄하고, 각 기관의 조직과 직무는 해당 기관의 소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형사사법 법제의 구조라고 할 것이다.

이동현 예산분석관(gerbera@assembly.go.kr, 6788-4644)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형사사법 관련 법 체계]

제명	소관	피해자 지원사항
대한민국 헌법	-	신체의 자유·적법절차·영장주의(제12조), 죄형법정주의·일사부재리(제13조), 재판청구권·무죄추정(제27조),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제30조)
형법	법무부	적용범위, 범죄의 성립, 형의 종류,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시효 등, 개별 범죄
형사소송법		수사, 공소, 공판, 재판, 상소, 재심·비상상고,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공소청법		공소청의 조직과 검사의 직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대범죄 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직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청	경찰의 조직 및 직무
경찰관 직무집행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 및 직무
법원조직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원 행정처	법원의 조직과 심급, 국민참여재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수형자·미결수용자의 처우, 교정시설 운영
소년법		소년보호사건 및 소년형사사건의 특칙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무죄 판결 등을 받은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보상
해양경찰법	해양 경찰청	해양경찰의 조직 및 직무
군사법원법	국방부	군사법원의 조직, 군사재판 절차

자료: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재작성

형사사법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사, 공소, 재판, 및 집행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범죄에 대해 수사하며[2],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범

죄를 수사하고,[3] 중대범죄수사청은 소관 중대범죄를 수사하며,[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한다.[5] 수사 과정에서 강제처분이 필요한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영장 청구는 공소청의 검사가 담당한다.[6]

공소 단계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7]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사실관계, 유무죄 및 형량을 판단하고, 형 집행 단계에서는 교정시설과 보호관찰 기관 등이 형을 집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2027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법무부의 경우 2027년 예산안 총액은 5조 4,055억 9,800만원으로, 2026년보다 7,009억 5,400만원(14.9%) 증액되었다.

공소청은 법무부 검찰국 일반회계 예산 내에 편성되었으며, 2027년 예산안은 1조 866억 9,500만원으로 2026년보다 2,042억 2,000만원(△15.8%) 감액되었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해양경찰법」
제14조(직무)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4)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6)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공소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공소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2027년 예산안 총액은 206억 7,700만원으로, 2026년보다 90억 1,800만원(△30.4%) 감액되었다.

법원행정처의 경우 2027년 예산안 총액은 2조 8,556억 2,000만원으로, 2026년보다 1,309억 9,600만원(△4.3%) 감액되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2027년 예산안 4,724억 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해양경찰청의 경우 2027년 예산안 총액은 2조 2,291억 6,300만원으로, 2026년보다 1,406억 7,600만원(6.7%)이 증액되었다.

[형사사법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26년 예산(A)(수정)	2027년 예산안(B)(계획안)	차이(B-A)	증감률(B/A)
법무부	4,704,644	5,405,598	700,954	14.9
일반회계	4,523,513	5,213,142	688,884	15.2
(공소청)	(1,290,915)	(1,086,695)	(△204,220)	(△15.8)
교도작업특별회계	78,375	82,657	4,282	5.5
범피기금	102,756	109,799	7,043	6.9
공수처	29,695	20,677	△9,018	△30.4
일반회계	29,695	20,677	△9,018	△30.4
법원행정처	2,956,616	2,855,620	△130,996	△4.3
일반회계	2,095,880	2,240,248	114,368	6.9
등기특별회계	288,517	291,226	2,709	0.9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72,219	324,146	△248,073	△43.4
경찰청	14,262,141	14,983,166	721,025	5.1
일반회계	14,168,029	14,889,053	721,024	5.1
책임운영특별회계	88,966	88,766	△200	△0.2
지역균형특별회계	5,146	5,347	201	3.9
중수청	-	472,406	472,406	-
일반회계	-	472,406	472,406	-
해양경찰청	2,088,487	2,229,163	140,676	6.7
일반회계	2,088,487	2,229,163	140,676	6.7

주: 1. 공소청의 경우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되어있고, 검찰국 예산을 바탕으로 작성
2. 2026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2026년 8월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된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되면서 수사와 공소를 모두 수행하던 검찰청이 폐지되었고, 이와 함께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이 수행하던 업무 중 공소는 공소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행하는 것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사와 공소를 수행하던 검찰청의 체계에서 공소와 수사가 분리되었으므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공소 및 수사 기관의 예산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공소 및 수사 기관의 예산안 현황

종전 검찰청은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등을 담당하였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이러한 직무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어 승계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은 종전 검사의 직무 중 공소 및 재판과 관련된 기능을 승계하였고,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반면 범죄수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은 공소청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았고, 수사에 관해서는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만 규정되었다.

검찰청이 수행하던 수사 기능 중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되었다. 검찰청이 수사와 공소를 함께 수행하던 것과 달리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에 한정된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권한은 개별 법률에 따라 종전과 같이 유지되므로, 형사사법체계상 수사는 경찰,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자의 직무 범위에 따라 수행하고 공소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체계가 되었다.

[검찰청 폐지 후 신설 기관의 역할]

기관명	검찰청[1]	
역할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관명	공소청[2]	중대범죄수사청[3]
역할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재판 집행 지휘·감독 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2.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주: 1) 검찰청법(법률 제18861호) 제4조(검사의 직무)
2) 공소청법(법률 제21991호) 제4조(검사의 직무)
3)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16호) 제4조(직무)
자료: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재작성

검찰청의 폐지로 기능이 분리되면서 2027년도 예산안은 기존 검찰청의 예산을 바탕으로 두 기관으로 나누어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7년 예산안 기준 법무부 소관의 공소청의 예산안은 1조 866억 9,500만원, 행정안전부 소관 중대범죄수

사청의 예산안은 4,724억 600만원으로 두 기관 합산 예산안은 1조 5,591억 100만원이다. 이는 2026년 검찰청 예산 1조 2,909억 1,500만원보다 2,681억 8,600만원(20.8%) 증가한 규모이다.

[검찰청 폐지 후 신설 기관의 예산안]

(단위: 백만원)

	2026년	2027년			차이(B-A)
	검찰청(A)	공소청	중수청	합산(B)	
예산(안)	1,290,915	1,086,695	472,406	1,559,101	268,186
인건비(총액)	883,665	751,659	229,929	981,588	97,923
기본경비	49,134	39,720	25,165	64,885	15,751
시설운영	83,131	78,507	96,182	174,689	91,558
국제협력지원	7,937	8,571	771	9,342	1,405
법과학	11,410	9,449	13,219	22,668	11,258
국제형사협력지원	2,128	2,100	-	2,100	△28
인권보호 등	31,381	29,262	9,476	38,738	7,357
첨단기술융합형차세대 Forensic기술연구개발 (R&D)	2,200	1,980	-	1,980	△220
정보화	29,633	27,613	13,488	41,101	11,468
첨단범죄및디지털	12,286	8,021	5,616	13,637	1,351
형사부 등 수사협력지원	87,824	72,672	-	72,672	△15,152
공판활동지원	1,992	3,455	-	3,455	1,463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6,620	7,233	-	7,233	613
형사보상	44,000	46,000	-	46,000	2,000
형사법정비	349	453	-	453	104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13,768	-	-	-	△13,768
마약수사	10,621	-	10,280	10,280	△341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3,856	-	3,922	3,922	66
중대경제범죄수사	-	-	56,187	56,187	56,187
공공수사	2,982	-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5,998	-	8,171	8,171	8,171

주: 1. 검찰청 및 공소청의 경우 검찰국 예산을 바탕으로 작성
2. 2026년 검찰청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3. 검찰청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분리·이관된 사업 작성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소청의 예산안은 검찰청 대비 2,042억원(15.8%) 감소하였으나, 중대범죄수사청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면서 합산 예산액이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건비는 검찰청 8,837억원에서 합산 9,816억원으로 979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설운영은 831억원에서 1,747억원으로 915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검찰청의 사업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각각 예산안이 편성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법과학 관련 사업의 경우 검찰청의 2026년 예산은 11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7년 예산안 상 공소청이 94억 4,900만원, 중대범죄수사청이 132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양 기관 모두 편성되었고, 이에 따라 2027년 합산 예산액은 226억 6,800만원으로 2026년 검찰청의 예산에 비해 112억 5,800만원(98.7%)이 증가하였다.

중대범죄수사청 외 수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일반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청[8]과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9] 및 해양에서의 수사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청[10]이 있다.

경찰청의 경우 2027년 예산안 총액은 14조 9,831억 6,600만원으로, 2026년보다 7,210억 2,500만원(5.1%) 증액되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4조 8,890억 5,300만원으로 2026년보다 7,210억 2,400만원(5.1%) 증액되었고, 책임운영특별회계(경찰병원)는 887억 6,600만원으로 2억원(0.2%) 감액되었다. 지역균형특별회계(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는 53억 4,700만원으로 2억 100만원(3.9%) 증액되었다.

증감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범죄예방 및 치안상황대응강화(78.1% 증)으로, 이는 주로 세부사업인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1131-311)의 내역사업으로 4륜형 순찰로봇 도입·보급(450억원, 순증)을 신규로 편성하였음에 기인한다.

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10) 「해양경찰법」
제14조(직무)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경찰청의 2027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6년	2027년	차이	증감률
총계	14,262,141	14,983,166	721,025	5.1
일반회계	14,168,029	14,889,053	721,024	5.1
범죄예방 및 치안상황대응강화	62,317	110,992	48,675	78.1
범죄수사활동	406,697	427,690	20,993	5.2
교통안전·소통확보	318,645	315,670	△2,975	△0.9
사회적약자보호	18,462	14,454	△4,008	△21.7
사회질서유지	184,454	190,505	6,051	3.3
공공안녕위험예방 및 대응강화	43,332	49,396	6,064	14.0
국제치안협력공조강화	18,076	20,157	2,081	11.5
전문경찰양성	88,614	98,385	9,771	11.0
치안인프라구축	570,903	602,608	31,705	5.6
경찰행정지원	12,456,529	13,059,196	602,667	4.8
책임운영특별회계(경찰병원)	88,966	88,766	△200	△0.2
지역균형특별회계(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5,146	5,347	201	3.9

주: 1. 프로그램 기준으로 작성
2. 2026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2027년 예산안 총액은 206억 7,700만원으로, 2026년보다 90억 1,800만원(30.4%)가 감액되었다.

이는 공수처활동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인 공수처업무정보화사업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구축(2026년 73억 5,000만원)과 전송형 전자영상 집행시스템 구축(2026년 36억 5,500만원)이 종료되어 2027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음에 주로 기인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7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6년	2027년	차이	증감률
총계	29,695	20,677	△9,018	△30.4
일반회계	29,695	20,677	△9,018	△30.4
공수처활동	16,100	6,786	△9,314	△57.9
행정지원	13,595	13,891	296	2.2

주: 1. 프로그램 기준으로 작성
2. 2026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고위공직자수사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양경찰청의 경우 2027년 예산안 총액은 2조 2,291억 6,300만원으로, 2026년보다 1,406억 7,600만원(6.7%)가 증액되었다.

증감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해양오염관리(126.7% 증)으로, 이는 주로 세부사업인 방제정건조(4434-300)의 내역사업으로 다목적 화학방제함 건조(408억 5,200만원, 전년 대비 338억 3,700만원 증)사업을 연부율에 따라 증액하여 편성하였음에 기인한다.

[해양경찰청의 2027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6년	2027년	차이	증감률
총계	2,088,487	2,229,163	140,676	6.7
일반회계	2,088,487	2,229,163	140,676	6.7
구조안전활동	106,123	106,678	555	0.5
정비창운영	51,539	70,969	19,430	37.7
해양경비체계강화	507,249	485,236	△22,013	△4.3
해양경찰행정지원	1,394,341	1,499,992	105,651	7.6
해양오염관리	29,235	66,288	37,053	126.7

자료: 해양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 및 주요 경상경비 현황

2026년 검찰청의 정원은 검사 2,292명, 공무원 8,415명을 합산한 총 10,708명이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신설된 공소청의 정원은 검사 2,292명, 공무원 5,890명으로 총 8,182명이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은 수사관 2,567명, 공무원 307명으로 총 2,874명으로, 이를 합산한 인원은 11,056명(2026년 검찰청 인원 대비 348명 증가)이다.

[검찰청 및 공소청, 중수청의 정원]

(단위: 명)

구분	검사	수사관	공무원	합계
검찰청(2026)	2,292	-	8,415	10,708
공소청과 중수청 합계	4,859		6,197	11,056
공소청(2027)	2,292	-	5,890	8,182
중대범죄수사청(2027)	-	2,567	307	2,874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경상경비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2023년 80억 900만원에서 2024년 72억 900만원(전년 대비 △8억원), 2025년 2회 추경 40억 400만원(전년 대비 △32억 500만원), 2026년 31억 5,400만원(전년 대비 △8억 5,000만원)으로 감액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2023년 506억 9,100만원, 2024년 489억 9,900만원(전년 대비 24억 100만원 증), 2025년 2회추경 506억 9,100만원(전년 대비 16억 9,200만원 증), 2026년 488억 1,400만원(전년 대비 △18억 8,000만원)으로 변동되고 있다.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회추경	2026년
특수활동비	8,009	7,209	4,004	3,154
특정업무경비	46,598	48,999	50,691	48,814
합계	54,607	56,208	54,695	51,968

주: 1. 검찰국 예산을 바탕으로 작성
2. 2026년 검찰청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7년 예산안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를 합산한 금액은 585억 9,300만원으로, 검찰청의 2026년 예산 519억 6,800만원보다 66억 2,500만원 증액 편성되었다.

[검찰청 폐지 후 신설 기관의 주요 경상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검찰청(2026) (A)	공소청(2027)	중수청(2027)	공소청중수청 합산(B)	차이(B-A)	증감률 (B/A)
합계	51,968	23,279	35,314	58,593	6,625	12.7%
특수활동비	3,154	-	4,205	4,205	1,051	33.3%
특정업무경비	48,814	23,279	31,109	54,388	5,574	11.4%

주: 1. 검찰청 및 공소청의 경우 검찰국 예산을 바탕으로 작성
2. 2026년 검찰청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으로, 특수활동비는 중대범죄수사청에만 42억 500만원 편성되어 2026년 검찰청보다 10억 5,100만원 증액 편성(33.3%)되었고,[11] 특정업무경비는 공소청 232억 7,900만원, 중대범죄수사청 311억 900만원이 편성되어 이를 합산하면 543억 8,800만원으로, 2026년 검찰청보다 55억 7,400만원(11.4%) 증액 편성되었다.

11) 중대범죄수사청은 2026년 검찰청이 10월 2일로 폐지될 예정이라 9개월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였으므로,(제22대 국회 제429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 (2025.11.12.) 회의록 p.98) 이를 12개월로 환산(3,154 x 12/9 = 4,205)하여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나. 분석의견

(1)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법령·제도 등 후속 정비 필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수사와 공소를 모두 수행하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누어 맡게 되었다.

예산은 기관의 법령상 직무와 소관을 근거로 편성·집행되므로, 기관의 소관과 기능이 바뀌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 등이 개편된 체계를 반영하지 못하면 예산을 통한 사업의 법적 근거와 실제 소관이 어긋나게 된다. 이 경우 어떤 기관이 어떤 사업을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불분명해져 사업 집행이 지연되거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또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한 기관 안에 있던 기능을 둘로 나눈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 전체의 업무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미 경찰청이 일반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새로 추가되었다. 수사기관이 늘어난 만큼 기관 간 수사 범위가 겹치거나 경계가 모호한 영역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추어 예산이 기능에 맞게 편성·집행되기 위해서는 법령과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공소청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을 독립 편성하는 중앙관서에 해당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또한 예산안을 독립하여 편성하므로, 공소청도 예산안을 독립 편성하고 국회에 별도의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안 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12]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중앙관서로 보고 있다.[13]

12)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5년 10월 1일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정부조직법」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고 규정하여,[14] 공소청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관서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법무부와는 독립된 별도의 중앙관서이므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5]를 바탕으로 검찰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정부조직법」상 19개 청 중 공소청만 유일하게 분리하지 않고 부 내에서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관서의 예산안 편성 관련 법규정]

법률명	내용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정부조직법	제35조(법무부)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

따라서 법무부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소청 예산안을 법무부 사업으로 포함하여 편성한 방식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다른 중앙관서와 마찬가지로 공소청을 독립된 소관으로 편성하여 국회가 공소청이 수행하는 사업을 기관 단위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3)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4) 「정부조직법」
제35조(법무부)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

1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검찰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둘째,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청을 대상으로 규정한 시행령 등의 경우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와 실제 사업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2026년 9월 29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의제정과「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관계법령의정비를위한126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대통령령」을 공포 및 시행하였으나,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검찰청을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 및 규칙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은 도핑 방지를 위한 선수 자료·정보 요청 범위를 정하면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수사를 통해 보유한 자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이 조문은 개정되지 않았다. 특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담당하므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담보금의 국고귀속 사항을 통보하는 주체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관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따른 담보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재원인데, 통보 주체와 수납 절차가 형사사법체계로 개편된 기관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역시 임시조치·이송·불처분·보호처분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할 때 해당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소청 검사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공소청 출범으로 업무 수행 주체가 변경되었음에도 검찰청을 기준으로 규정한 대통령령과 규칙이 개정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사업과 근거 법령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도핑 방지 사업처럼 수사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는 사업은 자료를 보유한 기관이 바뀌면 협조 체계와 관련 경비의 소관도 달라지므로, 자료 제공 주체를 개편된 수사 체계에 맞게 조정하지 않으면 사업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다.

[대통령령 및 규칙 중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미개정 규정]

대통령령 및 규칙명	기관명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42조의2(도핑 방지를 위한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 범위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보유하고 있거나, 「검찰청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총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경찰청장이 수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10조(담보금의 국고귀속) ① 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담보금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정보호심판 규칙	법원행정처	제7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② 임시조치·이송·불처분·보호처분 결정과 보호처분의 변경·종료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할 때에는 해당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한다.

자료: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재작성

셋째,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중복되는 업무 범위에 대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각각의 소관에 따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은 범죄에 대해 수사를 수행하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개별 법률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규정된 사건 및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범죄에 대

한 보완수사까지 수행하므로,[16] 경찰의 일반 범죄 수사와 범위가 중복된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범죄 예방·진압·수사 등을 수행하는데, 해양에서 중대범죄등이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청의 직무와 중복된다.

또한, 고위공직자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수행하는데,[17]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 중 직권남용(「형법」 제 123조)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중대범죄에도 해당한다.

16)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29.〉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1장의 죄, 제2장의 죄, 제39장의 죄, 제40장의 죄,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및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범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및 제11조의 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125조의 범죄
(생략)
사. 「형법」 제123조의2의 범죄
2.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 같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송된 범죄 및 같은 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재수사요구를 한 범죄.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

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5., 2025.11.11., 2026.9.29.〉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수사기관 간 업무범위]

기관명	수행업무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요구한 보완수사
경찰청	범죄의 수사
해양경찰청	해양 관련 범죄의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 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자료: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재작성

관련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 관할 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할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8]

그러나 이첩 요구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데, 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 이첩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상당 부분 진행된 수사가 이첩으로 중단되거나, 기관 간에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할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므로,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논의할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이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되었으므로 업무 범위가 겹치는 영역이 조정되지 않으면 예산과 시간의 중복

18)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다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지 사실이 통보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투자 등 재정 측면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공수처 간 이첩과 관련하여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수사·공소 기능 분리에 부합하는 예산안 편성 및 집행 기반 마련 필요

검찰청이 수행하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은 직접 수사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으나, 2027년도 예산안이 이러한 기능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합산 예산안은 1조 5,582억원으로 2026년 검찰청 예산(1조 2,901억원)보다 2,682억원(20.8%)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가 기능 분리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기능과 맞지 않게 편성된 부분이 포함된 것인지는 사업별로 따져 보아야 한다. 예산이 기관의 기능에 대응하지 않으면 재원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기능 개편의 효과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사를 하지 않는 공소청에 수사 관련 장비가 남아 있으면 보유 주체와 사용 주체가 달라져 중복 투자의 가능성이 있고, 기관의 직무가 바뀌었는데도 성과지표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 기관의 성과를 적절히 측정하기 어려우며 성과가 예산 편성과 평가에 제대로 환류되지 않는다.

또한, 2026년 10월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은 청사, 시스템, 인력 등 업무 수행 기반이 갖춰져야 2027년 편성된 예산안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고, 기반 구축이 늦어지면 예산이 편성되어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이 기능 개편의 취지에 맞게 편성·집행되도록, 기관별 기능에 맞는 사업·장비의 배분,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성과관리체계, 신설 기관의 집행 기반 확보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직접 수사를 수행하지 않는 공소청의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영상녹화장비 등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찰청의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공소 기능이 공소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검찰청이 보유하던 수사 장비와 시스템도 업무의 실질에 맞춰 중대범죄수사

청 등 수사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일 기준으로도 장비 이전 범위·시기·자산 평가 방법에 관한 이관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예를 들어 중대범죄수사청에 따르면 공소청은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출범일 기준에도 이를 인도받지 못하고 공소청과 이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공소청에 현장용 장비가 필요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19]

영상녹화 장비 역시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필요성은 줄어드는 반면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요는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공소청은 수사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활용계획이 없는 장비의 이관·재배치와 활용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장비의 신규 구매·교체 제한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공소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947대인 영상녹화 장비의 이관 여부를 활용 추이 분석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며, 2027년도 예산안에는 이관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공소청의 수사관련장비 이관 현황]

구분	현황	비고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등	출범일 기준 중대범죄수사청은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이관받지 못함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간 장비 이관 관련 절차 진행 중
영상녹화장비	검사 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필요성은 감소, 경찰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의 소요는 증가 가능	활용 추이 분석 후 이관 여부 결정

자료: 법무부 및 중대범죄수사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19) 이에 대해 공소청은 10월 2일 이전 중대범죄수사청과 이관 대상 수사 장비 협의 및 1차 이관을 완료하였고, 10월말 기준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일부를 이관하였으며, 출범 이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담당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2차 이관을 진행하는 등 공소청에 현장용 수사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대범죄수사청은 공소청과의 협의를 통해 수사 관련 장비의 이관과 관련한 규모 및 시기 등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소청은 사업의 성과지표를 2026년부터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로 측정하고 있으나, 수사를 직접 수행하던 검찰청과 달리 공소청은 직접 수사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범죄수익 보전 요청 및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보전을 신청하는 등 역할이 제한되므로, 해당 성과지표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공소청은 법과학인프라구축, 인권보호 등 공소청 업무지원 등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때 범죄수익보전 결정 건수를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공소청 사업의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산출 방법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건)	목표	신규	신규	3,381	3,719	4,090	직전연도 목표치의 10% 상향
	실적	3,364	4,478	4,299	-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는 기소 전·후 검사의 범죄수익 및 관련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보전을 결정한 건수를 의미하며, 이는 직접 수사를 수행하던 2026년부터 성과지표로 활용되어 공소청의 성과지표로도 설정되었다.

그러나 범죄수익 보전은 범죄수익의 추적, 보전 청구 대상 선별 등 수사 단계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된 업무이다. 범죄수익 보전 신청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의 신청 또는 공소청 자체 판단으로 검사가 하고, 결정은 법원에서 하므로 과정에 수사기관, 공소청 및 법원이 모두 개입하여 공소청의 성과지표로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소청은 직접 수사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체계의 성과지표는 공소청의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보전 결정 건수는 사건의 규모나 범죄수익의 크기와 관계없이 결정 한 건을 동일하게 집계하므로, 소액 사건의 보전이 늘어나도 실적이 증가하고 거액의 범죄수익을 보전해도 한 건으로만 반영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보전된 재산의 규모나

이후 환수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공소청은 신설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에 맞는 성과지표 체계를 새로 정립하는 차원에서,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가 적절한 지표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공소청은 2027년도 예산안 및 성과계획서 상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를 모든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청법」 제4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영장 청구, 수사 관련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지휘·감독 등 다양하며, 범죄수익환수는 직무 중 하나에 불과하다.

공소청의 업무인 공소 제기·유지,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수행 등의 사업은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해당 지표로는 사업의 추진 실적이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사업의 성과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무관하게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에 따라 평가되면 성과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예산 편성 및 결산 심사 시 사업별 성과를 판단할 근거도 부족해진다.

따라서 공소청은 사업별 목적과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공소청의 직제와 업무가 개정되었으나 출범 시점의 현원은 개정된 직제와 차이가 있어 실제 인력 운영이 개편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초과 현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인건비 예산안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27년도 공소청운영인건비(총액)로 7,51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6년 9월 입법예고된 직제안에 따라 검사 2,292명, 공무원 6,120명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직제가 수정되어 공무원 정원이 230명 감소한 5,890명으로 확정되었고, 검사 정원은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 용역을 거쳐 정비할 예정이다.

[공소청 출범 기준 인력 현황]

구분	입법예고 직제(예산안)	수정된 직제	현원
검사	2,292명	2,292명	1,924명(△368명)
공무원	6,120명	5,890명(△230명)	6,799명(+909명)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출범 시점 현원을 보면 검사는 1,924명으로 직제상 정원보다 368명이 적고, 공무원은 6,799명으로 수정된 직제보다 909명이 많다. 검사 인건비는 정원 2,292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결원분에서 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무원은 직제 부칙에 따라 초과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므로, 예산안 편성 인원과 실제 현원 간에 차이가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 공소청 공무원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임용될 수 있으므로 이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특례는 희망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이전 규모와 시기를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무부는 개편된 직제와 업무에 부합하는 인력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과현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검사 결원 및 정원 조정 계획, 중대범죄수사청 이전 추이 등을 반영하여 2027년도 인건비 예산안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 이후에도 KICS 미구축, 인력 결원 문제 등 업무 수행 기반이 미비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속히 기관의 업무인 중대범죄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① 검찰청과 경찰청 등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통해 수사 관련 자료를 주고받아 왔고, 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한 뒤 그 결과를 공소청에 송부하므로 KICS를 이용한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자체 업무 수행과 경찰청·공소청 간 자료 이전을 위해 자체 KICS를 구축하기로 하고, 2027년 예산안에 ISP 수립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대범죄수사청의 계획은 2027년 ISP 수립, 2028년 구축, 2029년 완료 순이어서,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2029년까지는 자체 KICS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자체 KICS 구축계획]

ISP 수립	→	구축	→	구축 및 완료
2027년		2028년		2029년

자료: 중대범죄수사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에 중대범죄수사청은 자체 KICS 구축 전까지 수기 장부 활용, 온나라시스템 활용, 경찰청 KICS 인프라 대여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이나, 수기 장부는 자료의 작성·전달·접수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자료의 유실·훼손 위험이 있으며 실시간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다.

온나라시스템은 일반 행정문서 유통용 시스템으로 사건번호 기준의 수사·기록·증거자료 관리가 어려워 담당자가 문서를 수작업으로 확인·정리해야 하고, 경찰청 KICS 인프라 대여 방식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업무처리를 위한 KICS 시스템 개선 및 기능 변경시 경찰청에 협조 요청 및 운영 반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처럼 구축이 지연될수록 업무 차질과 보안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도 길어지므로, 중대범죄수사청은 자체 KICS 구축 전 업무 비효율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 계획을 면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관 등 총 2,922명(직제 편성 인원 2,874명 및 청원경찰 48명)의 12개월 근무를 기준으로 2027년도 인건비를 편성하였다. 직제상 정원은 수사관 2,567명, 일반직공무원 268명, 경찰공무원 39명(총 2,874명)이다. 그러나 출범일(2026년 10월 2일) 기준 현원은 1,900명에 불과하여 현원 비율이 66.1%에 그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 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의 공무원 임용 특례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2026년 8월 7일~20일)와 2차(9월 15일~20일) 특례임용 신청을 받았고, 출범 당일(2026년 10월 2일)에는 특례임용 지원자 1,837명과 타 기관 공무원 24명을 합한 1,861명에 경찰공무원 39명을 더해 1,900명(정원 대비 66.1%)으로 출범하였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기준 운영 현황]

구분	정원(A)	현원(B) (B/A)	결원(A-B)
수사관	2,567명	1,689명	878명
일반직공무원	268명	172명	96명
경찰공무원	39명	39명	-
합계	2,874명	1,900명 (66.1%)	974명

자료: 중대범죄수사청 자료를 재구성

이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은 미충원 인력을 공소청 소속 공무원 대상 추가 특례임용과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충원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나, 출범일 기준 별도로 진행 중인 채용은 없고, 이미 검찰청을 대상으로 두 차례 특례임용을 실시한 상황에서 추가 특례임용 소요가 얼마나 발생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2026년 채용 소요기간은 검사가 약 5개월, 검찰공무원이 5급 공채 약 9개월, 7급 공채 약 7개월, 9급 공채 약 4개월이었다. 출범 이후 채용계획을 마련해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다면 인력 충원은 2027년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7년 초에도 정원에 따른 인력 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12개월 근무를 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 예산의 일부가 집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대범죄수사청은 특례임용을 통한 실제 인력 확보 현황과 향후 채용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인건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 연계체계 정비 필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가 관리·운용하고 있으나,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공소청은 수사를 수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접하는 수사기관이 경찰청·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다원화된 만큼, 피해자 보호가 누락없이 연계되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 소관의 기금이다.

종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수사와 기소를 검찰청이 모두 담당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공소청은 수사를 수행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되어 피해자가 접하는 수사기관이 다원화되었다.

이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파악·연계 기능이 중요해져 어느 수사기관이 사건을 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기금의 지원 사업으로 누락 없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기금 사업의 수행 구조를 보면 법무부 소관이 아닌 사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2027년도 계획안 기준으로 법무부 소관 사업은 647억 6,600만원(59.0%)이며, 이 중 법무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114억 2,700만원(10.4%)이다.

그 외 449억 6,900만원(41.0%)은 타 부처 소관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업이 390억 6,600만원(35.6%), 경찰청이 수행하는 사업이 46억 6,700만원(4.3%), 경찰청과 해경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12억 3,600만원(1.1%)이다.

[2027년 기금운용계획안 상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단위: 백만원, %)

소관 기관	사업수행기관	2027년 계획안	주요사업	비중
합 계		109,735		100.0
법무부	직접수행	11,427	피해자 국선변호사(비전담) 수당,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원스톱 솔루션 센터, 진술조력인(비상근) 수당 등	10.4
	공소청	25,919	형사조정위원 수당·교육, 형사조정 지도감독, 치료비 및 생계비, 범죄피해구조금 등	23.6
	민간보조	27,420	피해자 국선변호사(전담) 운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상근 진술조력인 등	25.0
	소 계	64,766		59.0
타 기관	성평등가족부 (자치단체보조)	39,066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35.6
	경찰청	4,667	신변보호장치, 민간경호지원,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4.3
	경찰청·해양경찰청	1,236	임시안전숙소	1.1
	소 계	44,969		41.0

자료: 법무부 자료를 재구성

성폭력피해자와 관련된 사업은 성평등가족부에서 대부분 집행되고(390억 6,600만원), 수사기관과 연계된 사업은 상당 부분 경찰청 등에서 집행된다. 경찰청이 수행하는 신변보호장치, 민간경호지원,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사업(46억 6,700만원)과 경찰청·해경청이 공동 수행하는 임시안전숙소(12억 3,600만원)등 피해자 지원 사업은 법무부가 아닌 수사기관이 수행하여, 기금의 41.0%가 타 기관에서 집행되고 있다.

각 사업을 살펴보면, 법무부의 소관으로 편성되어있더라도 그 절차 자체는 수사 단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업들이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 국선변호사 관련 사업(2027년 계획안 132억 5,500만원)은 법무부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법률구조공단)으로 수행되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피해아동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선정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20]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범죄피해자 등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에 신청하여 선정되고,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진술조력인 사업(2027년 계획안 17억 4,400만원)의 경우 법무부 직접수행과 민간보조로 편성되어있는데,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21] 진술조력인은 범죄피해자 등의 요청으로 수사기관 등에서 선정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하므로,[22]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20)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1)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
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의 참고인이나 증인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

또한, 공소청 수행으로 편성된 치료비 및 생계비 등(2027년 계획안 83억 4,400만원)은 피해자가 직접 공소청에 신청하거나 경찰청·중대범죄수사청의 연계에 따라 공소청에서 심의 및 집행을 수행하며, 범죄피해구조금 사업 (2027년 계획안 140억 4,600만원)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당사자 또는 유족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사를 수행하는 경찰청 또한 구조금, 치료비 등을 지원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23)]

이들 사업은 법무부 소관으로 편성되었으나 수사 단계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며 피해자 지원 수요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지원 수요를 각 사업으로 신속하게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단계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법무부 소관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7년 계획안	사업 집행 방식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13,255	수사기관, 공소청 신청, 수사 단계부터 참여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744	
치료비 및 생계비 등	8,344	수사기관, 공소청 신청, 수사 단계부터 지급 가능
범죄피해구조금	14,046	수사 단계부터 지급 가능
합 계	37,389	

자료: 법무부 자료를 재구성

한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수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찰청이 수행하는 민간경호지원사업(27년 계획안 24억 5,000만원, 전년 동)의 경우 민간경호업체를 총액 계약 방식으로 선정하여 피

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6조(경제적 지원 및 연계) 경찰관은 피해자가 피해정도, 보호 및 지원의 필요에 따라 구조금 지급, 치료비 또는 긴급생계비 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지원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및 단체로 연계할 수 있다.

해자에게 업체의 경호원을 하루 10시간씩(경호원 1일 금액 55만원[24], 기본 7일 및 2회 연장 가능) 최대 21일간 경호 인력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경호원은 피해자 동선, 생활방식 등 민감한 정보를 알게되나 주된 교육·관리가 업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25] 또한 경찰청은 사업의 성과를 경호 기간 중 만족도로 파악하고 경호 종류 이후의 사건 발생 건수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민간경호 종료 후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견호 종료 이후의 보호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경호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수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의 피해자 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피해자 지원 연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24) 피해자 1명당 경호원 2인 배치

25) 경찰청은 경호원 선정 시 범죄 경력이 없고 경찰청 주관 8시간의 사전교육을 수료한 경호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경찰관이 배치부터 경호 근무 실태를 담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사업 수행 시 민간경호업체와 총액 계약을 하는 특성상 주된 경호원의 선정·관리는 경호업체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6 총액인건비제도 관련 분석: 업무 공백 최소화와 정당한 보상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가. 현 황

(1) 총액인건비제의 의의

정부의 각 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고 직무범위가 정해진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각 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를 유지하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2] 각 기관은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이에 드는 인건비를 예산으로 마련한다. 「정부조직법」은 행정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 정원을 늘릴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3] 직무의 양과 조직·정원, 보수, 인건비 예산이 서로 연동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조명식 예산분석관(kunajo@assembly.go.kr, 6788-4641)

1)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은 다른 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

3) 「정부조직법」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공무원 인건비는 정원, 보수, 예산의 세 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함)과 직제로 기관별·계급별 정원을 정하고,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1인당 보수 수준을 정하며, 기획예산처가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정원 범위에서 다음 연도 인건비를 편성한다. 즉 업무량에 따라 정원이 정해지고, 정원에 보수 단가를 곱한 금액이 인건비 예산이 되는 구조로, 정원·보수·예산을 각 주관부처가 사전에 승인하는 통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이러한 통제체계를 대체하는 별도 제도가 아니라, 인건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기관에 일부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례이다. 주관부처는 기관별 인건비 총액만 정하고,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정원(조직)·보수·예산의 일부를 스스로 조정하며, 주관부처는 사전 승인 대신 사후 성과평가로 관리한다. 정원·보수·예산을 관장하는 부처도 그대로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기획예산처이며, 세 부처가 공동으로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을 정한다.[4)]

[공무원 인력 관리체계에서의 총액인건비제의 제도적 위치]

구분	정원(조직)	보수	예산
일반 관리체계	직제로 정원 결정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정원 범위에서 비목별 편성
총액 인건비제 내 자율성 부여	일정 범위 내 정원 증원·직급 조정 및 한시 운용하는 팀 설치	의도적 절감재원을 활용한 수당 조정·신설 및 성과급 추가 지급	총액 범위 내 인건비·운영경비 간 전용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기획예산처

자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2026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및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조직·정원분야는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예산분야는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 보수분야는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가 관장함(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2026, p.1).

(2) 총액인건비제의 특징

총액인건비제는 주관부처가 기관별 인건비 총액을 정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함)이 그 범위에서 조직·정원·보수·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정원과 비목별 예산을 중앙에서 일일이 통제하던 방식이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기관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07년 1월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되었다.[5] 2026년 운영지침도 부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인력운영을 효율화하고 신규 인력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며,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다.

① 대상기관 및 대상경비

총액인건비제 시행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57개, 국립대학 37개, 소속책임운영기관 47개로, 군인·군무원과 독자적 예산편성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는 제외된다.[6] 제도의 시행 여부는 부처가 자율로 결정하되, 총액인건비로 조직·정원분야를 활용하는 기관은 성과목표가 포함된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대상경비는 인건비(보수·기타직보수·연가보상비)와 기본경비 중 일부 경비(이하 '운영경비'라 함)로 하며, 인건비는 다시 인사혁신처가 지급기준을 관리하는 기본항목과 기관이 조정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 나뉜다.

5)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제」,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https://www.org.go.kr/intrcn/system/viewLbcst.do, 검색일: 2026.10.15.).

6) 대상기관 중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우주항공청, 재외동포청 등 일부 기관은 현재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및 분류체계]

구분		세출과목	주요 내역	관리 주체
인건비	기본 항목	110-01 보수	봉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명절휴가비 등	인사혁신처 (기관 조정 불가)
	자율 항목	110-01 보수 110-05 연가보상비	성과급,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	시행기관
운영경비		110-03 상용임금 110-04 일용임금 210 운영비 일부 250 직무수행경비 320-09 고용부담금	민간근로자 보수, 특근매식비, 맞춤형복지, 직책수행경비 등	기획예산처 (맞춤형복지는 시행기관)

주: 1. 인건비는 인건비 세부사업(사업코드 100~149), 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세부사업(사업코드 200~249)으로 편성된 경우에만 대상이며, 기타직보수(110-02)는 기본·자율항목을 함께 포함
자료: 「2026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② 정원·보수·예산의 자율성

운영계획에 따라 조직·정원 및 보수 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의도적 절감이라 하는데, 각 기관은 해당 재원을 활용하여 자율적 운용을 도모하게 된다.

조직과 정원과 관련하여 직제상 정원인 '기준정원'과 별도로 기관이 자율 조정하는 '운영정원'을 둔다.[7] 기관은 총정원의 10% 이내에서 일반임기제로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5급까지 상향 조정하며, 과장급의 한시적 운용 팀을 설치할 수 있다. 보수와 관련하여 각 기관은 자율항목 수당을 조정·통합·신설하고 성과급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예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의도적 절감으로 생긴 재원을 인건비와 운영경비 사이에 전용하여 이러한 자율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자율은 총액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 위에서 허용된다. 총액인건비는 자율 조정 이전의 기준정원을 대상으로 편성되며, 운영정원 증원이나 수당 신설에는 추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 총액이 부족해도 다른 경비에서 이·전용하거나 예비비로 늘릴 수 없고 원칙적으로 인건비를 삭감 지급해야 하며,[8] 총액 조정은

7) 직제에 규정해야 하는 정원을 그대로 반영한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기준정원'이라 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정원을 신설·조정하는 경우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운영정원'이라 한다.

8) 지급기준대로 집행했는데도 부족이 생긴 경우 등에는 총액 안에서 인건비와 운영경비 간 전용이 허용된다(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2026, p.4).

환율 인상, 긴요한 대규모 인력수요 등 예외적 사유에 한정된다.

기본항목 수당은 기관이 조정할 수 없고, 운영경비 중 맞춤형복지예산은 기관이 자율 운영하되 감액할 수 없으며, 특정업무경비는 자율적으로 증액할 수 없다. 한시 팀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운영하되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최대 5년),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즉 기관의 자율은 '주어진 총액을 절감하여 재배분하는 자율'이며, 총액 자체를 늘리는 자율은 아니다.

[총액인건비제의 의도적 절감재원 확보 및 자율적 활용 구조]



자료: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2026.3.)」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③ 인력운용 환경 변화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휴직·휴가 제도를 확대하고, 근로시간과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등 근로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육아휴직 확대 및 난임휴직 신설,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편 등이 추진되면서 공무원의 인력운용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총액인건비팀 및 임시조직의 운영이 장기화되고, 별도정원을 활용한 인력 운용이 지속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각 기관이 의도적 절감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하여 조직·정원 및 보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육아휴직 확대나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편 등 기관의 자체적인 판단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인건비 수요 증가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응한 제도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총액인건비팀 및 임시조직의 운영 장기화는 당초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여한 조직·정원 운영의 자율성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중앙행정기관별 정원 및 2027년도 인건비 편성 현황

① 정원 현황

중앙행정기관별 정원은 직제(대통령령)로 정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기관별로 직제에서 규정된 총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그 수를 조정하여 직제 시행규칙(총리령·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9] 이때 직제에서 규정한 정원을 그대로 반영한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기준정원'이라 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정원을 신설·조정하는 경우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운영정원'이라 한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기준정원은 756,957명, 운영정원은 758,043명으로 운영정원이 1,086명 많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준정원보다 많은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다만, 「검사정원법」 등과 같이 법률에 정원이 규정된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는 총액인건비제 시행 대상 기관이라도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중앙행정기관 정원 현황(2026.10.2. 현재)]

(단위: 명, %)

기관명	기준정원(A)	운영정원(B)	B-A	(B-A)/A
재정경제부	785	785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048	34,920	△128	△0.37
교육부	368,261	368,261	-	-
외교부	2,953	2,962	9	0.30
통일부	601	601	-	-
법무부	24,136	24,136	-	-
국방부	992	995	3	0.30
행정안전부	3,980	3,981	1	0.03
국가보훈부	1,505	1,509	4	0.27
문화체육관광부	3,089	3,096	7	0.23
농림축산식품부	3,711	3,713	2	0.05
산업통상부	1,252	1,252	-	-
보건복지부	2,568	2,571	3	0.12
기후에너지환경부	2,942	2,947	5	0.17
고용노동부	10,206	10,220	14	0.14
성평등가족부	299	300	1	0.33
국토교통부	4,202	4,209	7	0.17
해양수산부	4,414	4,425	11	0.25
중소벤처기업부	1,425	1,425	-	-
기획예산처	488	488	-	-
인사혁신처	619	616	△3	△0.48
법제처	262	262	-	-
식품의약품안전처	2,208	2,224	16	0.72
국가데이터처	2,184	2,184	-	-
지식재산처	1,843	1,843	-	-
국세청	21,790	21,936	146	0.67
관세청	5,919	5,933	14	0.24
조달청	1,138	1,143	5	0.44
우주항공청	300	300	-	-
재외동포청	192	192	-	-
공소청	8,182	8,182	-	-
병무청	1,941	1,941	-	-
방위사업청	1,152	1,159	7	0.61
경찰청	137,232	138,112	880	0.64
소방청	67,819	67,823	4	0.01
중대범죄수사청	2,874	2,874	-	-
국가유산청	1,056	1,066	10	0.95

(단위: 명, %)

기관명	기준정원(A)	운영정원(B)	B-A	(B-A)/A
농촌진흥청	1,899	1,902	3	0.16
산림청	1,931	1,961	30	1.55
질병관리청	1,608	1,614	6	0.37
기상청	1,393	1,397	4	0.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61	161	-	-
새만금개발청	141	142	1	0.71
해양경찰청	13,683	13,702	19	0.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32	332	-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	1	-	-
공정거래위원회	1,052	1,052	-	-
국민권익위원회	585	589	4	0.68
금융위원회	404	404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0	200	-	-
원자력안전위원회	174	174	-	-
국가교육위원회	50	50	-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35	35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85	85	-	-
국가인권위원회	265	266	1	0.38
대통령비서실	444	444	-	-
국가안보실	44	44	-	-
대통령경호처	819	819	-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4	4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81	81	-	-
특별감찰관	8	8	-	-
감사원	1,128	1,128	-	-
국무조정실	511	511	-	-
국무총리비서실	97	97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65	165	-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89	89	-	-
합 계	756,957	758,043	1,086	0.14

자료: 행정안전부

② 조직 현황

총액인건비 적용대상기관은 직제 시행규정에 따라 과장급 한시적 보조·보좌기관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명칭은 '팀'으로, 팀장은 4급 또는 5급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6급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총액인건비제 적용기관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팀(이하 "총액인건비팀"이라 한다)은 328개로 이에 해당하는 정원은 3,226명이다. 해당 정원은 운영정원에 포함하여 산정된다.[10)]

[총액인건비팀 팀 개수 및 정원(2026.10.14. 현재)]

(단위: 개, 명)

기관명	총액인건비팀	정원(운영정원에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78
교육부	6	32
통일부	7	37
법무부	32	330
국방부	12	90
행정안전부	9	81
국가보훈부	1	7
문화체육관광부	4	28
농림축산식품부	24	203
산업통상부	8	46
보건복지부	8	52
기후에너지환경부	10	94
고용노동부	7	60
성평등가족부	1	5
국토교통부	14	83
해양수산부	8	61
중소벤처기업부	2	15
인사혁신처	1	10
법제처	2	11
식품의약품안전처	6	44

10) 다만, 총액인건비팀 정원에는 기존 정원을 재배치하여 운영하는 인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액인건비팀 정원 전체가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정원 순증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위: 개, 명)

기관명	총액인건비팀	정원(운영정원에 포함)
국가데이터처	6	52
지식재산처	22	447
국세청	19	435
관세청	7	68
조달청	10	102
병무청	1	9
방위사업청	3	17
경찰청	2	16
소방청	2	13
국가유산청	7	46
농촌진흥청	5	39
산림청	15	149
기상청	9	8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6
해양경찰청	18	19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16
공정거래위원회	7	58
국민권익위원회	5	28
금융위원회	4	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19
원자력안전위원회	2	13
국가인권위원회	4	21
합 계	328	3,226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 인건비 예산 현황

2027년도 중앙행정기관 인건비 비목으로 편성된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조 9,381억원 증액된 56조 4,684억원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보수(110-01)가 전년 대비 2조 3,252억원 증액된 51조 1,64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직보수(110-02)는 전년 대비 384억원 증액된 7,418억원, 상용임금(110-03)은 전년 대비 3,980억원 증액된 3조 7,360억원, 일용임금(110-04)은 전년 대비 1,632억원 증액된 4,081억원, 연가보상비(110-05)는 전년 대비 133억원 증액된 4,181억원이 각각 편성되었다.

[인건비 비목(110목)의 2027년도 세목별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세목	2025년	2026년		2027년	
	예산(A)	예산(B)	전년대비 증감률 [(B-A)/A]	예산안(C)	전년대비 증감률 [(C-B)/B]
보수(110-01)	469,092	488,392	4.1	511,644	4.8
기타직보수(110-02)	6,567	7,034	7.1	7,418	5.5
상용임금(110-03)	31,015	33,380	7.6	37,360	11.9
일용임금(110-04)	2,665	2,449	△8.1	4,081	66.6
연가보상비(110-05)	3,929	4,048	3.0	4,181	3.3
합계	513,268	535,303	4.3	564,684	5.5

주: 행정부 및 헌법기관의 인건비 비목임.
자료: 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최근 육아·난임휴직 확대와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편 등 외부 요인으로 공무원 인력 운용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한시적 조직의 운영이 장기화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총액인건비제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육아·난임휴직 확대에 대응한 인력 운용의 자율성 확보 및 총액인건비제도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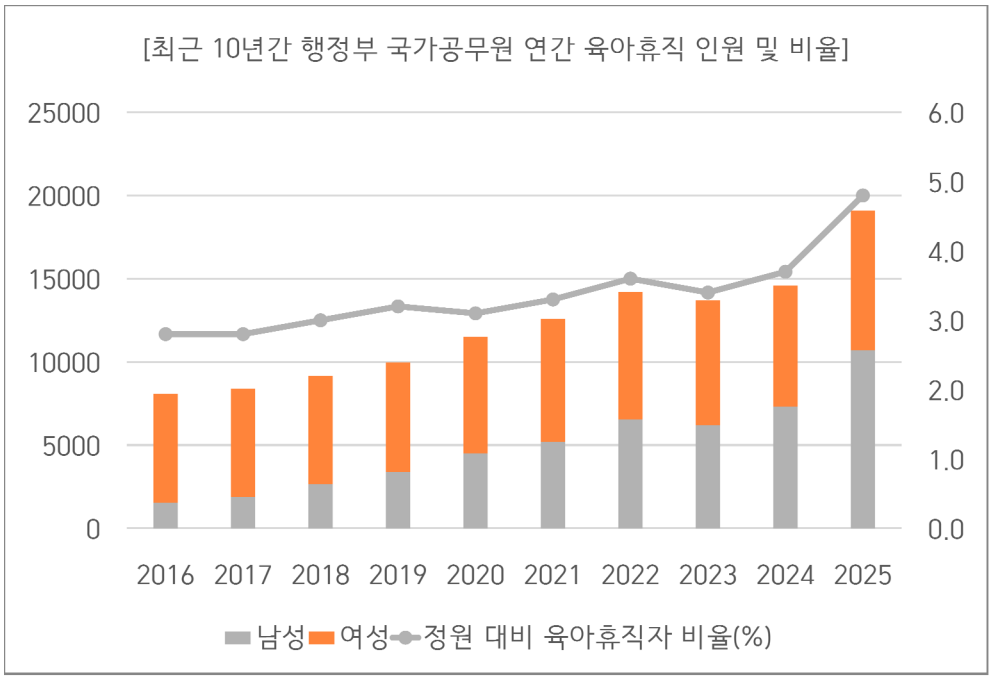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 인원은 2016년 8,093명에서 2025년 1만 9,105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25년에는 전년 대비 4,504명(30.8%)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전체 육아휴직 인원 중 남성 비율이 같은 기간 18.9%에서 56.0%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육아휴직 이용이 여성 공무원 중심에서 남성 공무원으로도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연간 육아휴직 인원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정원(a)		289,968	294,377	302,579	312,546	374,976	385,127	394,221	398,563	397,909	400,230
육아휴직(b)		8,093	8,372	9,154	9,971	11,491	12,573	14,181	13,709	14,601	19,105
비율(b/a)		2.8	2.8	3.0	3.2	3.1	3.3	3.6	3.4	3.7	4.8
여성	인원	6,565	6,487	6,502	6,587	7,008	7,361	7,657	7,511	7,303	8,401
	비율	81.1	77.5	71.0	66.1	61.0	58.5	54.0	54.8	50.0	44.0
남성	인원	1,528	1,885	2,652	3,384	4,483	5,212	6,524	6,198	7,298	10,704
	비율	18.9	22.5	29.0	33.9	39.0	41.5	46.0	45.2	50.0	56.0

주: 1. 교육공무원 제외
2.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 인원으로, 휴직 연장 인원은 제외함
자료: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p.3-9



이와 같이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휴직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026년에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고, 종전에 질병휴직의 일종으로 운영되던 난임휴직이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마련되었다.[11]

11) 육아휴직 대상 확대는 2026년 6월 개정법 공포와 함께 시행(2026.6.2.)되었으며, 난임휴직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하여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2026.12.3.)한다.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연혁]

연도	주요 내용
‘94년	■ 육아휴직 제도 신설(1세 미만 자녀양육, 1년 이내) *‘95년 시행
‘99년	■ 육아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휴직을 사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휴직 기간의 5할을 승급기간에 산입
‘02년	■ 육아휴직 요건 확대(1세→3세), 여성 공무원 임신·출산 사유 추가
‘07년	■ 육아휴직 요건 확대(3세→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양육) *‘08년 시행 ■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1년→3년으로 확대
‘11년	■ 육아휴직 요건 확대(만 6세 이하→만 8세(취학 중인 경우 초등 2학년 이하))
‘15년	■ 육아휴직 요건 확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3년)
‘26년	■ 대상자녀 요건 완화(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료: 인사혁신처

육아·난임휴직의 확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이를 지원하려는 국가적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휴직자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육아·난임휴직 확대에 따른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휴직자의 담당 업무와 기관별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력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육아·난임휴직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한시임기제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2)]

12)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의2. 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
[시행일: 2026. 12. 3.]
「공무원임용령」

그런데, 2025년과 2026년의 중앙행정기관 육아휴직자 현황과 대체인력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자 대비 대체인력 운용이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앙행정기관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 현황 사례]

(단위: 명)

기관명	2025년		2026년(9월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한시임기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한시임기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5	-	75	-
외교부	96	-	88	-
통일부	24	-	28	1
법무부	1,696	21	1,437	10
행정안전부	189	9	217	5
문화체육관광부	100	23	115	25
산업통상부	116	-	53	-
국토교통부	239	-	250	1
중소벤처기업부	84	-	87	-
국가데이터처	79	17	86	22
국세청	1,263	2	1,113	2
관세청	334	11	275	16
국가유산청	53	10	41	5
산림청	63	-	96	-
금융위원회	19	-	2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2	-	28	-

자료: 중앙행정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주 35시간 이내의 근무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13] 전일제 공무원과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어 기존 업무를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고,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보수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적정한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휴직자의 담당 업무와 기관별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체인력의 근무시간을 전일제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실제 업무량에 부합하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13)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주 35시간 이내)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이다.

는 현실적인 인력운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간부문에서는 출산·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과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근로자의 업무분담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2026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30만~140만원을 지원하며, 휴직 전 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과 복직 후 최대 1개월도 지원기간에 포함된다. 또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근로자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월 최대 40만~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기관과 정부기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제도 비교]

구분	민간기관	정부기관
대체인력 확보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금 지급	결원보충, 육아휴직 별도정원 및 한시임기제 등 활용
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130만~140만원 지원	기관별 인건비 예산을 통해 지급
인수인계	휴직 전 최대 2개월, 복직 후 최대 1개월 지원	관련 결원보충 제도 및 기관별 인력운용 여건에 따라 운영
기존 인력의 업무분담	월 최대 40만~60만원 지원	업무대행수당 등 지급
재원	고용보험기금	국가예산 중 기관별 인건비 예산

자료: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따라서 중앙행정기관도 육아·난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 채용뿐만 아니라 기존 인력의 업무분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휴직자의 담당 업무와 기관별 인력 수요에 따라 대체인력의 근무시간 및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대행에 따른 보상 수준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등 다양한 인력운용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육아·난임휴직 확대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를 총액인건비에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육아·난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 보수와 휴직자에게 수당 등이 병행 지급됨에 따라 추가적인 인건비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기관별 인건비 예산이 휴직자 증가 추이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제도 개편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총액인건비제 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인건비 여력이 부족한 기관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의 채용 규모나 시기를 조정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휴직자의 업무공백을 적기에 보완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7년도 기관별 인건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최근 육아휴직 인원이 증가하였음에도 2027년도 육아휴직수당 예산안이 전년도와 같거나 휴직자 증가 추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집행액 대비 2027년도 육아휴직수당 예산안이 적은 기관]

(단위: 명, %, 백만원)

기관명	육아휴직자 수			예산			
	2021년	2025년	최근 5년간 증가율[1]	2025년	2026년		2027년
				집행액	예산액[2]	집행액(9월말)	예산안
고용노동부	747	843	12.9	6,395	3,835	6,144	3,8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6	65	41.3	1,088	739	1,026	739
법무부	1,449	1,696	17.0	18,875	11,873	12,483	11,943
해양수산부	117	200	70.9	3,020	1,617	2,584	1,625
행정안전부	150	189	26.0	2,618	1,524	2,418	1,617
경찰청	3,193	6,358	99.1	86,041	50,497	71,377	52,784
해양경찰청	383	917	139.4	12,283	8,894	12,507	8,89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9	22	144.4	262	139	219	139

주: 1) 최근 5년간 증가율 = (2025년 육아휴직자 - 2021년 육아휴직자)/ 2021년 육아휴직자 × 100
2) 예산액은 각목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1. 2027년도 육아휴직수당 예산안 금액이 2025년 집행액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자료: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존 공무원이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추가적인 업무 수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휴직자 보수 감소분이 업무대행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소요를 상쇄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무대행수당이 월 20만원에 불과하여 업무량 증가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정부가 육아휴직 이용을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실제 근무에 상응하는 보상을 강화하려는 인사정책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업무대행에 따른 부담과 보상 수준을 점검하고, 기관별 업무 여건을 고려한 지원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휴직자 수의 증가가 곧바로 동일한 규모의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으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정부정책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휴직자와 대체인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중앙부처 총액인건비 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인건비 중 봉급이나 기본연봉, 육아휴직수당 등은 기본항목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종합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력운용 제도의 변화를 도모할 경우 인건비 반영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에 대해 휴직 예상 결원을 채용 규모에 미리 반영하도록 한 사례[14]를 참고하여, 중앙부처도 휴직 증가 추이를 반영한 대체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인력운영 제도 개선 주요 내용]

구분		주요 개선 내용
기준 인건비	육아휴직수당 보전 확대	기준인건비 가산 시 육아휴직수당 보전 단가를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
	난임휴직 보수 반영	난임휴직자 보수 지급액을 기준인건비 가산 항목에 신규 반영(월 160만원)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부여	지방정부별 결원율 등을 고려한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부여
결원 충원계획 개선		휴직 등에 따른 예상 결원을 신규 인력 충원계획에 적극 반영
임용제도 개선		공개경쟁임용 추가 합격자 선발 사유에 임용유예 포함 추진
인력운영 유인책 마련		휴·복직 결원 충원 등 인력운영 우수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제공 추진

자료: 행정안전부, “동료의 빈자리가 부담되지 않도록…”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하는 지방 인력운영 개선, 보도자료, 2026.9.16.

14)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대책 발표(2026.9.16.). 뉴스핌, 2026.9.16. 보도

셋째, 육아·난임휴직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의 정원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는 육아·난임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체인력 채용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고 휴직자의 담당 업무와 기관별 인력 수요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휴직자의 업무를 대체인력이 전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휴직 전후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관별 인력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육아·난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처의 정원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휴직 전후 일정 기간의 중복근무를 허용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지원하거나, 휴직자 수의 일정 배율 범위에서 추가 대체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공공공무원법전」 제L452-44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관리센터(Centre de gestion, CDG)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일시적인 결원이나 업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15] 출산휴가·육아휴직·질병휴가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관리센터는 대체인력을 모집·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개별 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각각 채용하는 방식 외에도 대체인력을 공동으로 확보·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따라서 육아·난임휴직 확대에 따른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휴직 전후 중복근무 허용과 추가 대체인력 운용 등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관 간 대체인력의 공동 확보·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력운용 방식의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5) 프랑스 「공공공무원법전」(Code général de la fonction publique) 제L452-44조; Centre de gestion de la Haute-Loire(CDG43), “Missions temporaires du CDG43”; Centre de gestion de la Gironde(CDG33), “Service de remplacement et renfort”.

(2)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편에 따른 인건비 소요 반영 및 자율적 예산 운용 여건 확보 필요

정부는 2026년 10월부터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을 개편하여 수당 지급 대상과 인정시간 등을 확대 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가 기관별 총액 인건비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근무시간 관리를 통해 제도 개편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간외근무의 1일 4시간 인정 상한을 폐지하고, 일정한 복수직 4급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신설하는 등 초과근무수당 제도를 개편하였다. 이번 개편은 종전에 수당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초과근무시간과 공무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실제 근무에 상응하는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다.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편 주요 내용]

구분	종전	개편(2026.10.1. 시행)	인건비 영향
1일 인정 상한	4시간	폐지(실제 근무시간 인정)	1일 4시간 초과 근무분 지급 증가
월 한도	57시간(긴급현안 특례 100시간)	57시간 유지, 긴급현안 특례 상한 폐지	긴급현안 부서 지급 증가
4급 실무자	관리업무수당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장관이 지정한 복수직 4급(비부서장)에 월 25시간 초과분 보전수당 신설	지급 대상 확대
관리·감독	부정수령 2회 이상 시 징계의결 요구	1회·50만원 이상 시 징계의결 요구, 근무상황 주기 입력 등	집행 관리 강화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26.9.15. 국무회의 의결)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런데 2027년도 인건비 예산안을 살펴보면,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상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기관은 2025년도 초과근무수당 집행액이 당시 예산액을 초과하였음에도 2027년도 예산안이 2025년도 집행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집행액 대비 2027년도 초과근무수당 예산안이 적은 기관]

(단위: 백만원, %)

기관명	2025년			2026년	2027년	
	예산액 (a)	집행액 (b)	초과집행 (b-a)	예산액 (c)	예산안 (d)	전년 대비 증감률 [(d-c)/c]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13	432	219	216	234	8.3
기상청	4,036	5,179	1,143	4,080	4,158	1.9
문화체육관광부	7,187	7,957	770	7,462	7,928	6.2
법제처	454	521	67	448	489	9.2
병무청	3,974	4,389	415	4,127	4,331	4.9
중소벤처기업부	2,316	2,990	674	2,383	2,353	△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27	335	108	234	250	6.8

주: 총액인건비제 적용 기관 중 2025년 집행액이 예산액을 초과하고 2027년도 예산안이 2025년 집행액에 미달하는 기관을 발췌

자료: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시간외근무수당은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자율항목으로, 관련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행기관은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다른 자율항목의 지출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은 개별 기관의 내부 조정이 아닌 정부 차원의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인건비 소요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관의 자체적인 절감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기보다는 증가 소요에 상응하는 재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초과근무시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수당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배분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7년부터는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편에 맞추어 기관별 총량 산정 시 최근 3년 평균과 전년도 실적 중 큰 값을 적용하고,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총량의 범위를 종전 3%에서 5%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기관별 총량 산정에 활용되는 과거 실적은 대부분 1일 4시간 인정 상한이 적용되던 기간의 실적이므로, 제도 개편 이후 새롭게 인정되는 초과근무시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기관별 업무량과 실제 초과근무 수요에 비해 총량이 적게 설정되어 초과근무 승인이나 수당 지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도 개편에 따른 보상 확대 효과도 제한될 우려가 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관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관별 업무량과 근무 특성, 종전 지급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초과근무시간 및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영향을 구분하여 추가 인건비 소요를 추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확대가 불필요한 초과근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과 업무 효율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관별 초과근무 실적과 업무 특성,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이를 2027년도 예산안에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의 총량 산정방식이 제도 개편 이후의 실제 근무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기관이 실제 근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면서도 다른 자율항목의 운용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한시적 조직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조직·정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필요

총액인건비팀과 「정부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임시조직이 장기간 유지되거나 별도정원을 통해 조직·인력이 확대될 경우, 조직 운영이 경직화되어 총액인건비제 하에서의 자율적 운영이 제한되므로, 한시적 조직의 상시화를 방지하고 조직·정원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각 기관이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에서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은 일시적인 과제나 긴급현안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제에 따른 상시 조직 외에 일정 기간 운영하는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각 기관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위 조직은 직제(대통령령)에 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조직(이하 '한시조직'이라 함),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직제 시행규칙으로 설치하는 과장급 한시적 보조·보좌기관인 팀(이하 '총액인건비팀'이라 함), 직제 외에 훈령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임시조직(이하 '임시조직'이라 함)으로 구분할 수 있다.[16] 이 중 총액인건비팀은 기관의 자율적인 조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반면, 훈령 등으로 설치하는 임시조직은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정원과 구분하여 관리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유형별 설치 근거와 정원 관리]

구분	직제상 한시조직	총액인건비팀	직제 외 임시조직
설치근거	직제(대통령령)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부령)	중앙행정기관의 장 결재 또는 훈령 이상의 법령 (정부조직관리지침)
존속기간	• 원칙 3년 이내 • 2년 이내 연장 가능 • 국가적 중요사업 수행 등은 추가 연장 가능	• 원칙 3년 이내 • 2년 이내 연장 가능 • 불가피한 경우 협의 후 추가 연장 가능	• 원칙 3년 이내, • 불가피한 경우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정원 관리	한시정원 및 기존 정원 관리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에 포함	별도정원은 기준·운영정원과 구분 관리

자료: 「2026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들은 설치 근거와 정원 관리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일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이 장기간 유지되거나 기존 조직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정원 관리의 적정성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① 총액인건비제팀

「2026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서는 총액인건비팀의 존속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총 5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도 폐지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6년 10월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총액인건비팀 중 5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조직은 77개이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조직도 17개에 이른다.

16)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2023, p.346, 한시(임시)조직 유형 구분을 바탕으로 재정리함.

[5년 이상 운용중인 총액인건비팀]

(단위: 개)

기관명	2014년 이전 설치 (10년 이상 운영)	2015~2020년 설치 (6~10년 운영)	합계
고용노동부	1	1	2
공정거래위원회	-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	3
관세청	1	-	1
교육부	-	1	1
국가데이터처	-	1	1
국가보훈부	-	1	1
국가인권위원회	-	1	1
국민권익위원회	-	1	1
국방부	-	2	2
국세청	-	7	7
국토교통부	-	1	1
기상청	-	1	1
기후에너지환경부	-	4	4
농림축산식품부	1	12	13
농촌진흥청	-	1	1
문화체육관광부	-	1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	2
성평등가족부	-	1	1
원자력안전위원회	-	1	1
조달청	4	-	4
중소벤처기업부	-	1	1
지식재산처	9	1	10
통일부	-	1	1
해양경찰청	-	8	8
해양수산부	-	2	2
행정안전부	-	5	5
합 계	17	60	77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총액인건비팀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기관이 필요한 조직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업무 수요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간 운영되는 조직은 담당 업무가 상시적인 기능으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존속기간을 반복적으로 연장하기보다는 해당 기능의 지속 필요성과 업무량 등을 평가하여 상시 조직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조직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총액인건비팀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행정수요는 상시 조직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팀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적 조직 운영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②「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른 임시조직

1) 별도정원을 활용한 조직·인력 확대

임시조직은「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및 긴급현안 해결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훈령 등으로 설치하는 조직으로, 설치 근거에 명칭·기능·존속기한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별도정원을 활용한 임시조직의 경우, 기존 직제상 정원과 별개로 상위직급 인력을 확보하면 실질적으로 상위직급 정원을 확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 운영이 확대되면 상시 조직·정원 체계와 실제 인력운용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인건비 지출을 상향 조정하여 인력 및 보수 운영을 경직화함으로써 기관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별도정원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아니나, 임시조직 운영에 활용되는 별도정원이 상시적인 조직·인력의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별도정원을 인정받아 운영 중인 임시조직 사례]

기관명	임시조직명	설치연도	별도정원
재정경제부	초혁신경제추진단	2026	1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	2025	31명
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2026	7명
외교부	우크라이나 재건 TF	2025	4명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2022	15명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	2025	16명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2025	10명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2023	10명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	2025	22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특별법 보상심사 지원단	2025	13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2023	15명
금융위원회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팀	2024	4명

자료: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임시조직 운영현황의 공개

「정부조직관리지침」은 비공개를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시조직의 운영현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는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임시조직 운영현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17]

임시조직은 직제 외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설치 근거와 운영기간, 담당 기능 및 정원 등의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을 경우 기관별 실제 조직·인력운용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조직 설치의 필요성과 인건비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시조직의 운영현황과 주요 변동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17) 현재 교육부는 홈페이지의 사전정보공표 게시판에 자율기구 및 임시조직 운영현황을 게시하고 있다.

3) 임시조직의 장기 운영

임시조직 중 일부는 설치 이후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2011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기획단은 2008년 설치된 조직이다.

앞서 총액인건비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임시조직의 형태로 장기간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시적 기능은 상시 조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5년 이상 운영 중인 임시조직 사례]

기관명	임시조직명	설치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2018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05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2008
	국가건축정책위원회기획단	2008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2011
산업통상부	뿌리산업팀	2013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2019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2021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지원단	2019

주: 국가물관리위원회지원단은 다수부처 협업형 임시조직임
자료: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소결: 인력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한 총액인건비제 운영

최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면서 육아휴직 등 휴직제도가 개선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도 육아휴직 대상 확대와 난임휴직 신설,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편 등 인사·보수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은 휴직자 증가에 따른 업무공백과 대체인력 수요,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 등 변화하는 인력운용 여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총액인건비제는 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조직·정원·보수·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각 기관이 의도적 절감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인력 증원과 보수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인사·보수제도 개편은 개별 기관의 판단이나 절감 노력과 무관하게 인건비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이러한 소요가 기관별 총액인건비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인력·보수 운영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변화에 따른 인건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한편, 대체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의도적 절감재원의 확보와 활용이 실질적인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용되는 총액인건비팀과 임시조직의 운영이 장기화되고, 별도정원을 활용한 조직·인력 확대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일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 상시 조직·정원 관리체계와의 정합성 및 인력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총액인건비팀과 임시조직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조직은 상시 조직·정원 체계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등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총액인건비제는 변화하는 인력운용 환경에 대응하여 인건비 편성의 적정성을 높이고, 대체인력 운용을 포함한 인력·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의도적 절감재원의 활용과 조직·정원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관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17 재난안전사업 분석

가. 재난안전사업 관리체계

(1) 개요

사전적 의미로 재난(災難)이란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으로,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나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생긴 불행한 사고를 의미한다. 또한 안전(安全)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거나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1] 따라서 사전적 의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이란 뜻하지 않게 발생한 변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없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위험을 예방·감소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재난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 제3조에서 정하고 있다. 제1호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또한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남명진 예산분석관(loveyjmh@assembly.go.kr, 6788-4663)

(동 분석은 2026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예정인 「재난안전사업 관리체계 평가」의 분석 내용 중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이다.)

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 국어사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2호 생략)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와 같이 재난에 대한 법률상 정의를 기반으로 사전적 정의 등을 종합해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이하 “재난안전사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을 대상으로 그 발생 위험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서 수행되는 모든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공공부문 사업을 의미한다.

(2) 재난의 유형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예산의 대상 사업을 재난 · 안전의 성격에 따라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공통의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41개 유형으로 세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 분류체계는 재난안전사업의 선정 기준이자, 예산사전협의와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산정의 기본 틀로 활용된다.

먼저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에 기인한 재해로서 풍수해, 산사태, 가뭄, 지진, 황사, 조류, 한파, 폭염, 낙뢰 등 기타의 9개 유형으로 구성된다. 사회재난은 인위적 요인이나 국가기반체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난으로 가장 많은 18개 유형을 포함하며, 화재와 산불, 시설 재난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등이 해당한다. 안전사고는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승강기, 등산·레저, 전기·가스, 생활제품, 의료제품, 식품 사고와 범죄 등 9개 유형으로 나뉜다. 공통 분야는 특정 재난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재난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재난 구호 및 복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해외재난 관리, 재난안전관리체계의 5개 유형으로 구성된다.

[재난안전사업상 재난의 분야 및 유형]

분야	유형	정의 및 분류기준
자연재난 (9개)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등)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산사태	▸「사방사업법」 제2조의 산사태, 토석류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가뭄	▸장기간에 걸친 강수량 부족 등 가용 수자원(댐, 저수지, 하천수 등)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지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황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황사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조류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의 조류(녹조포함) 발생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한파	▸겨울철 급격한 기온 저하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분야	유형		정의 및 분류기준
자연재난 (9개)	폭염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의 지속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낙뢰 등 기타		▸ 낙뢰,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우주물체 추락충돌, 「전파법」에 따른 전파 혼신, 우주전파재난 등 기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사회재난 (18개)	화재	화재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산불	▸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 산불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시설 재난사고		▸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의 예방 등 사업
	다중운집인파사고		▸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단위면적 당 군중밀도 증가로 군중의 흐름이 정체되어 발생하는 피해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화생방 사고	방사능 재난사고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의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화학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의 독성가스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공정관리대상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환경 오염 사고	대기오염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수질오염	▸ 「물환경보전법」 제2조의 수질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토양오염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의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의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의 수산생물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교통 재난·사고	도로교통 재난사고	▸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철도교통 재난사고	▸ 「철도안전법」 제2조의 철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항공교통 재난사고	▸ 「항공안전법」 제2조의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교통 재난·사고	선박 재난사고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 관련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수면·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유도선 및 관련 시설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국가핵심기반 마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전시재난·테러		▸ 전시, 사변,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의 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사업
안전사고 (9개)	생활 안전	승강기 사고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운행 관련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등산·레저 사고	▸ 등산, 레저활동(수상레저 포함)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전기·가스 사고	▸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의 전기재해 및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의 액화석유가스 등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생활제품사고	▸ 「제품안전기본법」 제2조의 제품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의료제품 사고	▸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의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분야	유형		정의 및 분류기준
		식품 사고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범죄	▸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관련 생활범죄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산업안전	사업장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공사장, 산업단지, 연구실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농·수산업 사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의 수산업의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공통 (5개)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구조, 구급과 관련된 사업
	재난 구호 및 복구		▸「재해구호법」 제2조의 구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의 복구 등 재난 후 지원을 위한 사업
	안전취약계층 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과 관련된 사업
	해외재난 관리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해외재난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재난안전관리체계		▸ 재난 및 안전관리 목적성을 지닌 사업 중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업 * 교부세, 대책본부·상황실 등 운영,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점검, 조사, 진단 등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제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에 따라 정부 내 재난안전 예산을 전문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투자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재난안전사업은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분산 수행하는 대표적인 다부처 사업으로, 유사·중복 투자와 사업 간 우선순위 불일치가 발생할 소지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2.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중복성 검토결과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있다. 이에 재난안전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와 중기사업계획서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제시하여 투자의 중복성을 방지함과 동시에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 예산 협의 장치로서 사전협의제도를 주관하고 있다.

사전협의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재난안전사업 전체를 원칙으로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사업 성격상 사전협의가 불필요하거나 별도 배분 절차가 존재하는 교부세, 교부금, 예비비 등 일부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전협의는 다음과 같이 크게 중점투자방향 수립, 투자우선순위 선정, 사전협의(안) 마련, 확정의 네 단계로 진행된다.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주요 추진절차]

구분	중점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사전협의(안)	확정
내용	• 중기사업계획 제출(각 부처) • 중점투자유형 분석 • 재난안전 정책 반영 • 민간전문가 자문 추진 • 중점투자방향 수립	• 중점투자방향 연계 • 사업별 투자계획 분석 • 민간전문가 검토(배점) • 사업별 투자등급(안) 마련 • 부처요구안 제출(각 부처)	• 예산요구서 반영, 부처 의견수렴 • 투자등급 조정회의 개최(평가자문위) •사전협의(안) 마련	• 중앙위 심의 • 기획처 통보
추진시기	1~3월말	4~5월말	6월초	6월말

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4]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사전협의를 실시한 대상은 총 425개 사업, 부처 예산요구액은 총 21조 6,267억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여 투자확대 129개(사업 수 기준 30.4%), 투자유지 212개(49.9%), 투자축소 84개(19.8%)를 배정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 투자우선순위(등급) 선정 결과]

구분	계 (A+B+C)	투자확대 (A)	(핵심사업)	투자유지 (B)	투자축소 (C)
사업 수	425개	129개	(43개)	212개	84개
비중	100.0%	30.4%	(10.1%)	49.9%	19.8%
부처요구액	21조 6,267억원	8조 1,179억원	(4.3조원)	9조 5,663억원	3조 9,425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행정안전부, 「2027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확정, 재난안전사업 총 25.6조원 요구」. 2026.7.1.

(4)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5]에 따라 추진되는 재난안전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향후 사업 개선과 다음 연도 재난안전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소관 모든 재난안전사업이 평가대상이나, 행정안전부는 타 재정사업평가 대상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6]

현재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기본적으로 소관 부처가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상위평가의 2단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재난안전사업의 계획, 관리 및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총점(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후 우수, 보통, 미흡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원칙적으로 우수는 상위 20% 이하, 보통은 약 65%, 미흡은 하위 15% 이상으로 하여 상대평가 방식으로 등급을 배분한다. 평가가 완료되면 각 부처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위평가에서 감점이 부여된다.

[부처 자체평가의 평가기준]

단계 (배점)	평가항목	측정기준	배점(점)	
			신규	계속
계획 (25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난안전 목적과의 부합성	10	4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15	6
	환류 및 개선 노력	전년도 평가의견의 반영 정도	-	10
		외부 지적사항 등의 개선 실적	-	5
관리 (2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5	
		사업추진 현황점검 및 조치 실적	7	
	사업 집행의 적정성	사업집행률	5	
		사업 집행관리의 노력도	3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추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6) 타 재정사업의 평가를 받는 사업으로는 일자리 사업(고용노동부 소관), 중소기업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복권기금 사업(기획예산처 소관), 균형발전 사업(지방시대위원회 소관)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업 중 예비비, 교부세, 분담·보상보험금, 종료사업, 1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 등은 평가실익이 적다고 보아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단계 (배점)	평가항목	측정기준	배점(점)	
			신규	계속
결과 (55점)	성과 달성도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30	
	성과 우수성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15	
		사업성과 확산 노력도	10	
가·감점 (+7점/ -3점)	성과지표의 도전적 목표치 설정		+3	
	행안부가 실시한 컨설팅 결과 반영		+3	
	사업집행의 절감		+1	
	부당행위 및 일정 미준수 등		-3	
총점			100	

자료: 행정안전부

부처 자체평가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상위평가단이 자체평가의 과정과 결과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 상위평가는 사업을 다시 평가하는 방식보다는 부처가 수행한 자체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7] 상위평가 배점(100점 만점)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정성 15점, 평가과정의 적정성 25점, 평가결과의 정확성 60점으로 구성된다. 상위평가 결과 총점이 70점 이상인 부처는 '적정'으로 판정하여 자체평가 결과의 점수 및 등급을 그대로 인정한다. 반면 70점 미만인 '부적정' 부처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되, 최종적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은 부처의 경우 행안부가 직접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부처는 행안부(상위평가단)가 직접 평가한 점수를 기반으로 조정된 등급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 상위평가 기준]

점검기준	점검항목	배점(점)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정성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5
	자체평가 운영의 적절성	10
자체평가 과정의 적정성	평가의견의 명확성·구체성	15
	증빙자료의 적절성	10
자체평가 결과의 정확성	평가등급 부여의 적절성	40
	평가점수 부여의 적절성	20
(감점) 평가절차 준수 여부		(-5)
총 점		100(-5)

자료: 행정안전부

7) 상위평가는 그 배점기준에서 평가등급 부여의 적절성에 40점, 평가점수 부여의 적절성에 20점을 배정함으로써 자체평가 결과의 정확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평가계획 안내 → 부처 자체평가 → 행정안전부 상위평가 → 부적정 부처 재평가 → 평가결과 확정 및 환류의 절차로 순환적으로 진행된다. 당해 연도 평가결과는 미흡사업 개선, 다음 연도 사업성과 관리 및 재난안전예산의 투자방향에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는 미흡사업의 성과개선, 차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환류(feedback)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평가결과는 차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에도 반영된다. 재난안전예산 투자우선순위 선정 시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이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원칙적으로 미흡 등급 사업은 '투자축소', 모범사업은 '투자확대' 대상으로 검토한다.

[재난안전사업 평가 절차]

1월	▸재난안전사업 평가 시행 부처 설명회 개최	행안부
2월	▸부처 자체평가 실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제출	각 부처 행안부
3월	▸행안부 상위평가(자체평가 결과 점검) ▸부처 이의신청 및 조정 ▸상위평가 결과 통보(행안부→부처)	행안부 각 부처
4월	▸부적정 부처의 자체평가 재실시 ▸부처 재평가 결과 행안부 재점검 실시 ▸평가 결과 확정 및 통보(행안부→부처)	해당부처 행안부
5월	▸미흡사업 개선계획 제출(부처→행안부) ▸차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모범사업 선정 및 통보(행안부→부처)	행안부 해당부처
6~8월	▸미흡사업 개선계획 적절성 검토 및 행안부 컨설팅 ▸차년도 성과목표·지표 수립 지침 통보	행안부
9월	▸차년도 성과목표·지표(안) 수립 및 제출(부처→행안부)	각 부처
10~11월	▸차년도 성과목표·지표(안) 검토 ▸성과목표·지표(안) 부처 의견수렴 및 조정	행안부 각 부처
12월	▸차년도 성과목표·지표 확정 및 통보 ▸차년도 평가 실시계획 수립	행안부

자료: 행정안전부

(5)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기획예산처는 기존에 부처별로 자체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재정사업 성과평가 방식을 2026년부터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가 직접 주관하여 민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평가하는 통합평가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안전사업 평가와 재정당국이 주관하는 통합재정사업 평가로 이원화되었다. 또한 재난안전평가, 균형발전평가, 일자리평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등 개별평가가 별도로 운영되어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복수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부처의 평가부담이 증가하여, 평가주체를 각 부처에서 재정당국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개별평가를 통합·연계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2026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15대 분야, 17개 분과로 구성[8]하고, 서면평가·대면평가·쟁점사업평가의 3단계 절차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하였다. 평가절차는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쟁점사업평가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조정하였다.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평가항목은 크게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재정사업 필요성 영역에서는 정책적 타당성, 재정지원 필요성,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을 국가재정으로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영역에서는 사업내용이 정책목표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지원규모가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집행 효율성 영역에서는 실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사업의 추진·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국회·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여부도 함께 평가한다.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영역에서는 당초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뿐 아니라

8) 구체적으로, 평가단은 평가단장 아래 총괄팀과 조정위원회를 두고, 고용·일자리, 교육·보훈·복지, 농림·수산,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 중소기업·금융, 환경·에너지, 일반행정, 국방·외교·통일, 국토·교통,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보화, 재난안전, 지역균형 등 분야별 분과로 구성된다. 사업 수가 많은 농림·수산 및 정보화 분야는 각각 2개 분과로 운영되어 전체적으로 17개 분과를 구성하였다.

사업이 상위 정책목표 및 사회·경제적 가치 실현에 기여했는지, 국민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지 등을 관련 통계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정보화·재난안전·균형발전·일자리·중소기업지원사업 등은 사업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특성화 항목을 함께 반영하며, 재난안전사업의 경우에는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평가결과는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 통합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감액, 폐지, 통합 등급을 받은 사업은 지출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

[2026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고려사항
① 재정사업 필요성		
	정책적 타당성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지 여부
	재정지원 필요성	■ 재정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 예산 외의 정책수단으로 대체 가능하거나, 민간·지자체 자체 추진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유사중복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②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 사업내용이 정책목표·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지원규모 적정성	■ 직·간접 수혜자 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이에 따른 재정수요 대비 지원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③ 집행 효율성		
	집행 적정성	■ 실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 사업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및 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부정수급 등 관리	■ 부정수급 모니터링·점검·후속조치 등 부정수급 관리 여부 ■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수행, 실적보고, 공시, 감사 등)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환류 및 개선노력	■ 외부 지적사항을 준수하여 제도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성과 달성도·우수성	■ 당초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 그 외 사회경제적 정책 및 가치에 대한 기여, 국민 체감도·만족도 높은 사업 등 성과의 우수성이 관련 통계를 포함해 근거자료 등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 확인 ■ 정보화·재난안전·균형발전·일자리·중소기업지원사업은 특성화항목 함께 고려

주: 통합재정사업평가는 정성평가 위주로 실시되어,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이 없음
자료: 기획예산처

나.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1) 개요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의 정부제출 예산안은 총 27개 부처, 431개 사업이 편성되었고, 예산안 규모는 24조 7,897억원이다. 이는 2026년도 본예산 25조 6,097억원 대비 8,200억원 감소하여 전년 대비 3.2% 감액된 수준이다.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부처요구안은 25조 5,766억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331억원 감소한 수준이고, 기획예산처의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는 부처요구안보다 7,869억원 감액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단위: 개, 억원, %)

구분	부처 수	사업 수[1)]	'26년 본예산(A)	'27년 부처요구안(B)	'27년 정부예산안(C)	증감액 (D=C-A)	증감률 (D/A)
재난안전사업	27	431	256,097	255,766	247,897	△8,200	△3.2

주: 1) 사업 수는 2026년 종료사업 등 6개 사업을 제외한 것으로, 2027년 예산안 편성 시 과목구조 개편으로 증가한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액은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었으나 사업 수는 반영되지 아니함(이하 이 보고서에서 동일함)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부처별 예산안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의 정부예산안 규모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4조 8,216억원으로 가장 크고, 농림축산식품부 3조 7,260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3조 6,979억원, 행정안전부 3조 5,03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부처의 정부제출안 합계는 약 15조 7,492억원으로 전체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의 약 63.5%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기획예산처로 2026년 본예산 1조 6,041억원에서 2027년 정부제출안 1조 9,043억원으로 3,002억원(18.7%) 증가하였다. 반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부처는 행정안전부로 2026년 4조 4,340억원에서 2027년 3조 5,037억원으로 감소한 규모는 9,304억원(△21.0%)이다.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부처별 현황]

(단위: 개, 억원, %)

부처명[1]	사업수	'26년 본예산(A)	'27년 부처요구안(B)	'27년 정부예산안(C)	증감액 (D=C-A)	증감률 (D/A)
경찰청	10	3,581	3,487	4,087	505	14.1
고용노동부	9	15,462	15,151	14,882	△580	△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1,009	1,386	1,075	66	6.5
교육부	2	2,106	2,388	2,370	264	12.5
국가유산청	3	614	669	758	144	23.5
국무조정실	2	54	34	24	△30	△54.9
국방부	1	317	358	358	41	13.0
국토교통부	35	49,627	43,832	48,216	△1,411	△2.8
기상청	23	1,411	1,637	1,696	285	20.2
기획예산처	2	16,041	16,043	19,043	3,002	18.7
기후에너지환경부	69	38,380	38,124	36,979	△1,401	△3.6
농림축산식품부	24	36,120	40,118	37,260	1,140	3.2
농촌진흥청	2	79	289	93	14	18.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83	59	77	△6	△7.3
법무부[2]	2	412	470	411	△1	△0.2
보건복지부	15	5,261	4,356	3,995	△1,265	△24.1
산림청	8	9,977	10,911	8,054	△1,923	△19.3
산업통상부	4	121	157	139	18	15.0
성평등가족부	7	1,290	1,252	1,215	△75	△5.8
소방청	28	2,233	2,401	2,325	92	4.1
식품의약품안전처	33	2,002	3,726	2,374	372	18.6
외교부	2	158	169	168	10	6.0
원자력안전위원회	7	1,429	1,633	1,485	56	3.9
질병관리청	23	8,212	9,225	9,015	803	9.8
해양경찰청	22	6,723	8,183	7,224	501	7.5
해양수산부	39	9,055	11,416	9,536	480	5.3
행정안전부	49	44,340	38,292	35,037	△9,304	△21.0
합계	431	256,097	255,766	247,897	△8,200	△3.2

주: 1) 부처명은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였으며, 재난안전사업 예산의 소관부처와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주관부처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주관부처를 기준으로 함(이하 이 보고서에서 동일함)
2) 2027년도 법무부 예산안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되는 39억원을 포함하였음
1. '부처요구안'은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예산요구안을, '정부예산안'은 기획예산처가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최종 정부예산안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재난유형별 예산안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정부예산안을 재난 분야·유형별로 보면, 사회재난 분야가 186개 사업, 9조 857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약 36.6%를 차지하여 그 규모

가 가장 크고, 공통 분야가 101개 사업에 7조 1,083억원(약 28.7%), 자연재난 분야가 58개 사업에 5조 9,189억원(약 23.9%), 안전사고 분야가 86개 사업에 2조 6,771억원(약 10.8%)이 편성되었다. 2026년도 본예산 대비 안전사고 분야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반면 공통 분야는 12.3% 감소하였다.

먼저 자연재난 분야의 세부 재난유형별로는 풍수해가 4조 1,776억원으로 자연재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전년 대비 6.8% 감소하였다. 사회재난 분야에서는 철도교통 재난·사고가 2조 8,220억원, 도로교통 재난·사고가 2조 203억원으로 교통 분야의 비중이 크다. 안전사고 분야에서는 생활제품사고 관련 예산이 500억원에서 2,910억원으로 2,410억원 증가하여 482.3%의 증가율을 보였다. 공통 분야에서는 재난구호 및 복구 유형이 4조 2,740억원으로 6,920억원(13.9%) 감소하였다.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재난유형별 현황]

(단위: 개, 억원, %)

분야	유형	사업수	'26년 본예산(A)	'27년 부처요구안(B)	'27년 정부예산안(C)	증감액 (D=C-A)	증감률 (D/A)
자연재난	풍수해	43	44,829	43,814	41,776	△3,053	△6.8
	산사태	2	3,509	2,884	2,770	△739	△21.1
	가뭄	7	11,913	12,818	13,284	1,370	11.5
	지진	5	684	834	899	214	31.3
	조류	1	272	345	460	188	69
	소계	58	61,207	60,695	59,189	△2,020	△3.3
사회재난	화재	6	655	691	752	96	14.7
	산불	4	3,947	6,142	3,563	△384	△9.7
	시설 재난·사고	7	303	405	695	392	129.2
	방사능재난·사고	9	1,535	1,746	1,597	62	4
	유해화학물질재난·사고	7	512	558	470	△42	△8.2
	대기오염	11	3,837	3,486	3,087	△750	△19.6
	수질오염	27	5,565	5,633	6,525	961	17.3
	토양오염	2	122	132	122	0	0.1
	해양오염	9	1,254	1,933	1,759	505	40.2
	감염병	19	8,033	9,062	8,857	824	10.3
	가축및수산생물전염병	9	3,658	4,656	4,185	527	14.4
	도로교통재난·사고	8	22,510	23,836	20,203	△2,307	△10.2
	철도교통재난·사고	11	27,718	20,431	28,220	502	1.8
	항공교통재난·사고	14	834	986	944	110	13.2
	선박재난·사고	26	7,216	8,437	7,445	229	3.2
	국가핵심기반 마비	5	748	1,115	771	23	3
	전시재난·테러	12	1,521	1,682	1,662	141	9.3
	소계	186	89,968	90,931	90,857	889	1.0

(단위: 개, 억원, %)

분야	유형	사업수	'26년 본예산(A)	'27년 부처요구안(B)	'27년 정부예산안(C)	증감액 (D=C-A)	증감률 (D/A)
안전사고	승강기사고	1	63	62	61	△2	△3.8
	전기·가스사고	6	1,223	1,398	1,251	27	2.2
	등산·레저 사고	1	11	12	12	1	7.3
	생활제품사고	6	500	1,362	2,910	2,410	482.3
	사업장 산재	11	15,509	15,215	14,943	△566	△3.6
	농·수산업 사고	3	295	693	324	29	9.9
	식품사고	29	2,405	4,002	2,748	343	14.3
	의료제품사고	9	299	476	377	77	25.8
	범죄	20	3,535	3,625	4,145	611	17.3
	소계	86	23,840	26,845	26,771	2,930	12.3
공통	재난안전관리체계	40	24,625	25,591	22,892	△1,733	△7
	구조,구급및응급의료	33	5,862	4,886	4,588	△1,274	△21.7
	재난구호및복구	23	49,660	45,789	42,740	△6,920	△13.9
	안전취약계층 안전	4	794	877	712	△82	△10.3
	해외재난관리	1	140	150	151	11	7.6
	소계	101	81,081	77,293	71,083	△9,998	△12.3
합계		431	256,097	255,766	247,897	△8,200	△3.2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활동단계별 예산안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정부제출 예산안을 활동단계별로 살펴보면, 예방 분야가 273개 사업, 16조 2,14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복구 분야가 33개 사업, 6조 801억원, 대비·대응 분야가 125개 사업, 2조 4,94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중 예방 분야의 비중은 약 65.4%, 복구 분야는 약 24.5%, 대비·대응 분야는 약 10.1%를 차지한다.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활동단계별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사업수	'26년 본예산(A)	'27년 부처요구안(B)	'27년 정부예산안(C)	증감액 (D=C-A)	증감률 (D/A)
예방	273	165,831	164,030	162,147	△3,684	△2.2
대비·대응	125	26,215	28,515	24,949	△1,266	△4.8
복구	33	64,051	63,221	60,801	△3,250	△5.1
합계	431	256,097	255,766	247,897	△8,200	△3.2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분석의견

(1) 재난안전사업 분류체계 분석

① 활동단계 분류기준 개선 필요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에서 활동단계별로 '대비'와 '대응' 단계를 통합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는 활동단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법령체계와도 정합하지 않고, 각 단계별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며, 각 단계의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를 어렵게 하므로 재난안전사업의 활동단계를 분류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9]에서는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법률은 제4장 '재난의 예방', 제5장 '재난의 대비', 제6장 '재난의 대응', 제7장 '재난의 복구'로 재난관리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재난관리 활동단계별로 주요 내용을 보면, 예방단계에서는 주로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험요인 관리·안전점검 등을, 대비단계에서는 재난관리자원, 위기관리 매뉴얼, 재난대비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응단계에서는 위기경보, 재난사태 선포, 응급조치, 자원동원 및 대피·긴급구조 등을, 복구단계에서는 재난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시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피해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난안전사업 법령상 각 활동단계는 사전 위험요인의 제거, 대응자원 및 매뉴얼의 확보, 응급조치 및 긴급구조, 피해조사 및 복구 등 그 기능이 서로 다르다. 즉 통상적으로 재난안전사업은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각 단계는 시간적으로 구분된다.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활동단계]

활동단계	장(章)	조문번호	주요 내용
예방	제4장 재난의 예방	제25조의4 등	재난발생 사전 방지, 예측체계, 안전관리체계, 재난방지시설 점검·관리 등
대비	제5장 재난의 대비	제34조~제35조	재난관리자원, 긴급통신수단, 재난대응 활동계획, 위기관리 매뉴얼, 재난대비훈련 등
대응	제6장 재난의 대응	제36조~제57조	재난사태 선포, 응급조치, 위기경보, 동원, 대피, 위험구역 설정, 긴급구조 등
복구	제7장 재난의 복구	제58조~제66조의3	피해조사, 재난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복구비·피해주민 지원 등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의 활동단계별 현황을 보면, 대비와 대응이 하나로 통합되어 실질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3단계로 분류되고 있어 예산 분류체계가 법령상 활동단계 구분과 정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활동단계별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사업수	'26년 본예산(A)	'27년 부처요구안(B)	'27년 정부예산안(C)	증감액 (D=C-A)	증감률 (D/A)
예방	273	165,831	164,030	162,147	△3,684	△2.2
대비·대응	125	26,215	28,515	24,949	△1,266	△4.8
복구	33	64,051	63,221	60,801	△3,250	△5.1
합계	431	256,097	255,766	247,897	△8,200	△3.2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적으로 대비는 재난 발생에 앞서 대응자원과 매뉴얼을 준비하는 사전적 성격의 활동인 반면, 대응은 재난이 발생한 이후 응급조치와 긴급구조를 수행하는 사후적 성격의 활동으로 그 소요의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두 단계가 125개 사업, 2조 4,949억원으로 통합집계됨에 따라, 대비와 대응 중 어느 단계에 재원이 과소 배분되고 있는지를 식별하기 어렵다.

물론 재난안전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내용이 대비와 대응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비와 대응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재난안전사업이 세부사업 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예산까지는 세부사업의 하위 단위인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재난안전사업을 분류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활동단계별 구분이 가능하였으나, 2024년도 예산부터 재난안전사업을 세부사업단위로 분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 단위의 상향이 오히려 활동단계 간 구분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재난안전사업의 활동단계 분류가 법령 체계와 정합하고 단계별 재원배분과 성과평가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비와 대응이 혼재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단일 활동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② 재난유형별 분류 세분화 필요

최근 폭염의 발생빈도와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중점투자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2027년 예산안에 폭염 대응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재난안전사업을 세부사업 단위로 선정함에 따라 폭염 활동이 포함된 일부 사업들이 다른 재난유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바, 재난유형별 적정한 재원배분과 사후평가를 위해 재난유형 분류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폭염은 재난안전사업 분류상 자연재난 분야 9개 유형 중 하나로서, 폭염 대응 사업은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의 지속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이다. 기상청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을 폭염 일수에 산입하는데, 최근 5년간('21~'25) 폭염일수는 2021년 11.8일에서 2024년 30.1일, 2025년 29.7일로 증가하였다. 밤 최저기온이 25 ℃ 이상에 해당하는 열대야 일수 역시 2021년 5.5일에서 2024년 24.5일(역대 1위), 2025년 16.4일을 기록하였다.

[최근 5년간 폭염 일수 및 열대야 일수]

(단위: 일)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폭염 일수	11.8	10.6	14.2	30.1	29.7
열대야 일수	5.5	13.2	8.2	24.5	16.4

자료: 기상청

또한 2024년까지 5년간 자연재해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유형은 폭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442명이며, 이 중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295명이었다. 특히 폭염 인명피해는 2020년 29명, 2021년 39

명, 2022년 34명에서 2023년 85명, 2024년 108명으로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자연재해 인명피해는 폭염의 비중과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폭염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0~2024년 자연재해 원인별 인명피해]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호우	44	3	19	53	6	125
태풍	2	-	11	-	-	13
대설	-	-	-	-	7	7
폭염	29	39	34	85	108	295
한파	미산정	미산정	미산정	2	-	2
합계	75	42	64	140	121	442

주: 1. 인명피해 : 사망자 + 실종자
2.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근거로 함
3. 호우,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은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종합대책」 등을 근거로 함
4. 2025년도 현황은 2026년 12월에 발간예정인 「2025 재해연보」에서 공개됨

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도별 「재해연보」를 바탕으로 제작성

최근 폭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폭염 대응 사업에 대한 중점투자 필요성이 큰 데도 불구하고,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중 자연재난 예산안을 보면 폭염 유형으로 분류된 사업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풍수해, 산사태, 가뭄, 지진, 조류에 대응한 사업은 예산안이 반영되었으나, 나머지 자연재난 유형인 황사, 한파, 폭염, 낙뢰등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예산안은 없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중 자연재난 예산안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사업수	'26년 본예산(A)	'27년 부처요구안(B)	'27년 정부제출안(C)	증감액 (D=C-A)	증감률 (D/A)
풍수해	43	44,829	43,814	41,776	△3,053	△6.8
산사태	2	3,509	2,884	2,770	△739	△21.1
가뭄	7	11,913	12,818	13,284	1,370	11.5
지진	5	684	834	899	214	31.3
조류	1	272	345	460	188	69
합계	58	61,207	60,695	59,189	△2,020	△3.3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재난안전사업을 정하기 때문에 세부사업 기준으로는 이들 재난 유형에 해당하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유형의 사업에 폭염 관련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2027년도 예산안에서 폭염 유형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폭염 대응 활동을 포함한 사업들이 존재한다. 질병관리청 소관 권역별 질병 대응 및 관리 세부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권역별 맞춤형 질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내역사업을 통해 폭염·한파 취약시기 건강관리 교육, 온열질환 취약 노인 대상 디지털 기반 조기 위험인지 모니터링 사업 등 폭염과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비감염성 건강위해대비·대응 세부사업에서는 기후위기 대비 기후보건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을 통해 온열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폭염피해 심층 감시, 온열질환 발생 예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7년도 예산안 폭염 대응 사업(질병청 소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재난유형)	폭염 대응 사업 내용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권역별 질병 대응 및 관리 (감염병)	•권역별 맞춤형 질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 폭염·한파 취약시기 건강관리 교육 - 온열질환 취약 노인 대상 디지털 기반 조기 위험인지 모니터링 사업 등	-	110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비·대응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기후위기 대비 기후보건 인프라 구축 - 온열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온열질환 발생 예측 - 폭염피해 심층 감시 등	765	548
	•이상기후 대비·대응 강화 - 온열질환자 모니터링 강화 및 응급실 감시체계 고도화 - 폭염 피해 심층감시 온열질환 발생 예측 알고리즘 고도화 등	-	410

주: 예산액은 세부사업 전체의 예산액이 아니라 폭염 관련 사업의 예산액임
자료: 질병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폭염 대응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나 재난유형 분류상 폭염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한 세부사업 내에 폭염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유형과 관련한 사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난유형별 예산안 현황만으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에 대응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중점투자방향에 따라 폭염 관련 재원이 실제로 정부예산안에서 적정

하게 확대·배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중점투자방향과 예산편성 간 연계성에 대한 점검이 제약될 수 있다. 나아가 폭염 대응사업의 실적 및 성과가 감염병,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등 다른 유형의 성과로 집계될 경우, 재난유형별 재정투입과 정책성과를 비교하는 사후평가 역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업의 분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사업 단위의 현행 분류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세부사업에 폭염·한파·감염병 등 복수의 재난 대응활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세부사업 전체에 하나의 대표 재난유형만 부여하기보다는, 내역사업별로 관련 재난유형과 해당 예산액을 추가로 관리하는 보조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제도 분석

① 사전협의안과 예산안 연계 강화 필요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사전협의안의 투자등급별로 기본 방향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나, 부처별·재난유형별·활동단계별로 예산 증감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일부는 투자등급과 반대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사전협의 결과와 정부예산안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의 정부제출 예산안은 총 24조 7,897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3.2% 감소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 투자등급 가운데 확대(핵심사업) 등급 사업은 전년 대비 12.6%, 확대 등급 사업은 7.1% 증가한 반면, 유지 등급 사업은 4.6%, 축소 등급 사업은 20.8% 감소하여 등급별 투자방향이 전반적으로 정부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확대(핵심사업) 등급 사업의 예산 증감률은 부처요구안 19.8%에서 정부안 12.6%로 7.2%p 축소되었으며, 투자확대 등급 사업도 19.8%에서 7.1%로 12.7%p 축소되었다. 투자유지 등급 사업은 부처요구안에서 1.8%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서는 4.6% 감액으로 조정되어 증감률이 6.4%p 하락하였다. 투자축소 등급 사업은 부처요구안에서 전년 대비 28.7%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서는 20.8% 감액으로 조정되어 감액 폭이 7.9%p 축소되었다.

[2027년도 사전협의 투자등급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

구분	2026년	2027년			
	본예산	부처요구안		정부안	
	(A)	(B)	(B-A)/A	(C)	(C-A)/A
투자확대(핵심사업)	35,638	42,688	19.8	40,141	12.6
투자확대	32,118	38,491	19.8	34,414	7.1
투자유지	93,978	95,663	1.8	89,701	△4.6
투자축소	55,282	39,425	△28.7	43,796	△20.8
2026년 종료	173	-	△100.0	-	△100.0
사전협의 대상 아님	38,908	39,499	1.5	39,846	2.4
합계	256,097	255,766	△0.1	247,897	△3.2

주: 1. '부처요구안'은 각 부처가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차년도 예산안 부처요구안을, '정부안'은 부처요구안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투자등급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가 심사·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정부제출 예산안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기획예산처는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투자확대 등급(핵심사업 포함) 사업의 증액 폭을 축소하는 한편, 투자축소 사업의 감액 폭도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확대 등급과 투자축소 등급 간 예산 증감률의 격차는 부처요구안 48.5%p에서 정부안 30.8%p로 17.7%p 축소되었다. 이는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사전협의 투자등급에 따른 예산 증감률의 차별성이 다소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부처요구안과 정부안의 증감률 비교]

(단위: 억원, %, %p)

구분	2026년	2027년			
	본예산	부처요구안		정부안	
	(A)	(B)	(B-A)/A	(C)	(C-A)/A
투자확대 합계 (핵심사업+투자확대)(a)	67,756	81,179	19.8	74,555	10.0
투자축소(b)	55,282	39,425	△28.7	43,796	△20.8
증감률 차이(a-b)	-	-	48.5	-	30.8

주: 투자유지 사업은 제외하고 비교한 것임

자료: 행정안전부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의 사전협의안 투자등급에 따른 부처안과 정부안의 증감률 차이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부처 총량 수준에서는 확대(핵심사업)·확대 분야는 전년 대비 증액, 유지·축소 분야는 감액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확

대 분야의 증액 폭은 축소된 반면 유지·축소 분야의 감액 폭은 완화되었고, 일부 부처에서는 사전협의 등급과 실제 정부안의 증감 방향이 서로 다른 사례도 존재한다.

[2027년도 사전협의 투자등급별·부처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

부처명	확대(핵심사업)			확대			유지			축소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경찰청	-	-	-	618	6.6	7.3	1,760	△1.6	3.8	1,203	△8.9	32.6
고용노동부	492	33.3	7.4	2,838	24.9	2.0	810	46.9	17.2	11,321	△13.8	△7.2
과기정통부	633	43.1	-	95	88.0	31.6	282	7.2	12.8	-	-	-
교육부	-	-	-	3	29.6	19.4	-	-	-	-	-	-
국가유산청	316	7.6	11.8	190	11.3	39.9	108	8.9	29.1	-	-	-
국무조정실	-	-	-	-	-	-	-	-	-	54	△36.8	△54.9
국방부	-	-	-	317	13.0	13.0	-	-	-	-	-	-
국토교통부	3,561	21.0	7.1	8,812	5.6	△6.8	22,600	△11.3	△14.0	14,654	△30.5	14.4
기상청	485	29.3	51.6	206	7.3	△3.4	354	35.4	28.8	366	△15.5	△16.4
기획예산처	-	-	-	41	5.3	4.2	-	-	-	-	-	-
기후부	8,986	14.8	18.5	4,190	16.5	28.8	15,989	1.7	△12.1	8,287	△24.3	△22.2
농식품부	10,134	14.2	10.4	4,630	44.6	4.8	20,515	2.6	0.1	841	△4.7	△18.3
농촌진흥청	-	-	-	51	284.7	36.8	28	230.6	△15.0	-	-	-
방미통위	-	-	-	-	-	-	44	△15.0	△13.9	39	△45.2	-
법무부[1)]	373	15.9	△0.2	-	-	-	39	-	1.7	-	-	-
보건복지부	-	-	-	687	32.7	32.8	2,037	3.2	△1.1	2,536	△47.1	△57.9
산림청	323	4.3	△21.1	1,938	12.1	△17.4	5,215	32.3	△13.8	2,500	△40.0	△32.0
산업통상부	35	50.0	-	16	30.6	23.9	70	18.7	20.5	-	-	-
성평등가족부	48	△0.2	△10.6	-	-	-	838	0.8	△6.7	404	△11.0	△3.3
소방청	178	186.2	196.2	446	19.4	△0.3	713	△11.5	△2.0	894	△18.4	△26.7
식약처	181	90.0	21.6	148	113.2	39.8	1,399	106.8	16.8	275	△36.2	14.4
외교부	-	-	-	-	-	-	158	6.5	6.0	-	-	-
원안위	-	-	-	126	37.5	16.7	1,303	12.0	2.7	-	-	-
질병관리청	6,727	15.9	9.2	199	44.8	6.3	1,075	△10.8	18.7	210	△13.7	△13.4
해양경찰청	229	157.8	13.3	2,494	30.6	36.9	3,586	13.5	△7.0	413	△36.1	△48.1
해양수산부	2,891	31.2	8.3	2,000	13.8	10.3	3,966	32.9	3.9	198	△61.3	△61.3
행정안전부	46	21.7	14.5	2,073	8.4	4.4	11,089	△19.3	7.7	11,085	△42.9	△74.5
합계	35,638	19.8	12.6	32,118	19.8	7.1	93,978	1.8	△4.6	55,282	△28.7	△20.8

주: 1) 2027년도 예산안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되는 39억원을 포함함
1. '부처안'은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부처요구안을, '정부안'은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임
2. 부처안·정부안 증감률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027년도 부처안·정부안의 증감률을 의미함
3. 이 표는 사전협의안에서 확대(핵심사업), 확대, 유지, 축소 의견을 제시한 사업을 나타낸 것으로, 2026년 종료, 사전협의 제외 사업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의 사전협의안 투자등급에 따른 부처요구안과 정부안의 증감률 차이를 재난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사전협의 등급의 기본 방향은 유지되지만, 재난유형별로는 부처요구안과 정부안의 증감률 차이가 크고 일부 사업은 투자등급의 방향과 실제 정부안 증감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2027년도 사전협의 투자등급별·재난유형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

구분	재난유형	확대(핵심사업)			확대			유지			축소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자연재난	풍수해	11,012	12.8	△5.1	1,935	12.2	9.7	29,524	△8.0	△7.6	2,283	△9.9	△15.3
	산사태	323	4.3	△21.1	0	-	-	3,185	△20	△21.1	-	-	-
	가뭄	18	32.2	29.4	2,134	19.5	△12.5	9,761	4.9	16.7	-	-	-
	지진	94	△15	△14.9	-	-	-	458	56	70.3	47	△15	△17.2
	조류	272	26.8	69	-	-	-	-	-	-	-	-	-
사회재난	화재	316	7.6	11.8	190	11.3	39.9	144	△6.5	△11.4	5	△1.9	△1.9
	산불	-	-	-	1,938	12.1	△17.4	2,009	97.6	△2.3	-	-	-
	시설 재난·사고	-	-	-	129	79.4	296.4	174	△0.1	5.7	-	-	-
	방사능재난·사고	99	7.3	5.9	126	37.5	16.7	1,303	12	2.7	8	△5.3	△5.3
	유해화학물질재난·사고	-	-	-	168	37	5.1	47	53.7	△0.1	297	△14.2	△17.1
	대기오염	510	5.6	5.5	-	-	-	1,337	21.6	△24.7	1,984	△33.4	△22.3
	수질오염	-	-	-	1,949	21.5	58.6	1,739	11.6	21.6	1,116	△17	△19.6
	토양오염	-	-	-	-	-	-	115	8.5	0.1	7	-	-
	해양오염	-	-	-	421	74.2	96.7	833	44.0	11.7	-	-	-
	감염병	6,672	16.0	9.3	199	44.8	6.3	959	△10.2	22.8	202	△14	△13.7
	가축및수산생물전염병	307	48.6	27.5	1,401	56.6	29.4	1,900	3.4	2.1	51	△15.2	△15.2
	도로교통재난·사고	3,561	21	7.1	7,829	0.6	△14.1	10,100	7.3	△11.9	1,020	△20	△25.8
	철도교통재난·사고	-	-	-	769	25	4.7	13,335	△24.1	△14.3	13,614	△31.3	17.5
	항공교통재난·사고	64	16.4	83.6	554	27.3	15.2	164	6	1	52	△37.6	△56.5
	선박재난·사고	303	140.8	20.7	2,858	18.6	26	3,446	15.4	△7.5	608	△44.3	△52.5
	국가핵심기반 마비	633	43.1	-	38	168.6	80.5	78	38.1	△10.4	-	-	-
	전시재난·테러	-	-	-	18	13.9	1	604	39.4	35.1	900	△8.7	△7.9
안전사고	승강기사고	-	-	-	-	-	-	-	-	-	63	△1.7	△3.8
	전기·가스사고	35	50	-	1,127	11.7	2.7	61	41.1	△4.2	-	-	-
	등산·레저 사고	-	-	-	-	-	-	11	10.2	7.3	-	-	-
	생활제품사고	220	358	1098	251	20.3	△0.6	29	85.5	△8	-	-	-
	사업장 산재	492	33.3	7.4	2,838	24.9	2	857	46.3	18	11,321	△13.8	△7.2
	농·수산업 사고	-	-	-	51	284.7	36.8	244	104	4.3	-	-	-
	식품사고	84	131.4	20.4	548	19.1	7	1,522	96.1	17	251	△31.7	11.6
	의료제품사고	97	54.1	22.6	75	130.6	59.3	79	65.9	8.7	48	△54.1	8.1
	범죄	421	14.1	△1.4	690	36.7	41.9	1,611	△6.6	△4.5	813	△14.3	49.1

(단위: 억원, %)

구분	재난유형	확대(핵심사업)			확대			유지			축소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공통	재난안전관리체계	33	10.7	15.5	1,674	6.7	4.4	531	△6.5	△11.9	235	△27.1	△8
	구조,구급및응급의료	233	142.9	148.4	610	16.7	△3.5	2,159	△6.4	△2.6	2,859	△44.4	△53.9
	재난구호및복구	9,839	13.2	9.9	1,558	60.4	△4.7	5,053	11.5	△15.9	17,210	△38.9	△58.2
	안전취약계층 안전	-	-	-	41	5.3	4.2	465	26.7	7.4	288	△15	△40.9
	해외재난관리	-	-	-	-	-	-	140	7.4	7.6	-	-	-
합계		35,638	19.8	12.6	32,119	19.8	7.1	93,977	1.8	△4.6	55,282	△28.7	△20.8

주: 1. '부처안'은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부처요구안이고, '정부안'은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
2. 부처안·정부안 증감률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027년도 부처안·정부안의 증감률을 의미함
3. 이 표는 사전협의안에서 확대(핵심사업), 확대, 유지, 축소 의견을 제시한 사업을 나타낸 것으로, 2026년 종료, 사전협의 제외 사업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의 사전협의안 투자등급에 따른 부처요구안과 정부안의 증감률 차이를 활동단계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확대등급은 증액하고 축소등급은 감액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으나, 활동단계별로 부처요구안과 정부안의 증감률 차이가 크고 일부는 투자등급과 반대 방향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도 사전협의 투자등급별·활동단계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

구분	확대(핵심사업)			확대			유지			축소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본예산	부처안 증감률	정부안 증감률
예방	22,152	18.0	3.2	24,615	16.5	6.4	74,322	△1.3	△3.9	33,402	△23.0	0.8
대비·대응	2,168	36.9	13.5	5,566	22.2	15.9	13,784	13.4	△4.6	4,601	△32.3	△37.3
복구	11,318	20.0	30.9	1,937	56.1	△8.3	5,872	13.2	△12.5	17,280	△38.8	△58.0
합계	35,638	19.8	12.6	32,118	19.8	7.1	93,978	1.8	△4.6	55,282	△28.7	△20.8

주: 1. '부처안'은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부처요구안을, '정부안'은 기획예산처가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을 의미함
2. 부처안·정부안 증감률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027년도 부처안·정부안의 증감률을 의미함
3. 이 표는 사전협의안에서 확대(핵심사업), 확대, 유지, 축소 의견을 제시한 사업을 나타낸 것으로, 2026년 종료, 사전협의 제외 사업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사전협의안과 예산안 불일치 사업

첫째, 행정안전부가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사전협의 결과 투자확대 의견을 제시한 사업들이 기획예산처 조정 과정을 거친 정부안에서는 부처요구안 또는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므로, 사전협의 결과와 실제 예산편성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결과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최종 정부안에서 2026년 본예산보다 감액된 사업은 총 28개로 파악되며, 이 중 8개는 일반 확대사업보다 정책적 우선도가 높은 확대(핵심사업)에 해당한다. 이들 28개 사업의 2026년 본예산은 총 2조 4,402억원, 부처요구안은 2조 6,670억원이었으나, 최종 정부안은 2조 1,136억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66억원(13.4%), 부처요구안 대비 5,534억원(20.7%) 감소하였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국토교통부)의 전년도 예산 대비 정부안 규모는 1,104억원 감액되어 감액 규모가 가장 컸으며, 산림헬기 도입·운영(산림청) 337억원, 농촌용수개발(농림축산식품부) 267억원, 양식등재해대책비(해양수산부) 139억원 등이 감액되었다. 이들 사업의 부처요구안 대비 정부안의 감액 규모는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1,151억원, 산림헬기도입·운영 571억원, 농촌용수개발 685억원으로 전년 대비 정부안의 감액규모보다 더 크다.

확대 등급 사업 중 우선적으로 투자확대가 필요한 핵심사업에서도 사전협의안의 투자방향과 정부예산안 간 증감 불일치가 나타난다. 산사태재난경계피난(산림청)은 전년 대비 68억원, 지진관측망확충및운영(기상청)은 14억원, 성범죄자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성평등가족부)은 5억원, 수색구조역량강화(해양경찰청)는 4억원 가량 감소하였다.

[2027년도 사전협의결과 투자확대(핵심사업 포함) 등급 사업 중 정부안 감액 사업]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재난 유형)	2026년	2027년			증감액	증감액
		본예산(A)	부처요구안(B)	사전협의안	정부안(C)	(C-B)	(C-A)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건립 (사업장 산재)	11,395	36,524	투자확대	4,821	△31,703	△6,574
	안전보건문화정착 (사업장 산재)	36,376	40,271	투자확대	33,721	△6,550	△2,655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재난 유형)	2026년	2027년			증감액	증감액
		본예산(A)	부처요구안(B)	사전협의안	정부안(C)	(C-B)	(C-A)
국토 교통부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총액)(도로교통재난·사고)	735,983	740,730	투자확대	625,586	△115,144	△110,397
	항공안전체계구축및유지관리(항공교통재난·사고)	3,527	4,057	투자확대	2,998	△1,059	△529
기상청	지진관측망확충및운영(지진)	9,384	7,976	투자확대 (핵심사업)	7,985	9	△1,399
	지상·고층기상관측망확충및운영(풍수해)	20,607	22,107	투자확대	19,909	△2,198	△698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하천정비(풍수해)	745,361	775,011	투자확대 (핵심사업)	633,557	△141,454	△111,804
	화학제품 안전관리 (생활제품사고)	23,432	28,012	투자확대	22,883	△5,129	△549
농림축산식품부	살처분보상금(가축전염병)	69,640	88,358	투자확대	64,892	△23,466	△4,748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 (가축전염병)	14,843	29,100	투자확대	14,457	△14,643	△386
	농촌용수개발(가뭄)	213,445	255,165	투자확대	186,714	△68,451	△26,731
법무부	전자감독(범죄)	37,266	43,193	투자확대 (핵심사업)	37,195	△5,998	△71
보건복지부	중증-응급심뇌혈관질환대응체계지원(구조,구급및응급의료)	16,371	17,921	투자확대	14,381	△3,540	△1,990
산림청	산사태재난경계피난 (산사태)	32,347	33,735	투자확대 (핵심사업)	25,524	△8,211	△6,823
	산림헬기 도입·운영(산불)	193,826	217,260	투자확대	160,155	△57,105	△33,671
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신상공개및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범죄)	4,798	4,787	투자확대 (핵심사업)	4,288	△499	△510
소방청	소방공무원보건안전지원 (구조,구급및응급의료)	8,129	9,639	투자확대 (핵심사업)	8,126	△1,513	△3
	국립소방병원 운영 (구조,구급및응급의료)	41,451	48,683	투자확대	41,148	△7,535	△303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운영 (식품사고)	1,873	4,299	투자확대	1,328	△2,971	△545
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 (구조,구급및응급의료)	5,494	5,654	투자확대 (핵심사업)	5,153	△501	△341
해양경찰청	수색구조역량강화 (선박재난·사고)	15,082	38,942	투자확대 (핵심사업)	14,672	△24,270	△410
해양수산부	해양사고예방활동지원 (선박재난·사고)	9,689	14,425	투자확대	9,238	△5,187	△451
	양식등재해대책비 (재난구호및복구)	49,310	51,336	투자확대	35,401	△15,935	△13,909
행정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풍수해)	5,800	13,800	투자확대	4,872	△8,928	△928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재난 유형)	2026년	2027년			증감액	증감액
		본예산(A)	부처요구안(B)	사전협의안	정부안(C)	(C-B)	(C-A)
안전부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재난안전관리체계)	1,942	1,942	투자확대	1,907	△35	△35
	비상대비훈련(전시재난·테러)	1,038	1,131	투자확대	1,029	△102	△9
	국민안전의식선진화 (재난안전관리체계)	2,741	2,874	투자확대	2,718	△156	△23
	재난안전통신망구축운영 (정보화)(재난안전관리체계)	129,073	130,071	투자확대	128,983	△1,088	△90
합계		2,440,223	2,667,003	-	2,113,641	△553,362	△326,582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행정안전부가 사전협의안에서 차년도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재정당국의 심의를 거친 최종 정부안에서 상당수 사업이 전년보다 감액되었고, 감액사업 26개 중 24개 사업에서 정부안이 부처요구안보다 감액[10]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당국 심의과정에서 사전협의 결과가 상당 폭 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확대 등급 중에서 별도로 선정되는 핵심사업은 일반 확대사업보다 정책적 우선도가 높은 사업을 구분하여 재정당국에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핵심사업은 부처의 중점추진 여부와 기획예산처의 차년도 예산심의 방향까지 사전에 고려하여 선정한다는 점에서, 핵심사업이 재정당국의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는 것은 사전협의와 예산편성 간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전협의 결과 투자확대 또는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정부안 편성 시 우선적으로 투자확대를 고려하여 사전협의 결과와 예산심의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7년도 예산안 사전협의 결과 투자축소 의견을 제시한 사업 중 일부 사업은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상당 규모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재난안전 측면의 투자우선순위와 실제 자원배분이 일치하지 않아 사전협의 제도의 정책적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10) 부처요구안보다 정부안이 증가한 지진관측망확충및운영(9백만원 증액)과 손상예방관리 사업(8억원 증액) 역시 정부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각각 14억원, 3억원 감액되었다.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서 '투자축소' 의견이 제시된 사업 중 8개 사업은 정부안에서 전년 본예산보다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8개 사업의 부처요구액은 총 9,646억원이었으나, 최종 정부안에는 1조 6,907억원이 반영되어 약 7,261억원(75.3%) 증액되었고, 2026년도 본예산 1조 4,017억원과 비교하여도 약 2,891억원(20.6%)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과 '일반철도안전 및 시스템 개량' 사업은 부처요구안보다 각각 3,850억원, 2,795억원 증액되어 전체 증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경찰청, 식약처 및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에서도 사전협의의 투자축소 의견과 달리 정부안이 부처요구안보다 증액된 것으로 파악된다.

[2027년도 사전협의결과 투자축소 등급 사업 중 정부안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재난 유형)	2026년	2027년			증감액	증감액
		본예산(A)	부처요구안(B)	사전협의안	정부안(C)	(C-B)	(C-A)
경찰청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범죄)	24,941	18,874	축소	67,183	48,309	42,242
국토교통부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 (철도교통재난·사고)	760,561	424,927	축소	809,931	385,004	49,370
	일반철도안전 및 시스템 개량 (철도교통재난·사고)	595,552	506,164	축소	785,692	279,528	190,14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수산물검사 (식품사고)	2,391	2,291	축소	2,401	110	10
	수입식품안전관리 (식품사고)	7,925	5,928	축소	9,429	3,501	1,504
	식품관리운영 (식품사고)	2,060	944	축소	4,896	3,952	2,836
	천연물의약품안전관리 (의료제품사고)	4,846	2,224	축소	5,238	3,014	39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재난안전관리체계)	3,390	3,275	축소	5,975	2,700	2,585
합계		1,401,666	964,627	-	1,690,745	726,118	289,079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 사전협의안에서 투자축소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에서 대폭 증액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재난안전 측면에서 투자우선순위

와 자원배분을 조정하려는 사전협의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사전협의 결과와 상반된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유와 판단근거가 체계적으로 관리·공유되지 않을 경우 부처 간 정책조정과 책임성 확보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사전협의 결과와 다르게 투자축소 사업을 증액하는 경우 재난안전 측면의 정책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증액되거나 사전협의 등급과 정부안 편성방향이 상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추가적으로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 분석

① 반복적인 성과부진 최소화 필요

연도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다수 사업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평가 이후의 환류가 실질적인 성과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사업에 대하여 사업구조·추진방식·성과지표를 점검하여 성과부진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간 각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사업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11], 37개의 사업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재난관리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공안전체계구축및유지관리 사업(국토교통부 소관),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 사업(법무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보건복지부 소관), 산불방지대책 사업(산림청 소관), 소방보조인력양성 및 운영 사업(소방청 소관) 등은 3회 미흡 등급을 받았다. 또한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사업(고용노동부 소관), 우체국보수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등은 2회 미흡 판정을 받았다. 특히 안전·재난 대응 역량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 반복 미흡사업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11)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재난안전사업의 평가는 전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6년도 평가는 2025회계연도 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에 평가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평가까지는 기존 각부처 평가(50%)와 행정안전부 평가(50%)의 이원적 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2023년도 평가부터는 각 부처 자체평가를 100% 반영하여 1차 평가를 하고, 행정안전부는 자체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상위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에 이 부분에서는 현 제도로 변경되었던 2023년도 평가부터 2026년도까지 평가결과를 다루었다.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2회 이상 미흡 등급 사업]

부처명	사업명	미흡 등급 판정	
		횟수(회)	연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2	2023년,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재난관리(정보화)	3	2023년, 2024년, 2026년
	우체국보수	2	2022년, 2023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체계구축및유지관리	3	2023년, 2024년, 2025년
	철도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2	2024년, 2026년
기상청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2	2023년,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사체처리지원	2	2023년, 2025년
	축산물 HACCP 지원	2	2024년, 2026년
	축산식품안전관리	2	2025년, 2026년
법무부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	3	2023년, 2024년, 2025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	2022년, 2023년, 2025년
	노인보호전문기관	2	2023년, 2025년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3	2024년, 2025년, 2026년
산업통상부	가스안전관리(융자)	2	2024년, 2025년
소방청	소방보조인력양성 및 운영	3	2023년, 2024년, 2026년
	119구조장비확충	2	2023년, 2026년
	소방행정정보화(정보화)	2	2024년,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 운영	3	2022년, 2023년, 2025년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3	2022년, 2024년, 2025년
	온라인 식의약안전 관리운영	2	2024년, 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규제	2	2025년, 2026년
	방재환경기반구축	2	2022년, 2023년
	원자력안전기반조성	2	2023년, 2024년
질병관리청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운영관리	2	2023년, 2026년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 강화	2	2025년, 2026년
해양경찰청	경비대테러역량강화	2	2024년, 2026년
	항공기도입	2	2023년, 2024년
해양수산부	수산물위생관리	2	2023년, 2025년
	항만하역장근로자재해예방시설지원	2	2023년, 2024년
행정안전부	침수우려취약도로자동차단시설설치사업	2	2024년, 2026년
	중앙안전상황실운영	2	2022년, 2024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어린이통학차량LPG차 전환지원	3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장미세먼지관리사업	2	2024년, 2025년
	도림천일대침수방지사업	2	2024년, 2026년
	남강댐 치수능력증대	2	2022년, 2023년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금강수계)	2	2025년, 2026년
	공공폐수처리시설	2	2023년, 2024년

주: 부처명은 2026년 9월말 기준으로 통일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미흡 사업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동 평가제도가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을 점검하여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통한 환류가 실제 성과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불방지대책, 원자력안전규제,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 강화, 항공안전체계구축 사업 등 재난의 예방·대응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 연속 미흡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단순한 재정사업 성과 부진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현행 평가제도가 부처별 상대평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흡 등급이 반드시 절대적인 성과부진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단순히 반복적인 미흡 횟수만을 관리하기보다는 실제 정책효과가 개선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② 평가결과와 예산안과의 연계 강화 필요

연도별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일부 사업의 예산이 다음 연도에 증액되는 등 평가결과와 예산안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반복적인 성과부진의 원인을 외생적 요인과 개선가능한 요인으로 구분하여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투자 또는 구조개편 등 차등적인 예산환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및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나, 반복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중 일부는 평가결과와 다음 연도 예산안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2022~2026년 동안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2회 이상 미흡 등급 사업 가운데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전년대비 증액된 사업을 나타낸 것이다. 이 가운데 축산식품안전관리 사업, 원자력안전규제 사업,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운영관리 사업 등은 2026년도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 예산안은 증액되었다. 특히 도림천일대침수방지사업은 전년 대비 238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1,113.8% 증액되었고, 식품관리 운영 사업도 137.7% 증액되었다.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반복적 미흡 사업 중 2027년도 예산안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사업명	'26년 평가	'26년 예산(A)	'27년 예산안(B)	증감(B-A)	증감률(B-A)/A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식품안전관리	미흡	2,161	4,479	2,318	107.3
법무부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	보통	3,856	3,922	66	1.7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보통	13,559	13,658	99	0.7
소방청	소방행정정보화(정보화)	보통	1,325	1,538	213	16.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 운영	보통	2,060	4,896	2,836	137.7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보통	4,846	5,238	392	8.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규제	미흡	62,989	64,089	1,100	1.7
	방재환경기반구축	보통	8,337	8,487	150	1.8
	원자력안전기반조성	보통	27,202	30,044	2,842	10.4
질병관리청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운영관리	미흡	3,907	6,946	3,039	77.8
해양경찰청	경비대테러역량강화	미흡	17,503	36,372	18,869	107.8
해양수산부	수산물위생관리	보통	19,631	20,169	538	2.7
행정안전부	중앙안전상황실운영	우수	4,934	5,090	156	3.2
기후에너지환경부	도림천일대침수방지사업	미흡	2,142	26,000	23,858	1,113.8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금강수계)	보통	2,534	2,748	214	8.4
	공공폐수처리시설	우수	110,042	160,418	50,376	45.8

주: 부처명은 2026년 9월말 기준으로 통일함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 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재정당국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증액되었는지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반복적인 성과부진 사업에 대한 예산안 환류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다만 재난안전사업의 특성상 미흡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예산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난 발생 및 피해규모는 호우·폭염·산불 등 이상기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사업 주관부처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부처의 사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 확충이나 장비 보강이 미흡한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성과개선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복적인 미흡 사업의 경우 예산 증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과부진의 원인이 외생적 요인에 있는지, 사업설계·집행·성과관리 등 부처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인에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과부진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적 요인에 있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감액보다는 재난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사업규모와 재정투입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사업추진 방식, 집행부진, 부적절한 성과지표, 미흡한 사업관리 등 부처의 개선노력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성과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 연도 평가와 예산편성에 보다 엄격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

③ 재난안전사업평가와 통합재정사업평가의 연계 강화 필요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재난안전사업평가와 통합재정사업평가의 평가 결과, 동일 사업에 대하여 결과가 상반된 사례가 다수 나타나는데,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성과가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양 평가 간 상반된 결과를 조정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평가제도 간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평가는 2025년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다가, 2026년부터 기획예산처에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면서 그 평가 범위에 재난안전사업이 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재난안전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사업평가와 재정당국이 주관하는 통합재정사업평가를 모두 받게 되었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상반기에 총 58개 기관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사업은 2026년도 예산 기준으로 2,487개 사업, 185조 4,354억원 규모이다.

평가 결과, 사업 수 기준으로는 '사업개선'이 1,497개(60.2%)로 가장 많았으며, '감액' 858개(34.5%), '정상추진' 89개(3.6%), '통합' 40개(1.6%), '폐지' 3개(0.1%)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액 기준으로도 사업개선 대상이 124조 5,192억원으로 전체 평가대상 예산의 약 67.2%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감액 대상은 50조 9,567억원으로 전체의 약 27.5%였으며, 정상추진 사업은 5조 7,763억원으로 약 3.1% 수준이었다.

[2026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개, 억원)

구분	'26년 평가대상	평가 결과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	통합
사업 수	2,487	89	1,497	858	3	40
예산액	1,854,354	57,763	1,245,192	509,567	145	41,688

주: 평가대상 기관수는 총 58개임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元年),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2026.5.18.)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안전사업평가와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통합재정사업평가의 평가등급이 상반된 사업들이 존재한다. 먼저 2026년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 중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감액' 의견을 받은 사업은 총 11개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에는 사회적약자보호활동, 철도치안관리, 지진관측망확충및운영, 산림헬기도입·운영, 소방교육훈련운영, 국가결핵예방 등이 포함된다. 이들 사업은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감액 등급을 받음에 따라 성과평가 환류계획에서 대부분 15% 내외로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 특히 지진관측망확충및운영,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산림헬기도입·운영, 소방교육훈련운영은 전년도와 당해연도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통합재정평가에서는 '감액' 대상으로 평가되었다.

[2026년 재난안전사업평가 우수 사업 중 통합재정사업평가 감액 사업 현황]

구분	세부사업명	재난안전사업 평가[1]		'26 통합재정사업평가	
		'25	'26	결과	환류계획
경찰청	사회적약자보호활동	미흡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38.0%
국토부	철도치안관리	미흡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5.9%
기상청	지진관측망확충및운영	우수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5.0%
기상청	지역기후정보생산및활용	보통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5.0%
농진청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	우수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5%
방미통위	재난방송운영지원	보통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5.0%
산림청	산림헬기도입·운영	우수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6.4%
성평등부	성범죄자신상공개및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	미흡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0.23%
소방청	소방교육훈련운영	우수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3.9%
질병청	국가결핵예방	보통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5%
행안부	재난안전교육원운영	보통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5.0%

주: 1) 재난안전사업의 '26년 평가란 전년도인 '25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26년에 실시한 평가를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각 부처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 환류계획」(2026. 6.)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들 11개 사업은 모두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는데, 11개 사업의 2026년 예산액 합계는 총 2,969억원에서 2027년 예산안 2,510억원으로 약 459억원(15.5%)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사업이라도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감액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실제 차년도 예산안은 감액되어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재난안전사업평가 우수 사업 중 통합재정사업평가 감액 사업의 예산안]

(단위: 백만원, %)

부처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26년 예산(A)	'27년 예산안(B)	증감액(B-A)	증감률(B-A)/A
경찰청	사회적약자보호활동	16,491	18,462	14,454	△4,008	△21.7
국토부	철도치안관리	10,234	13,599	11,363	△2,236	△16.4
기상청	지진관측망확충및운영	10,778	9,384	7,985	△1,399	△14.9
기상청	지역기후정보생산및활용	6,678	4,712	4,178	△534	△11.3
농진청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	1,940	2,840	2,414	△426	△15.0
방미통위	재난방송운영지원	2,686	3,286	2,680	△606	△18.4
산림청	산림헬기도입·운영	93,858	193,826	160,155	△33,671	△17.4
성평등부	성범죄자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	5,518	4,798	4,288	△510	△10.6
소방청	소방교육훈련운영	3,445	3,204	2,759	△445	△13.9
질병청	국가결핵예방	39,051	39,472	37,835	△1,637	△4.1
행안부	재난안전교육원운영	3,354	3,344	2,936	△408	△12.2
합계		194,033	296,927	251,047	△45,880	△15.5

주: 재난안전사업의 '26년 평가는 전년도인 '25년도 사업에 대하여 '26년에 실시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반면 2026년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가운데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가 '정상추진'인 사업은 승강기안전관리개선,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원자력안전규제 등 3개 사업으로 파악된다. 이들 사업은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는 성과·사업관리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는 감액 의견이 제시되지 않고 정상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026년 재난안전사업평가 미흡 사업 중 통합재정사업평가 정상추진 사업 현황]

부처	세부사업명	재난안전사업 평가		'26 통합재정사업평가	
		'25	'26	결과	환류계획
행안부	승강기안전관리개선	보통	미흡	정상추진	정상추진
질병청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우수	미흡	정상추진	정상추진
원안위	원자력안전규제	미흡	미흡	정상추진	정상추진

자료: 행정안전부, 각 부처 「202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 환류계획」(2026. 6.)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3개 사업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정상추진' 등급을 받았던 사업 중 승강기안

전관리개선은 3.8% 감액된 반면,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은 18.3%, 원자력안전 규제는 1.7% 증액되어 재난안전사업 및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가 예산안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두 평가 제도는 일부 평가항목에 차이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평가항목을 적용하였음에도 일부 사업에서 상반된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다. 두 평가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평가제도의 목적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과가 다른 것 자체가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를 조정·해석하고 최종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재정당국이 정부안 편성단계에서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는 각 부처의 「2026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으나, 재난안전사업도 일반 재정사업과 유사한 평가기준과 평가항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동 결과보고서에서 재난안전사업의 정책적 목적을 고려한 평가결과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이루어진 2개 평가의 결과에서, 한 평가에서는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하면서 다른 평가에서는 감액 대상으로 판단하는 상충된 시그널을 줄 경우, 주관부처의 재난안전사업 관리와 예산편성 방향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행정안전부가 재난총괄기관으로서 재난안전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적 실익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통합재정평가 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별다른 협의 없이 증액될 경우 재난안전사업평가의 성과관리 및 환류 기능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12)]

④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평가체계 효율화 필요[13)]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4개 재난안전 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별 자료 작성·제출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 부담과 유사한 평가 운영경비의 중복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별 지표·증빙자료

12) 다만 재난안전사업은 재난발생 빈도·강도 등 외생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성과부진의 원인과 추가 재정투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13)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10.

의 중복 여부와 업무량을 점검하고 공통자료의 통합관리 등을 통해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소요를 줄이는 등 평가체계를 효율화 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총괄·조정 부처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안전관리 추진체계와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평가는 11개로, 9개 내역사업에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2027년 예산안 합계는 전년 대비 1,800만원 감액된 21억 2,155만원이다.

[2027년도 재난안전분야 평가 관련 주요 (내역)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집중안전점검 운영	404	340	340	340	-	-
지역안전개선컨설팅	133	145	145	143	△2	△1.4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50	44	44	38	△6	△13.6
재난관리평가 운영	123	130	130	130	-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958	962	962	927	△35	△3.6
자연재해안전도 진단	56	54	54	54	-	-
지역자율방재역량강화	152	173	173	208	35	20.2
을지연습평가	125	125	125	125	-	-
국가안전관리계획 분석평가	180	200	200	190	△10	△5.0
합 계	2,181	2,173	2,173	2,155	△18	△0.8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관련 세부사업 중 해당 평가 소요 예산이 편성된 내역사업만 기재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대상 주요 법정평가 내역]

평가명	법적 근거	평가 내용
집중안전점검 종합평가	재난안전법 제39조의4	주요 시설 안전성 점검
안전점검의 날 추진실적	재난안전법 제73조의6	기관의 매월 안전점검의 날 실적 평가
지역안전지수 산출·공표	재난안전법 제66조의10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지수 공표

평가명	법적 근거	평가 내용
국민안전교육 실태점검	안전교육법 제17조	안전교육 정책 추진 실적 점검
재난관리평가	재난안전법 제33조의2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체계 평가
안전한국훈련 평가	재난안전법 제35조	훈련관리 전(全)과정 평가
자연재해안전도 진단	자연재난대책법 제75조의2	자연재해 위험요인, 관리 추진 실적 평가
지역자율방재단활동평가	자연재난대책법 제75조의2	자율방재단 활동 실적, 활성화 노력도 평가
재난복구사업 추진실태 평가	자연재난대책법 제55조	복구예산 확보, 설계·공사 추진 실적 평가
을지연습 평가	비상대비 법률 제25조의2	전시직제 편성, 훈련, 전시상황실 운영 평가
국가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재난안전법 제25조의2	국가안전 계획수립·이행·환류 추진실적 평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전담인력은 평균 3.6명(최소 0명, 최대 5명)으로, 상시적인 재난관리 업무와 함께 평가 일정에 맞추어 자체평가서 작성, 증빙자료 취합, 현장평가 대응, 컨설팅 이행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평가 대응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재난 예방·대응에 필요한 인력 운용 여력이 제약될 수 있다.

예산 측면에서도 유사한 실적과 증빙자료를 평가별로 반복 확인하는 방식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현재 평가단 수당·여비, 우수기관 포상금, 기타 운영비 등 유사한 성격의 경비가 각 관련 사업별로 별도 계상되어 있다. 지표와 제출자료의 중복이 해소되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평가 운영비가 제도별로 분산되어 편성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도 평가별 기준에 맞춰 조사·작성하는 데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평가 추진을 위한 2027년 예산안 내역 일부 예시]

(단위: 백만원)

재난관리평가		집중안전점검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국가핵심기반 관리평가	
일반수용비	105	일반수용비	384	일반수용비	654	일반수용비 등	101
포상금	492	사업추진비	11	국내여비	134	일반용역비	10
국내여비	25	일반연구비	340	사업추진비	17	정책연구비	70
				포상금 등	121	포상금	4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소관 11개 평가의 대상·시기·지표와 제출 증빙자료를 평가별로 대조하고, 지자체가 동일·유사한 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범위 및 이에 소요되는 업무량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별 평가의 고유한 점검·진단 기능은 고려하되 공통 지표와 증빙자료의 통합관리 가능성을 검토하고, 평가 운영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비용을 함께 살펴 불필요한 재정소요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2027년도 예산안 사업별 분석

① 법적근거 마련 필요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중 일부 사업은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의 '119항공정비실 운영 사업'[14][15]은 2027년 7월 정비실 준공 이후 6개월 운영 기간을 고려하여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26억 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상위사업인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 결과 투자확대(핵심사업) 등급을 받았다.

「항공안전법」[16]에 따르면 항공기 정비를 위탁하려는 경우 정비조직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제작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정비등을 한 항공기는 항공정비사 자격증

14) 코드: 일반회계 1132-312의 내역사업

15)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 10.

16) 「항공안전법」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① 소유자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리·개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항성을 확인받기 곤란한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소유자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명을 받은 자로부터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면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할 수 없다.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정비조직인증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17] 시·도 소유 헬기를 위탁받아 정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동 사업은 정비실 준공 후 하반기 시범운영이 계획되어 있어, 시범운영에 시·도 헬기의 정비확인까지 포함하려면 시범운영 개시 전에 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비실 개청 및 하반기 시범운영 일정 전까지 「항공안전법」 개정과 정비조직 직제 확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의 4륜형 순찰로봇 도입 사업[18][19]은 AI 첨단기술을 활용한 순찰로봇을 치안현장에 도입하여 범죄 취약지역에 반복적인 순찰을 통해 제한된 순찰인력을 보조하는 내용이며, 2027년도 예산안은 4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상위사업인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세부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 결과 투자축소 등급을 받았다.

4륜형 순찰로봇은 공원·아파트 등 CCTV 사각지대에서 이동형 CCTV 역할을 수행하는 치안장비이다. 경찰청은 2025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A사의 순찰로봇을 수원 화성에 2대, B사의 순찰로봇을 고양에 2대, C사의 순찰로봇을 분당에 4대, 전주에 1대 등 총 9대를 운행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동가능한 물체에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규정하고 있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업무로 운영할 때,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받는 등을 충족하거나 ②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을 기록하는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 사용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4륜형 순찰로봇의 경우 운영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촬

17) 「항공안전법」제97조제1항은 정비조직인증의 신청주체를 "항공기정비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소방청 등 비영리 국가기관은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정비업 등록의 상업적 요건을 구조적으로 충족할 수 없어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18) 코드: 일반회계 1131-311의 내역사업

19)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 10.

영 영상이 일정 기간 저장됨에도 불구하고 별도 운용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따라서 경찰청은 4륜형 순찰로봇의 현장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4륜형 순찰로봇을 도입하고 운영하기 전 경찰착용기록장치와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사업 간 유사중복 해소 및 연계 필요

일부 재난안전사업은 기존 사업과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이 유사·중복되거나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므로, 사업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연계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현안 AI학습데이터 구축 사업[20)21)]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정보를 AI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통합함으로써 재난 예방과 현장 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7년 예산안에 14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상위사업인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정보화) 세부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결과 투자확대 등급을 받았다.

동 사업의 과제는 풍수해·화재 등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행정안전부의 '기후위기극한재난대응지역문제해결AI플랫폼(R&D) 사업(이하 "재난대응AI플랫폼사업")'의 내용과 상당부분 중첩된다. 재난대응AI플랫폼사업은 5년간 총 337억원(2027년 4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재난데이터들을 AI기반으로 연계하고 재난의 예측·감지·대응을 위한 AI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으로, 세부 과업에는 지하침수, 중·소하천 도시유역, 산불·호우·산사태 연쇄 등 풍수해를 중심으로 강우·수위·관망·CCTV 데이터를 결합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 사업 내 기존 내역사업과의 관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AI기반 집중호우·태풍 대응 서비스 구축 및 실증사업에서 수위예측, 범람·산사태 위험 분석, LLM[22)]·RAG[23)] 기반 상황보고 지

20) 코드: 일반회계 3032-509의 내내역사업

2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 10.

22)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모델)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를 이해·분석·생성하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지칭한다.

23)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검색 증강 생성)는 LLM이 답변을 생성하기 전에 외부

원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 사업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기존 사업의 수행 범위와 성과 활용을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수요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호우·침수 분야의 침수예측과 현장 의사결정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사업을 통해 다수 과제들이 추진되어 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AI데이터 사업은 재난대응AI플랫폼사업(R&D) 및 기존 관련 사업의 지역 단위 실증과제와 중첩되는 데이터 구축 및 개발·실증 소요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 시 과업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별도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수요와 추가 구축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중복투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자살취약지구 안전개선 사업[24][25]은 지역안전지수 자살분야 취약지역에 자살예방 시설 보강 등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율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70억원이 신규편성되었다. 상위사업인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세부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결과 투자확대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자살취약지구 안전개선 사업의 내용 중 안부확인서비스, 도시락 지원, 이동형 마음건강버스 운영, AI안부확인서비스는 기존 자살예방 및 복지서비스 사업과 기능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을 통해 자살고위험군 발굴·지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자살예방교육·홍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운영, 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 등 자살예방 전 과정에 걸친 사업을 이미 전국 단위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자체별 자살 특성과 지역 인프라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비 지원이 특정 자살취약지구의 개별 정비에 한정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물리적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과 예산을 재산정하고, 기존 자살예방·복지 분야와 기능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형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의 단독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26][27]은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지식기반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그 내용을 문맥으로 활용해 답변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LLM 자체를 재학습하지 않고도 조직 내부 문서·최신 자료·전문 지식 등을 반영할 수 있다.

24) 코드: 일반회계 2632-303의 내역사업

25)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 10.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5,000만원이 감액된 62억 4,000만원이다. 상위사업인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세부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 결과 투자유지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노후주택·공동주택의 화재예방이라는 유사한 정책목표 아래 소방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노후주택·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을 각각 개별적으로 편성·추진하고 있으며,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방청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노후주택·공동주택 화재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체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처 간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분담할 필요가 있다.

[노후주택 연기감지기·화재안전 관련 부처별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명	주요 내용	법적 근거	2027년 예산(안)
소방청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2026~2028)	노후아파트 화재취약계층 대상 감지기 보급	화재예방법 제2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6,240
행안부	노후주택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 (나주·구례)	노후 공동주택·농촌 단독주택 일반세대 대상, 화재보험협회·전남 소방본부 재원	-	40 (국비없음)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확산 지원	홍보콘텐츠 제작, 지방정부·소방관서·관리사무소 대상 교육, 현장점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85
국토부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 지원	필로티 공동주택 대상 자동확산소화기 등 지원	「건축물관리법」 제29조의2	5,000

자료: 소방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지원 사업[28][29]은 건축안전 사업[30]의 내역사업으로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에 설치가 용이하고 신속한 개선이 가능

26) 코드: 일반회계 1133-300의 내역사업

27)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 10.

28) 코드: 일반회계 6132-308의 내역사업

29)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6. 10.

30) 코드: 일반회계 6132-308 의 내역사업

한 소방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에 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상위사업인 건축안전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 결과 투자확대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발표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방청 또한 2026년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31]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27년에는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화재안전 설비 보급이 복수의 경로로 동시에 추진되는데, 사업별 대상이 일부 중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원대상 정보를 공유하여 지원대상 선정 시 타 사업의 기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건축물에는 보완적인 설비가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2027년도 재난안전사업 중 일부 사업은 신규 장비 도입, 운영체계 구축, 재원 확보 및 물자 수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흡하므로, 사업별 수요와 추진일정, 운영방식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구체화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의 소방임무형 4족보행 로봇 도입지원 사업[32][33]은 재난의 복잡·대형화, 극한현장에서의 소방대원 안전 확보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 관련 임무장비를 탑재한 4족보행로봇을 시범운영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총 16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상위사업인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세부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결과 투자확대(핵심사업) 등급을 받았다.

소방청은 4족보행로봇을 시범운영 목적으로 도입한다고 하였으나, 시범운영의 검증 목표와 그에 기반한 시범운영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채 40대의 도입 물량과

31)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사업(소방청), 코드: 일반회계 1133-300

32) 코드: 일반회계 1132-300의 내내역사업

33)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10.

견적·단가 조사가 이루어져 그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시범운영 평가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방청은 시범운영의 목표와 이에 따른 임무 시나리오, 요구성능, 운영방식, 평가체계를 포함한 시범운영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도입 물량을 재검토하여 시범운영이 향후 확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기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의 국가 감염병 병상 운영관리 사업[34][35]은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격리치료를 위한 음압 설비를 갖춘 국가 감염병 병상을 운영함으로써 병원 및 지역사회로의 2차 감염 최소화 및 신종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69억 4,600만원이다.

2026년에는 질병관리청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와 보건복지부의 '긴급치료병상 운영보조'가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긴급치료병상 업무·예산이 2026년 7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2027년부터 '국가 감염병 병상 운영관리' 사업으로 통합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서로 다른 운영방식과 지원체계를 적용하던 병상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는 만큼, 유형별 운영의무와 지원기준을 의료기관에 명확히 안내하고 실제 병상 운영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가 감염병 병상의 통합 운영지침과 개편된 평가·차등지원 체계를 아직 마련 중이고 특수치료병상 운영기관도 지정 전이므로, 질병관리청은 2027년 병상 운영 및 예산 집행 일정에 맞춰 지침 확정과 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평가결과의 차등지원 반영을 위한 단계별 준비를 통해 통합 과정에서 병상 운영과 감염병 환자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36][37]은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국가 감염병관리 인프라로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및 독립적인 감염병동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결과 투자확대 등급을 받았으며,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3,400만원

34) 코드: 응급의료기금 2837-323

35)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2026.10.

36) 코드: 일반회계 6234-331

37)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2026.10.

이 증액된 183억 9,400만원이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호남권·충청권·경남권·경북권·수도권의 5개 권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권역별 사업 추진단계와 잠정 완공시기에는 차이가 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호남권은 공사가 진행 중인 반면, 나머지 권역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협의·조정 및 입찰방법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완공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적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장비비는 국비 10억원이며, 지방비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동 재원으로 구매할 장비의 품목·수량·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질병관리청은 예산 확정 이후 법정장비를 중심으로 시급성·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매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잔여 소요재원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2027년에 추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2028년도 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장비 확보에 필요한 소요기간과 개원 준비일정 간 정합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장비 구입·설치에는 8~10개월, 시험가동에는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확보 이후 개원까지 최소 1년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의 개원 시점에 필요한 장비가 적기에 갖추어질 수 있도록 국비 지원 장비의 구매 우선순위와 잔여재원에 대한 연차별 확보계획을 구체화하고, 병원 부담 장비의 재원 확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장비별 구매·설치 및 시운전 일정을 개원계획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실시(지자체보조) 사업[38][39]은 국가가 예방접종 대상자들을 위해 예방접종 비용(백신비 및 접종 시행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43억원 증액된 5,214억 4,400만원이다. 상위사업인 국가예방접종실시 세부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결과 투자확대(핵심사업) 등급을 받았다.

2027년도 예산안에는 15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HPV 9가 전환 및 13세 남아 접종 확대, 65세 이상 PCV 전환이 반영되어 있으며, 인플루엔자 접종 확

38) 코드: 국민건강증진기금 6431-303의 내역사업

39)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2026.10.

대는 2027년 9월부터, HPV 및 폐렴구균 관련 변경은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이러한 시행일정에 맞춰 수요조사와 구매·계약 및 공급 절차를 진행하고, 공급방식과 단가 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구매물량과 소요액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백신 전환 과정에서는 기존 백신의 잔여물량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접종 확대와 백신 전환으로 신규 백신의 적기 공급과 기존 백신의 잔여물량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은 시행일정과 실제 접종수요를 반영하여 공급·재고계획을 마련하고 유행에 따른 수요 변동에 대응하여 백신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④ 사업추진 방식 개선 필요

일부 재난안전사업은 사업추진 기준 및 방식, 예산편성·관리체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사업 특성을 고려한 추진기준 정비, 관리체계 개선 및 집행방식의 효율화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40][41]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의 자연재해 취약 요인을 정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국고보조율 50%)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결과 투자유지 등급을 받았으며, 2027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00억 3,900만원이 증액된 1조 1,529억 9,800만원이다.

최근 극한호우가 되풀이되면서 과거 관측자료에 기반한 방재기준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42] 에 따르면 전국 213개 지방자치단체 중 77개(36.2%)에서 최근 10년 동안 한 차례 이상 실제 강우량이 방재성능목표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안전부의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역별·빈도별 보정률을 각 부처 설계기준에 제시하는 지침이나, 2017년 개정 이후 갱신되지 않았고 적용도 권고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강우 특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시설별 설계

40)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35-300

4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10.

42) 감사원,(2024).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Ⅱ」. 성과감사 결과보고서.

기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설계 및 사업비 산정 등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의 무인단속장비운영 사업[43][44]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해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7억 5,400만원이 증액된 1,275억 1,400만원이다. 상위사업인 교통과학장비관리 세부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 결과 투자확대 등급을 받았다.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경찰청과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편성되고 있다. 이 중 경찰청의 무인단속장비 위탁관리비는 전년 대비 65억 4,400만원이 증액된 79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위탁관리비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대수 증가에 맞춰 증액 편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 국회는 결산 심사 및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무인단속장비의 운영 대수 급증에 따른 유지관리 부담을 지적하며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를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무인단속장비의 위탁관리비가 연례적으로 증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무인단속장비에 대해 설치 필요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논의하는 등 설치·운영·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5예산안 무인단속장비 관련 국회 부대의견]

구분	내용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경찰청은 증가하는 무인단속장비 위탁관리비로 인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인단속장비 설치 주체가 위탁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9) 경찰청은 신호체계·무인단속장비·어린이보호구역 운용 등 종합적인 교통제어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43) 코드: 일반회계 1331-313의 내역사업

44)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10.

해양경찰청은 경비대테러역량강화 사업[45]에 13억 2,600만원,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사업**[46]에 17억원, **해양오염예방활동 사업**[47]에 1억원을 2027년도 드론 도입·운영 예산으로 편성하였다.[48]

드론은 경비·대테러, 연안안전, 해양오염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는 장비로, 업무 목적이 다르더라도 구매·보험·유지보수·교육·통신 등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본질적 성격은 동일하다. 그럼에도 2027년도 예산안에서 동일한 성격의 드론 관련 예산이 세부 사업별로 각각 분산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드론 도입·운영 예산은 현행과 같이 3개 사업에 분산 편성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드론 도입 및 관리' 등 단일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드론의 구매·보험·유지보수·교육 및 교체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장비의 다목적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재정 운용 및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청 드론 도입·운영 사업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세목별	경비대테러 역량강화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해양오염 예방활동	합계
드론 구매	640	1,232	100	1,972
드론 보험료	300	162	-	462
드론 유지보수	386	28	-	414
드론 교육비	-	264	-	264
드론 LTE 통신요금	-	14	-	14
합계	1,326	1,700	100	3,126

주: 2026년 8월말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의 단정용 크레인 교체공사 사업[49][50]은 경비함정에 탑재되어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고속단정의 노후 크레인을 교체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45) 코드: 일반회계 3102-300

46) 코드: 일반회계 3001-300

47) 코드: 일반회계 4333-300

48)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10.

49) 코드: 일반회계 3001-300의 내역사업

50)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10.

전년 대비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9억원이다. 상위사업인 함정정비유지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 결과 투자유지 등급을 받았다.

단정용 크레인 교체공사 사업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예산액 4억 5,000만원 대비 집행액이 전무한 상황인데, 1월 계약 체결 직후 입찰참가자격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서 6월부터 계약 이행이 중지되었다. 이후 대전지방조달청 심의를 거쳐 2026년 10월 조달청 본청 심의가 예정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추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2026년도 사업에서 발생한 계약 이행 중지 및 조달 심의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2027년도 사업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공고 이전 단계에서 기술적 요구 조건과 입찰참가자격의 적정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취약계층 식의약 안전교육 사업[51][52]은 농어촌 어르신 등에게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사용법, 의약품 사용·보관·폐기 방법, 식중독 예방 등을 교육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2027년에 교육 횟수를 176회(어르신 171회, 다문화 5회)로 확대하기 위해 전년 대비 1억 6,900만원 증액된 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다. 상위사업인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세부사업은 행정안전부는 사전협의 결과 투자확대 등급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9개 시군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171개소를 대상으로 어르신 대면교육을 1회씩 진행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고령인구 비율이 40%를 넘는 36개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과 동일하게 교육 횟수가 배정되었다. 즉, 초고령지역에 대한 대면교육 추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역별 고령인구 규모와 피해 발생 현황 등을 반영하여 교육 배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식의약 안전교육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1) 코드: 일반회계 1131-300의 내내역사업

52)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2026.10.

⑤ 사업효과성 제고 필요

일부 재난안전사업의 경우 사업수행 방식의 실효성이 불분명하거나 지원대상이 기존 수혜자에 편중되는 등 사업효과가 한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소규모 사업장 청년 안전 패트롤 사업[53][54]은 산재예방 사업 지원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 안전지킴이'를 채용하여 산재 취약 사업장에 필요한 기술·재정지원 사업 절차를 안내하고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은 2027년도 신규 내내역사업으로 40억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150명의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다. 상위사업인 업종별 재해예방 세부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결과 투자확대 등급을 받았다.

산업안전 분야에 관심이 높은 청년에게 현장에 밀착되어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현장 경력이 부족한 청년 지킴이가 산업안전 분야 모니터링이나 사후기술지도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수용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동 사업의 편성 목적을 감안해 소규모 사업장 청년 패트롤 활동이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계획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사업[55][56]은 무상 질병 예방을 위해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7년도 계획액은 전년 대비 36억 4,700만원 증액된 357억 7,100만원이다. 상위사업인 유해작업환경개선 세부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결과 투자유지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사업을 통해 2024년도에 비용지원을 받은 사업

53)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0의 내내역사업

54)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 10.

55)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2의 내내역사업

56)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 10.

장 중 88.8%가 2025년도에도 비용지원을 받았고, 2023년에 비용지원을 받은 사업장 중 89.2%가 2024년도에도 비용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이 연속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유해인자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매년 측정하여 위험성에 대한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새로운 사업장에서도 작업환경측정을 통하여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통한 지원이 특정 사업장 위주로 한정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한정된 예산 속에서 다양한 작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⑥ 사업소요 및 평가결과를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일부 재난안전사업은 통합재정사업평가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2027년도 예산안이 감액되어 필수적인 재난안전 소요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평가결과에 맞게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와 필수 안전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총액) 사업[57)58)]은 일반국도상 교량 및 터널의 예방적 ·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 보강, 일반국도 노후교량의 개축 및 저등급 교량 성능개선 등 교량의 성능 유지 · 개선 사업, 방호울타리 · 야생동물이동통로 등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103억 9,700만원 감액된 6,255억 8,600만원이다.

동 사업은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총액계상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내역사업인 교량 전면 재가설 및 개축사업 등은 긴급성을 요하는 총액계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통

57)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1731-461

58)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6. 10.

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제기된 노후교량개축에 128억 3,500만원이 배정되어 있다.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의 본래 취지는 총액계상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긴급성이 낮아 총액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없는 내역사업은 별도 세부사업에 편성하라는 것이나, 국토교통부가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전체 사업 예산을 15% 일괄 감액함에 따라 교량 · 터널 보수 등 긴급한 소요에 필요한 예산도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2025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평가제도별 목적과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재난안전 측면에서 성과가 인정된 부분까지도 감액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해 예방 및 긴급 복구 등에 필요한 예산은 적정 소요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의 취지를 고려하여 총액계상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노후교량개축 등 일부 내역사업만 타 세부사업으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유지보수 사업[59][60]은 일반국도의 포장 보수, 낙석위험 비탈면 정비, 수해위험지구 및 배수시설 개선 등 도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도로기능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총액계상사업이다.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438억 6,700만원 감액된 7,220억 1,900만원이다.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동 사업은 안전 · 재난 관련 사업(낙석 · 사면 · 배수 · 수해 · 설해 · 포장 · 표지 · 소구조물 등)과 데이터 등 관리사업(관리시스템 · 위탁 · 지원비 등)이 혼합 구성되어 있는데, 총액계상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설유지 · 재난대응 및 디지털행정으로 예산 구조를 분리하고 유지보수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1~2025회계연도 동 사업의 집행률은 93% 이상으로 비교적 준수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연례적으로 이 · 전용 및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가 예산액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59)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1733-461

60)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6. 10.

[연도별 도로유지보수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664,406	-	664,406	20,884	△67	-	685,224	658,319	99.1	96.1	24,553	2,351
2022	773,342	-	773,342	24,553	△2,726	-	795,169	747,555	96.7	94.0	44,132	3,482
2023	778,391	-	778,391	44,132	△6,874	-	815,649	768,698	98.8	94.2	40,650	6,301
2024	837,805	-	837,805	40,650	△13,542	-	864,913	810,715	96.8	93.7	50,893	3,305
2025	866,507	129,900	996,407	50,893	△19,337	-	1,027,963	957,647	96.1	93.2	66,531	3,784

자료: 국토교통부

다만, 동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38억원(△16.6%) 감액되었는데,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간위탁사업비('26년 164억원) 등 도로관리시스템 운영 예산을 별도로 분리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감액 규모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전용, 이월 및 불용액 규모를 합산한 것보다 과다하여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동 사업은 2025년(2024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 2026년(2025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는 보통 등급을 받은바 이를 감안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로유지보수 사업 예산은 재해 예방 등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로 포장·비탈면 정밀안전진단 수요 등 필수적인 소요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Ⅲ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

발간일 2026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ISSN 3058-6194

ⓒ 국회예산정책처, 2026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420-10
ISSN 3058-6194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